

# 軍

Military History

# 史

2022. 6. 제123호

- 6·25전쟁 전사자 유해발굴 및 유품의 사료적 가치 검토
- 解放政局期 韓國光復軍豫備隊 研究
- 1860~70년대 조선의 砲架 제작과 메이지 일본 大砲 유입
- 퍼트남의 양면게임이론에 근거한 이승만의 반공포로 석방에 관한 재조명
  - 협상전략과 윈셋의 변화를 중심으로 -
- 미국 기동전 사상의 형성에 관한 연구
  - 미국의 공지전투(AirLand Battle) 교리 형성과정은 중심으로 -

[서 평]

- 예정된 전쟁: 미중 전략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 그레이엄 앨리슨 저, 『예정된 전쟁(Destined for War)』 -
- 국제무대에 다시 등장한 타이완(중화민국)
  - 경인문화사(장수야 지음, 정형아 옮김), 『한국전쟁은 타이완을 구했는가?: 미국의 대 타이완 정책을 풀어 내다』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 軍史

第123號  
2022. 6.



國防部 軍史編纂研究所

Contents | 2022. 6. 제12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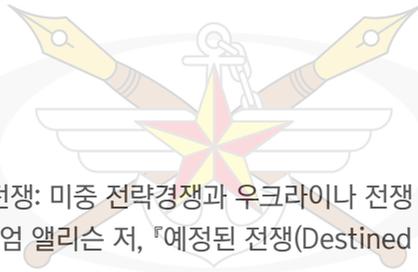
- 
- 1 ▶ 6·25전쟁 전사자 유해발굴 및 유품의 사료적 가치 검토 고종성
- 59 ▶ 解放政局期 韓國光復軍豫備隊 研究 엄태용
- 133 ▶ 1860~70년대 조선의 砲架 제작과 메이지 일본 大砲 유입 이재정
- 173 ▶ 피트넘의 양면게임이론에 근거한 이승만의 반공포로 석방에  
관한 재조명 박재홍  
- 협상전략과 원셋의 변화를 중심으로 -
- 219 ▶ 미국 기동전 사상의 형성에 관한 연구 김영환  
- 미국의 공지전투(AirLand Battle) 교리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



# 軍史



## Contents | 2022. 6. 제123호



[서 평]

- 261 ▶ 예정된 전쟁: 미중 전략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두진호  
- 그레이엄 앨리슨 저, 『예정된 전쟁(Destined for War)』 -
- 275 ▶ 국제무대에 다시 등장한 타이완(중화민국) 박영실  
- 경인문화사(장수야 지음, 정형아 옮김), 『한국전쟁은 타이완을 구했는가?: 미국의 대 타이완 정책을 풀어내다』 -



본 저작물은 정부예산으로 발간하였으므로 기관(부대) 자산으로 영구보존하시기 바라며, 보관이 불가능할 경우 당 연구소로 회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2, No. 123, pp.1-57  
<https://doi.org/10.29212/mh.2022..123.1>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 6·25전쟁 전사자 유해발굴 및 유품의 사료적 가치 검토\*

고종성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예연구원

- 목 차
1. 머리말
  2. 6·25전쟁 전사자 유해발굴의 경과와 현황
  3. 전사자 유해발굴 및 유품의 사료적 검토
  4. 맺음말

**초 록** 본 연구는 6·25전쟁 전사자 유해발굴을 통해 수습한 전사자 유해와 유품을 6·25전쟁사 연구에 필요한 하나의 사료(史料)로써 활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6·25전쟁 중 적과 싸우다 사망한 전사자(戰死者)는 기존의 6·25전쟁사 연구에서는 주목받지 못하다가 6·25전쟁 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된 전사자 유해발굴과

\* 본 연구는 고종성, 「6·25전쟁 전사자 유해발굴 및 유품의 사료적 활용」, 국민대학교 국사학과 석사학위 논문, 2021.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본 연구에 대해 조언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맞물리면서 처음으로 그 성격을 조명받기 시작했다. 한국군은 전사자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경험과 기록 체계가 부족한 상태에서 전쟁을 맞이하였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전사자 유해발굴을 통해 공개된 정보는 6·25전쟁 전사자의 존재를 실증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핵심 자료이다.

경상북도 지역은 한국군이 소백산맥 일대의 지연전을 거쳐 유엔군과 함께 낙동강 전선에서 방어전을 수행하며 반격의 발판을 만들어낸 곳이다. 이러한 경북의 주요 전투지역에서 한국군 전사자 유해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본 결과 문경, 풍기, 안동, 의성, 영천, 칠곡(다부동), 영덕, 포항 등 기존 전투사에 기록된 격전지에서 상당수의 6·25전쟁 전사자 유해가 발굴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포항과 영천 지역의 경우 기존에 알려졌던 전사자 규모보다 더 많은 수의 한국군 전사자 유해가 발굴되어 기존의 6·25전쟁 전투사를 재확인하는 새로운 근거로 삼을 수 있었다.

6·25전쟁 전사자의 유품은 말 그대로 전사자가 소지하고 있던 유류품을 뜻한다. 그 종류에 따라 화기류, 탄약류, 피복류, 군화류, 장구류, 개인유품 등으로 분류되는데 이러한 유품들은 종류별로 특징을 분석하여 전사자의 국적, 즉 피아(彼我)식별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전사자의 신원확인을 위한 핵심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위와 같이 6·25전쟁 전사자 유해발굴을 통해 파악한 전사자 유해와 유품에 대한 정보는 다양한 분석을 통해 사료적 활용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그동안 단순히 추모의 대상으로만 해석되어왔던 6·25전쟁 전사자에 대해 실증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주제어** : 6·25전쟁, 한국전쟁, 한국군, 전사자, 유해발굴, 유해, 유품,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 1. 머리말

대한민국은 1948년 정부수립 이후 1950년 6·25전쟁<sup>1)</sup>을 맞게 되었다. 이 가운데 한국군<sup>2)</sup>은 전쟁 기간 동안 137,899명으로 추산되는 전사자(戰死者)가 발생하였다.<sup>3)</sup> 전사자는 사전적인 의미로 전쟁터에서 적과 싸우다가 죽은 사람을 통칭한다.<sup>4)</sup> 따라서 6·25전쟁 전사자는 6·25전쟁에 참전하였다가 전투 중 사망한 장병(將兵)들을 뜻한다. 그동안 6·25전쟁사에서 전투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참전 장병들에 대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다가 2000년대를 전후하여 6·25전쟁 포로에 관한 연구가 활성화되었다.<sup>5)</sup> 하지만

- 1) 1950년부터 1953년까지 한반도에서 일어난 전쟁을 어떻게 명명하느냐의 문제는 전쟁의 기원과 책임소재 등을 규명하는 연구자의 시각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수의 연구자는 전쟁의 국제전적, 내전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학술적 용어로 ‘한국전쟁’을 선택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1993년 처음 제정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법률 제17119호, 2020.3.24 시행, 일부개정]’을 통해 ‘6·25전쟁’을 법률적 용어로 채택하였다. 더욱이 해당 법률을 근거로 ‘6·25전쟁 전사자’를 정의하는 ‘6·25 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5045호, 2017.11.28 시행, 일부개정]’이 제정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루고자 하는 연구의 정의를 확립하기 위해 ‘6·25전쟁’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자 한다.
- 2) ‘한국군’이라는 용어는 1948년 9월 대한민국 국군이 창설된 이후의 조직을 가리키는 데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 ‘한국군’은 해군, 공군, 해병대 등의 사료적 한계로 인하여 그 범위를 육군으로 한정하였다. 노영기, 「1948-50 한국군의 형성과 성격」,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2008; 고한빈, 「한국전쟁 이전(1946-50) 한국군 군사교범의 성격」, 한양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 논문, 2017.
- 3) 박동찬, 『통계로 보는 6·25전쟁』,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4, 200쪽.
- 4)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 5) 6·25전쟁 포로에 관한 최근의 연구는 다음과 같다. 조성훈, 『한국전쟁과 포로』, 선인, 2010; 이상호, 「한국전쟁기 미군의 공산포로 ‘미국화 교육」, 『역사와 현실』 제78호, 2010; 전갑생, 「88인의 포로, 떠난 자와 돌아온 자 남에서 반공투사가 된 귀환 포로들」, 『민족21』 제117호, 2010; 이선우, 「한국 전쟁기 중립국 선택 포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 논문, 2012; 김보영, 「한국전쟁포로협상과 중립국 포로의 선택」, 『사학연구』 제123호, 2016; 윤성준, 「한국전쟁기 북한의 점령

참전 장병 중에서도 특히 국가의 명령에 따라 전장(戰場)에서 전사(戰死)한 ‘전사자’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6·25전쟁 당시 한국군은 전사자를 어떻게 처리하고 예우할 것인지에 대한 경험 없이 전쟁을 수행하였다.<sup>6)</sup> 더욱이 기존의 6·25전쟁사 연구에서는 작전 과정 중 전사자가 발생하였을 때 유해를 어떻게 수습했는지조차 제대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sup>7)</sup> 결국 전사자들은 6·25전쟁에서 가장 소외된 존재이며, 6·25전쟁 전사자 연구는 6·25전쟁사 연구에서 가장 미진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비록 죽은 자는 목소리를 낼 수 없지만 가장 치열하게 전쟁을 경험했고 그 수가 상당하다는 점에서 6·25전쟁 전사자는 전쟁의 중요한 주체로서 주목되어야 한다. 그들이 전쟁의 직접적인 수행자인 동시에 가장 큰 피해를 본 당사자였다는 사실이 사회적으로 환기되어야 한다.

6·25전쟁 전사자에 대한 국내적 관심은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육군본부와 민관 합동으로 추진된 6·25전쟁 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전사자 유해발굴을 한시적으로 실시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6·25전쟁 전사자 유해발굴(이하 전사자 유해발굴)은 처음에는 인류학적인 관점에서 접근되기 시작했지만 이때부터 이미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설정하는 주요한 상징으로 보는 한편, 국민의 사회소속감을 보여주는 중요한 역사적 사례로 해석되었다.<sup>8)</sup> 또한 전사자 유해발굴의 심층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인류학적

---

정책과 조선인민의용군의 동원 : 미군 포로심문보고서를 중심으로, 『한국근현대사 연구』 제89호, 2019.

6) 강인철, 『전쟁과 희생 : 한국의 전사자 숭배』, 역사비평사, 2019, 27쪽.

7) 이상호, 「베트남전쟁 파병 국군 전사자 현황과 국내 언론 보도」, 『역사와 현실』 제116호, 2020, 105쪽.

8) 6·25전쟁 전사자 유해발굴에 관해 인류학적 관점으로 바라본 초기 연구는 다음과 같다. 박선주, 「6.25 전사자 유해발굴조사 : 6.25 전사자 유해의 인류학적 조사-2000~2002년도 발굴을 중심으로-」, 『중원문화연구총서』 제6호, 2002; 「6.25 전사자 유해발굴의 의의와 현황」, 『인문학보』 제33호, 2006; 노용석, 『국가폭력과 유해발굴의 사회문화사』, 산지니, 2018.

지식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접근방법이 필요함을 인식하기 시작했다.<sup>9)</sup> 이렇듯 6·25전쟁 전사자의 존재는 처음부터 전사자 유해발굴과 맞물리면서 그 성격을 조명받기 시작했다.

한편, 비슷한 시기에 유해발굴과는 별개로 국가 중심의 전사자 추모를 비판적으로 바라본 연구 또한 같이 이뤄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국가가 전사자의 숭배를 통해 개인의 희생을 강요했다고 지적하였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전사자에 대한 추모시설 조성이 국가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보았다.<sup>10)</sup>

위와 같은 연구들은 6·25전쟁 전사자의 존재를 밝히는 데 도움을 주었고 전후 세대가 전사자를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지 그 방향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상의 연구들은 사회적인 추모 혹은 인류학적 관점에서 전사자 문제를 규명한 것으로 전사자에 대해 실증적인 접근을 한 것은 아니었다. 예를 들어 6·25전쟁 발발 이후 전사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전사자들이 어떤 군사적 함의에 근거해서 수습되었는지, 전사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에서 얼마나 발생하였는지, 이러한 전사자 문제가 6·25전쟁사 측면에서 어떻게 검토되어야 하는지를 실질적으로 고찰하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한계점에 전사자 수습 과정이 배제된 전사자 추모 연구는 전쟁의 참혹함에 대한 대중의 의식을 왜곡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sup>11)</sup> 전쟁사(戰爭史)는 군사사(軍事史)의 일환으로서<sup>12)</sup> 전쟁의 전술적 수행 즉, 전투를 중심으로 전쟁의 본질과 성격을 규명한다고 볼 수 있

9) 박선주, 「6.25 전사자 유해발굴의 의의와 현황」, 『인문학보』 제33호, 2006, 70쪽.

10) 전쟁 전사자에 대한 숭배 그리고 국가 주도의 추모시설 조성 등을 비판적으로 바라본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다카하시 데쓰야, 『국가와 희생』, 책과 함께, 2008; 전진성 외 『기억과 전쟁 : 미화와 추모사이에서』, 휴머니스트, 2009; 하상복, 『죽은자의 정치학』, 모티브북, 2014.

11) 이상호, 앞의 논문, 2020, 105쪽.

12) 서양에서는 군사사(Military History)가 전쟁사(History of Warfare)보다 더 폭넓고 보편적인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정토웅, 「군사사 연구방법론(I)」, 『군사』 제24호, 1992, 10쪽.

다.<sup>13)</sup> 따라서 6·25전쟁을 직접적으로 수행한 전사자를 6·25전쟁사 속에서 다루려는 시도가 필요했다. 이에 따라 전쟁사적 측면에서 6·25전쟁 전사자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한 사례도 있었다. 김성보와 양영조의 연구가 여기에 해당한다.

김성보는 6·25전쟁 50주년 당시 이루어졌던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을 지켜보면서 6·25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가능성과 과제 등을 제시하였다.<sup>14)</sup> 그는 종전의 6·25전쟁사가 전투 과정만을 나열하는 전투사 혹은 특정 인물의 정치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전쟁을 수행하는 장병들의 실상을 파악하지 않고는 전쟁의 전체 실상에 접근할 수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단순히 수치적인 통계에서 벗어나 장병들의 출신 배경, 생각과 정서, 군내에서의 경험, 처우, 삶의 변화 등 군인들의 내면을 이해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새로운 연구방법론의 전환이 이루어진다면 6·25전쟁사 측면에서 전사자를 연구할 수 있을 것이라 내다보았다. 김성보는 특히 전사자의 유품에 주목하여 전사자 유해 주변에 남겨져 있는 전쟁의 흔적들을 조사하는 연구의 병행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sup>15)</sup>

한편, 양영조는 더 나아가 6·25전쟁 전사자에 대해 실증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6·25전쟁 격전지와 전사자 유해의 지역 분포를 비교하고 이를 기존의 전투사 연구와 연결하여 해석하였다.<sup>16)</sup> 양영조는 2000년대부터 2016년까지 남한지역에서 발굴된 전

13) 이종하, 『한국군사사 연구』, 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20-25쪽; 방종관, 「전쟁사 연구에서 전투사의 성격과 연구방법 : 황성전투를 중심으로」, 대전대학교 군사학과 석사학위 논문, 2004, 9-14쪽.

14) 김성보, 「한국전쟁기 전사자 유해발굴의 의의와 전쟁사 연구의 과제」, 『증원문화연구총서』 제6호, 2002.

15) 위의 논문, 2002, 25-27쪽.

16) 양영조, 「6·25전쟁과 국군 전사자 유해발굴」,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공동기획전 : 67년만의 귀향』, 대한민국역사박물관, 2017.

사자 9,645구를 대상으로 지역적 분포를 분석해 볼 때 강원지역이 5,600구, 경북지역이 2,415구, 경기지역이 1,848구순으로 가장 많음을 지적하며 이러한 전사자의 분포는 기존 6·25전쟁의 전투사를 비교적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6·25전쟁 당시 한국 군이 전사자 처리를 제대로 수행할 여유가 없었으며 전쟁 이후에도 정부와 군이 기록의 미비로 인해 전사자 기록을 명확하게 정리하거나 관리하지 못했음을 지적하며 전사자 연구를 전쟁사 측면에서 더 면밀하게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sup>17)</sup>

위의 연구들에서도 지적했듯이 6·25전쟁 당시 전사자의 현황과 전사자 수습에 관련된 기록은 전쟁 중에 제대로 관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전사자에 관한 실증적인 정보를 얻는 것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결국, 전사자 유해발굴의 현황 자료는 6·25전쟁 전사자의 실황을 파악할 수 있는 매우 핵심적인 자료라고 볼 수 있다.

현재 파악할 수 있는 전사자 유해발굴의 구체적인 자료로는 첫 번째로 전사자 유해의 지역별 발굴현황이 있으며, 두 번째로 전사자 유해와 동반 출토된 전사자 유품(遺品)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각 지역에서 발굴한 전사자의 유해와 유품을 하나의 역사적 사료(史料)로써 활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6·25전쟁 전사자에 대해 보다 더 실증적으로 접근해보고자 한다. 우선, 6·25전쟁 전사자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수습되었는지, 전사자의 수습이 전쟁 발발 직후부터 1950년대를 거쳐 어떻게 현재의 전사자 유해발굴에 이르렀는지 그 전개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 다음으로 6·25전쟁 전사자 유해와 유품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6·25전쟁사 안에서 어떠한 사료적 가치를 갖고 활용될 수 있는지 고찰해보고자 한다.

17) 앞의 글, 239-241쪽.

첫 번째 요소는 양영조의 시도에서 알 수 있듯이 전사자 유해의 지역별 분포 현황과 기존 전투사에서 보고된 지역별 전사자 추정치를 비교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양영조는 전국 단위에서 전사자의 분포 현황을 거시적으로 파악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시도를 세부적으로 확장하기 위해 6·25전쟁 직후 상당한 전사자가 발생한 경상북도 지역을 선정하였다. 따라서 경북의 주요 전투지역에서 전사자 유해가 정확히 얼마나 발굴되었는지 살펴보고 기존 전투사와 비교할 때 어떠한 공통점과 특이점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두 번째 요소로 그동안 다루지지 않았던 6·25전쟁 전사자의 유품 자료를 종류별로 고찰해보고 이 자료들을 사료로써 활용할 수 있는지 그 가치와 한계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6·25전쟁 전사자의 수습과 유해발굴의 전개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육군과 합동참모본부의 자료를 참고하였다.<sup>18)</sup> 특히 전사자 유해발굴의 전담 기구라고 할 수 있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의 자료를 폭넓게 참고하였다.<sup>19)</sup> 현대에 이르러 본격적인 전쟁사 연구는 6·25전쟁 이후 군에서 시작되었다.<sup>20)</sup> 국방부는 작전일지와 지도 등의 1차 사료를 기반으로 6·25전쟁사를 정리하여 오랫동안 전쟁사 연구를 주도해왔다.<sup>21)</sup> 따라서 기존의 6·25전쟁사는 1967년에서 1980년에 걸쳐 간행된 『한국전쟁사』<sup>22)</sup>를 보완한 『6·25전쟁사』<sup>23)</sup>를 중심에 놓고, 2000년에서 2020년까지 발굴한 6·25전쟁 전사자의 지역별 분포 현황 자료들을 함께 비교하면서 살펴보고자

18) 육군본부, 『육군병참사』 제1집, 1969; 합참정보본부, 『군사정전위원회편람』 제5-8집, 2001-2010.

19)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그들을 조국의 품으로 :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13년의 기록』, 2013; 『유해발굴 20년사』, 2021.

20) 방종관, 앞의 논문, 2004, 8쪽.

21) 김태우, 「한국전쟁 연구 동향의 변화와 과제 1950~2015」, 『한국사학사학보』 제32호, 2015, 337쪽.

2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1-11권, 1967-1978.

2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1-11권, 2003-2013.

한다.<sup>24)</sup> 전사자 유품 자료 역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서 발간한 유품자료집<sup>25)</sup>을 참고하되,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서 공개한 특이 유품 목록을 함께 살펴보았다.<sup>26)</sup> 또한 6·25전쟁 생존 장병들의 증언이 담긴 구술자료<sup>27)</sup>와 더불어 6·25전쟁 전사자와 관련 있는 역사박물관의 발간자료 역시 참고하였다.<sup>28)</sup>

## 2. 6·25전쟁 전사자 유해발굴의 경과와 현황

### 가. 6·25전쟁의 발발과 전사자의 수습

6·25전쟁은 선전포고 없이 북한군<sup>29)</sup>의 기습 남침으로 발생했기 때문에<sup>30)</sup> 전쟁 발발 직후부터 한국군 전사자가 속출하기 시작하였다. 개전 초기 한국군은 전사자에 대한 독립적인 전담 조직도 없이

2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 유해소재 지도(DMZ/남한지역)』, 2009;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홈페이지, 『6·25 전사자 유해발굴 현황(www.withcountry.mil.kr)』, 2020.12.31. 기준.

25)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6·25 전사자 유품자료집』 Vol.2, 2018; 『6·25 전사자 유품자료집』 Vol.3, 2020.

26)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홈페이지, 2011년 전사자 특이유품 목록(www.withcountry.mil.kr) 2022.01.06. 검색.

27) 김귀옥 외, 『한국전쟁 이야기 집성』 1·2권, (주)박이정, 2017.

28) 한양대학교 박물관, 『한양대학교 박물관 개교 72주년 기념 특별전 : 한국인과 인장』, 2011; 수원박물관, 『수원박물관 특별기획전 : 해방공간 수원, 그 뜨거운 함성』, 2016;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공동기획전 : 67년만의 귀향』, 2017; 『박물관 근현대자료의 등록과 관리』, 2018; 『6·25전쟁 70주년 특별전 : 녹슨 철망을 거두고』, 2020.

29) 정식명칭은 조선인민군(朝鮮人民軍)이다. 1948년 2월에 창설되었다. 김선호, 『조선인민군 : 북한 무력의 형성과 유일체제의 기원』, 한양대학교 출판부, 2020, 422쪽. 본 연구에서는 혼동을 줄이기 위해 북한군으로 통칭한다.

3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2권 : 북한의 전면남침과 초기 방어전투』, 2005, 3쪽; 정병준, 『한국전쟁 : 38선 충돌과 전쟁의 형성』, 돌베개, 2006, 638쪽.

육군본부 인사국이 전사자 수습을 담당하였다. 한국군은 6·25전쟁 발발 이전에 전사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수습하여 장충단<sup>31)</sup>공원에 안치하도록 조치하였으나 개전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당함으로써 종전의 임시적인 전사자 수습체계마저 무너지게 되었다.<sup>32)</sup> 6·25전쟁 발발 이후 각 부대가 붕괴되고 재편성이 반복되는 가운데 대부분의 부대는 부대원의 명단을 유지하는 것조차도 어려웠다. 장병들 각자가 얼굴을 익히기도 전에 전사한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따라서 한국군은 대량으로 발생한 전사자의 시신을 체계적으로 수습할 만한 여유가 없었다. 옆에서 싸우던 전우가 쓰러지면 소부대 단위로 약식 절차에 따라 임시로 매장하거나 그럴 여유마저 없으면 동료의 시신을 그대로 남겨둔 채 후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sup>33)</sup> 이와 같은 전황은 6·25전쟁 생존 장병의 구술자료 <A-1>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A-1>

“... 아 그 전방에 있을 때 이루 말할 수 없지. 전방에서 여러 번 겪은 건 말할 수도 없구. 그냥 일개 소대가 오다가 이렇게 앉아서 휴식, 잠깐 휴식할 동안이른 포가 옆에 떨어져가지구 그냥. 그니깐 일개 소대 한 사십 명 되는 사람이 다 기절허구 다 튀지. 안 튀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 르른 여기 다리가 그름 이제 멀쩡, 이제 귀가 멍멍 허잖아

31) 장충단(獎忠壇)은 대한제국 시기 고종이 당시 국가를 위해 순국한 충신, 열사(烈士)들을 위해 1900년부터 단(壇)을 조성하여 제사지내던 제향(祭享) 공간으로 현재 현충원(顯忠院)의 성격을 지닌다. 일제 강점기에 공원화되었다가 해방 이후 순국선열들을 기리는 추모공간으로 장충단을 재건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1949년부터 이승만 정부는 정부수립을 전후하여 공산세력과 싸우다 죽은 전사자를 장충단에서 추모하기 시작했다. 김수자, 『제1공화국 시기 장충단공원의 정체성의 변형 과정』, 『한국문화연구』 제34호, 2018, 280-291쪽.

32) 강인철, 앞의 책, 2019, 371-374쪽.

33)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그들을 조국의 품으로 :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13년의 기록』, 2013, 66쪽.

요? 나부텀두 어딜 다쳤는지 모르는 거야. 정신이 돌아오는 길에 딱 보르는 다리 하나 부러진 놈이 이십메다 삼십메다 튀어가서 자빠져있구. 그럼 여기 파편에 골이 맞어가 지구 심 꼴딱꼴딱 쉬는대로다가 골이 꼴락꼴락 요렇게 나오고 그냥 정말 참 전우들이 그런 현상. 그래서 그거를 지역이 중등부샌데 어디쯤 오는데 그 사과밭 거길 밑에 파구서 우리가 물어주구 그런 거, 그렇게두 해서 오고 그랬어요 그냥, 증말 그 뭐 이루 말할 수 없었지 ...”<sup>34)</sup>

1950년 8월이 되면서 한국군과 유엔군<sup>35)</sup>은 7월 한 달 동안 계속됐던 지연전을 멈추고 낙동강 일대의 방어선을 형성했다. 그때부터 한국군과 유엔군은 북한군을 상대로 치열한 방어전을 전개하였으나 전사자의 체계적인 수습이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였다. 1950년 8월에 한국군 제1사단이 수행했던 다부동 전투에서 전사한 한국군은 2,3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sup>36)</sup> 여기에 낙동강 방어선을 공격했던 북한군 전사자도 발생하였으므로 다부동 일대는 피아(彼我)를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전사자가 발생하였다. 피해 규모가 커지자 육군본부에서도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1950년 8월 말 한국군 제1사단이 다부동 진지를 미군에게 인계하고 이동하게 되었을 때, 미군 측은 전사자 시신을 치워주지 않으면 진지 인수를 거부하겠다고 버틸 만큼 전사자 수습은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었다.<sup>37)</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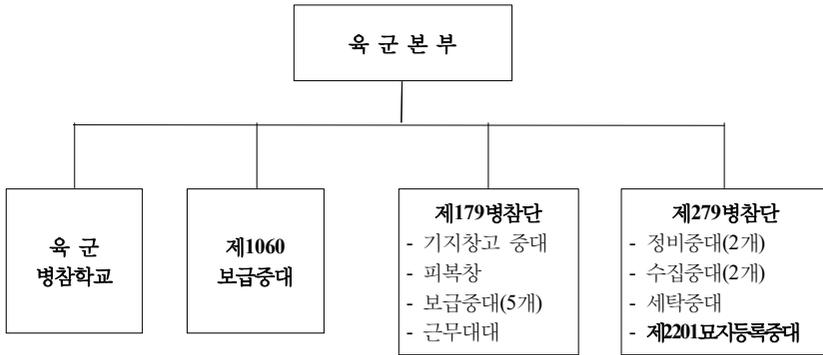
34) 임정환 구술, 박현숙 외, 「모든 바깥 전쟁을 섭렵하다」, 『한국전쟁 이야기 집성』 1권, (주)박이정, 2017, 34-35쪽.

35) 세계평화의 안정과 유지를 위해 군사적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구성되는 비상비군. 국제연합군이라고도 한다. 1950년 6·25전쟁 당시 처음 조직되었다. 이는 국제연합 헌장이 본래 정한 유엔군이 아니라,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그 권고에 응한 가맹국의 군사행동이었다. 『한국근현대사사전』, 한국사사전편찬회, 2005.

36)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앞의 책, 2013, 67쪽.

37) 백선엽, 『길고 긴 여름날 1950년 6월 25일』, 지구촌, 1999, 78쪽.

〈표 1〉 1951년 병참부대 조직<sup>38)</sup>



이에 육군본부는 6·25전쟁 전사자 수습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낙동강 방어 전투가 거의 종반전에 접어든 1950년 9월 5일 전사자의 수습을 전담하는 ‘묘지등록대’를 창설하였다. 당시 육군본부의 병참 조직은 직할부대들과 1개의 병참단으로 편성되어 있었지만 몇 차례의 개편을 거치면서 1951년 2월에는 제179병참단과 제279병참단으로 편성되었다. 이때 묘지등록대 역시 〈표 1〉과 같이 ‘제2201묘지등록중대’로 명칭이 개칭되면서 제279병참단 예하 부대로 소속이 변경되었다.<sup>39)</sup>

〈표 2〉 전사자 영현관리 부대 창설 현황<sup>40)</sup>

부대	창설 시기	활동 범위	부대 위치
제81영현중대	1951.03.25	육군 전체	부산
제82영현중대	1953.02.20	서부 지역	서울
제83영현중대	1953.05.15	동부 지역	춘천

38) 육군본부, 『육군병참사』 제1집, 1969, 60쪽.

39)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앞의 책, 2013, 68쪽.

40) 이남우, 「전시체제의 한국군 상·장례 절차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장례문화학과 석사학위논문, 2004, 11쪽.

이 묘지등록중대는 <표 2>와 같이 1951년 봄부터 약 2년에 걸쳐 3개의 영현중대로 확대 개편되었다. 1951년 3월에 기존의 묘지등록중대가 제81영현중대로 명칭이 바뀐 데 이어, 1953년 2월에는 제82영현중대, 같은 해 5월에는 제83영현중대가 각각 창설되었다. 개별 영현중대는 각 4개의 영현소대로 구성되었는데 각 소대는 소대본부, 수집 및 후송반, 유품 및 등록반을 두었다.<sup>41)</sup> 그러나 묘지등록중대가 영현중대로 확대되었다고 해서 6·25전쟁 전사자 수습체계가 곧바로 정착되지는 않았다. 묘지등록대-영현중대가 창설된 이후 사단 단위로 전사자 유해를 화장하여 본가에 호송하거나 부산 동래의 범어사, 금정사 등에 안치했지만 그 수치가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록이 없는 실정이다.<sup>42)</sup>

#### 나. 정전협정 이후 전사자의 수습과 송환

6·25전쟁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되면서 휴전상태가 되었다. 정전협정의 핵심 의제는 군사분계선의 설정과 포로송환 문제였지만 전사자의 수습과 송환에 관한 문제도 포함되어 있었다.<sup>43)</sup> <B-1>의 정전협정 문서 제13항 ‘B’목에 전사자의 송환에 관해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 <B-1>

매장(埋葬)지점이 있고 분묘(墳墓)가 확실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일정한 기한에 그의 군사 통제하에 있는 한국 지역의 상대방의 분묘등록인원이 들어오는 것을 허가하여 이러한

41) 강인철, 앞의 책, 2019, 375쪽.

42)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앞의 책, 2013, 69쪽.

43)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유해발굴 20년사』, 2021, 37쪽.

분묘소재지에 가서 해당 측의 이미 죽은 전쟁포로를 포함한 죽은 군사 인원의 시체를 발굴하고 또 반출하여 가도록 한다. 상기(上記)사업을 진행하는 구체적 방법과 기한은 군사정전위원회가 이를 결정한다. 적대 쌍방 사령관들은 상대방의 죽은 군사 인원의 매장지점에 관계되는 얻을 수 있는 일체 재료를 상대방에게 제공한다.<sup>44)</sup>

위와 같이 정전협정 제13항 ‘ㄴ’목에 따라 1954년 8월 17일 군사정전위원회 제47차 본 회의에서 「쌍방 군사인원 시체 인도, 인수에 관한 행정상 세목의 양해」를 비준했다. 이 행정상 세목의 양해에 따라 1954년 9월 1일부터 양해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10월 30일까지 두 달 동안 유엔군 측 전사자 4,091구와 북한군과 중공군<sup>45)</sup>측 전사자 13,528구가 일괄 상호 송환되었다.<sup>46)</sup> 상호 간 유해의 일괄 송환이 완료된 이후에는 <B-2>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정전협정의 부속문서인 「행정상세목의 양해서」 제20항에 명시된 다음과 같은 조항만이 유효하게 되었다. 이 조항이 현재까지 6·25전쟁 전사자 유해 송환의 근거가 되고 있다.<sup>47)</sup>

44) 경무대 소장 「휴전협정 원문」, 1953, 7쪽. (김보영, 『전쟁과 휴전 : 휴전회담기록으로 읽는 한국전쟁』, 한양대학교 출판부, 2016, 471쪽에서 재인용)

45) 중국 공산당의 정규 군대를 뜻한다. 중국과 북한에서 쓰이는 정식 명칭은 중국인민지원군(中國人民志願軍)이다. 1950년 10월 8일 중국인민해방군 동북변방군을 기반으로 창설되었다. 박영실, 『중국인민지원군과 북·중 관계』, 선인, 2012, 91쪽. 본 연구에서는 중국 국민당의 국민정부(중화민국)와 구분하기 위해 중국인민지원군이나 중국군 대신 중공군으로 통칭한다.

46) 박중섭, 「한국전쟁 사망군인 유해발굴의 인도법적 의의」, 『인도법논총』 제26호, 2006, 242-243쪽.

47)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앞의 책, 2013, 72쪽.

## &lt;B-2&gt;

본 양해가 폐지된 이후 어느 자기 측 지역 내에서 상대방에 속하는 ‘군사인원의 시체’를 발견하는 경우 쌍방 비서장에 통하여 이러한 시체의 인도·인수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sup>48)</sup>

이와 같은 정전협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6·25전쟁 전사자 수습과 송환 문제는 남북갈등 등 정치적인 이유로 크게 진척되지 못하였다.<sup>49)</sup> 장기간 소강상태에 있던 6·25전쟁 전사자 수습 문제는 1985년 8월 28일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에서 6·25전쟁 당시 실종된 유엔군의 생사 확인 및 전사자 송환을 요청하는 유엔군사령부의 서한에 대해 북한 측이 적극적으로 찾아보겠다고 회신함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sup>50)</sup> 1986년 1월에는 북한이 700여 구의 유해를 이미 단독으로 발굴했다면서 유엔군사령부가 아닌 미국 정부와 직접 교섭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이에 1988년 베이징에서 시작된 북·미간 참사관급 접촉에서 미군 유해 송환 문제 처음 논의되기 시작하였고 1993년 8월에는 유엔군사령부

48) 합참정보본부, 『군사정전위원회편람』 제5집, 2001, 172쪽.

49) 1954년 유해송환이 완료된 이후 여전히 북한 지역에 한국군과 미군을 포함한 유엔군측 포로 또는 유해가 남아있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1976년, 미 하원 동남아 실종자 특별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8,177건의 미군 유해가 완전히 해명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유엔군 전체는 약 10,200건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대해 유엔군사령부는 1955년부터 지속적으로 포로 및 유해의 송환을 요구하였다. 서주석, 「미국의 대북한 포로 및 유해 송환 정책」, 『군사』 제35호, 1997, 223-224쪽.

50)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앞의 책, 2013, 73쪽. 미국은 베트남전쟁 이후 베트남과 관계진전과정에서 실종 미군(Missing in Action)의 생사확인 및 유해송환을 중요한 조건으로 내걸었던 것과 같이 미군 유해송환에 중요성을 부여해 왔다. 특히 미국 재향군인회와 전쟁인미망인협회 등의 지속적인 요청에 의해 인도적 차원에서 미군 유해송환 협상에 관심을 기울였다. 반면 북한은 미군 유해송환 문제를 고리로 하여 포괄적인 대미 협상 창구 확보 및 경제적 보상이라는 대가를 추구하고 있다. 박종철, 「미·북 군사회담과 한국의 대응방향」, 『통일문제연구』, 제5권, 1996, 79-80쪽.

와 북한군 사이에 「미군 유해에 관한 합의서」가 체결되었다.<sup>51)</sup> 뒤 이어 1996년 1월 하와이 미 육군 중앙유해감식소(일명 실하이, CILHI Central Identification Laboratory, Hawaii)에서 미국과 북한 간 6·25전쟁 전사자 공동발굴 및 보상에 관한 협상이 처음으로 시작되었다.<sup>52)</sup> 양측은 긴밀한 협상을 거쳐 같은 해 5월 뉴욕에서 개최된 2차 협상에서 마침내 합의에 도달했다. 그 결과, 1996년 7월 평안북도 운산지역에서 최초로 북·미 6·25전쟁 전사자 공동발굴이 시작되었다.<sup>53)</sup>

〈표 3〉 KWIP(Korean War Identification Project/K208, JRO, K55) 개요<sup>54)</sup>

KWIP	K208	1990~1994년 동안 북한이 단독으로 평안북도 벽동 및 운산군, 함경북도 장진읍, 황해북도 수안군 등에서 발굴하여 미국 DPAA로 넘겨준 유해
	JRO	Joint Recovery Operation. 1996~2005년 동안 미국과 북한이 공동으로 함경북도 장진읍 및 신흥리, 평안북도 운산군 및 구장읍, 평안북도 계천시 등에서 발굴한 유해
	K55	2018년 1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미국으로 송환된 유해, 북한 단독 발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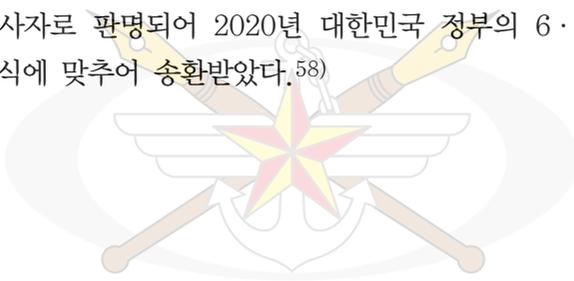
51) 서주석, 앞의 논문, 1997, 224-225쪽.

52) 미 육군 중앙유해감식소(CILHI)는 1973년 동남아시아에서 실종된 미군의 유해발굴을 목적으로 타일랜드에서 창설되었던 부대를 1976년 하와이로 이전하면서 편성되었다. 2003년에는 합동특수임무부대 (JTF-FA)와 통합해 합동전쟁포로/실종자 확인사령부(JPAC)로 개칭되었다. 2016년에 미국 국방성 전쟁포로실종자 사무소(DPMO), 미 공군 생명과학연구소 등의 기관을 통합하여 미국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DPAA)으로 확대 개편되어 워싱턴 D.C.에 본부를 두고 출범하였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그들을 조국의 품으로 :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13년의 기록』, 2013, 85쪽;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홈페이지, DPAA 소개 (www.withcountry.mil.kr). 2022.01.06. 검색.

53) 합참정보본부, 『군사정전위원회편람』 제5집, 2001, 173-174쪽.

54) 전소영, 「국방부 유해발굴감식의 성과와 의미 : 최근 사업을 중심으로」, 『제63회 전국역사학대회 : 고고학부 발표 '고고학상의 갈등과 통합』, 한국고고학회, 2020, 46쪽. KWIP(Korean War Identification Project)는 한국과 미국의 공동감식 프로젝트로써 대한민국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과 미국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DPAA)이 공동으로 북한에서 송환된 6·25전쟁 전사자 유해를 정밀감식한 프로젝트이다.

북한은 1990년부터 자체적으로 수습한 전사자 유해를 미국에 송환하기 시작했고 1996년부터는 미국과 북한의 공동유해발굴이 시작되었다.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문제로 협상이 중단된 2005년까지 미국은 북한지역에서 발굴된 222구의 미군 유해를 송환받았다.<sup>55)</sup> 2007년에는 북한을 방문한 리처드슨(William B. Richardson) 당시 뉴멕시코주 지사를 통해 6구의 유해를 추가로 송환받았다.<sup>56)</sup> 또한 2018년 제1차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에 따라 북한이 단독 발굴한 유해를 다시 송환받기도 하였다.<sup>57)</sup> 이 시기에 북한에서 미국으로 송환된 전사자 중 일부는 <표 3>과 같이 한·미 공동감식 프로젝트(KWIP/Korean War Identification Project)를 통해 147구가 한국군 전사자로 판명되어 2020년 대한민국 정부의 6·25전쟁 70주년 기념식에 맞추어 송환받았다.<sup>58)</sup>



55) 미국은 북한과 협상을 통해 발굴 기간과 횟수, 발굴 작업 인원을 기준으로 상당한 금액의 보상을 매년 책정하여 북한에 지급하였다. 합참정보본부, 『군사정전위원회 회편람』 제7집, 2006, 182쪽.

56) 합참정보본부, 『군사정전위원회편람』 제8집, 2010, 224쪽.

57) 「공동성명 전문」, 《중앙일보》, 2018년 6월 13일자

4. 미국과 북한은 전쟁포로, 전쟁실종자들의 유해를 즉각 송환하는 것을 포함 유해 수습을 약속한다. The United States and the DPRK commit to recovering POW/MIA remains, including the immediate repatriation of those already identified, (<https://www.joongang.co.kr/article/22708859>), 2022.01.05 검색

58) “이날 봉환된 유해는 북한의 개천시·운산군, 장진호 일대에서 1990~94년 발굴된 유해 208개 상자와 북·미 정상회담 후 2018년 미국으로 송환된 유해 55개 상자 중 두 차례 한·미 공동 감식을 통해 국군 유해로 판정된 147구다. 한·미 공동 감식에 의해 이미 세 차례에 걸쳐 92구의 유해가 송환됐다.” 「6·25 영웅들 70년 만에 귀환」, 《중앙일보》, 2020년 6월 25일자 종합 1면.

〈표 4〉 1959년-1967년 6·25전쟁 전사자 유해수습 현황<sup>59)</sup>

발굴 시기	발굴부대(육군본부)	지역	수습 구수
1959.06	영현중대	경북 영천 일대	300여 구
1959.11	영현중대	경북 영천 일대	300여 구
1960.02	영현중대	경북 영천·신평 일대	300여 구
1960.10	제81영현등록중대	경기 의정부 호원리	59구
1965.07	제81영현등록중대	충북 음성, 경기 여주 등	47구
1967.12	제81영현등록중대	경북 포항, 영일 일대	15구

한편, 1950년대 영현중대 창설과 함께 추진된 국내의 전사자 수습은 대부분 각급 부대와 지역 주민에 의해 임시 매장되었거나 화장된 전사자에 집중되었을 뿐, 실제 전투 현장에 방치되어 있던 6·25전쟁 전사자 유해를 관리하기 위한 근본적인 조치를 취하지는 못하였다. 〈표 4〉와 같이 1959년부터 1967년까지 육군본부를 중심으로 전국에 산재해 있는 전사자 유해 일부를 수습하였으며, 1990년에 결성된 ‘다부동전투전우회’는 1997년까지 총 8번의 조사 활동을 통해 전사자 유해 2구를 수습하기도 하였다.<sup>60)</sup> 하지만 이때까지의 전사자 수습은 세부적으로 수립된 계획이 아닌 지역 주민과 6·25전쟁 전사자 장병 유가족, 전우회 등의 진정에 의한 것이었다.

#### 다. 국가 책임의 전사자 유해발굴 전개

국내에서 전우회와 전사자 유가족들을 중심으로 6·25전쟁 전사자의 수습을 호소하던 시기에 미국에서도 그동안 ‘잊혀진 전쟁

59)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유해발굴 20년사』, 2021, 39쪽.

60)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그들을 조국의 품으로 :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13년의 기록』, 2013, 80-81쪽.

(forgotten war)<sup>61)</sup>으로 인식되었던 6·25전쟁이 재조명되기 시작했다. 1995년 미국 정부는 자체적으로 6·25전쟁 50주년 기념행사를 기획하면서 한국 정부에 협조를 요청해왔다. 이에 정부는 1998년 건군(建軍) 50주년 기념행사 종료 후 행사위원회를 6·25전쟁 50주년 기념사업을 준비하는 조직으로 전환했다. 기념사업준비위원회는 6·25전쟁이 발생한 날부터 정전협정이 체결된 날을 기준으로 2000년 6월 25일부터 2003년 7월 27일까지 3년간의 기간을 정해 6·25전쟁 5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sup>62)</sup> 이에 따라 국방부와 국가보훈처의 주도로 1998년 국무총리실 산하 자문기구인 '6·25전쟁 50주년 기념사업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국방부는 관련 사업의 시행을 위해 '6·25전쟁 50주년 기념사업단'을 설치했다.<sup>63)</sup>

기념사업단은 세부적인 사업을 선정하고자 참전단체와 예비역 단체 등에 적합한 사업제안을 공모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총 93건의 사업을 선정하였는데 이 중 국방부는 참전용사의 명예선양사업의 일환으로 참전전우 찾기, 전사망자 유가족 찾기, 참전용사 명예선양, 전쟁영웅 현양 행사, 전사자 유해발굴 및 안장 사업 등을 선정하였다.<sup>64)</sup> 이처럼 전사자 유해발굴이 범정부 사업으로 채택된 직접적인 이유는 공모를 통한 선정이었지만 그 배경에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60년대부터 전사자 유가족 및 전우회 등의 유해 수습에 관한 지속적인 요청이 있었다. 특히 1990년대 이뤄진 북·미 양자 간의 전사자 합동 유해발굴 및 송환 협상 역시 사업 선정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sup>65)</sup>

61) 김태우, 앞의 논문, 2015, 32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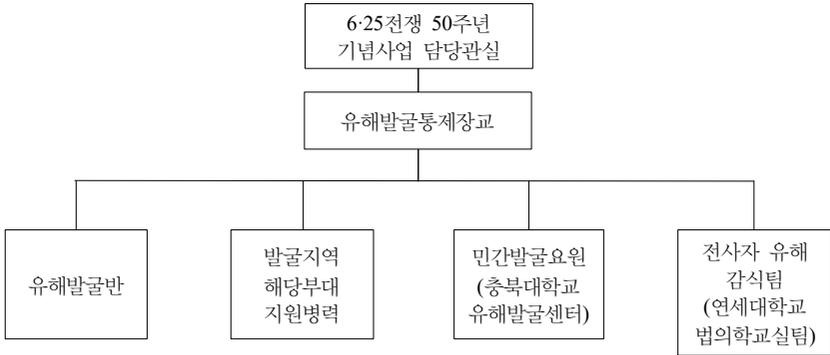
62)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앞의 책, 2013, 82쪽.

63) 위의 책, 14쪽.

64) 위의 책, 83쪽.

65)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군 유해 처리에 대한 기본 방침'(1996.02.08.)을 발표하며 미군 유해송환 절차는 북·미 양자가 아닌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해 처리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광건·김명진, 『6·25 당시의 국군포로/실종자 유해 송환

〈표 5〉 육군본부 전사자 유해발굴 수행기구<sup>66)</sup>



6·25전쟁 50주년 기념사업단은 기념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동안 전투 현장에 남겨진 6·25전쟁 전사자들의 유해를 체계적으로 수습하기로 결정하고 전사자 유해발굴을 주요 사업 가운데 하나로 선정했다. 이를 위해 〈표 5〉와 같이 육군본부에 담당 부서를 임시 편성한 후 유해수습 및 분석 등을 담당하는 민간전문가들이 포함된 유해발굴조직을 구성하고, 지역별로 발굴 현장에서 유해발굴반을 지원할 대대급 부대를 지정하였다.<sup>67)</sup> 그 결과, 첫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이 2000년 4월 3일에 6·25전쟁 당시 가장 치열했던 격전지 중 하나인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소재의 다부동에서 시작될 수 있었다.<sup>68)</sup>

이렇게 6·25전쟁 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전사자

추진대책』, 한국국방연구원 연구보고서, 1996, 81-82쪽.(서주석, 『미국의 대북한 포로 및 유해 송환 정책』, 『군사』 제35호, 1997, 224쪽에서 재인용)

66)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앞의 책, 2013, 87쪽.

67) 육군본부와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진행한 유해발굴은 6·25전쟁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이 지속-영구 사업으로 지정되면서 2006년까지 지속되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앞의 책, 2013, 124쪽.

68) 위의 책, 15쪽.

유해발굴사업은 정전협정 이후 최초로 범정부 차원에서 6·25전쟁 전사자를 수습하는 유해발굴사업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있었다. 그러나 당초 기간과 예산에 많은 제한을 두고 추진한 기념사업이었기 때문에 6·25전쟁 전사자에 대해 상세한 사전 검토가 제대로 선행되지 못했다는 한계가 존재했다. 실제로 당시에는 1960년대에 육군본부가 유해 수습을 했던 사례가 있었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사전 참고자료 역시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다. 따라서 전사자 발굴 및 신원확인을 위한 경험과 지식 또한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결국 6·25전쟁 50주년 기념사업단에서 수립한 초기의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계획은 생존 장병의 증언과 주민 및 전사자 유가족 제보를 기초로 전사자 유해를 수습하는 차원의 단순 발굴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었다.<sup>69)</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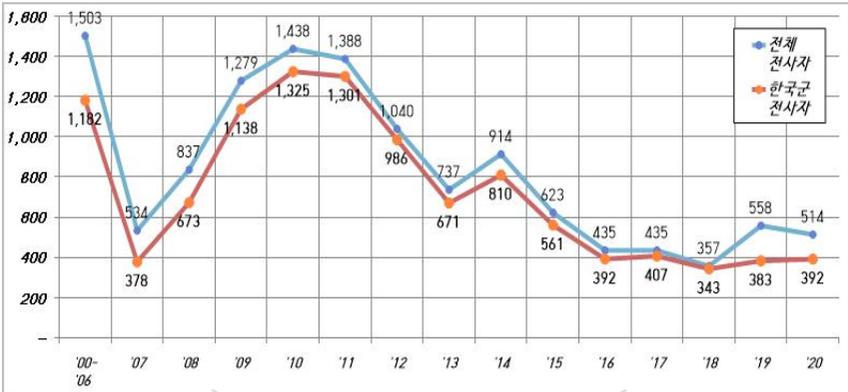
하지만 전사자 유해발굴은 유해가 본격적으로 발굴되고 일부 한국군 전사자의 신원이 확인되는 성과가 나타나자 대외적으로 높은 관심을 받게 되었다. 이와 같은 국민적 관심은 유해발굴사업을 한시적으로 마칠 수 없다는 공감대로 확대되면서 정부는 2003년 7월, 6·25전쟁 50주년 기념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을 지속하기로 결정했다.<sup>70)</sup> 이에 육군본부는 자체적인 조직과 예산만으로 지속적인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2003년 7월 미국의 경우와 같이 독자적으로 전사자 유해발굴과 신원확인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부대 창설을 목표로 「6·25전사자 유해발굴 업무 5개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국방부에 건의하였다. 그 결과, 2007년 1월 1일부로 6·25전쟁 전사자 유해발굴을 전담하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이 창설되었다.<sup>71)</sup>

69) 앞의 책, 90쪽.

70) 앞의 책, 15-16쪽.

71) 앞의 책, 161-167쪽.

〈그래프 1〉 2000-2020년 6·25전쟁 전사자 유해발굴 현황<sup>72)</sup>



국유단은 창설과 함께 영구적인 국가사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법령 제정을 추진한 결과 2008년 3월 21일 법률 제8924호로 「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sup>73)</sup>이 제정되면서 같은 해 6월 20일 대통령령 제20832호로 법률에 대한 시행령<sup>74)</sup>도 제정되었다. 2011년에는 미국 합동전쟁포로/실종자 확인사령부(JPAC)와 유해발굴 상호교류 및 유해발굴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는데 여기서 한·미 양측은 북한지역 및 비무장지대(DMZ) 내 전사자 유해발굴에 대한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sup>75)</sup> 2014년부터는 중국과 협

72)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홈페이지, 6·25 전사자 유해발굴 현황([www.withcountry.mil.kr](http://www.withcountry.mil.kr)), 2020.12.31. 기준. <부록> 참조.  
 73) 해당 법률은 2017년에 일부 개정되었다.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045호, 2017.11.28. 시행, 일부개정]  
 74) 해당 시행령은 2019년에 일부 개정되었다.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672호, 2019.4.2. 시행, 일부개정]  
 75) 「대한민국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과 미 합중국 합동 전쟁포로 및 실종자 확인 사령부간의 상호교류 및 유해발굴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제2절 공동 고려사항, 2011.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그들을 조국의 품으로 : 6·25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 13년의 기록』, 2013, 326-327쪽에서 재인용)

의를 거쳐 그동안 국내에서 발굴한 중공군 전사자 유해를 중국으로 송환하기 시작하였으며<sup>76)</sup>, 2016년부터는 미국이 과거 북한 지역에서 발굴한 전사자 유해 중 정밀감식을 통해 한국군 전사자로 다시 판명된 유해와 국내에서 발굴된 미군 전사자 간의 상호 송환이 시작되었다.<sup>77)</sup> 2018년 판문점선언 이후에는 9·19 남북군사합의가 체결되면서 비무장지대에 대한 남북공동유해발굴이 합의되었다.<sup>78)</sup> 이에 따라 국유단이 2019년부터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에서 전사자 유해발굴을 수행하고 있다. 비록 공동유해발굴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북한 측이 전사자 유해발굴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았다.<sup>79)</sup> 하지만 화살머리고지에서 시작된 유해발굴은 정전협정 이후 최초로 남북합의에 의해 비무장지대 내에서 이뤄지는 전사자 유해발굴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있다.

국유단은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에서 총 12,592구의 6·25전쟁 전사자 유해를 발굴하였으며 이중 한국군 전사자 유해의 숫자는 10,942구에 달한다.<sup>80)</sup> 이는 현재 국방부에서 추산하고 있는

76) 「중공군 유해 437구, 61년 만에 고향으로」, 《중앙일보》, 2014년 3월 29일자, 종합 9면.

77) 「6·25 한국·유엔 전사자 유해 봉환」, 《중앙일보》, 2016년 4월 29일자 종합 16면.

78)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2-③ 쌍방은 비무장지대 내에서 시범적 남북공동 유해발굴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2018.9.19.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2022.01.05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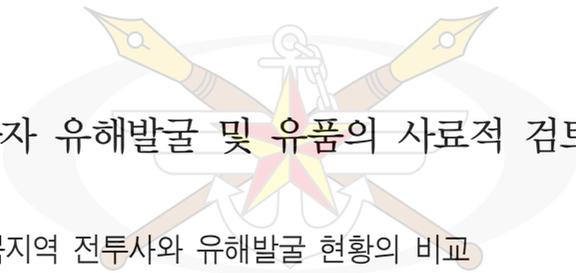
(<http://www.korea.kr/news/cultureColumnView.do?newsId=148865808>).

79) “군은 당초 백마고지 일대의 전사자 유해발굴 작업을 일정 기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한바 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이어 김일성 생일(15일)과 전반기 한미 연합훈련을 계기로 도발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 . (중략) . . . DMZ 일대에서의 유해발굴 작업은 2018년 9·19 군사합의를 계기로 2019년 시작했다. 합의 당시 남북은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공동 유해발굴 작업을 하기로 했지만, 남북관계 냉각으로 북측이 호응하지 않으면서 남측 단독으로 발굴작업을 하고 있다.” 「北 도발 우려로 연기 검토한 백마고지 6·25전사자 발굴 재개」, 《동아일보》, 2022년 4월 11일자.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411/112825397/1>)

80) 해당 통계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창설 이전인 2000년부터 2006년에 발굴된 전사자 유해를 모두 동일한 6·25전쟁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으로 보고 합산한 통계이다.

한국군 전사자 137,899명에 비해서는 한참 모자란 숫자이다. 6·25 전쟁 생존 장병, 전사자 유가족 등 6·25전쟁 세대의 고령화와 6·25전쟁 전투지역의 다변화로 인해 전사자 유해발굴 여건이 악화되어가고 있는 상태이다.<sup>81)</sup> 실제로 <그래프 1>을 보면 연도별 전사자 유해발굴의 추이를 파악할 수가 있는데,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정점을 찍던 전사자 유해의 숫자가 이후 크게 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2019년 발굴한 전사자 유해 전체 558구 중 강원도 화살머리고지에서만 360여 구가 발굴된 점<sup>82)</sup>으로 미루어 볼 때, 비무장지대와 북한지역에 상당수의 전사자 유해가 산재해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 3. 전사자 유해발굴 및 유품의 사료적 검토

#### 가. 경북지역 전투사와 유해발굴 현황의 비교

경상북도 지역은 한국군이 소백산맥 일대의 지연전을 거쳐 유엔군과 연합하여 낙동강 전선을 구축하고 6·25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1달 이상 방어전을 수행한 곳이다.<sup>83)</sup> 경북지역에서는 2000년부터 2020년까지 2,578구의 전사자 유해가 발굴되었는데 이는 같은 기간 6,515구가 발굴된 강원지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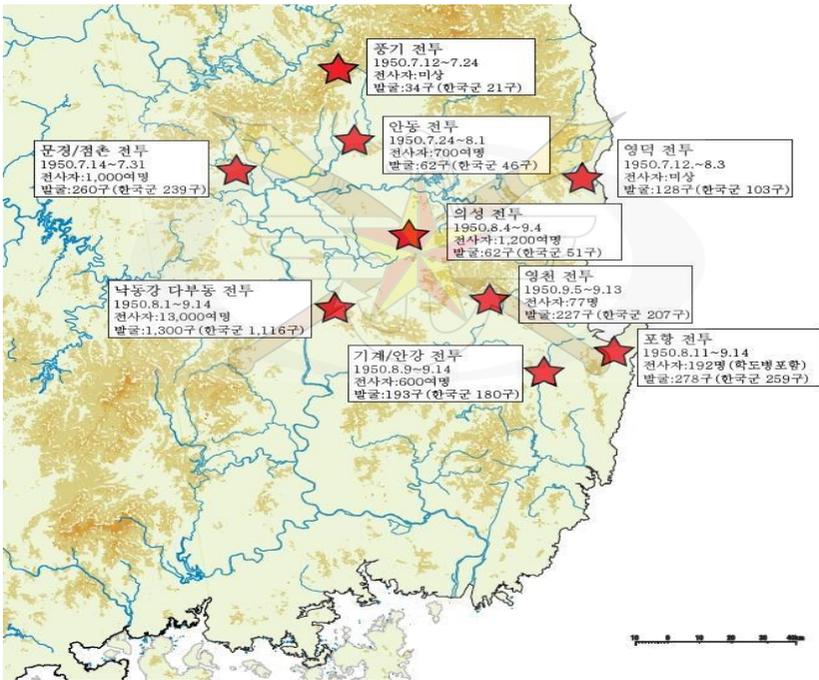
81)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유해를 발굴한 한국군 전사자 중 신원확인이 되어 유가족의 품으로 귀환한 전사자는 총 157명이다. 2021년에는 추가로 24명의 전사자 신원이 확인되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홈페이지, 6·25 전사자 신원확인 현황([www.withcountry.mil.kr](http://www.withcountry.mil.kr)), 2021.12.31. 기준.

82) 「화살머리고지 영웅 70년 만의 귀환 이뤄내」, 《국방일보》, 2020년 9월 17일자 (<http://kookbang.dema.mil.kr>).

8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4권 : 금강-소백산맥선 지연전투』, 2008, 3-10쪽.

다.<sup>84)</sup> 더욱이 6·25전쟁 발발부터 정전까지 지속적으로 전투가 벌어졌던 강원지역에 비해 경북지역의 전투기간은 1950년 7월부터 9월 중순까지로 매우 짧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짧은 기간 동안 격전 속에서 상당한 수의 전사자가 발생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장에서는 경북지역의 주요 전투지역에서 보고된 전사자 추정치와 현재까지 발굴된 전사자 분포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지도 1) 1950년 당시 경상북도 6·25전쟁 격전지와 전사자 유해발굴 현황<sup>85)</sup>



84)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홈페이지, 6·25 전사자 유해발굴 지역별 통계 현황 (www.withcountry.mil.kr). 2020.12.31. 기준.  
 85) 본 지도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4권 : 금강-소백산맥선 지연전투』, 2008; 『6·25전쟁사 5권 : 낙동강선 방어전투』, 2008; 『6·25전쟁 유해 소재 지도(DMZ/남한지역)』, 2009;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홈페이지, 경북지역 유해발굴 현황(www.withcountry.mil.kr) 2020.12.31. 기준.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한국군은 서울과 대전을 지나 빠른 속도로 대구를 향해 내려오는 북한군의 남진 속도를 문경-풍기-영주-안동 등에서 지연전을 통해 현격히 늦춰 유엔군과 함께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할 수 있었다.<sup>86)</sup> 북한군은 전체 13개 사단 중 11개에 이르는 사단을 동원하여 칠곡-의성-영덕 등 남쪽으로 향하는 거의 모든 경로를 통해 공격을 시도하였으나 한국군은 유엔군과 같이 침입을 저지하는 데 성공했다. 특히 칠곡 다부동 전투를 통해 낙동강 방어선을 사수한 것이 결정적인 승리요인이었다. 한편, 북한군은 의성과 영덕을 지나 영천과 경주, 포항 일대로 진출, 낙동강을 우회하여 동해안 방면에서 시차를 두고 남하를 시도하였으나 이 또한 한국군이 저지하여 인천상륙작전 이후 반격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sup>87)</sup>

위에서 언급하였듯 경상북도 지역은 한국군이 소백산맥 일대의 지연전을 거쳐 낙동강 방어전투와 동해안 일대의 동부지역 전투를 거치면서 6·25전쟁 초반부 가장 치열한 방어전을 수행한 곳이다. 경상북도의 각 지역에서의 동시다발적으로 전투가 발생했으므로 그 수치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상당한 전사자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경북지역의 2000년부터 2020년까지의 전사자 유해 발굴 지역별 현황을 비교하여 검토한 결과, <지도 1>과 같이 기존 전투사에 기록된 주요 전투지역에서 수십 구에서 수천 구의 전사자 유해가 발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격전지로 알려졌던 지역들에서 발굴되는 전사자 유해의 분포는 기존 6·25전쟁의 전투사를 비교적 상세히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영천과 포항전투의 경우 기존 전투사에서 보고된 한국군 전사자 수가 각각 77명과 192명인 것에 비해<sup>88)</sup> 2000년부터 2020년까지의 유해발굴 결과 영

8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4권 : 금강-소백산맥선 지연전투』, 2008, 274-275쪽.

8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5권 : 낙동강선 방어전투』, 2008, 758-760쪽.

88) 위의 책, 464쪽, 778-783쪽.

천지역에서 207구, 포항지역에서 259구의 한국군 전사자 유해가 발굴되었다.<sup>89)</sup> 이는 경북지역의 피해 상황이 기존 전투사에서 파악했던 것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경북지역은 현재까지도 계속 전사자 유해발굴이 이뤄지는 상태임을 감안할 때 <지도 1>과 같이 경북 주요 전투지역에서 나타나는 전사자 유해발굴의 현황은 기존 6·25전쟁 전투사를 입증해 줄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가 되는 유의미한 수치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각 지역의 전사자 유해발굴의 수치를 기존 전투사와 상호 비교하여 검토한다면 6·25전쟁 전투사의 실질적인 하나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경북지역의 6·25전쟁 전사자 분포 현황이 기존 전투사를 반영하는 흐름을 보일지라도 경상북도 이외의 다른 지역이 모두 같은 양상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일례로 경상남도 창녕의 경우, 기존 전투사에 의하면 미군 제24사단이 방어를 담당했던 지역이었지만 해당 지역에서는 2020년까지 총 212구의 한국군 전사자 유해가 발굴되었다.<sup>90)</sup> 이처럼 기존 전투사와 실제 유해발굴 사례 간에 차이 점이 발생하는 부분은 향후 타 전투지역에 관한 추가 연구를 통해 6·25전쟁 전투사를 면밀히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 나. 전사자 유품의 사료적 가치 검토

6·25전쟁 전사자 유품은 말 그대로 전사자가 소지하고 있던 유류품을 뜻한다. 전사자 유품은 크게 전사자 유해와 동반 출토되는 유해유품과 발굴지역에서 유품만 단독으로 출토되는 지역유품으로

89)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홈페이지, 지역별 유해발굴 현황([www.withcountry.mil.kr](http://www.withcountry.mil.kr)) 2020.12.31. 기준.

90) 양영조, 『6·25전쟁과 국군 전사자 유해발굴』,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공동기획전 : 67년만의 귀향』, 대한민국역사박물관, 2017, 240쪽;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홈페이지, 6·25 전사자지역별 유해발굴 현황([www.withcountry.mil.kr](http://www.withcountry.mil.kr)) 2020.12.31. 기준.

나눌 수 있다. 전사자 유해와 함께 수습된 유해유품은 전사자의 국가 즉, 피아(彼我)식별을 위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전사자의 신원확인을 위한 핵심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된다.<sup>91)</sup> 또한 유해와 같이 출토되지 않은 지역유품이라고 할지라도 주요 전투지역에서 발굴된 유품 자체가 6·25전쟁 72주년을 맞은 현 상황에서는 당시의 전투상황을 판단하고 시대상을 추정할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역사적 유산(遺産)으로써 가치를 지닐 수 있다.<sup>92)</sup> 이러한 유품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정부는 「6·25 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전사자 유품에 대한 훼손을 금지하도록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으며 특히 전사자 유해와 함께 발굴된 유품은 전사자 유해의 신원확인 및 보존 관련 교육 자료로 활용하는 데 필요한 보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sup>93)</sup> 전사자 유품은 위 법률의 시행령에 따라 국유단에서 관리하고 있다.<sup>94)</sup> 현재 더 이상 신원확인 및 관계가 없는 유품에 한해서는 국유단 자체적으로 순회 전시를 하거나 전시를 원하는 공공기관에 영구대여하고 있다.<sup>95)</sup>

91)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앞의 책, 2013, 34쪽.

92) 문화재청은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역사적 가치를 지닌 6·25전쟁 관련 유물을 중요한 근현대 문화재로 인식하고 그 현황을 파악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국방부는 6·25전쟁 관련 군사 문화재의 장기적인 관리를 위해 별도로 군사재(軍史料)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양영조 외, 『근현대문화유산 6·25전쟁(한국전쟁)분야목록 조사 최종보고서』, 문화재청, 2020; 김태산·김희동, 「군부대 문화재 관리 및 보존에 관한 연구」, 『군사과학논집』 69권 1호, 공군사관학교, 2018.

93) 6·25 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045호, 2017.11.28. 시행, 일부개정], 제8조-①누구든지 전사자의 유해 또는 유품을 훼손하거나 임의로 처리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④전사자 유해와 함께 발굴된 유품은 전사자 유해의 신원확인 및 보존 관련 교육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94) 6·25 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672호, 2019.4.2.시행, 일부개정] 제10조 제4항에 따라 전사자 유해와 함께 발굴된 유품은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유품보관소에 보관한다. 다만, 유품 중 폭발물과 탄약류는 전사자 유해발굴 지역을 관할하는 군 부대장에게 인계한다.

95)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앞의 책, 2013, 34쪽. 여기서 영구대여의 경우, 영구적인 유품의 대여를 의미하지만 소유권은 국방부에 있음을 뜻한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표 6〉 6·25전쟁 전사자 유품의 종류별 분류<sup>96)</sup>

6·25전쟁 전사자 유품					
화기류	탄약류	피복류	군화류	장구류	개인유품
· M1소총 · 카빈소총 · 모신나강소총 · PPsh-41 기관단총 등 총기/무기류	· M1탄 · 카빈탄 · 모신나강탄 · TT탄 등 총알/탄약류	· 국가별 야전상의/ 방한복 등 전투복 종류와 단추류	· 국가별 전투화 및 군화류	· 철모 · 버클 · 야전삽 · 반합 · 수통 등 개인 장구류	· 인식표 · 도장 · 만년필 · 라이터 · 훈장,기장 등 개인유품

현재 전사자 유해발굴을 전담하고 있는 국유단의 유품 분류기준은 〈표 6〉과 같다. 이번 장에서는 국유단이 발굴한 전사자 유품 자료들에 근거하여 6·25전쟁 전사자 유품 중 대표적인 유품을 종류별로 소개하고 전사자 유품과 피아구분 및 신원확인의 상관관계, 그리고 전사자 유품 자체의 사료적 가치와 한계에 관해서 검토해보고자 한다.

### 1) 화기류 유품

〈표 7〉 한국군 전사자 고 류광연 일등상사의 유품 발굴정보<sup>97)</sup>

성명	전사일	발굴장소/전투	발굴일	동반 출토유품
류광연	1953. 7.16	강원 철원 내성동리 /흑운토령 금성천 전투	2011. 9.28	카빈 소총, M1 탄피, 카빈 탄피, M1 탄, M1 탄클립, 카빈 탄알집, 수류탄 고리, 계급장, 군장고리, 철모, 대검집, 야삽, 수통, 전화기, 탄띠 조각, 전투화 밑창, 플라스틱 4혈단추, 인식표, 연필, 만년필, 지갑, 약병, 인식표

서 소유권 자체를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같은 다른 기관에 이관(移管)한 사례도 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박물관 근현대자료의 등록과 관리』, 2018, 11쪽.

96) 해당 표는 국유단이 발간한 유품자료집의 목차와 분류기준에 따라 작성하였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6·25전쟁사 유품자료집』 Vol.2, 2018; 『6·25전쟁사 유품자료집』 Vol.3, 2020.

97) 황선의 외, 『국군 유해발굴 관련 전시콘텐츠 구성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 2016, 50쪽;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홈페이지, 2011년 전사자 특이유품 목록(www.withcountry.mil.kr). 2022.01.06. 검색.

〈사진 1〉 한국군 전사자 고 류광연 일등상사가 소지했던 카빈 소총<sup>98)</sup>

화기류 유품은 전사자가 사용했던 소총, 권총, 기관총 등의 총기류가 주류를 이룬다. 화기류는 6·25전쟁에 참전한 국가별로 여러 종류가 존재하지만, 대표적으로 한국군과 유엔군의 경우 미군이 보급한 M1 Garand Rifle(M1 소총), M1 Carbine(카빈 소총) 등이 주로 6·25전쟁에 사용되었고 북한군과 중공군의 경우 Mosin Nagant M1891/30(모신나강 소총), PPsh-41(슈파긴 기관단총) 등이 주로 쓰였다. 한국군과 북한군의 경우, 광복 직후 일본군이 철수하면서 남기고 간 Japanese Type 38/99 Arisaka(38/99식 아라사카 소총)를 사용한 사례도 확인되었다.<sup>99)</sup> 화기류는 생산 국가가 비교적 정확히 특정되어 있지만, 항상 노획(鹵獲)의 가능성이 있어 단순히 화기류 유품 단독으로는 피아구분의 특징이 어렵다. 하지만 인식표 등 다른 단서로 이미 한국군임을 추정할 수 있는 상황에서 화기류를 같이 소지하였을 때 신원확인에 더 확실한 근거를 줄 수 있다. 일례로 1953년 7월에 전사한 고 류광연 일등상사의 경우, 동반 출토된 인식표를 기반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표 7>의 동반 출토된 유품의 양상으로 볼 때 카빈 소총을 비롯한 전형적인 한국군 소속의 유품을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신속한 신원확인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고 류광연 일등상사가 소지하고 있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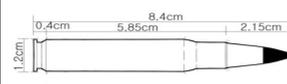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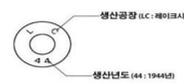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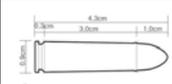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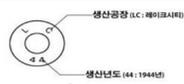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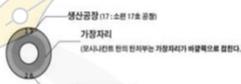
98) 대한민국역사박물관, 『6·25전쟁 70주년 특별전 : 녹슨 철망을 거두고』, 2020, 33쪽.

99)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6·25전사자 유품자료집』 Vol.2, 2018, 40-119쪽.

던 카빈 소총은 <사진 1>과 같이 대한민국역사박물관으로 이관되어 6·25전쟁 70주년 특별전에 활용되기도 하였다.<sup>100)</sup>

## 2) 탄약류 유품

(표 8) 6·25전쟁 전사자 유품 중 대표 탄약류 4종<sup>101)</sup>

탄약명	탄약류 전체 규격	탄저부호
M1탄 (.30-06 Springfield)		
카빈탄 (.30 Carbine)		
모신나강탄 (Mosin- Nagant)		
TT탄 (Tula- Tokarev)		

탄약류 유품은 화기류 유품의 소모품으로써 쉽게 말해 총기류의 탄약들을 뜻한다. 탄약류는 화기류에 따라서 여러 종류가 존재하지만 전사자 유해발굴 지역에서 가장 많이 출토되는 탄약류는 한국군과 유엔군의 경우 M1 소총에 사용되는 M1 탄(.30-06 Springfield)과 카빈 소총에 사용되는 카빈 탄(.30 Carbine)이 대표적이다. 북한군과 중공군의 경우 모신나강 소총에 사용되는 모신나강 탄(Mosin-Nagant) 그

100)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672호, 2019.4.2. 시행, 일부개정], 법률 제10조 제4항에 의해 전사자 유해와 동반 출토된 유품의 경우에는 보관이 원칙이므로 타 기관으로의 이관이나 대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다만 고 류광연 일등상사의 경우, 국유단에서 신원확인 이후 유가족을 통해 유품을 다시 기증(寄贈)받은 다음 이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101)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앞의 책, 2018, 136-157쪽.

리고 슈파긴 기관단총과 토크레프 권총(Tula Tokarev 33)에 쓰이는 TT 탄(Tula-Tokarev) 등이 주로 출토된다. 탄약류는 화기류와 마찬가지로 규격이 정해져 있어 생산 국가를 특정하기 용이하지만, 탄약류 역시 노획의 가능성이 항상 상존하기 때문에 탄약류 유품 하나만으로는 피아구분 및 신원확인을 단정할 수 없다. 다만 탄약류의 경우 <표 8>과 마찬가지로 탄약 밑부분 탄저부(彈底符)에 생산연도와 생산공장의 정보가 표시되어 있는데 이를 탄저부호(彈底符號/Headstamp)라고 한다. 이 탄저부호를 통해 전사자 유해발굴 지역에서 출토된 탄약류의 생산연도와 생산공장의 정보를 파악하여 해당 지역의 전투사 연구와 전사자의 피아구분에 참고할 수 있다.<sup>102)</sup>

### 3) 피복류 유품

<표 9> 6·25전쟁 당시 미군과 중공군의 대표적 피복류와 단추류<sup>103)</sup>

명칭	피복류	단추류
미군 M-1943 야전상의, 야전내파· 유단식 4혈 플라스틱 단추		
중공군 전투복: 갈색 림식 4혈 플라스틱 단추(좌) / 갈색 림식 八一 플라스틱 단추(우)		

6·25전쟁 이전 한국군의 병참 보급품은 다른 분야에 비해서 국내 조달 비중이 높은 편이었다. 특히 피복의 경우를 살펴보면 한국군은 인천에 피복창을 두고 군 피복을 생산하는 한편, 피복창의 생

102)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앞의 책, 2018, 296-299쪽.

103) 위의 책, 166-167쪽, 182쪽.

산량을 초과하는 수량에 대해서는 민수용 공장에서 조달하고 있었다. 비록 6·25 전쟁 발발 직후 인천 피복창과 서울 보급창을 상실하면서 피복 보급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부산에 피복창을 설치하고 빠르게 피복 생산을 재개하여 1950년 7월 4일이 되면 피복 제조업체가 71개로 증가하고 일일 생산능력도 전투복 3,000착, 전투모 1,000개 등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sup>104)</sup> 6·25전쟁 초기 한국군은 피복류 보급에 어려움을 겪자 미군의 보급에 상당 부분 의존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증명하듯 <표 9>을 보면 미군 야전상의와 야전 내피 등에 주로 사용했던 유단식 4형 플라스틱 단추가 실제 전사자 유해발굴 지역에서 상당수 출토되고 있다.<sup>105)</sup> 섬유 재질인 피복류 유품의 특성상 땅속에서 자연분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전사자 유해발굴 지역에서 피복류 유품이 유해와 함께 온전하게 동반 출토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하지만 플라스틱 재질의 단추류의 경우, 상당수가 전사자 유해와 함께 동반 출토되므로 향후 한국군을 비롯한 6·25전쟁 참전국의 군 복식에 관한 지속적인 조사와 연구를 통해 전사자 피아구분의 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사진 2> 미 육군 M12 방탄조끼

(Armor Vest/화살머리고지 발굴 유품)<sup>106)</sup>



<사진 3> 1953년 1월 22일 파주

소(小)노리고지의 한국군 1사단 장병들<sup>107)</sup>



104)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지원사』, 1997, 206-207쪽.

105)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앞의 책, 2018, 161-167쪽.

106) 양영조 외, 『근현대문화유산 6·25 전쟁(한국전쟁)분야 목록화 조사 최종보고서』, 문화재청, 2020, 80쪽.

107) 미국문서기록관리청(NARA) 소장, (사)월드피스자유연합 수집 (국방부 유해발굴감

또한 국유단은 2019년,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에서 <사진 2>와 같이 미 육군 M12 방탄조끼를 발굴하였다. 해당 방탄조끼는 미군이 1951년 5월부터 고지전에 투입되는 병력을 대상으로 일부 보급하기 시작하였으며<sup>108)</sup> 이후 1953년 전후로는 한국군 역시 8,400벌을 제공받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M12 방탄조끼는 실제 사용되었다는 기록만 있었을 뿐, 이번 유해발굴을 통해 최초로 실물이 확인된 사례로서 <사진 3>과 같이 사진자료를 통해 한국군의 실제 사용한 사실 또한 확인되었다.<sup>109)</sup>

<사진 4> 화살머리고지 출토 방독면<sup>110)</sup>



국유단은 화살머리고지에서 <사진 4>와 같이 중공군이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방독면 또한 발굴하였다. 6·25전쟁 당시 세균전의 발생 유무는 현재까지도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sup>111)</sup> 유해발굴

식단, 『6·25 전사자유품자료집』 Vol.3(아군), 2020, 226쪽에서 재인용)

108)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6·25 전사자 유품자료집』 Vol.3(아군), 2020, 222쪽.

109) 양영조 외, 앞의 보고서, 2020, 79쪽;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6·25 전사자 유품자료집』 Vol.3(아군), 2020, 227쪽.

110) 최인건 외, 「현대 매장문화재 조사현황」, 『한국고고학회 제6회 춘계학술대회 : 한국고고학의 과제와 발전방향 모색, 근현대 고고학의 중요성과 필요성』, 2022, 20-21쪽.

111) 6·25전쟁 당시 세균전 논쟁에 관련된 최근의 연구 동향으로는 전예목, 「6·25전쟁 시기 '세균전' 설 제기 과정과 내막」, 『군사』 제120호, 2021.을 참고

을 통해 출토된 방독면의 존재는 관련 연구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지표적인 유물이다. 따라서 향후 화살머리고지에서 발굴되는 전사자 유품의 추이를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 4) 군화류 유품

〈표 10〉 6·25전쟁 당시 미군과 중공군의 대표적 군화류와 유품 출토사례<sup>112)</sup>

명칭	군화	밑창/도면		유품 출토사례
미군 보급용 군화 (Boots, Service, Combat)				
미군 군화 (M1948 Boots)				
중공군 전투화				

한국군의 군화류 역시 피복류와 마찬가지로 6·25전쟁 이전까지는 인천 피복창 등에서 생산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다 6·25전쟁 직후 부산에 다시 피복창을 설치하고 빠르게 피복 생산을 재개 하여 1950년 7월 4일이 되면 피복 제조업체가 71개로 증가하고 일일 생산능력 역시 하루에 훈련화 3,000족 이상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sup>113)</sup> 재질이 주로 가죽인 군화는 땅속에 묻힐 때 대부분 자연 분해되므로 군화류 유품의 경우, 〈표 10〉과 같이 대부분 고무 재질인

112)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앞의 책, 2018, 196-199쪽, 236-237쪽.

113) 국방군사연구소, 앞의 책, 1997, 207쪽.

전투화 밑창을 통해 유품의 정보를 파악하고 있다. 전투화 밑창의 무늬와 상표 등을 통해서 전투화의 국적과 종류 등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피아 구분의 한 근거가 될 수 있다.

### 5) 장구류 유품

〈표 11〉 한국군 전사자 고 장복동 일병의 유품 발굴정보<sup>114)</sup>

성명	전사일	발굴장소/전투	발굴일	동반 출토유품
장복동	1951.1.10	홍천 현리 /홍천 전투	2006.9.21	철모, M1 탄, 끈, 수통, 각반, 전투화 뒷굽, 전투화 앞창

〈사진 5〉 한국군 전사자 고 장복동 일병의 수통(좌)과 중공군 수통(우)<sup>115)</sup>



장구류는 군인들에게 보급되었던 공통적인 군장(軍裝) 물품을 뜻하는데 대표적으로 철모, 야전삽, 반합, 수통, 탄띠 등이 있다. 실제 전사자 유해발굴 지역에서는 장구류 결속에 사용하는 군장고리, 탄띠고리 등도 상당수 출토된다.<sup>116)</sup> 장구류 유품의 경우, 화기류나 탄약류 유품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재원이나 규격의 정확한 파악이 어렵다. 대표적인 장구류 유품인 철모나 수통의 경우, 형태적

114) 황선익 외, 앞의 보고서, 2016, 4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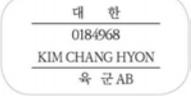
115)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공동기획전 : 67년만의 귀향』, 2017, 161쪽, 191쪽.

116)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앞의 책, 2018, 241-259쪽.

인 차이로 대략적인 국가 간의 피아식별이 가능하지만, 이 역시 노획의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단순히 장구류만으로 정확한 피아식별이나 신원을 추정하기 어렵다. 하지만 장구류 유품의 경우 군장병들의 실제 사용하는 생활용품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장구류에 본인의 이름이나 주소 같은 신원 정보를 각인하거나 기재하는 사례가 종종 확인된다. 대표적으로 고 장복동 일병의 경우, <표 11>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강원도 홍천에서 유해가 발굴되었을 당시 인식표와 같은 신원확인이 가능한 단서를 지니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사진 5>와 같이 유해와 동반 출토된 수통에 새겨진 ‘張福東’ 전사자 본인의 이름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전사자 정보를 추적하여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sup>117)</sup>

## 6) 개인유품

<표 12> 한국군 전사자의 인식표 실제 출토 사례와 도면<sup>118)</sup>

계급/성명(소속)	실제 출토 인식표	인식표 도면
고 이등중사 김원갑 (육군)		
고 일병 김창현 (육군)		
고 하사 송덕이 (카투사)		

117) 황선익 외, 앞의 보고서, 2016, 184쪽.

118)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앞의 책, 2018, 265쪽.

개인유품은 전사자가 지닌 개인적인 물품을 뜻한다. 온전히 해당 전사자 개인만을 위한 물건으로 모든 장병에게 공통으로 보급되었던 화기류, 장구류 등의 다른 유품과 차이점을 지닌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미군이나 한국군 전사자의 유품 중 가장 정확한 신원 확인 근거가 될 수 있는 인식표이다.<sup>119)</sup> 인식표는 군인이 전투 중 전사할 경우 군번이 찍힌 인식표를 해당 전사자가 항상 몸에 소지하게 함으로써 전사자 신원확인 근거를 남기는 것이 주목적이었다. 전사자 유해발굴시 전사자 유해와 유품인 인식표가 동반 출토된 경우, 인식표의 정보를 통해 확인된 전사자 유가족을 대상으로 DNA 검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하여 빠른 신원확인이 가능하다. <표 12>와 같이 인식표의 형태와 찍힌 내용의 형식과 규격이 정해져 있으므로 한국군의 피아식별에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된다. 또한 개인유품은 말 그대로 병사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개인적인 소지품 전부를 뜻하기 때문에 그 종류의 폭이 매우 다양하다. 인식표 이외의 전사자 유해발굴시 많이 출토되는 대표적인 개인유품으로는 도장과 만년필, 라이터, 훈장 등이 있다.

(표 13) 한국군 전사자 고 장대원 일병의 유품 발굴정보<sup>120)</sup>

성명	전사일	발굴장소/전투	발굴일	동반 출토유품	실제 유품 사진(도장)
장대원	1951. 02.12	강원도 홍천 삼마지리 /황성전투	2010. 07.27	M1 실탄, M1 탄피, M1 탄클립, 카빈 탄피, <b>도장</b> , 반함뚜껑, 불명 플라스틱막대, 전투화 밑창, 전투화 각반	

119) 인식표도 화기류, 장구류나 마찬가지로 부대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보급한다는 측면에서 장구류로 구분할 수도 있겠으나 인식표의 정보는 한 사람 개인에게만 해당하는 정보이므로 개인유품으로 분류된 것으로 보인다.

120) 황선의 외, 앞의 보고서, 2016, 48쪽.

도장의 경우도 재질이 고무나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전사자 유해 발굴 지역에서 전사자의 개인유품으로 출토되는 경우가 많다. 도장은 전사자의 성명과 신분을 증명하는 개인유품으로써 전사자 유해와 도장이 동반 출토된 경우, 도장에 적힌 전사자의 성명과 인적사항을 추적하여 전사자의 신원확인의 단서로 활용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표 13>을 보면 알 수 있듯이 2010년에 강원도 홍천 삼마치리에서 발굴된 한국군 전사자 고 장대원 일병의 경우, 인식표가 따로 발굴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 괴산군 소수면 고마리’라고 적혀 있는 고 장대원 일병 명의의 도장이 출토됨으로써 이를 단서로 한국군 전사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sup>121)</sup>

(표 14) 한국군 전사자 고 최승갑 하사의 유품 발굴정보<sup>122)</sup>

성명	전사일	발굴장소 / 전투	발굴일	동반 출토유품	실제 유품 사진 (플라스틱 삼각자)
최승갑	1950. 08.23	다부동 369고지 / 다부동 전투	2000. 04.21	나무도장, 플라스틱 삼각자, 호루라기, 만년필, 수저, 라이터, 연필, 장화, 필름, 머리빗, 페니실린 약병, MI 실탄, 탄피, 장화	

앞서 언급하였듯이 개인유품은 전사자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모든 개인적인 유류품을 포함한다. 따라서 이제까지 언급된 화기류, 탄약류, 피복류, 군화류, 장구류처럼 공통으로 보급되는 것과는 달리 그 형태가 다양하다. 주로 생활용품인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규격이나 형태가 모두 제각각이기 때문에 단순히 개인유품만으로는

121) 한양대학교 박물관, 『한양대학교 박물관 개교 72주년 기념 특별전 : 한국인과 인장』, 2011, 61쪽.

122) 황선익 외, 앞의 보고서, 2016, 38쪽;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그들을 조국의 품으로 : 6·25 전사자유해발굴사업 13년의 기록』, 2013, 110쪽.

전사자의 피아구분이나 신원에 대한 근거를 찾기 쉽지 않다. 하지만 이전에 언급한 장구류의 사례와 같이 전사자 개인의 물건일 경우, 해당 개인유품에 전사자 본인의 신상정보를 기재하는 사례가 다른 종류의 유품들 보다 그 비율이 높기 때문에 개인유품에 각인되거나 기재된 전사자의 개인정보가 전사자의 신원을 파악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표 14>의 고 최승갑 하사의 경우, 유해와 동반 출토된 플라스틱 재질의 삼각자에 새겨진 '崔承甲'의 이름을 통해 그의 병적기록을 확인, 뒤이어 유가족과 신속한 연락을 거쳐 DNA 유전자 감식을 통해 전사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 최승갑 하사의 사례는 6·25전쟁 50주년 기념사업회에서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이 처음 시작된 이래 유품을 통한 전사자 신원확인 of 대표적인 사례로서 2003년 개봉한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의 모티브가 되어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을 대중적으로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sup>123)</sup>

또한 고 최승갑 하사의 유해는 경상북도 칠곡군 다부동 369고지에서 발굴되었는데 병적 카드에 기록된 그의 소속은 한국군 제17연대였다. 하지만 낙동강 다부동 전투는 한국군 제1사단이 주 전선을 맡아 방어전을 수행한 전투로써 독립연대인 제17연대는 이 전투에 참여한 기록이 없다. 따라서 고 최승갑 하사는 부대가 재편성을 반복하는 가운데 제17연대에서 제1사단으로 편입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sup>124)</sup> 이처럼 전사자 유품을 통해 신원확인이 이뤄지면서 전사자 유품이 6·25전쟁 당시 한국군의 급박한 부대 재편성 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로써 활용될 수 있었다.

123)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앞의 책, 2013, 109-110쪽.

124) 위의 책, 66쪽.

## 7) 전사자 유품의 사료적 한계와 가치

(사진 6) M1소총과 카빈소총으로 무장한 북한군 사진(충청남도 부여군)<sup>125)</sup>



위와 같이 6·25전쟁 전사자 유품은 그 종류나 재질의 특성을 분석하여 전사자의 피아를 구분하거나 신원을 확인하는 데 매우 중요한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전사자 유품을 6·25전쟁 전사자를 규명하는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쟁터에서 항시 상존하는 노획(鹵獲)의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병참 보급품에 대한 북한군의 노획은 6·25전쟁 발발 직후부터 광범위하게 발생하였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6·25전쟁 이전 한국군은 인천에 피복창을 두고 서울에 보급창을 두어 피복류를 비롯한 각종 병참 보급품을 생산하였다. 특히 화기류의 경우 1948년 12월 15일 최초로 육군 병기공장을 창설하여 병기행정본부를 두는 한편, 제1, 2, 3공장을 설립하여 병기(兵器)의 대량생산 기반을 갖춰가고 있었다. 1950년 6월 15일에는 부산에 제1조병창을 창설하고 인천 제2공장을 제2조병

125) 이승용 개인소장, 「충남 부여군 해방 기념」 1950.8.15. 6·25전쟁 당시 사진자료를 통해 6·25전쟁을 연구하려는 시도 역시 활성화되고 있다. 국사편찬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수집 사진자료」 제1-3권, 2016-2017; 정근식·강성현, 「한국전쟁 사진의 역사사회학」,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창으로 개편하기도 하였다.<sup>126)</sup>

하지만 이 같은 군수보급 체계의 기반시설은 6·25전쟁 발발 3일 만에 서울을 잃으면서 대부분 상실되었다. 이 과정에서 한강 이북의 화기류와 피복류, 장구류를 비롯한 한국군 전체 병참 보급품의 70%가 유실되었다.<sup>127)</sup> 이후 한국군의 보급은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의 지원과 부산에 일부 남아있던 병참 기반시설을 확대하면서 점차 회복되었지만, 북한군은 서울에 남아있던 한국군의 화기류를 비롯한 군수물자를 노획하게 되었다. 이러한 북한군의 노획 상황은 당시 사진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북한군이 충청남도 부여군에 진입 직후 찍은 것으로 판단되는 <사진 6>을 봤을 때, 북한군이 소지하고 있는 화기류를 분석해보면 북한군이 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소련제 모신나강 소총이나 슈파긴 기관단총 이외에도 미군과 한국군이 주로 사용했던 M1 소총과 카빈 소총을 소지한 북한군 병사들을 상당수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노획의 정황은 참전 생존 장병의 증언인 <A-2>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A-2>

“... 그런데 희뜩도 안하고 보더만은 분간을 못하니까. 왜 분간을 못하나 총도 우리총. 개들이 그당시 내려와가지고 없는 것이, 총도 우리 총. 모자도 구분이 안돼 인민군이 전부 우리것 다 뺏아가지고 이러논께 똑같애. 똑같애. 먼데서 바라보든. ...”<sup>128)</sup>

126) 국방군사연구소, 앞의 책, 1997, 207-221쪽.

127) 위의 책, 223쪽.

128) 최태종·정맹규 구술, 김종근 외, 「한국전쟁 전투체험과 북진의 경험」, 『한국전쟁 이야기 집성』 2, (주)박이정, 2017, 222-223쪽.

〈사진 7〉 경북 영주 평은리 출토 버클<sup>129)</sup>

(110725 영주 평은리 무명 427고지군 호165-유해1)



〈사진 8〉 조선민족청년단 훈련소

졸업증장<sup>130)</sup>

주목할 부분은 〈사진 6〉와 같은 노획이 흔히 전쟁 후반에 자신들의 보급품이 부족할 때 대신 이용하는 부분적인 노획이 아닌, 개전이 2달도 채 안 된 시점에서 대량 노획을 통해 한국군의 화기류를 비롯한 각종 군용물품을 폭넓게 혼용하였다는 점이다. 결국 이러한 사실은 대부분의 6·25전쟁 전사자 유품이 사전에 노획하여 사용되었을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사자 유품을 단독 근거로 삼아 전사자의 피아를 구분하거나 신원을 파악하는 것은 한계점이 존재하므로 유해발굴에 관련된 유가족 및 지역 주민의 증언과 해당 지역의 전투사 등 가능한 많은 단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sup>131)</sup>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사자 유품이 극히 제한적인 참고자료의 역할만 갖는 것은 아니다.

2011년 7월 25일 경상북도 영주 평은리 무명 427고지군 165전투호에서 6·25전쟁 전사자 유해가 발굴되었다. 이 유해에서 〈사진

129)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홈페이지, 2011년 전사자 특이유품 목록 ([www.withcountry.mil.kr](http://www.withcountry.mil.kr)). 2022.01.06. 검색.

130) 수원박물관, 『수원박물관 특별기획전 : 해방공간 수원, 그 뜨거운 함성』, 2016, 218쪽.

131)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앞의 책, 2013, 238-239쪽.

7)과 같이 1개의 버클이 동반 출토되었는데 가운데에는 14개의 별이 원형을 감싼 무늬를 이루고 있으며 버클 양 끝 쪽에는 왼쪽부터 민족지상(民族至上), 국가지상(國家至上)이라는 문장이 표기되어 있다. 이 가운데의 별 문양, 그리고 민족지상, 국가지상의 구호는 독립운동가로서 대한민국 초대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을 지낸 이범석(李範奭)이 1946년 10월에 결성한 조선민족청년단(朝鮮民族青年團), 일명 ‘족청’의 것이다. 이는 <사진 8>에 소개된 족청의 훈련소 졸업증장을 같이 놓고 비교해도 확인할 수 있다.

족청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광복군으로써 무장 독립운동을 벌이며 활약한 이범석의 주도하에 만들어진 청년 단체로서 그가 항일운동 시절 중국 국민당의 중앙훈련단에서 훈련을 받으며 청년들의 훈련 중요성을 인식하고 광복 이후 청년들을 정신적, 육체적으로 교육할 목적으로 창단하였다. 족청은 여타 다른 청년단과 달리 ‘비정치’를 내세우며 ‘대공 투쟁’에 관여하지 않고 청년들에 대한 수련을 목표로 삼았는데, 이러한 방향이 당시 미군정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6개월마다 500만원의 정식 예산을 지원 받으며 급속도로 성장하게 되었다.<sup>132)</sup> 족청은 이처럼 자체적인 규약을 통해 대외적으로 ‘18세부터 30세까지 조선남녀 청년의 애국심 양양과 인격양성과 공민훈련’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는 <B-3>과 같이 족청의 현장을 보아도 알 수 있다.

#### <B-3>

- 가. 조선 청년의 민주주의 정신을 발휘하게 하여 건전한 신체와 활발한 정신과 선미(善美)한 도덕을 겸비함으로써 장래 조선 건설에 공헌함.
- 나. 진실한 조선 청년됨을 기함. 단, 비정치적, 비군사적,

132) 후지이 다케시, 「조선민족청년단 중앙훈련소의 설립과 운영」, 『수원박물관 특별기획전 : 해방공간 수원, 그 뜨거운 함성』, 2016, 256-257쪽.

비중과적으로 함.

- 다. 조선 청년의 민주주의 정신을 발양(發揚)하게 하며 조국을 위하여 희생적 분투로써 완전독립을 전취(戰取)하게 함.
- 라. 국제 친선과 세계 평화에 공헌함<sup>133)</sup>

〈사진 9〉 1946년 5월 29일

중국 선양(瀋陽)의 국민정부 구호<sup>134)</sup>



〈사진 10〉 수원의 조선민족청년단

중앙훈련소 전경<sup>135)</sup>



족청의 훈련생은 기본적으로 공모로 모집되며 4주 동안 정치, 역사, 사회 교육과 각종 체력 훈련을 마치고 졸업했다. 위와 같은 규약과 훈련 내용으로만 보았을 때 족청은 단순한 청년조직이자 보이스카우트의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sup>136)</sup> 하지만 위에 언급했던 것처럼 족청은 창단 초창기 미군정에 의한 지원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입장에 제약에 있었을 뿐 단순한 청년 단체는 아니었다. 이

133) 후지이 다케시, 『파시즘과 제3세계주의 사이에서 : 족청계의 형성과 몰락을 통해 본 해방 8년사』, 역사비평사, 2012, 146쪽.

134) 후지이 다케시, 앞의 책, 2012, 148쪽.

135) 수원박물관, 앞의 도록, 2016, 222쪽.

136) 후지이 다케시, 「조선민족청년단 중앙훈련소의 설립과 운영」, 『수원박물관 특별기획전 : 해방공간 수원, 그 뜨거운 함성』, 2016, 257-259쪽.

러한 점은 <B-4>의 족청의 단지(團旨)를 통해서 그 실제 이념을 파악할 수 있다.

<B-4>

1. 우리는 민족정신을 환기하여 ‘민족지상 국가지상’의 이념하에 청년의 사명을 다할 것을 기함.
2. 우리는 종파를 초월하여 대내 자립 대외 공존의 정신하에 민족의 역량을 집결할 것을 기함.
3. 우리는 현실을 직시하여 원대한 곳에 착안하고 비근한 점에 착수하여 건국도상의 청년다운 순성(純誠)을 발일 것을 기함.<sup>137)</sup>

이 대목에서 족청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민족지상 국가지상’의 이념이 등장한다. <사진 10>에서 보이는 것처럼 수원에 있었던 족청의 중앙훈련소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이 구호는 <사진 9>와 비교하여 확인 할 수 있듯이 중국 국민정부가 내걸었던 ‘국가지상, 민족지상’의 구호 순서를 바꾼 것이다. 중국 국민정부와 달리 아직 정부수립이 되지 않았던 당시 국내 사정을 고려하여 우선 민족을 강조한 것이다.<sup>138)</sup> 이처럼 민족주의적 성격이 강하게 내제되었던 족청의 구성은 이준식(李俊植), 노태준(盧泰俊), 송면수(宋冕秀), 안춘생(安椿生), 장준하(張俊河) 등이법석과 같은 광복군 출신이 상당수를 이루었다.<sup>139)</sup> 이후 1949년 1월 7일, 수도여단의 전신인 한국군 제7여단의 여단장에 이준식이 임명되는 등 한국군 내에서도 족청 출신 인물들이상당수 기용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족청은 강력한 우익청년단체를 만들고자 하는 이승만 정부의 의지 아래 1949년 1

137) 후지이 다케시, 앞의 책, 2012, 147쪽.

138) 위의 책, 147쪽.

139) 위의 책, 107-122쪽.

월 20일에 해산하여 대한청년단으로 통폐합되었다.<sup>140)</sup> 하지만 해산 뒤에도 족청 출신 인사들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와 국회, 군대 등에 진출하여 소위 ‘족청계’라는 세력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족청의 성격을 살펴봤을 때 <사진 7>의 족청 소속의 버클은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우선, 족청의 대표적인 이념인 ‘민족지상, 국가지상’이 정확히 각인되어 있으며 이 버클을 소지한 6·25전쟁 전사자의 유해가 경북지역의 대표적인 주요 전투지역 중 하나였던 영주 일대에서 발굴되었다. 해당 전사자의 유해가 발굴된 2011년, 경북 영주 지역에서는 한국군 8구, 북한군 13구 등 총 21구의 유해를 발굴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sup>141)</sup> 현재 해당 전사자 유해의 한국군 판정 여부는 정확히 확인할 수 없으나 만약 해당 유해가 한국군으로 판명된다면 한국군 내에 족청계의 영향력을 직접 확인시켜 주는 하나의 실질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6·25전쟁 당시의 족청계 유물의 발굴은 그 자체로 전사자의 피아구분의 역할을 넘어서 1950년대 족청계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사료인 것이다. 위와 같이 전사자 유품은 단순히 전사자의 피아구분 및 신원확인의 보조적인 참고자료의 역할뿐만 아니라 1950년대 6·25전쟁기의 시대적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하나의 사료로써 가치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6·25전쟁 전사자 유품의 폭넓은 조사와 연구가 요구된다.

140) 위의 책, 216-219쪽.

141)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홈페이지, 2011년도 지역별 발굴실적([www.withcountry.mil.kr](http://www.withcountry.mil.kr)), 2021.12.31. 검색

## 4. 맺음말

전쟁의 직접적인 수행자인 동시에 가장 큰 피해자였던 6·25전쟁 전사자에 관해 본 연구에서는 6·25전쟁 전사자의 발생과 수습의 전개 과정을 파악하는 한편, 6·25전쟁 전사자 유해발굴에 주목하여 지역별 전사자의 유해, 전사자의 유품 이 두 가지 요소가 모두 역사적인 사료로써 가치를 가지고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밝혀냈다. 현재까지의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군은 6·25전쟁 이전에 전사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장충단 공원에 안치하도록 조치하였으나 개전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당함으로써 종전의 임시적인 전사자 수습체계마저 무너지게 되었다. 이후 한국군은 1950년 9월이 되어서야 묘지등록대와 영현중대 등을 편성하면서 전사자 수습을 시작하였으나 시급한 전투지역에서의 임시매장과 화장 처리에 주로 집중하였을 뿐 6·25전쟁 전사자 유해를 수습하기 위한 본격적인 조치는 아니었다.

이후 1953년 7월 27일 휴전이 이루어지자 6·25전쟁 전사자는 구체적인 정전협정에 근거하여 수습되기 시작하였다. 정전협정에서 정한 전사자 수습의 양해 시점이 종료된 이후 전사자 문제는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다가 유해가 발견되면 다시 협의를 거쳐 송환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1996년부터 미국과 북한을 중심으로 전사자 유해발굴과 송환이 이루어졌다.

한편, 정전협정 이후 주목받지 못했던 6·25전쟁 전사자 문제에 대해 국내적으로 관심을 모았던 계기는 2000년 6·25전쟁 50주년을 맞아 한시적인 사업으로 시작했던 6·25전쟁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이었다. 전사자의 유해가 대대적으로 발굴되고 일부 한국군 전사자의 신원이 확인되는 성과가 나타나자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은 국

민적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그 결과, 전담 기구인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창설되고 국가연구사업으로 지속하게 되었다.

경상북도 지역은 한국군이 소백산맥 일대의 지연전을 거쳐 유엔군과 함께 낙동강 전선에서 방어전을 수행하며 반격의 발판을 만들어 낸 곳이다. 이러한 경북의 주요 전투지역에서 한국군 전사자 유해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본 결과 문경, 풍기, 안동, 의성, 영천, 칠곡(다부동), 영덕, 포항 등 기존 전투사에 기록된 격전지에서 상당수의 6·25전쟁 전사자 유해가 발굴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포항과 영천 지역의 경우 기존에 알려졌던 전사자 규모보다 더 많은 수의 전사자 유해가 발굴되어 기존의 6·25전쟁 전투사를 재확인하는 새로운 근거로 삼을 수 있었다.

6·25전쟁 전사자의 유품은 말 그대로 전사자가 소지하고 있던 유류품을 뜻한다. 그 종류에 따라 화기류, 탄약류, 피복류, 군화류, 장구류, 개인유품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러한 유품들은 종류별로 특징을 분석하여 전사자의 국적, 즉 피아(彼我)식별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전사자의 신원확인을 위한 핵심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그러나 6·25전쟁 발발 직후 피복창과 보급창 그리고 조병창 등이 소재하고 있던 서울과 인천의 상실로 인해 한국군 병참 보급품의 70%가 유실되었다. 그 결과, 한국군 전사자 유품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병참 보급품을 북한군이 대량 노획(鹵獲)하여 혼용하는 상황으로 이어져 전사자 유품의 사료적 활용에 한계점으로 남게 되었다.

하지만 2011년 영주 평은리에서 전사자 유해와 동반 출토된 버클을 분석하던 중 버클에 새겨진 민족지상(民族至上), 국가지상(國家至上)의 문장 등을 근거로 해당 버클이 조선민족청년단(족청)의 것임을 밝혀냈다. 이에 따라 1950년대 당시 한국군 내에서 광범위하게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소위 '족청계'의 움직임이 실질적으로 확

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6·25전쟁 전사자 유해발굴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전사자 유해와 유품에 대한 정보는 다양한 분석을 통해 사료적 활용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그동안 단순히 추모의 대상으로만 해석되어왔던 6·25전쟁 전사자에 대해 더욱더 실증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하지만 한국현대사 속에서 6·25전쟁 전사자라는 주제를 모두 담아내기에는 본 연구가 가진 한계점이 상당수 존재한다. 우선 한반도 전 지역에서 벌어진 6·25전쟁의 다양한 국면을 담아내기에는 1차 사료 수집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므로 경북지역을 제외한 타 지역의 전사자 유해 분포에 대해서는 다양한 전투 양상에 따라 얼마든지 본 연구와 다른 결론과 해석이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본 연구는 6·25전쟁 전사자에 대한 심층적인 삶과 당시 전투상황을 유추할 수 있는 증언(證言)을 포함한 구술 자료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6·25전쟁 생존 장병이나 유가족 그리고 전투지역 내 주민들의 증언은 6·25전쟁 전사자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점을 보완할 6·25전쟁 전사자의 지속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 [부록] 6·25전쟁 전사자 유해발굴 현황 (2020.12.31.기준)<sup>142)</sup>

구 분	계	아 군			적 군		
		소계	한국군	UN군	소계	북한군	중공군
총계	12,592	10,967	10,942	24	1,625	744	881
2000년	345	334	333	1	11	10	1
2001년	211	202	199	3	9	8	1
2002년	226	165	164	1	61	54	7
2003년	170	118	118	0	52	23	29
2004년	173	138	138	0	35	22	13
2005년	203	141	138	3	62	25	37
2006년	175	92	92	0	83	75	8
2007년	534	378	378	0	156	122	34
2008년	837	673	673	0	164	83	81
2009년	1,279	1,140	1,138	2	139	67	72
2010년	1,438	1,326	1,325	1	112	65	47
2011년	1,388	1,302	1,301	1	86	43	43
2012년	1,040	990	986	4	50	20	30
2013년	737	672	671	1	65	31	34
2014년	914	810	810	0	104	36	68
2015년	623	564	561	3	59	22	37
2016년	435	394	392	1	41	9	32
2017년	435	409	407	2	26	8	18
2018년	357	343	343	0	14	2	12
2019년	558	384	383	1	174	5	169
2020년	514	392	392	0	122	14	108

\* 정밀감식 이후 피·아 및 개체 수 변동 가능

142) 본 통계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유해발굴 20년사』, 2021, 18쪽.에도 수록되어 있다.

## 〈참고문헌〉

### 1. 자료집 및 연구보고서

육군본부, 『육군병참사』 제1집, 1969.

합참정보본부, 『군사정전위원회편람』 제5-8집, 2001-2010.

국사편찬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수집 사진자료』 제1-3권, 2016-2017.

<http://uci.or.kr//G901:A-0007889649@N2M>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지원사』, 1997.

<http://uci.or.kr//G500:1310377-00000000164009@N2M>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1-11권, 2003-2013.

\_\_\_\_\_, 『6·25전쟁 유해소재 지도(DMZ/남한지역)』, 2009.

<http://uci.or.kr//G500:1310377-02012014019554@N2M>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그들을 조국의 품으로 : 6·25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 13년의 기록』, 2013.

<http://uci.or.kr//G901:A-0007155484@N2M>

\_\_\_\_\_, 『6·25전사자 유품자료집』, Vol.2, 2018.

\_\_\_\_\_, 『6·25전사자 유품자료집』, Vol.3, 2020.

\_\_\_\_\_, 『유해발굴 20년사』, 2021.

<https://doi.org/10.978.8997748/501>

박동찬, 『통계로 본 6·25전쟁』,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4.

<http://uci.or.kr//G901:A-0006528781@N2M>

양영조 외, 『근현대문화유산 6·25 전쟁(한국전쟁)분야 목록화 조사 최종 보고서』, 문화재청, 2020.

황선익 외, 『국군 유해발굴 관련 전시콘텐츠 구성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 2016.

## 2. 단행본

- 강인철, 『전쟁과 희생 : 한국의 전사자 숭배』, 역사비평사, 2019.  
<http://uci.or.kr//G901:A-0009292111@N2M>
- 김귀옥 외, 『한국전쟁 이야기 집성』 1·2권, (주)박이정, 2017.
- 김보영, 『전쟁과 휴전 : 휴전회담기록으로 읽는 한국전쟁』, 한양대학교 출판부, 2016.  
<http://uci.or.kr//G901:A-0006612582@N2M>
- 노용석, 『국가폭력과 유해발굴의 사회문화사』, 산지니, 2018.
- 다카하시 데쓰야, 『국가와 희생』, 책과함께, 2008.
- 백선엽, 『길고 긴 여름날 1950년 6월 25일』, 지구촌, 1999.
- 전진성 외, 『기억과 전쟁 : 미화와 추모 사이에서』, 휴머니스트, 2009.
- 정근식·강성현, 『한국전쟁 사진의 역사사회학 : 미군 사진부대의 활동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출판부, 2016.  
<http://uci.or.kr//G901:A-0006606053@N2M>
- 정병준, 『한국전쟁 : 38선 충돌과 전쟁의 형성』, 돌베개, 2006.  
<http://uci.or.kr//G901:A-0006119246@N2M>
- 하상복, 『죽은 자의 정치학 : 프랑스·미국·한국 국립묘지의 탄생과 진화』, 모티브북, 2014.  
<http://uci.or.kr//G901:A-0006468651@N2M>
- 후지이 다케시, 『파시즘과 제3세계주의 사이에서 : 족청계의 형성과 몰락을 통해 본 해방 8년사』, 역사비평사, 2012.  
<http://uci.or.kr//G901:A-0006417426@N2M>

## 3. 논문

- 고한빈, 「한국전쟁 이전(1946-50) 한국군 군사교범의 성격」, 한양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7.
- 김성보, 「한국전쟁기 전사자 유해발굴의 의의와 전쟁사 연구의 과제」,

『중원문화연구총서』 6, 2002.

<http://uci.or.kr//G901:A-0002007430@N2M>

김수자, 「제1공화국 시기 장충단공원의 정체성의 변형 과정」, 『한국문화연구』 제34호, 2018.

<http://doi.org/10.17792/kcs.2018.34..279>

김태산·김회동, 「군부대 문화재 관리 및 보존에 관한 연구」, 『군사과학논집』 제69권 1호, 공군사관학교, 2018.

<http://uci.or.kr//I410-ECN-0102-2018-000-003951238@N2M>

김태우, 「한국전쟁 연구 동향의 변화와 과제 1950~2015」, 『한국사학사학보』 제32호, 2015.

<http://uci.or.kr//G704-001549.2015..32.007>

노영기, 「1948-50 한국군의 형성과 성격」,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2008.

박선주, 「6·25전사자 유해발굴조사 ; 6·25 전사자유해의 인류학적 조사 : 2000~2002년도 발굴을 중심으로」, 『중원문화연구총서』 6, 2002.

<http://uci.or.kr//I410-ECN-0102-2009-910-002353381@N2M>

\_\_\_\_\_, 「6·25 전사자유해 발굴의 의의와 현황」, 『인문학지』 33, 충북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06.

박중섭, 「한국전쟁 사망군인 유해발굴의 인도법적 의의」, 『人道法論叢』 제26호,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 2006.

박종철, 「미·북 군사회담과 한국의 대응방향」, 『통일문제연구』, 제5권, 1996.

서주석, 「미국의 대북한 포로 및 유해 송환 정책」, 『군사』 제35호, 1997.

<http://uci.or.kr//G901:A-0001196355@N2M>

이남우, 「전시체제의 한국군 상·장례 절차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장례문화학과 석사학위논문, 2004.

이상호, 「베트남전쟁 파병 국군 전사자 현황과 국내 언론 보도」, 『역사와 현실』 제116호, 2020.

<http://doi.org/10.35865/YWH.2020.06.116.103>

#### 4. 박물관 발간 전시도록 및 자료집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공동 기획전 : 67년만의 귀향』, 2017.

<http://uci.or.kr//G500:1310377-02012044245716@N2M>

\_\_\_\_\_, 『박물관 근현대자료의 등록과 관리』, 2018.

<http://uci.or.kr//G500:1310377-02012048348124@N2M>

\_\_\_\_\_, 『6·25전쟁 70주년 특별전 : 녹슨 철망을 거두고』, 2020.

수원박물관, 『수원박물관 특별기획전 : 해방공간 수원, 그 뜨거운 함성』, 2016.

<http://uci.or.kr//G500:1310377-02012039126834@N2M>

한양대학교 박물관, 『한양대학교 박물관 개교 72주년 기념 특별전 : 한국인과 인장』, 2011.

<http://uci.or.kr//G901:A-0006476183@N2M>

#### 5. 신문 및 기타

《국방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www.withcountry.mil.kr](http://www.withcountry.mil.kr))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www.imhc.mil.kr](http://www.imhc.mil.kr))

대한민국 정책프리핑([www.korea.kr/main.do](http://www.korea.kr/main.do))

『한국근현대사사전』, 한국사사전편찬회, 2005.

(Abstract)

## The Review of Historical Value for the Excavation of those who Killed in Battle and their Remains during the Korean War

Ko, Jong-su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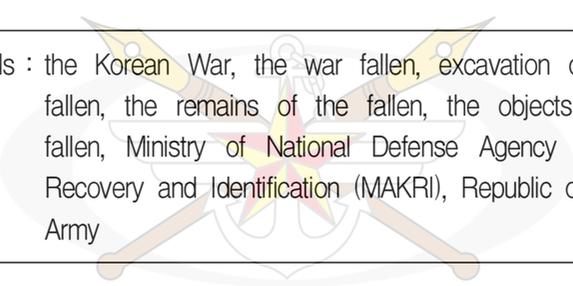
This study inquires if the remains and their leftover objects collected by an excavation of the Korean War fallen could be used as essential historical source for the research of Korean War history. The fallen who were dead in the middle of battle did not receive any proper attention from existing studies. Along with the excavation which has been conducted as the 50th anniversary commemorative project of the Korean War, the objects left over by the fallen began to get spotlighted for the first time. The Korean armed forces confronted the outbreak of war in the absence of experience and a record system, especially the case of the war fallen. The outcome of this excavation in the current situation is the critical source for an empirical understanding of the existence of the Korean War fallen.

North-Gyeongsang Province is the area where the sacrifice of the Korean soldiers eventually got the opportunity for counterattack: the defense line of the Nakdong River had been built there in alliance with the military forces of United Nations by a delaying action throughout the region of Sobaek Mountains. The distribution of the Korean War fallen in the major battlefields of Gyeongsangbukdo shows that in the battlefields such as Punggi, Andong, Mungyeong, Yeongdeok, Uiseong, and Chilgok, which had been recorded in the existing research of war history, a significant number of the fallen were excavated. Moreover, the excavated number of the fallen in the battlefields of Pohang and Yeongcheon exceeds the previously expected scale, which makes a new base to re-confirm the existing studies of the Korean War history.

The objects excavated with the Korean War can be classified by types

as weapon, ammunition, clothing, military boots, equipment, and personal belongings. These are used as an essential material for identification: successfully analyzing the properties of objects by types can identify the nationality of the deceased person, i.e., to distinguish whether they are friendly or foe.

In conclusion, information on the remains and the objects of the Korean War fallen obtained by excavation can be used as historical source through the various ways of analysis. This allows a more empirical approach to the Korean War fallen who had been left just as an object of simple commemoration.



Keywords : the Korean War, the war fallen, excavation of the fallen, the remains of the fallen, the objects of the fallen,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gency for KIA Recovery and Identification (MAKRI), Republic of Korea Arm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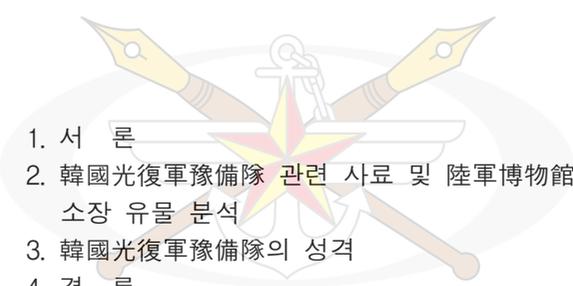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2, No. 123, pp.59-132  
<https://doi.org/10.29212/mh.2022..123.59>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 解放政局期 韓國光復軍豫備隊 研究

엄태용 |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학예사

### 목 차

- 
1. 서 론
  2. 韓國光復軍豫備隊 관련 사료 및 陸軍博物館 소장 유물 분석
  3. 韓國光復軍豫備隊의 성격
  4. 결 론

[부록] 韓國光復軍豫備隊 관련 陸軍博物館  
소장 유물 상세 설명

**초 록** 본 연구는 임시정부 및 한국광복군을 지지하는 세력으로서 해방정국기에 국내에 창설, 운영되었던 ‘韓國光復軍豫備隊’의 성격에 관하여 밝히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광복군예비대는 1972년 서울시청 12호 창고내 금고에서 관련 유물이 대대적으로 발견됨에 따라 그 실체가 공개된 바 있으며 당시 언론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당시 이 유물들의 상당수가 군 기관으로 이관되어 육군박물관에 소장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중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된 군복

상하의 1벌과 군모, 완장 각 1점만이 광복군예비대 유물로 공개되어 왔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해방 전후의 관련 사료와 1972년 서울시청 금고 개방 당시 보도된 여러 언론기사 및 서울시 공보실에서 촬영된 사진자료와 함께 그동안 미공개 또는 그 성격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던 육군박물관 소장 광복군예비대 유물을 일괄적으로 정리 및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작업을 바탕으로 광복군예비대의 창설과 활동내역, 조직구성 및 운영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 파악하는 한편 대한민국 임시정부 및 한국광복군과의 연관성을 고찰하였다. 아울러 1972년 언론기사 및 사진에 제시된 발견 자료와 육군박물관에 현전하는 유물 목록의 비교를 통해 향후 광복군예비대 유물의 추가적인 발굴 및 조사를 위한 기초 자료로 삼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관련 사료 및 육군박물관 소장 유물의 분석을 통해 그동안 실체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던 광복군예비대의 성격에 대하여 밝힌 것에 그 의의가 있다.

**주제어** : 한국광복군예비대, 한국광복군, 한국광복군 국내지대, 대한민국 임시정부, 육군박물관, 서울시청

(원고투고일 : 2022. 4. 8, 심사수정일 : 2022. 5. 19, 게재확정일 : 2022. 6. 2.)

## 1. 서론

1972년 1월 13일 20여년 동안 밀폐되어 있었던 서울시청 12호 창고내 금고의 문이 열렸다. 금고 안에서는 해방 후 韓國光復軍 및 '韓國光復軍豫備隊'(이하 광복군예비대)의 활동 등을 엿볼 수 있는 군복·군모, 각종의 무기와 白凡 金九의 친필 휘호, 임시정부 관계 문서 등 갖가지 물품이 쏟아져 나왔으며 세간의 큰 주목을 끌었다. 당시 언론은 해방 이후 26년이 지나도록 이 금고가 한 번도 개방되지 않은 것에 의아해 하면서도 120여점에 달하는 발견 물품의 성격과 사료적 가치를 알기 위해 임시정부 및 한국광복군 관련 인물들을 심층 면담하는 등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당시 언론 기사는 이때 발견된 물품들이 문화공보부(현 문화체육관광부)와 군 기관에 이관되었다고 전하고 있다.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에는 현재 공식적으로 '한국광복군 군복' 상하의 1벌(국가등록문화재 제460호)과 군모 및 완장 각 1점을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근래의 내부 조사 결과 이 유물들 외에 동일한 이관 출처와 시기를 가지는 여러 유물들이 추가적으로 확인되었다.

광복군예비대에 관련한 선행 연구는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바가 없으며 육군박물관 소장 광복군예비대 군복에 대한 단편적 언급과 해당 유물이 수록된 일부 도록의 설명이 있었을 뿐이다. 한국광복군의 복식을 다룬 김정민<sup>1)</sup>의 연구에서는 당시 언론기사<sup>2)</sup>를

1) 김정민, “한국광복군 군복과 군용장구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 김정민, “한국광복군의 군복”, 『광복 75주년 및 개관 33주년 기념 국제학술심포지엄 발표자료집』(2020):11-27.

2) 李時憲, “治安團體 書類 보관 해줬다”, 『동아일보』(1972년 1월 15일) ; “市廳 金庫서 발견된 書類 國內 光復軍別動隊의 것”, 『경향신문』(1972년 1월 15일).

인용하면서 광복군예비대를 “중국에서 활동하던 한국광복군의 귀국을 돕고, 국내 치안 유지를 위해 국내에서 창설된 조직으로 추정된다.”고 언급하였다. 광복군예비대가 해방 전 한국광복군의 국내 지대로서 建軍 활동에 참여하고자 한 단체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吳光鮮(1896~1967) 주도의 광복군 국내지대의 성립 배경과 과정, 구체적 조직 및 활동·해체 과정을 분석한 김민호<sup>3)</sup>의 연구를 일부 참조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및 한국광복군을 지지하는 세력으로서 해방정국기<sup>4)</sup>에 국내에 창설, 운영되었던 광복군예비대의 성격에 관하여 밝히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1972년 서울시청 금고 개방의 정황을 상세히 취재한 언론 기사와 당시 서울시 공보실에서 촬영한 사진 자료에 주목하여 이를 상세히 분석하는 한편, 그동안 미공개 또는 그 성격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던 육군박물관 소장의 광복군예비대 유물을 정리, 소개하였다. 이와 같은 작업을 바탕으로 광복군예비대의 창설과정 및 조직구성, 운영 실태를 분석하였으며 대한민국 임시정부 및 한국광복군과의 연관성을 고찰하였다. 아울러 1972년 언론기사 및 사진에 제시된 발견 자료와 육군박물관 소장 유물 목록의 비교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서울시청 금고 발견 유물에 대한 현전 상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3) 김민호, “한국광복군 국내지대의 결성과 활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9호 (2014):187-225.

4) 일제의 패망과 해방 → 미·소군정의 실시 → 좌우합작운동 및 통일민족국가 건설운동 → 남북한 정부 수립 → 분단체제의 도래로 이어지는 1945년 8월 15일부터 1948년 8월 15일까지를 가리킨다(한상도, “해방정국기 민족문화 재건 논의의 내용과 성격”, 『사학연구』 89호(2008):121).

## 2. 韓國光復軍豫備隊 관련 사료 및 陸軍博物館 소장 유물 분석

### 가. 사료 분석

〈표 1〉은 광복군예비대와 관련한 언론기사의 목록과 개요를 보도 일자 순으로 정리한 것이다.

〈표 1〉 광복군예비대 관련 언론기사 목록 및 개요

연번	일자	매체	기사명	개요
1	1945.12.16.	조선일보	光復軍豫備隊本部移轉	1945.9.6에 창설한 韓國光復軍豫備隊와 同 協贊會에 관한 설명(소재지 이동). 光復軍豫備隊協贊會 소속인원 명단 제시
2	1945.12.16.	중앙신문	光復豫備隊協贊會移轉	韓國光復軍豫備隊協贊會가 古市町 19로 이전한다는 기사
3	1945.12.18.	동아일보	光復軍協贊會移轉	韓國光復軍豫備隊協贊會를 古市町 19番地로 이동한다는 기사
4	1945.12.18.	신조선보	韓國光復軍豫備隊協贊會	9월 6일에 설치된 광복군예비대 훈련소의 후원단체인 동 협찬회가 시내 古市町 19로 이전한다는 기사. 협찬회 일부 간부의 명단 수록
5	1946.2.23.	자유신문	敦岩莊 경비대 해산	敦岩莊, 竹添町(京橋莊, 韓美호텔을 임시 경비하던 광복군예비대 약 100명을 1946년 2월 20일부로 해산하고 정규경찰관을 배치하였다는 보도
6	1948.7.18.	중앙신문	金如山氏出監	前光復軍前衛隊長 金如山이 감옥에서 출감함을 보도
7	1972.1.14.	매일경제	20年만에 열린 市廳金庫 속에 光復軍 서류 등 貫한 資料	20여년 만에 열린 서울시청 금고에서 光復軍 관계 서류와 물품들이 발견되었으며 40년에서 47년에 걸쳐 기록된 문서들이 대부분이라고 보도. 상세 물품목록을 포함

연번	일자	매체	기사명	개 요
8	1972.1.14.	동아일보	(26年 間 密閉되었던 서울市廳 金庫속서) 光復軍장비·書類 발견	초대 서울시장이었던 李範昇의 인터뷰를 전하며 서울시청 창고에서 광복군 관계물 품이 나온 것을 보도. 물품 목록 포함
9	1972.1.14.	조선일보	26年만에 열여 본 서울市庁 金庫서 光復軍史料 등 발견	서울시청 창고에서 광복군 관계물품이 나 온 것을 전하며 금고 개방 과정을 상세히 보도. 일부 물품에 대한 서술 포함
10	1972.1.14.	경향신문	光復軍文書 등 발견	광복군 관계의 각종 문서 등이 들은 7개 의 개방이 발견된 사실과 금고 개방 과정 을 보도. 일부 물품 목록 포함
11	1972.1.14.	중앙일보	광복군 관계 書類 등 발견	서울시청 창고에서 광복군 물품이 발견되 었다고 보도. 상세 물품 목록 포함.
12	1972.1.15.	동아일보	治安團體 書類 보관 해냈다	서울시청 금고에서 발견된 광복군 관계 물품들에 대한 관련 인물들(李範奭, 張俊 河, 金容勳, 金如山)의 증언을 수록
13	1972.1.15.	조선일보	光復軍 國內支隊것	서울시청 금고에서 발견된 물품들과 관련 하여 光復軍豫備隊 前衛隊 사령이었던 金如山的 인터뷰를 수록
14	1972.1.15.	경향신문	市廳 金庫서 발견된 書類 國內 光復軍別動隊의 것	光復軍豫備隊 관계자 金容勳의 인터뷰 를 수록

제2장에서는 <표 1>에서 제시한 14건의 언론 기사 중 1972년의 서울시청 금고 개방 관련 보도 기사와 함께 당시 서울시 공보부에서 촬영한 사진들을 종합 검토하여 어떠한 과정을 거쳐 서울시청 금고를 열게 되었는지, 당시 발견된 물품들의 목록을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 광복군예비대 관련 인물들은 어떠한 증언을 하고 있는지 등에 관하여 상세히 분석하겠다.<sup>5)</sup>

### 1) 금고 개방 과정

서울시청 본관 4층 복도 북쪽의 12호 창고내 벽에 위치한 한 금

5) 앞 6건의 기사에 대해서는 제3장에서 인용하여 설명하겠다.

고는 일제시대에 설치된 이후 열쇠가 없어 잠겨둔 채 방치되어 있었다. 이 금고는 1971년 12월부터 개시된 청내 창고에 대한 일제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개방이 결정되었으며 금고의 크기는 가로 2m, 세로 1m, 높이 2.2m였다.<sup>6)</sup> 동월 12일 서울시 당국은 금고 제조 전문기술자에 의뢰하여 오후 4시부터 개문 작업을 시작, 13일 오전 10시 반 문을 용접기로 절단하는데 성공하였다. 금고 안에는 서류, 책자 등과 함께 폭발성 물질이 담긴 것으로 보이는 깡통 등이 발견되어 경찰관 및 관계자들을 입회 시킨 후 물품 정리를 계속 하였으나 혹시 사고가 날 것을 우려하여 일단 봉인한 후<sup>7)</sup> 같은 날 밤 11시 반부터 작업을 속행하여 14일 새벽 4시까지 물품 정리를 완료하였다.<sup>8)</sup> 서울시는 발견 물품의 목록을 정리하여 문화공보부에 조사를 의뢰하였으며 문화재 관계관들을 통한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진 후 발견 물품들은 문화공보부 및 군 기관에 이관되었다.<sup>9)</sup>

6) “20年 만에 열린 市廳金庫 속에 光復軍 서류 등 貴한 資料”, 『매일경제』(1972년 1월 14일).

7) 폭발물로 보이는 깡통은 육군 6관구 폭발물 처리반에 의뢰하여 검사 처리하였다(安鍾益, “26年 만에 열어 본 서울市庁 金庫서 光復軍史料 등 발견”, 『조선일보』(1972년 1월 14일)).

8) “26年 間 密閉되었던 서울市廳 金庫속서 光復軍장비·書類발견”, 『동아일보』(1972년 1월 14일).

금고 개방 당시 서울시청 관리과 직원 손황옥, 남봉우 및 경찰관 1명이 입회하였으며 금고기술자는 신관금고제작소 소속으로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고 한국은행 대구 지점 금고를 설치한 바 있는 베테랑이었다고 전한다. 처음 금고를 조사한 이 기술자는 잘못 파괴했다가는 바로 아래층인 회의실 천장까지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 일단 물러갔다가 13일 아침부터 용접기를 이용하여 금고를 절단했다(安鍾益, 위의 기사, 『조선일보』(1972년 1월 14일)).

9) 安鍾益, 위의 기사, 『조선일보』(1972년 1월 14일) ; 앞의 기사, 『동아일보』(1972년 1월 14일) ; 앞의 기사, 매일경제(1972년 1월 14일).

〈사진 1〉 서울시청 12호 창고내 금고의 개방과 조사 전경

<사진 1-1>



<사진 1-2>



<사진 1-3>



<사진 1-4>



\* 출처 : 서울기록원(<https://archives.seoul.go.kr>)<sup>10)</sup>

금고가 설치된 서울시청 4층 북쪽의 12호 창고는 해방 전에는 京城府尹의 방(1972년 당시 시장실은 3층)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府尹 전용인 것으로 알려져 왔다.<sup>11)</sup> 1948년 정부 수립 후 서

---

10) 출처로 제시된 웹사이트에 서울시청 금고 개방 및 광복군 유물 발견과 관련한 총 42장의 사진이 업로드 되어 있으며, 문서의 제목은 “서울시청, 광복군 금고 발견” 이다(생산자: 서울특별시 공보실, 생산일: 1972.1.14.). 이 사진들 외에 당시 보도된 일부 신문기사 지면에 금고 개방 모습을 촬영한 사진들이 게재되었다.

11) 서울시청에서 일제시대부터 1972년 당시까지 근무해 왔던 고참 직원인 박鍾舜(당시 보건1과장)은 본관 4층 금고가 있던 곳은 京城府 시절 가미다나(神棚: 집안에 신을 모셔 놓은 龕室)가 있었던 곳이라고 증언하였다(앞의 기사, 『동아일보』(1972년 1월 15일)).

울시청이 들어선 뒤에는 한 번도 12호 창고의 금고를 열어본 적이 없었으며 해방 후부터 1948년 사이에 개방된 때가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으나, 발견물 가운데 1946년(단기 4279년) 발간 잡지인 『大潮』가 끼여 있는 것으로 보아 李範昇(1887~1976)<sup>12)</sup>이 京城府尹으로 재직하던 시절(1945.10.~1946.5.)에 열어본 것으로 당시 기사는 추측하고 있다.<sup>13)</sup>

해방 후 京城府尹 李範昇은 금고의 물건들이 있다는 비서의 보고를 받고 “중요서류이니 보관해 두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하며 “일본인들이 광복군들로부터 압수한 것인지 해방 후 광복군들이 시청 일부를 사용해 오다 보관한 것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당시 각 정당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고 좌익계 세력 등이 발호하여 어수선하였기 때문에 이를 정리할 경황이 없었다.”고 증언하였다.<sup>14)</sup>

## 2) 발견 물품의 목록과 사진

언론기사에 수록된 서울시청 금고 발견 자료를 필자의 구분 기준에 따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sup>15)</sup> 같은 물품으로 생각되는 경우 동일 행에 배치하였는데, 세부 묘사가 기사마다 조금씩 다르다.

12) 금고 개방 당시 언론기사에는 공통적으로 李範昇을 초대 서울시장으로 소개하고 있으나, 李範昇이 재직하던 시기의 서울 지역은 京畿道 京城府였고 李範昇의 직책은 京城府尹이었다. 京城府가 서울시로 승격된 것은 1946년 9월 28일이며 초대 시장은 金炯敏(재임 1946.9.28.~1948.12.14.)이다.

13) 앞의 기사, 『조선일보』(1972년 1월 14일).

14) 앞의 기사, 『동아일보』(1972년 1월 14일).

15) 이후 <표 2>에 정리한 언론기사 수록의 자료를 언급하는 경우 연번에 따라 기사 ①, 기사②, ……; 기사④과 같은 방법으로 표기하였다.

〈표 2〉 언론기사에 수록된 서울시청 12호 참고내 금고 발견 자료

연번	구분	『매일경제』 (1972년 1월 14일)	『동아일보』 (1972년 1월 14일)	『조선일보』 (1972년 1월 14일)	『경향신문』 (1972년 1월 14일)	『중앙일보』 (1972년 1월 14일)
1	의복류	군복상의 2, 하의 1		군복	광복군 군복2	
2		전투모5, 정모1		군모	군모6	
3	직인류	광복군예비대총본부 도장		직인(손바닥만한 것과 그보다 작은 것 등 2개)	광복군예비대총본부 인장	
4		광복군예비대협찬회 도장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예비군 후원회 직인			
5	사진류	北京 사진첩				
6		인물사진 57장				
7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원 환송회 사진 2장
8	예술품	金九선생 친필 족자 1개	김구씨 친필		이순신 장군의 시를 쓴 김구 선생의 친필 휘호	金九선생 친필
9	무기류	구식 소총 탄알 10여발		38식 소총용으로 보이는 탄환 몇 발	38식 소총 실탄 99발	
10		TNT 1개	수류탄 1개, 2중탄 1개		소이탄 6개	
11		단도 1개	단검 1개	군도(손잡이를 붕대로 감은 길이 30cm 가량의 것)	단검 1개	
12				분무식 모기양동 처럼 생긴 폭발물로 보이는 강동 2개	화약이 든 강동 2개	
13	화폐류	조선은행권 2천 7백4원	조선은행권 2,740원			朝鮮은행권 2천 7백49원
14		만주은행권 81원	만주은행권 81원		광복군이 모금한 것으로 보이는 만주은행권 67,003원 5전	滿州은행권 81원
15		일본은행권 66,957원 5전	일본은행권 84,173원 5전	일본지폐 다발(1백엔짜리, 10엔짜리 등 약 5천엔)		日本銀行권 66,174원 5전

연 번	구분	『매일경제』 (1972년 1월 14일)	『동아일보』 (1972년 1월 14일)	『조선일보』 (1972년 1월 14일)	『경향신문』 (1972년 1월 14일)	『중앙일보』 (1972년 1월 14일)
16		수표책 2권(조선 식산은행 45년 12월)				
17	약품류	종류미상의 화공약품	강삼재 2통 등 약품류			
18	서책류	각 정당 단체 해설 1권(45년 여론사 출판)				각 정당 단체 해설(단기4278년 발행)
19				『대조』 잡지(단기 4279년 7월)		1946년의 한국 잡지
20		우리정부 27년 약사 1권				우리정부 27년 역사
21			한국광복약사			한국광복군약사
22		대한민국 임시정 부의 내용(책 1권 민심사간)	대한민국 임시정부 내용 책(민심사간)			大韓民國 임시 정부의 내용 책 1권
23						噫! 國壽(민용연 구조사회 발행, 소화6년 11월 22일)
24	문서류	임시정부한국환 영대회 계획서 1장				임시정부환영대회 보고서
25		대한민국개선환 영 대회약도				大韓民國 임시정 부 개선 환 영 대 회 약도 1장
26		군무부장 金元 鳳보고서 金元 鳳이 김구임시 정부 주석으로 보내는 광복군 군내 제2지대 설치에 관한 공문				報告書(軍務副長 金元鳳)
27		광복군 제2지대 편성 관계 문건				
28		대한국군준비총 사령부 공고문 (대한민국 임시 정부 국무위원 주석 金九)	대한국군준비총사 령부 공고문			
29		李靑天(白山)				白山 李靑天 명

연 번	구분	『매일경제』 (1972년 1월 14일)	『동아일보』 (1972년 1월 14일)	『조선일보』 (1972년 1월 14일)	『경향신문』 (1972년 1월 14일)	『중앙일보』 (1972년 1월 14일)
		광복군 총사령이 金承學씨에게 보내는 명함메모				함 1장(백산이 김승학씨에게 보내는 명함)
30		한국광복군개성 원호회의 경무관계 서류철				
31		한국광복군 예비 군대 발행 증명서				신분증(한국광복 군예비대협찬회) 1장
32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예비대 사령장 5장				金如山 명의 발행 사령장 5장
33		昭和 7년 京城 지도 37장				소화 7년도 지도 37장
34		김윤식씨 서류 8장				
35		금전출납부				
36						中華民國 공채증 1장
37						전단 5여라 동포여 장
38		서류 보존된기방 개			서류 보존된기방 개	
39	가타류					우표1백40장
40		신조선보(신문2장)				

1972년 당시 서울특별시 공보실에서 촬영한 사진에서 발견된 물품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중 일부를 추려 언론기사에 수록된 물품의 실제 모습을 확인해보는 한편 그 외 사진상 확인 가능한 자료의 모습에 대해서도 서술하도록 하겠다.

〈사진 2〉 최초 발견 당시 금고내 유물 적재 모습

<사진 2-1>



<사진 2-2>



<사진 2-3>



<사진 2-4>



\* 출처 : 서울기록원(<https://archives.seoul.go.kr>)

〈사진 2〉는 금고 개방 및 유물 최초 발견 후 촬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유물들은 나무 테이블 위에 놓여져 있었으며 개어진 군복 및 군모, 다이얼 금고, 보자기에 포장된 물품, 의류 등이 담긴 가죽가방, 공책 및 문서철, 일본 미츠비시(三菱) 문장이 있는 상자, 그리고 테이블 하단에 무언가가 담긴 긴 원통형 및 나무상자가 보인다.

〈사진 3〉 금고 반출 후 유물 모습

<사진 3-1>



<사진 3-2>



\* 출처 : 서울기록원(<https://archives.seoul.go.kr>)

〈사진 3〉은 금고 반출 직후 유물들을 촬영한 것으로 보이며 군화를 신은 인물들은 군 관계자로 생각된다. 〈사진 2〉에 보이는 긴 원통형 및 나무 상자를 개봉하였고, 내부에는 언론기사에서 언급된 폭발물 등(기사⑨ · ⑩ · ⑫)이 들어 있었던 것이 확인되며 단도(기사⑪)의 모습도 보인다.

〈사진 4〉 서울시청 금고 발견 군복·군모 및 완장 모습

<사진 4-1>



<사진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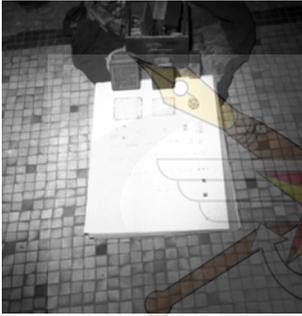


\* 출처 : 서울기록원(<https://archives.seoul.go.kr>)

〈사진 4〉에서는 광복군예비대의 군복 및 군모, 완장의 발견 당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기사①·②). 어깨와 좌측 팔 부분에 계급장이 부착된 최소 2점의 상의와 1점의 하의, 3점의 완장<sup>16)</sup>이 보인다. 이전의 논의에서는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된 한국광복군 군복 상하의에 대하여 군모·완장과 함께 입수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었으나,<sup>17)</sup> 〈사진 4〉를 통해 1972년 서울시청 금고 개방 당시 함께 발견 및 일괄 수습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사진 5〉 서울시청 금고내 기타 발견 물품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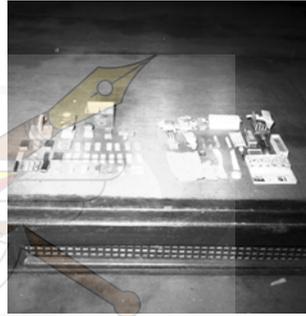
<사진 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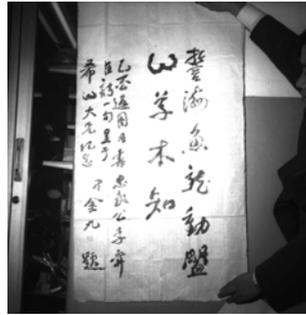
<사진 5-3>



<사진 5-2>



<사진 5-4>



\* 출처 : 서울기록원(<https://archives.seoul.go.kr>)

16) 완장에 표시된 ‘在中大韓民國臨時政府/光復軍豫備隊/(실선 1~2줄)’ 내용 중 일부를 확인할 수 있다.

17) 문화재청, “2010년도 문화재위원회(근대문화재분과) 제2차 회의록”(2010년 4월 1일):30.

〈사진 5-1〉에서는 광복군예비대에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장 및 보관함과 인장을 1顆씩 날인한 종이가 보인다(기사③·④). 〈사진 5-2〉의 좌측은 그러한 인장들을 함에서 꺼내 늘어 놓은 것으로 보이며 우측은 주사기, 약품류 등으로 확인된다(기사 ⑰). 〈사진 5-3〉은 상단에 문서와 도서들이 적재되어 있으며 하단에는 광복군예비대 소속으로 생각되는 인물들의 개인 사진과 군대 도열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이 확인된다(기사⑤·⑥·⑦). 〈그림 5-4〉는 金九의 친필 휘호(기사⑧)이다.<sup>18)</sup>

〈사진 6〉 서울시청 금고내 기타 발견 물품2

<사진 6-1>



<사진 6-2>



<사진 6-3>



<사진 6-4>



\* 출처 : 서울기록원(<https://archives.seoul.go.kr>)

18)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각주 60을 참조.

〈사진 6-1〉은 〈사진 2〉에서 보이는 다이얼 금고를 개방한 것으로, 밖으로 꺼내진 물품은 기사⑬~⑯의 지폐 다발로 보인다. 〈사진 6-2〉는 기사⑳의 지도, 〈사진 6-3〉은 기사㉑의 가죽가방, 〈사진 6-4〉는 기사㉒~㉓의 서책류<sup>19)</sup>로 추정되는 물품이 확인된다.

〈사진 7〉 서울시청 금고내 기타 발견 물품3

<사진 7-1>



<사진 7-2>



<사진 7-3>



<사진 7-4>



\* 출처 : 서울기록원(<https://archives.seoul.go.kr>)

〈사진 7-1〉, 〈사진 7-2〉는 기사 ㉔~㉗의 문서류, 〈사진 7-3〉은 기사㉘의 우표, 〈사진 7-4〉는 앞서 언급한 군복과 함께 다수의 군모 및 기타 의복류, 로프로 추정되는 물품들이 확인된다.

19) 『大潮』 잡지(기사㉑)의 경우 제목이 명확히 확인된다.

이상과 같이 1972년 서울시청 금고 개방 당시 촬영한 사진들을 살펴본 결과 <표 2>의 언론기사 수록 발견 물품으로 추정되는 자료들의 실제 모습이 상당수 보이고 있으며, 기사에 수록되지 않은 물품들도 적지 않게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3) 관련 인물들의 증언

한국광복군 참모장 및 제2지대장을 역임한 李範奭(1900~1972)은 1946년 1월 吳光鮮을 지대장으로 광복군 국내지대를 편성케 하였으나 그 후 대동청년단에 흡수되었다고 말하면서, 당시 광복군은 군정 법령 5호에 의해 군사활동이 일체 금지된 1946년 6월에 입국했으므로 금고 안에서 발견된 물품들은 모두 국내에서 조직된 치안단체의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한국광복군 제2지대 대원이었던 張俊河(1918~1975)는 1945년 11월 23일에 吳光鮮이 金九의 지시에 따라 귀국하여 국내지대를 만들었고 대원들은 모두 국내 청년이었다고 증언하였다. 당시 광복군 국내지대, 기타 국군준비대 등 각종 단체들이 많았는데, 광복군예비대는 金九와 가깝게 지내던 金承學씨를 배경으로 하여 조직된 것 같으며 당시 국내지대 요원은 100명 정도로 환국한 임정요인들의 경호역할을 맡았다고 언급하였다.<sup>20)</sup>

관계 인물의 인터뷰의 중 가장 주목되는 것은 광복군예비대의 창설과 활동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金容勳, 金如山의 증언이다. 당시의 보도 기사 간 증언 내용이 다소 차이가 있어 각각을 분리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金容勳(1972년 당시 64세)이 『동아일보』에 밝힌 내용은 다음과 같다.<sup>21)</sup> 광복군예비대는 1945년 9월 유진식의 주동으로 大田에서 창설, 공식 명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예비대’였다. 유진식은

20) 앞의 기사, 『동아일보』(1972년 1월 15일).

21) 앞의 기사, 『동아일보』(1972년 1월 15일).

일제강점기 조선 총독<sup>22)</sup> 암살 등의 활동을 했던 金九 휘하의 한인에 국단 동지회원이었으며 광복군예비대 창설 당시 총사령은 김형동이였다. 이 광복군예비대는 창설 후 두 달 뒤 서울로 옮겨 후암동 병무청 자리를 본부로 사용하다가 다시 남대문 경찰서 부근으로 위치를 옮겨 임시정부 한국 환영 준비와 국내 치안유지를 위해 힘썼다.

金容勳<sup>23)</sup>이 『조선일보』에 밝힌 내용은 다음과 같다.<sup>24)</sup> 당시 서울의 치안 확보를 위해 서울시청에 (광복군예비대의) 파견대가 주둔, 별관 일부와 본관 2층 회의실을 사용하였는데 1947년 광복군예비대 협찬회에서 횡령사건이 일어나 관계 서류를 압수 시청파견대에 보관시킨 것이 금고 안에서 발견된 서류들인 것 같다고 증언하였다.

金容勳이 『경향신문』에 밝힌 내용은 다음과 같다.<sup>25)</sup> 금고 안에서 발견된 물건들은 광복군예비대 파견대와 광복군(예비대)협찬회에서 맡긴 물건들로 1947년 1월 광복군예비대협찬회에서 문제가 생겨 협찬금 관계 서류를 서울시청 파견대에 가져다 보관시켰는데, 당시 보관책임자인 宋在興으로부터 서울시에서 가장 안전한 금고에 보관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한다.

광복군예비대는 유진식(일명 유진만)을 중심으로 金容勳과 權五勳, 韓康鉉 등이 1945년 9월 1일 귀국하지 않은 광복군과 임정요인들의 한국 준비 등을 위해 大田에서 결성되었다. 광복군예비대 창설의 주역인 유진식은 尹奉吉, 李奉昌 등 의사 등을 낸 한국애국단 회원으로 조선 총독<sup>26)</sup>을 암살하려다 무기형을 선고 받고 大田 형무

22) 당시 다수의 언론기사에서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 총독이라고 서술하고 있으나 俞鎮萬(俞鎮弼)이 암살을 기도한 조선 총독은 우가키 가즈시게(宇垣一成)이다.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에 대한 암살 사건은 1911년 일제가 항일세력에 대한 통제를 목적으로 조선총독 암살사건을 조작, 105명의 애국지사를 투옥한 사건으로 '105인 사건'으로도 불린다.

23) 기사에 광복군 예비군 창설멤버로 부사령을 역임한 것으로 소개되었다.

24) 金英鎔, “光復軍 國內支隊誌”, 『조선일보』(1972년 1월 15일).

25) “光復軍文書 등 발견”, 『경향신문』(1972년 1월 14일).

26) 각주 22 참조.

소에서 복역 중 해방과 더불어 출감한 독립투사였으며 유진식이 창설한 공식명은 ‘在中大韓民國臨時政府 光復軍豫備隊’였다.

광복군예비대는 1945년 11월 大田에서 서울 용산구 후암동 당시 병무청사로 임시본부를 옮겼으며 예비대를 위한 협찬회가 결성되었다. 그 후 1946년 5월 본부를 다시 서울역 앞 남대문서 자리에 있던 일신빌딩으로 옮겼고 지방조직 확대와 金九 주석 등 上海 임정 요인 환국준비에 앞장섰다.<sup>27)</sup>

광복군예비대의 대원 숫자는 8,500명 가량으로 총사령은 중국보정군관학교출신 김형동이었고 부사령은 金容勳 본인이 맡았다. 그러던 중 좌·우익 세력이 서로 충돌, 서울의 치안이 불안해지자 예비대는 시청 2층 회의실을 빌어 사용했으며 이 장소에 광복군예비대의 관계 문건과 예비대협찬회의 장부 등을 보관하였다고 한다. 金容勳은 “발견된 것이 그때 예비대에서 보관했던 관계서류들일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년이 지난 오늘 당시의 동지들 이름이라도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발견된 서류의 공개를 아쉬워하였다.<sup>28)</sup>

金如山(1972년 당시 58세)이 『동아일보』에 밝힌 내용은 다음과 같다.<sup>29)</sup> 광복군예비대는 전위대에서 3개 중대 규모로 1946년 2월 (서울) 창신동 강문중학교<sup>30)</sup> 자리에 본부를 두고 발족되었다. 당시 서울운동장에서 신탁통치 환영대회가 열리려 하자 이를 분산시키기 위해 총격전까지 벌어지고 관련 인물들이 체포, 투옥되었는데, 그때 예비대에서 쓰던 비품과 문서들이 압수되어 서울시청으로 옮겨

27) 1945년 6월은 이미 임시정부 요인들이 환국한 시기로, 증언 내용에 일부 착오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28) 이와 같은 金容勳의 언급을 고려하면 발견 당시 서류의 공개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9) 앞의 기사, 『동아일보』(1972년 1월 15일).

30) 인용기사에 광문중학교로 기술되어 있는 것을 교정하였다(이하 동일). 강문중학교는 1964년 4월 30일에 창신동 교사에서 안암동 교사로 이전하였으며 1970년 3월 1일에 교명을 용문중학교로 변경하였다(“용문중학교 학교연혁”, (2022년 5월 5일 접속), <https://yongmoon.sen.ms.kr/16439/subMenu.do>)

졌을지도 모른다고 金如山은 증언하였다. 또한 금고에서 발견된 토지대장, 현금 문서<sup>31)</sup> 등은 일제시대 子爵을 지낸 李豐漢(1885~1950) 등이 기증한 것 같다고 언급하였다.

金如山<sup>32)</sup>이 『조선일보』에 밝힌 내용은 다음과 같다.<sup>33)</sup> 금고 안의 물품들은 1945년 9월~1946년 2월까지 서울에 있었던 광복군 國內支隊인 광복군예비대의 것으로, 金如山 본인은 1945년 9월 만주 興京에서 광복군 총사령 李靑天의 명에 따라 ‘대한건국군 전위대 사령부 부사령’이란 비밀 직책을 받고 귀국하여 서울 창신동 현 용문중학교 자리에 사령부를 설치하고 건국군 창설활동을 벌였다. 당시 존 하지(John Reed Hodge, 1893~1963)가 사령관으로 있었던 미군정이 국방경비대 창설을 반대하는 자신을 투옥하였고<sup>34)</sup> 1948년 출소해 보니(실제는 1947년 7월 출소)<sup>35)</sup> 사령부에 있던 서류·장비·재산 일체가 없어졌으며, 어떻게 서울 시청 금고 안에 보관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고 하였다.

#### 나. 陸軍博物館 소장 광복군예비대 유물 분석

육군박물관 소장 광복군예비대 관련 유물을 필자의 구분대로 정리하여 <표 3>과 같이 제시하였다.<sup>36)</sup> 그동안 육군박물관 소장 광복

31) 언론기사의 발견 자료 목록(<표 2>)에는 언급되지 않았다.

32) 인터뷰 당시 일본 연합통신사 한국지사에 근무하였으며, 광복군 국내지대 전위대 사령으로 기사에 소개되었다.

33) 앞의 기사, 『조선일보』(1972년 1월 15일).

34) 위 『동아일보』 기사에서는 신탁통치반대 운동때문에 투옥되었다고 하였다.

35) 당시 언론기사는 “전광복군 전위대장 김여산(前光復軍前衛隊長金如山)씨는 작년 일월에 무기 불법 소지 관계로 체포되어 5년반의 징역을 받고 서대문형무소에서 복역중이던 바 얼마 전 감형으로 출옥하였다.”라고 전하고 있다.(『金如山氏出監』, 『중앙신문』(1947년 7월 18일))

36) 이후 <표 3>의 자료를 언급하는 경우 표의 연번에 따라 육박①, 육박②, ……., 육박⑩와 같은 방식으로 표기하였다.

군예비대 유물은 광복군예비대 군복 상하의 1벌(국가등록문화재, 육박①), 완장 및 군모 각 1점만이 공개된 바 있으며, <표 3>의 목록은 이들 유물을 포함하여 최근 조사를 통해 확인된 관련 유물을 정리한 것이다. <표 3>을 살펴보면 의복류와 문서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1972년 서울시청 금고 개방 당시 촬영된 사진에서 확인되는 유물이 다수 있다. 각 개별 유물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부록]에 서술하였다.

<표 3> 육군박물관 소장 광복군예비대 관련 유물 목록

연번	구분	유물명	수량	개요
1	의복류	군복 상·하의A	5	국가등록문화재. 외투, 셔츠, 하의 각 1점, 건장 2점(3줄 및 2줄 각 1점)
2		군복 상·하의B	5	상의, 셔츠, 하의 각 1점, 칼라 2점
3		帽標	4	군모 부착 건 제외한 모표로 金屬絲(골드웍) 자수 모표 3점, 염색실 모표 1점(파손)
4		군모	10	개리슨모 9점(金屬絲(골드웍) 자수 모표 부착 1점, 염색실 모표 부착 8점), 정모 1점(모표 없음)
5		완장(光復軍豫備隊)	4	표기내용: 在中大韓民國臨時政府 / 光復軍豫備隊. 하단 적색선 2줄 2점, 하단 적색선 1줄 2점
6		완장(朝鮮學徒隊 旭醫專, COREAN STUDENTS ASSOCIATION)	2	조선학도대의 완장으로 한자 표기된 것과, 영문 표기된 것 각 1점
7		계급장(건장)	7	군복A 상의 부착 2점 제외. 2줄 계급장 5점, 3줄 계급장 2점
8	사진류	광복군예비대 사진	1	부대 도열 사진(光復軍豫備隊忠南支部)
9	약품류	의료기구, 약품류	32	주사기 3, 주사기바늘 3, 소형칼 1, 소형 가위 1, 약품류 등 22, 케이스 2
10	문서류	辭令(大韓光復軍前衛隊總本部)	4	崔鍾烈(陸軍大尉), 蔡成鉉(陸軍軍曹), 李禎雨(陸軍少佐), 閔景大(陸軍大尉). 大韓民國 27년(1946년) 1월 1일. 大韓光復軍前衛隊總本部 隊長 金如山

연번	구분	유물명	수량	개요
11		문서철	1	3건의 문서 합철: (國語制定) 學校教 鍊號令, 檄文, 우리政府二十七年略史
12		光復會復活取旨及沿革	1	1945년에 작성된 光復會 조직의 결성 과정과 연혁 등을 수록한 문서
13		光復軍豫備隊訓練所 모집전단	1	광복군예비대 대원을 모집하는 전단. 신청 주소: 大田府 大東町, 前師範學 校校舍
14		臨時政府當面政策	1	대한민국 임시정부 主席 金九 명의로 문서. 1945년 9월 3일자. 동일 내용의 인쇄본을 필사한 문서로 추정
15		신분증명서	2	증명대상자(사기): 運輸課長 金法龍 (1945.9.6.), 隊長 盧萬善(1946.1.21.). 盧萬善 증명서의 경우 예비대군복 상의를 착장한 인물 사진이 부착됨
16		韓國光復軍豫備隊 명단	1	韓國光復軍豫備隊總本部, 同 協贊會, 同 協贊會參議院의 구성원 명단
17		韓國光復軍豫備隊協贊會 取旨書 및 協贊會 명단	1	광복군예비대협찬회의 설립 취지 및 협찬회 구성원 명단 수록
18		將兵種別及臨時俸給 (口月俸斗算)表	1	광복군예비대 소속원의 계급과 계급별 급료를 필사한 문서
19		직인 날인 문서	1	大韓光復軍前衛隊總本部印, 韓國光復 軍豫備隊總本部印, 大韓民國臨時政府 光復軍豫備隊協贊會印 각 1顆가 날인된 문서
20		중대원 명단	2	1·2중대 소속대원의 성명을 필사한 문서
21		本部屬員宿舍配當	1	본부 소속 인원의 숙소 배정 내역을 필사한 문서
22		週間豫定表	1	1946년 1월 15일(월)부터 21일(일) 까지의 兵事部の 주간일정표
23		事業部署表	1	事業部署의 구성원 성명, 나이, 주소를 필사한 문서
24		中隊教鍊口令	3	護國隊訓練所에서 발행한 세로쓰기된 인쇄본으로 중대 단위 부대의 총 55 개의 제식 구령에 대하여 國漢文과 일본어로 표기

### 3. 韓國光復軍豫備隊의 성격

제3장에서는 제2장의 관련 사료 및 육군박물관 소장 유물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광복군예비대의 활동과 조직 구성, 대한민국 임시정부 및 한국광복군과의 연관성, 그리고 광복군예비대 유물의 현재 소재사항에 관한 분석을 시도하겠다.

#### 가. 광복군예비대의 활동과 구성

##### 1) 결성과 활동

광복군예비대는 조국 광복을 위해 해외에서 악전고투하며 노력해 온 대한민국 임시정부 및 한국광복군의 큰 뜻을 받들어 국내에 잔존한 倭賊을 소탕하고 일제의 강점 동안 무너진 민족정신을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忠勇한 將士’를 양성하려는 목적에서 창설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원들의 환국을 위해 힘을 보태는 한편 ‘豫備隊’의 양성을 통해 해방 후 한국광복군 중심의 建軍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하였다.<sup>37)</sup>

광복군예비대는 일본 총독 암살을 시도하는 등 독립운동 펼친 俞鎮萬(1912~1966)<sup>38)</sup>의 주도로 1945년 7월부터 동지를 규합하여 동년 9월 1일 大田에서 ‘在中大韓民國臨時政府 光復軍豫備隊’를 이름으

37) 육박① 중 「檄文」, 육박⑬, 육박⑰ 중 「國光復軍豫備隊協贊會取旨書」 등 참조

38) 異名은 俞鎮軾·俞叔海이다. 1932년 3월 上海 韓人青年黨의 공작에 따라 우키가즈시계(宇垣一成) 조선총독 주살 및 일제 기관 파괴를 위해 국내로 파견되어 활동하다가 被逮되어 징역 6년형을 선고 받았다.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되었다.(공훈전자사료관, “독립유공자 공적조서”(접속날짜 : 2022년 3월 28일), <https://e-gonghun.mpva.go.kr/user/ContribuReportDetailPopup.do?goTocode=0&mngNo=5663&kwd=%EC%9C%A0%EC%A7%84%EB%A7%8C>)

로 창설되었고, 당시 총사령은 金滄東(1895~1966)<sup>39)</sup>이었다. 동월 6일에는 ‘광복군예비대훈련소’를 창설하고 30여 개의 분소를 설치하여 군사훈련에 매진하였으며, 같은 날 광복군예비대를 후원하는 協贊會 역시 설립되었다. 11월에는 총본부를 1972년 기준으로 서울 용산구 후암동 병무청 자리로 옮겼다가<sup>40)</sup> 이듬해인 1946년 5월 다시 서울역 남대문경찰서 부근의 일신빌딩<sup>41)</sup>으로 이전하였다.<sup>42)</sup> 또한 서울의 치안 유지를 위해 서울시청에 파견대가 주둔하였다.<sup>43)</sup>

39) 異名은 金武東이다. 1915년 만주로 망명하여 1919년에 북로군정서에 가입하고 김좌진 등과 함께 활동했으며 1924년 중국 운남 육군강무학교를 졸업, 1925년 上海에서 조직된 철혈단 단장으로 활동하였다. 1991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공훈전자사료관, “독립유공자 공적조서”(접속날짜 : 2022년 3월 28일), <https://e-gonghun.mppva.go.kr/user/ContribuReportDetailPopup.do?goToCode=0&mngNo=8128&kwd=%EA%B9%80%EB%AC%B4%EB%8F%99>).

육박<sup>㉔</sup>에서도 예비대 總監에 金武東의 이름이 확인된다. 1972년 당시 인터뷰에 응한 金容勳은 자신이 副司수를 맡았다고 증언한 바 있으나(앞의 기사, 『경향신문』(1972년 1월 14일)), 육박<sup>㉔</sup>에는 副總監으로 俞鎮軾, 權五勳이 기재되어 있으며 기타 직책에도 金容勳의 이름은 확인되지 않는다.

40) 육박<sup>㉔</sup>에서는 1945년 11월 당시 광복군예비대 協贊會의 이전 주소를 漢城市 古市町 19番地로 기술하고 있고, 1945년 당시 언론보도(“光復軍豫備隊本部移轉”, 『조선일보』(1945년 12월 16일) ; “光復豫備隊協贊會移轉”, 『중앙신문』(1945년 12월 16일) ; “光復軍協贊會移轉”, 『동아일보』(1945년 12월 18일) ; “韓國光復軍豫備隊協贊會” 『신조선보』(1945년 12월 18일))는 예비대 총본부는 서울驛前으로, 同 協贊會는 서울시 古市町 19번지로 이동했다고 전하고 있다.

41) 현재 서울역 근교 남대문경찰서 부근에 일신빌딩을 이름으로 하는 건물이 소재해 있다.

42) 이 사실이 언급된 언론기사(앞의 기사, 『경향신문』(1972년 1월 15일))에는 재이전 시기를 1946년 5월로 밝히고 있으나 미군정청의 포고령 및 광복군 국내지대의 해체 시기 등을 고려하면 광복군예비대는 1946년 5월 이전에 이미 해체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사에서 밝힌 날짜는 재고가 필요하다.

43) 이 파견대가 광복군예비대 前衛隊로 생각되며, 金如山의 증언에 따르면 서울 창신동 강문중학교 자리에서 3개 중대 규모로 발족되었다고 한다. 1972년 당시 인터뷰에 응한 金如山은 자신이 광복군 총사령 李靑天으로부터 前衛隊 副司수에 임명되어 귀국, 전위대를 창설했다고 답변하였으나 그 외 사료에서 이러한 임명 사실이 확인된 바는 없다. 육박<sup>㉔</sup>에서 金如山이 전위대 사령으로 기재된 것이 확인된다. 金如山은 1930년대 잡지 『삼천리』의 기자로 활동하였으며(金如山, “歌姬의 藝術·戀愛生活”, 『삼천리』7(5), 1935 ; 金如山, “바리튼名歌手 金文輔氏”, 『삼천리』7(9), 1935) 광복군예비대 전위대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복역하다 1947년 출

1947년 1월<sup>44)</sup>에는 예비대 협찬회에서 재정과 관련한 문제가 생기기도 하였다. 서울로 옮겨 온 광복군예비대는 임시정부 요원들의 환국 환영준비를 하였고 환국 후에는 李承晚, 金九 등 임시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머물던 敦岩莊, 竹添町(京橋莊), 韓美호텔에 대한 경비를 수행하는 한편<sup>45)</sup> 국내 치안 유지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후 어느 시기인지는 확실치 않으나<sup>46)</sup> 좌·우익 세력의 충돌 혹은 서울운동장에서 열린 신탁통치 환영대회, 미군정의 사설군사단체 해산령 등을 원인으로 광복군예비대는 해체되었고 前衛隊의 본부로 사용되었던 서울시청 금고에 일부 물품이 잔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 2) 조직구성과 운영

육박<sup>⑬</sup>, 육박<sup>⑭</sup>의 내용을 종합하여 광복군예비대 總本部, 協贊會, 協贊會 參議院의 조직 구성을 정리하면 다음 <표 4>와 같다.<sup>47)</sup>

소하였다. 이후 1949년 당시 초대 국무총리였던 李範奭 등을 최고위원으로 하여 창립된 國民思想統一協會의 연락위원을 역임하고(“李國務總理를 爲始 國民思想統一協會를 創立”, 『경향신문』(1949년 9월 16일)) 1960, 70년대에 新民黨 등 소속 정치인(“柳彭山씨 걸어 誣告 등 맞고訴 김여산씨 등”, 『경향신문』(1971년 7월 3일)), 중앙대학교 총무처장(“서울市支部 結成 民主회복 國民會議”, 『동아일보』(1975년 3월 7일)) 등으로 활동하였으며 1985년 10월 6일 사망하였다(“부음”, 『동아일보』(1985년 10월 7일)) 1972년의 언론보도(앞의 기사, 『조선일보』(1972년 1월 15일))에 59세로 표기된 것으로 보아 출생연도는 대략 1913년 전후로 보인다.

44) 각주 42에서 밝힌 바와 같이 증언한 날짜의 오류 가능성이 있다.

45) “敦岩莊 경비대 해산”, 『자유신문』(1946년 2월 23일).

46) 미군정은 1946년 1월 14일 사설군사단체 해산령을 발표하고 다음날인 15일에 국방경비대를 창설하였다. 한국광복군 국내지대는 동년 3월 2일에 해체되어 대다수는 오광선이 결성한 광복청년회로 흡수되고 나머지 대원들은 해안경비대와 국방경비대로 편입되었다(김민호, “한국광복군 국내지대의 결성과 활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9호(2014):217). 이와 함께 敦岩莊 등 환국한 임시정부 요원들이 머물던 장소를 경비하던 광복군예비대 약 100명이 1946년 2월 20일에 해산되었다는 언론보도(위의 기사, 『자유신문』(1946년 2월 23일))를 감안했을 때 광복군예비대는 1946년 초 무렵 해체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47) 육박<sup>⑬</sup>에 비하여 육박<sup>⑭</sup>이 보다 상세하며 육박<sup>⑬</sup>에서는 협찬회 회장, 부회장 등이 공식인 경우가 있다. 앞의 기사, 『조선일보』(1945년 12월 16일)에서도 협찬회 소속 인원의 명단을 수록하고 있으나 육박<sup>⑭</sup>의 내용이 보다 상세하다.

(표 4) 光復軍豫備隊 및 유관 단체의 조직 구성

구분	직책	이름	참조 자료
總本部	總監	金武東	육박⑥
	副總監	俞鎮軾	육박⑥
	副總監	權五勳	육박⑥
	參謀長	金泰源	육박⑥
	高級參謀	韓康鉉	육박⑥
	兵務部長	俞海濟	육박⑥
	地方部長	林志洙	육박⑥
	經理部長	韓康鉉	육박⑥
	情報部長	黃龍岩	육박⑥
	軍醫部長	黃龍岩	육박⑥
秘書	俞日濟	육박⑥	
前衛隊	隊長	金如山	육박⑩
協贊會	顧問	曹成煥	육박⑦
	顧問	成周寔	육박⑦
	會長	趙素昂	육박⑦
	副會長	徐昌輝	육박⑦
	幹事長	林志洙	육박⑥, 육박⑦
	幹事(總務部長)	韓仁求	육박⑥, 육박⑦
	幹事(財務部長)	林志洙	육박⑥, 육박⑦
	幹事(事業部長)	洪鍾五	육박⑥, 육박⑦
	幹事(實踐部長)	曹斗煥	육박⑥, 육박⑦
	幹事(宣傳部長)	李載昊	육박⑥, 육박⑦
	幹事(外事部長)	李範用	육박⑥, 육박⑦
	幹事(調查部長)	鄭吉洙	육박⑦
	幹事	李秉龜	육박⑦
	贊司長	李載侃	육박⑦
	贊司	南相弘	육박⑦
	贊司	李洪來	육박⑦
	贊司	申弘均	육박⑦
	贊司	鄭鎮洪	육박⑦
	贊司	姜奇秀	육박⑦
	贊司	愼泰勳	육박⑦
	贊司	李勉淳	육박⑦
	贊司	金東赫	육박⑦
	贊司	李根洙	육박⑦
	贊司	梁鎮煥	육박⑦
	贊司	徐漢杓	육박⑦
秘書	林志洙	육박⑥	

구분	직책	이름	참조 자료
協贊會 參議院	參議院 院長(議長)	徐昌輝(鄭在夏)	육박⑩: 院長 徐昌輝 육박⑪: 議長 鄭在夏
	副院長(副議長)	李鍾英	육박⑩: 副院長 육박⑪: 副議長
	參議	李秉琦	육박⑪
	參議	徐昌輝	육박⑪
	參議	李相駿	육박⑪
	參議	宋台植	육박⑪
	參議	權泰勳	육박⑪

〈표 4〉의 광복군예비대 조직의 주요 인물을 살펴보면, 總本部 總監 金武東(金滙東)과 副總監 俞鎮軾(俞鎮萬)은 모두 독립운동가로 활동 내역은 앞서 서술하였다(각주 38·39 참조). 協贊會 顧問 曹成煥(1875~1948)은 上海 臨時政府 군무부차장, 北路軍政署 군사부장, 대한독립군 외교부장을 역임하고 1940년 시안(西安)에서의 한국 광복군 설립에 크게 이바지한 인물이며 同 顧問 成周寔(1891~1959)은 중국에서 항일운동을 전개하면서 충칭(重慶) 임시정부의 국무위원을 역임하였다. 協贊會 會長 趙素昂(1887~1958)은 1919년 3·1 민족항쟁 당시 조직된 大韓獨立義軍府의 부주석을 역임하고 1930년 金九, 安昌浩 등과 韓國獨立黨을 창설을 주도하였으며 임시정부의 이론전개와 외교문제를 거의 전담한 독립운동가이다.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 독립·광복 활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인물들이 광복군예비대의 지휘부 및 협찬회의 주요 보직을 맡았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임시정부 및 한국광복군과의 직간접적 연결성을 강화하려는 시도의 일환으로서 해석해 볼 수 있다. 한편 曹成煥과 趙素昂은 한국독립당 계열 인사이고, 충남 온양 출신의 成周寔은 민족혁명당 계열의 인물로 임시의정원 충청도 의원을 역임한 충청권을 대표하는 임시정부 인물이었다. 또한 광복군예비대 총본부의 總監 金武東(충남 공주)과 副總監 俞鎮軾(충남 연기), 그리고 〈표 4〉

의 참조 자료상에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광복군 예비대 창설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sup>48)</sup> 成樂緒(충남 공주)<sup>49)</sup> 역시 모두 충청 출신의 인사들이었다. 이를 감안하면 광복군예비대 및 동 협찬회의 주요 인물 구성은 광복군예비대의 창설지였던 충청 지역의 인사를 중심으로 일부 한국독립당계 인사가 참여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관련 기록이 부족하여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 외 구성원들 역시 주로 충청 지역 출신으로서 임시정부 및 한국광복군을 지지했던 국내 인물들이 중심이 됐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臨時政府領袖還國全國歡迎會 名簿(독립기념관 소장, 관리번호: 1-005229-000)에서는 <표 4>의 인물 중 徐昌輝, 李洪來, 宋台植(이상 警護部), 鄭吉洙(庶務部), 李鍾英(財務部), 李相駿(情報部)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sup>50)</sup>

광복군예비대의 대원수는 1972년 서울시청 금고 개방 당시 金容勳의 증언에 따르면 8,500명 가량이었다고 한다.<sup>51)</sup> 다만, 吳光鮮 휘하의 광복군 국내지대의 요원이 100명 정도였다는 張俊河의 증언과<sup>52)</sup> 환국한 임시정부 요원들의 경비를 담당한 광복군예비대의 규모가 약 100명이었던 언론 보도<sup>53)</sup> 등을 고려하면 이는 과장된 숫

48) 한국정경사, 『寫眞으로 본 國會二十年』(1968):429-430.

49) 1905~1988. 고향에서 한학을 배운 뒤 1925년 경성제국대학에 입학하여 예과를 수료, 1930년 동대학 법문학부 조선사학과를 졸업하였다. 같은 해 중앙불교전문학교 강사를 거쳐 1932년 이화여자전문학교 교수로 전임하여 유학 등을 가르쳤다. 1943년 대전으로 내려왔는데 그 동안 아버지 成普永이 마련한 독립군의 군자금을 인천부두에서 상해임시정부의 밀사에게 전달하였다. 광복 후 1948년 제헌국회의원에 당선되었고, 이후 충청남도지사, 충남대학교 총장서리, 성균관 이사장, 성균관장 등을 역임하였다.

50) 한자 성명을 대조한 것이며 동명이인일 가능성도 있다.

51) 앞의 기사, 『경향신문』(1972년 1월 14일).

52) 앞의 기사, 『동아일보』(1972년 1월 15일).

53) 앞의 기사, 『자유신문』(1946년 2월 23일). 다만, 이 인원수는 前衛隊 등 서울 소재 광복군예비대만의 규모일 수 있으며 서울 외 지역에 주둔한 부대가 추가로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자로 보인다. 육박⑧을 통해 당시 광복군예비대의 부대 단위 도열 모습을 일부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육군박물관 소장의 여러 관계 자료를 바탕으로 광복군예비대의 운영 현황을 제한적 범위에서 살펴볼 수 있다. 광복군예비대의 대원들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육박⑮)와, 각 직급에 보임하는 사령장(육박⑩)을 발행하였으며, 그러한 공식 문서에는 광복군예비대 총본부, 협찬회 및 전위대의 직인을 날인하였다(육박⑰). 또한 광복군예비대 대원을 위한 통일된 제식 군복·군모·帽標, 부대명을 인쇄한 완장, 계급장 등을 마련하여 지급하였고(육박①~⑤·⑦), 군복을 착용하고 도열한 모습을 사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육박⑧). 신규 대원 모집을 위한 전단을 인쇄하여 배포하기도 하였다(육박⑬).

광복군예비대는 군계급과 계급별 봉급액수를 지정하여 운영하고(육박⑱, [부록] <표 7> 참조), 예비대 대원들은 숙소를 배정받아 집단적으로 숙식 생활을 했으며(육박㉑), 계획된 일정과 방법에 따라 각종의 훈련을 받았다(육박⑪·㉒·㉔). 또한 관련 문서를 통해 일부 대원(육박㉕)과 사업부서 구성원(육박㉖)의 신상을 파악할 수 있다.

#### 나. 대한민국 임시정부 및 한국광복군과의 연관성

중국에서의 한국광복군 활동에 직접 참여한 李範奭, 張俊河 등의 언급으로 볼 때 광복군예비대의 설립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또는 중국의 한국광복군 지휘부 등으로부터 직접적인 지시로 이루어진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당시 국내의 창설된 공식적 성격을 지니는 광복군 지부는 吳光鮮을 지대장으로 하는 광복군 국내지대였다. 다만, 육군박물관 등 현재 기관 소장품 중에서는 확인되지 않지만 당시 서울시청에서 발견되어 신문기사에 언급된 광복군예비대 관련

자료 중 대한민국 임시정부 및 한국광복군 국내지대와 관련한 문서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임시정부환국 환영대회 관련 문건(기사⑦ · ⑭ · ⑮), 軍務部長 金元鳳 보고서: 김구 임시정부 주석으로 보내는 광복군 국내 제2지대<sup>54)</sup> 설치에 관한 공문(기사⑯), 제2지대<sup>55)</sup> 편성 관계 문건(기사⑰), 金九 명의의 대한국군 준비 총사령부 공고문(기사⑱), 한국광복군 총사령관 李靑天이 광복군 국내지대 사령부의 顧問 및 국내 광복군 제2지대장 역임한 金承學에게 보내는 명함메모(기사⑲)<sup>56)</sup>, 한국광복군 개성 원호회의 경리관계 서류철(기사⑳)<sup>57)</sup>이 그것으로, 광복군예비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및 광복군 국내지대의 설치, 편성과 관련하여 일정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sup>58)</sup>

또한 당시 임시정부가 해방 후 국내에 들어갈 광복군의 조직과 세력을 확대하고자 적극적인 擴軍活動을 펼쳤다는 점<sup>59)</sup>,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광복군예비대 주요 간부에 독립군·광복군 활동을 직접 수행했던 인물들이 포함된 점, 광복군예비대가 임시정부의 주요 요인이 머물렀던 장소를 경비했다는 사실 등을 고려하면 국내 임시정부 지지 세력을 중심으로 결성된 광복군예비대가 임시정부 및 광복군 국내지대와 교류 혹은 그 이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고

54) 중국 시안(西安)에 본부를 두었던 한국광복군 제2지대인지, 혹은 광복군 국내지대의 제2지대를 의미하는 것인지는 확실치 않으나 국내 제2지대 관련 자료 및 국내 제2지대장이었던 金承學에게 李靑天이 보낸 명함메모 등이 함께 발견된 점을 고려했을 때 후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55) 각주 54 참조.

56) 이 외 金承學과 관련한 자료로 金九가 이순신의 시구를 친필로 써서 金承學에게 준 것(기사⑧)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각주 60을 참조.

57) 한국광복군 국내 제2지대의 위치가 開城이었다(김민호, 앞의 논문, 197).

58) 張俊河는 광복군예비대가 金承學을 배경으로 조직된 것 같다고 증언한 바 있다(앞의 기사, 『동아일보』(1972년 1월 15일)).

59) 김민호, 앞의 논문, 189-190.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앞서 언급한 자료들은 현재 실물로서 확인되지는 않으므로 추가적인 자료 발굴과 확인이 필요하다.

#### 다. 광복군예비대 관련 유물의 소재

이 절에서는 1972년 서울시청 금고 개방 당시 언론에 보도된 자료 목록과 육군박물관 광복군예비대 관련 소장품 목록을 비교 고찰하여 광복군예비대 유물의 전체적인 규모를 파악하는 한편 향후 추가적인 자료 발굴을 위한 기초 자료로 삼고자 한다. 1972년 당시 보도된 유물의 목록과 육군박물관 관련 소장품을 비교한 결과는 <표 5>와 같으며 수량 현황은 제외하고 품목 일치여부만 고려하였다.

<표 5> 언론보도된 1972년 서울시청 발견 자료 중 육군박물관 미소장 자료

연번	<표2> 연번	구분	자료명	비고
1	3	직인류	광복군예비대총본부 도장	날인본 1점만 확인
2	4		광복군예비대협찬회 도장	
3	5	사진류	北京사진첩	
4	6		인물사진 57장	광복군예비대 도열 사진 1점 확인
5	7		대한민국 임시정부요원환송회 사진 2장	
6	8	예술품	이순신 장군의 시를 쓴 김구 선생의 친필 후회	2019년 자료 공개 <sup>60)</sup>
7	9	무기류	38식 소총용 탄환 10여발(99발)	육군박물관 소장 무기류 중 포함 가능성 있음
8	10		TNT 1개, 수류탄 1개, 소이탄 6개, 2중탄 1개	
9	11		군도 : 손잡이를 봉대로 감은 길이 30cm 가량의 것	
10	12		폭발물로 보이는 강통 2개(분무식 모기양통 처럼 생긴 것)	
11	13	화폐류	조선은행권 2천7백4원(2,749원)	
12	14		만주은행권 81원(광복군이 모금한 것으로 보이는 만주은행권 67,003원 5전)	
13	15		일본은행권 6만5천9백56원5전, 일본은행권	

연번	〈표2〉 연번	구분	자료명	비고
			84,173원 5전, 일본지폐 다발 : 1백엔짜리, 10엔짜리 등 약 5천엔, 日本銀行권 6만4천 1백74원5전	
14	16		수표책2권(조선식산은행 45년 12월)	
15	18		각 정당 단체 해설 1권(45년 여론사 출판)	
16	19		「대조」잡지(1946년 발간)	
17	20	서책류	우리정부 27년 약사 1권	육 박 ⑩ < 사진 19-3>과 동일자료 여부는 불명
18	21		한국광복약사	
19	22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내용(책1권. 민심시간)	
20	23		噫! 國辱(만몽연구조사회 발행·소화 6년 11월 22일)	
21	24		임시정부 환국 환영대회 계획서 1장	
22	25		대한민국 개선 환영대회 약도	
23	26		군무부장 金元鳳보고서(金元鳳이 김구 임시 정부 주석으로 보내는 광복군내 제2지대 설치에 관한 공문)	
24	27	문서류	광복군 제2지대 편성 관계 문건	
25	28		대한국군준비총사령부 공고문(대한민국 임시 정부 국무위원 주석 金九)	
26	29		李靑天(白山) 광복군 총사령이 金承學씨에게 보내는 명함메모	
27	30		한국광복군 개성 원호회의 경리관계 서류철	
28	33		昭和 7년 京城 지도 37장	
29	34		김윤식씨 서류 8장	
30	35		금전출납부	
31	36		中華民國 공채증 1장	
32	37		전단〈모여라 동포여〉 3장	육박⑩과 동일자료 여부는 불명
33	38		기타류	가방 7개
34	39	우표 1백 40장		
35	40	신조선보(신문 2장)		

60) 이동식, “새로 공개된 김구의 친필유묵과 반탁운동”. 『第73回 定期 學術大會(2019 年 春季 學術大會) 發表 資料集: 東아시아의 風流 文化와 思想』(2019):124-125.

이상과 같이 1972년에 보도된 40건(〈표 2〉 기준)의 자료 중 35건의 자료가 현재 실제 유물로 확인되지 않거나 모호한 상태로 확인된다. 특히 직인의 실물이 없고 날인본(육박⑨)만이 확인되는 점, 광복군예비대와 대한민국 임시정부·한국광복군 국내 지대와의 관련성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문서류 자료들의 실물이 확인되지 않는 점이 아쉬움이 큰 대목이다. 김구 친필 휘호(기사⑧)의 경우 〈표 5〉의 해당 비고란 및 각주로 서술한 바와 같이 최근 지면을 통해 그 소재가 공개되었으므로 추가적인 조사 및 검토가 필요하다.

〈표 6〉은 1972년 관련 보도에서는 확인되지 않지만 당시 육군박물관으로 이관된 것으로 파악되는 유물을 정리한 것이다.

〈표 6〉 언론보도된 1972년 서울시청 발견 자료 외 육군박물관 이관 추정 유물

연번	〈표3〉 연번	구분	유물명	비고
1	5	의복류	완장(光復軍豫備隊)	서울시 공보실 촬영 사진에서 확인
2	6		완장(朝鮮學徒隊)	
3	11	문서류	문서철	
4	12		光復會復活取旨及沿革	
5	13		光復軍豫備隊訓練所 모집전단	
6	14		臨時政府當面政策	
7	16		韓國光復軍豫備隊 명단	
8	17		韓國光復軍豫備隊協贊會取旨書 및	

이 발표문에 수록된 金九 친필 휘호의 사진이 1972년 당시 촬영된 유물의 모습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발표문에 따르면 이 유물은 현재 개인이 소장하고 있으며 소장자는 청해 이씨로 일찍이 북청에서 자랐고 서울에서 활동을 한 관계로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글씨가 쓰인 종이는 가로 55cm, 세로 90cm 정도로, 김구가 1945년 귀국일(11월 23일)에 忠武公 李舜臣의 시구인 ‘誓海魚龍動, 盟山草木知’를 써서 金承學(希山大兄)에게 준 것이다. 1972년 서울시청 금고에서 발견되어 정무기관 주도로 수습된 것으로 보이는 이 유물이 어떤 경유로 개인에게 소장된 것인지는 불명이다. 1972년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시청 금고에서는 李青天이 金承學에게 보내는 명함 메모(기사⑳)와 金承學이 지대장을 역임했던 개성 소재의 광복군 국내 제2지대 관련 문건들(기사㉔, 기사㉕, 기사㉖)이 金承學이 金九에게 받은 이 휘호와 함께 발견된 바 있어 주목된다.

연번	〈표3〉 연번	구분	유물명	비고
			協贊會 명단	
9	18		將兵種別及臨時奉給(口月俸斗算)表	
10	19		직인 날인 문서	
11	20		중대원 명단	
12	21		本部屬員宿舍配當	
13	22		週間豫定表	
14	23		事業部署表	
15	24		中隊教練口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72년 언론 보도에서 언급되지 않은 육군박물관 소장 자료의 대부분은 문서류이다. 당시 언론기사의 서술 내용과 서울시 공보실 촬영의 사진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상당히 많은 분량의 문서가 발견된 것으로 생각되며 그 중 소량만이 군 기관으로 이관되어 육군박물관에 소장된 것으로 보인다.

추후 육군박물관 소장품 중 본 연구에 포함되지 않은 광복군예비대 관련 유물이 별도로 확인될 가능성도 있으며 이 경우 다른 지면을 통해 관련 사실을 밝히도록 하겠다.

## 4. 결 론

광복군예비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및 한국광복군을 지지하는 세력으로서 해방정국기에 국내에 창설, 운영된 군사조직이다. 광복군예비대는 1972년 서울시청 12호 창고내 금고에서 관련 유물이 대거 발견됨으로써 그 실체가 공개되었으며 이 때의 발견 자료 중 일부가 군기관으로 이관되어 현재까지 육군박물관에 소장되어 왔다.

광복군예비대는 육군박물관 소장 군복 상하의 1벌이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되고 일부 연구에서 단편적으로 언급됐을 뿐 그에 대한

구체적 연구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972년 서울시청 금고 개방당시 보도된 언론기사와 서울시 공보실 촬영의 사진, 그리고 현재 육군박물관에 소장된 광복군예비대 관련 유물을 일괄적으로 정리, 분석함으로써 광복군예비대의 창설과정과 조직, 운영의 실태를 밝히는 한편 대한민국 임시정부 및 한국광복군과의 연관성을 고찰하였다. 아울러 1972년 언론기사에서 언급된 발견 자료 목록과 현재 육군박물관 소장의 관련 유물 목록을 비교하여 광복군예비대 유물의 추가적인 발굴 및 조사를 위한 기초 자료로 삼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관련 사료 및 육군박물관 소장 유물의 정리 및 분석을 토대로 그동안 실체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던 광복군예비대의 성격에 대하여 밝힌 것에 그 의의가 있다. 다만, 광복군예비대의 역사적 의미와 임시정부 등 관련 단체와의 연관성 등을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한 점, 광복군예비대 구성원에 대한 보다 상세한 인물 분석을 이루어지지 못한 점, 복식 유물 등 개별 유물에 대한 전문적 해석을 하지 못한 점 등이 본 연구의 한계로 생각되며 이에 대해서는 향후의 연구 과제로 돌린다. 본 논문이 광복군예비대에 관한 추가적 연구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하며 독립·광복운동사 및 건군기 관련 연구에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

## [부록] 韓國光復軍豫備隊 관련 陸軍博物館 소장 유물 상세 설명

### 1. 의복류

#### 가. 군복 상·하의A

<사진 8-1> 군복A(상의)



<사진 8-2> 군복A(하의)



국가등록문화재(등록명: 한국광복군 군복, 등록번호: 제460호)로 지정되어 여러 차례 대외에 공개된 광복군예비대의 군복으로, 상의·하의 및 상의 안쪽의 셔츠로 구성된다.<sup>61)</sup>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대인 韓國光復軍은 일정한 제복이 없이 중국식의 군복과 표지를 착용하였으나, 임시정부 軍務部에서 ‘군인의 각종 標識 制定안(1945.1.9.)’과 ‘군인제복 樣式 制定안(1945.2.19.)’을 제정한 뒤로 독자적으로 광복군의 표지와 군복을 사용하거나 착용하였다.<sup>62)</sup> 이 복식의 좌우 어깨에는 금색 3줄로 된 견장이 부착되어 있으며 좌측 견장 1줄은 탈락되었고, 좌측 팔 부분에 백색 方形의 두꺼운 천을 대고 그 위에 1줄

61)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수량은 상·하의 각 1점, 총 2점이다.

62) 문화재청, 앞의 회의록, 28-30.

의 'A'와 2줄의 직선이 조합된 계급장을 부착하였다. 양 종류의 계급장에 해당하는 계급이 무엇인지는 불명이다. 상의 안쪽에 셔츠를 착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바지의 경우 하단에 조임끈이 있어 각반 등을 착용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군복 A는 서울 시청 금고의 발견 당시 사진(<사진 4>)에서 보이는 상·하의와 비교했을 때 전체적인 모양과 계급장, 바지의 조임끈 등이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다.

#### 나. 군복 상·하의B

<사진 9-1> 군복B(상의)



<사진 9-2> 상의(부분)



<사진 9-3> 군복B(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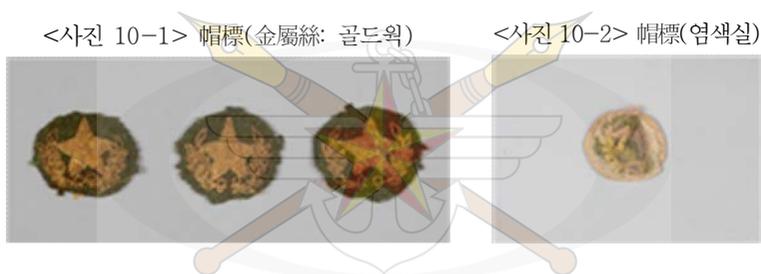


그동안 유일한 광복군예비대의 군복으로 알려진 위 군복A와 동일 복식의 유물이다.<sup>63)</sup> 이 유물은 ‘朝鮮學徒隊’ 완장을 부착한 채로 도

63) 서울시청 금고 발견 당시 사진(<사진 4>)에서 군복이 2점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록 등에 수록되어 학도대 복장으로 서술되어 왔으나 해당 완장과 이 유물은 별개의 것으로 보인다. 군복A와 비교해 볼 때 동일한 색상 및 재질의 유물로서 견장은 부착되어 있지 않다. 좌측 팔 부분에 계급장은 없지만 계급장을 부착하는 백색 方形의 두꺼운 천이 대어진 점은 동일하며, 계급장이 부착되었던 옆은 흔적이 확인된다. 칼라 2점이 함께 있고, 상의의 단추는 모두 탈락되어 있다.<sup>64)</sup> 바지는 카키색인 군복A와 색상(흰색)과 재질에서 차이가 있는데, 군복 하의가 아닌 내의일 가능성이 있다.

#### 다. 帽標



군모에 부착되지 않은 별도의 광복군예비대 帽標들이다. 金屬絲 재질(골드워)의 帽標 3점은 군복B의 상의 주머니에서 발견되었으며 같은 모양 및 재질의 모표를 부착한 군모가 1건(<사진 11-1>)이 있다. 나머지 1점은 염색실로 만든 帽標로 같은 모양 및 재질의 모표를 부착한 군모가 1건(<사진 11-2>) 확인된다. 帽標의 구분에 관해서는 아래 군모 항목에서 통합하여 설명하겠다.

당시 정황을 보도한 언론기사들도 군복의 수를 2점으로 보도하였다. 군복 상·하의A와 B가 사진상 색상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양 유물의 색은 유사하며 <사진 9-1>의 색상에 가깝다.

64) 탈락된 단추가 한 점 확인되었다.

라. 군모

<사진 11-1>



<사진 11-2-1>



<사진 11-2-2>



<사진 11-3-1>



<사진 11-3-2>



<사진 11-3-3>



<사진 11-4-1>



<사진 11-4-2>



<사진 11-5>



<사진 11-6>



<사진 11-7>



<사진 11-8>



<사진 11-9>



<사진 11-10>



그동안 광복군예비대의 군모는 군복A와 함께 개리슨 모 형태의 1점만이 공개되었지만 동일형태의 개리슨 모 8점과 정모 1점이 추가로 확인되었다. 개리슨 모 형태의 군모는 공통적으로 흰색 선이 모자 주위를 두르면서 정면으로 올수록 아래로 내려가 V자형으로 장식되며 앞쪽에 챙이 달려 있다. 개리슨 모 9점 중 8점(〈사진 11-2~9〉)은 염색실로 짠 모표를, 나머지 1점(〈사진 11-1〉)은 金屬絲(골드워) 재질의 모표가 부착되었다. 후자의 모표는 군복B 주머니에서 발견된 것(〈사진 10-1〉)과 동일하며, 턱 부근에 걸리는 밝은 갈색의 가죽끈이 달려 있다.

帽標의 경우 기본적인 도안은 가운데에 별이 있고 월계수잎이 별 아래에서 뻗어 나가 별의 양 상단 주위까지 둘러싸는 모양으로, 뻗어나가는 시작점과 끝 부분에 각 2개씩의 봉오리를 형상화하였으며, 도안의 재질이 金屬絲(골드워)인 것과 염색실인 것 2종류가 있다. 金屬絲(골드워) 재질의 모표(〈사진 11-1〉)는 군모의 색과 유사한 짙은 녹색 실로 짠 원형의 천 위에 도안을 형상화하였다. 염색실 재질의 모표는 바탕색 실은 옅은 녹색으로 하고 그 아래에 종이 2장을 덧대 부착하는 방식은 동일하나 도안의 색에 따라 다시 2종류로 구분된다. 즉, 별과 봉오리를 노란색, 월계수잎을 청록색으로 표현한 것(〈사진 11-3~9〉)과<sup>65)</sup> 별과 봉오리를 분홍색, 월계수잎은

65) 〈사진 11-9〉 군모의 모표의 경우 일단 이 색상 분류로 구분하였으나 색이 바래어

연두색으로 표현한 것(〈사진 10-2〉, 〈사진 11-2〉)이 그것이다. 다만, 이러한 재질 및 색상의 차이가 계급 등의 구분을 위한 것인지, 제작 과정에서의 차이에 기인한 것인지는 단정할 수 없다.

개리슨 모 중 일부는 안쪽에 착용자의 소속과 이름으로 추정되는 정보를 표기해 놓았다. 붉은 글씨의 우측가로쓰기로 ‘第二大隊 二中隊 金善福’을 쓴 것이 1점(〈사진 11-2-1,2〉), 검은색 글씨로 ‘光復軍’, ‘金直春’(하단에 수정 흔적 있음)<sup>66)</sup>을 쓴 것이 1점(〈사진 11-3-1, 2, 3〉), 감색 글씨로 ‘金興植’을 쓴 것이 1점(〈사진 11-4-1, 2〉)이 있다. 정모 형태의 군모는 앞부분에 검은색의 두꺼운 가죽 재질의 챙이 달려 있고 모표는 부착되어 있지 않다.

#### 마. 완장(韓國光復軍豫備隊)

<사진 12-1>



<사진 12-3>



<사진 12-2>



<사진 12-4>



광복군예비대의 완장으로 ‘在中大韓民國臨時政府/光復軍豫備隊’의 윗줄 10글자, 아랫줄 6글자가 검은 색으로 인쇄되어 있으며 아랫줄 글자의 크기가 좀 더 크다. 총 4점이 확인되며 인쇄된 글자 아래

거의 흰색에 가까우며, 다른 군모 모표의 색상과 구별되는 다른 종류의 것일 가능성도 있다.

66) 육박<sup>20)</sup> 명단 중 동일 성명이 확인된다.

적색 선이 2개 그어진 것이 2점(<사진-12-1, 3>), 1개 그어진 것이 2점(<사진 12-2, 4>)으로 이것이 계급 등을 가리키는 표식인지는 불명이다. <사진 12-2~4>의 완장의 경우 인쇄된 글자 중앙 부분에 篆書로 표기된 朱文方印이 날인되어 있으나 글자가 잘 판독되지 않는다. 광복군예비대 군복과 함께 입수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있었으나<sup>67)</sup> 서울시청 금고 발견 당시 사진(<사진 4>)에서 군복, 군모와 함께 수습된 것이 명확히 확인되며 동일 시점에 군 기관으로 이관된 것으로 보인다.

광복군예비대의 帽標 및 완장과 관련하여 참고할 사항으로서, 한국광복군 국내 제2지대의 완장과 帽標로 추정되는 유물이 공개된 바 있으며(국립항공박물관 소장), 유물의 모습은 아래 <사진 13-1, 2>와 같다.



\* 출처 : 국립항공박물관, 「국립항공박물관 개관도록」, 서울: 국립항공박물관, 2020. 104-105.

67) 문화재청, 앞의 회의록, 28-30.

〈그림 1〉



\* 출처 :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편, “광복군 복식(服飾) 〈1〉”, 『독립운동사4(임시정부사)』, 독립유공자  
사업기금운용위원회, 1972.

완장(〈사진 13-1〉)에는 상부에 ‘韓國光復軍國內第二支隊’, 중앙에 ‘衛生兵’과 적십자, 하단에 ‘Korean of Kwang Bock Army’가 쓰여 있으며 帽標(〈사진 13-2〉)는 金屬絲 재질(골드웍)로서 하단에 무궁화가 있고 윗이 그것을 둘러 올라가며 그 끝에 원형이, 다시 그 안에 별과 태극이 그려진 도안을 표현하고 있다. 이 도안의 帽標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위원회가 1945년(대한민국 27년) 2월 20일에 공포 시행한 〈육군휘장도안〉에 규정된 ‘장교모휘’(〈그림 1〉 참조) 즉, 장교의 군모 휘장에 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韓國光復軍 국내 제2지대는 金承學이 지대장이었으며 開城에 근거지를 두었는데,<sup>68)</sup> 1972년 서울시청 금고 개방 당시 광복군예비대 유물과 함께 광복군 국내 제2지대 및 金承學과 관련한 유물이 상당수 발견된 바 있으므로<sup>69)</sup> 〈사진 13〉의 자료도 광복군예비대 유물과 연관지어 고찰될 필요성이 있다.<sup>70)</sup> 다만, 〈사진 13〉의 2점의 유물은

68) 김민호, 앞의 논문, 195-2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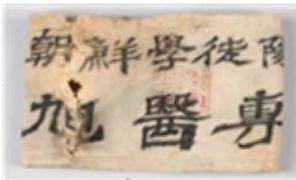
69) 이에 대해서는 본 연구의 제3장, ‘나’의 내용을 참조.

70) 〈사진 13〉의 유물이 수록된 도록의 도판 설명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휘장과 완장’의 제목 하 정식군대로 인정받지 못한 광복군들이 중국에서 귀국 후 인천항에서 무장해제를 당했는데, 이 두 유물은 1946년 인천항에서 광복군을 무

아직 복식사 등 관련 학계의 충분한 고증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그 진위와 가치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바. 완장(朝鮮學徒隊, COREAN STUDENTS ASSOCIATION)

<사진 14-1>



<사진 14-2>



광복군예비대 유물과 함께 발견 및 이관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자료로 1점은 ‘朝鮮學徒隊/旭醫專’을 검은 글씨로 墨書하고 중앙에 ‘朝鮮學徒隊印’(朱文方印)을 날인하였고(<사진 14-1>), 나머지 한 점은 ‘COREAN STUDENT ASSOCIATION’을 붉은 색으로 인쇄하고 그 우측 끝 하단에 ‘學’ 글자를 날인하였다(<사진 14-2>). 동일 명칭의 국내 치안 조직이 해방 직후인 1945년 9월 초 부산 지역에서 일본 유학생을 중심으로 조직된 바 있으나<sup>71)</sup>, 동일 조직인지는 불명이다.

---

장해제 시킨 미군병사가 압수 후 소장하고 있던 것을 2004년 그의 아들이 공개 매도하였고, 이를 국내에서 구입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국립항공박물관, 『국립항공박물관 개관도록』, 서울: 국립항공박물관, 2020, 104-105).

71) 박철규, “부산항토문화백과: 조선학도대 경남본부”, (집속날짜 2022년 3월 9일), [http://busan.grandculture.net/Contents?local=busan&dataType=01&contents\\_id=GC04206517](http://busan.grandculture.net/Contents?local=busan&dataType=01&contents_id=GC04206517).

## 사. 계급장(견장)

<사진 15>



군복A 상의에 부착된 견장 2점을 제외한 광복군예비대의 견장이 다. <사진 15>에서 좌측의 3점은 군복A 상의에 부착되어 있는 것과 유사하며 상의 어깨 단추에 끼울 수 있는 구멍이 있다. 3점 모두 금색 선이 2줄이지만 가장 위쪽의 것은 1줄이 탈락된 흔적이 남아 있어 원래 총 3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운데 2점은 왼쪽의 견장들보다 크기가 약간 작고 금색 선의 부착 형태가 다르며 단추 구멍이 없다. 가장 오른쪽의 2점은 몸통 부분이 다른 견장들보다 두꺼우며 금색 선은 가운데 것과 유사하고, 역시 단추 구멍이 없다.

## 2. 사진류

### 가. 광복군예비대 사진

<사진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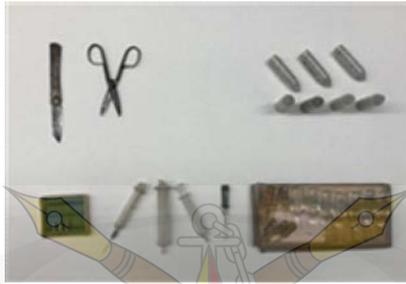


광복군예비대의 도열 사진으로 1972년 발견 당시 사진들(〈사진 5-3〉) 중 1점으로 판단된다. 사진 속 인물들은 모두 군복 및 군모 복식을 착용하고 손에 수갑을 끼고 있으며 다리에는 각반을 착용하였고 정모를 쓴 인물은 보이지 않는다. 중앙에 지휘부로 보이는 인물들이 말을 타고 있으며 왼쪽 인물은 별이 그려진 부대기를 들고 있는데 부대기의 우측면에 세로로 글자가 표기되어 있으나 판독되지 않는다. 팔만이 보이는 가장 좌측 인물의 팔꿈치 위쪽 부분에 1줄의 ‘八’, 1줄의 직선으로 표시된 계급장이 보이며 군복A와 차이가 있다. 사진 가장 우측의 인물은 긴 대나무 장대로 고정된 깃발을 들고 있으며 깃발에는 ‘○復軍豫備隊忠南支部’로 판독되는 글자가 표시되어 있다. 사진 좌측 위쪽에는 ‘韓民國臨/韓國光復軍○○’의 글자가 일부 잘려 원형으로 날인되었다.

### 3. 약품류

#### 가. 의료기구, 약품류

<사진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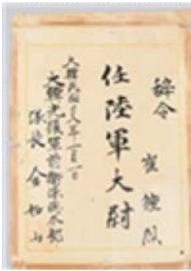


광복군예비대가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의료기구와 약품류 등 물품이다. 1972년 발견 당시의 사진(<사진 5-2> 우측)에서 동일 형태의 물품 일부가 확인된다.

## 4. 문서류

### 가. 辭令(大韓光復軍前衛隊總本部)

<사진 18-1>



<사진 18-2>



<사진 18-3>



<사진 18-4>



총 4점으로 四周雙邊 내 8행 황색 罫線이 그어진 종이에 필사하였다. 필사 형식은 우측부터 [印:大韓光復軍前衛隊總本部印] 辭令/[이름]/任陸軍[계급]/大韓民國二十八年一月一日/大韓光復軍前衛隊總本部/隊長 金如山[印:大韓光復軍前衛隊總本部隊長之印]이다. 임명 대상자(계급)는 崔鍾烈(大尉)(〈사진 18-1〉), 蔡成鉉(軍曹)(〈사진 18-2〉), 李禎雨(少佐)(〈사진 18-3〉), 閔景大(大尉)(〈사진 18-4〉)이다.

## 나. 문서철

<사진 19-1>

<사진 19-2>

<사진 19-3>



총 3장의 문서가 함께 묶여 있다. 첫 번째 문서(<사진 19-1>)는 제목이 「國語로 制定된 學校敎鍊號令」으로 군대 훈련 시 사용되는 제식용어가 한글-일어 순으로 표 안에 총 6줄에 걸쳐 필사되어 있다. 예를 들어 ‘차려:氣ヲ着ケ’, 오른편으로-도라:右向ケ右와 같이 대조하는 식이다. 두 번째 문서(<사진 19-2>)의 제목은「檄文」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원들의 노고를 찬양하고 광복 후 그들에 대한 환영을 호소하기 위한 내용을 필사하였다. 全文은 다음과 같다.

近三十年 海外가서 가진 苦難과 艱險을 격그면서도/不屈不撓하고 우리民族의 解放을 爲하라 싸와온 우리/大韓民國臨時政府는 이저 本國으로 돌아와다/우리 國內의 情勢가 아무리 複雜하고 混亂하다고하더/라도 臨時政府의 우리 領袖들은 그 모든 것을 克服하고/우리 民族에게 完全한 解放을 이루어 주실 것으로 미더서/疑心치 안는다. 우리는 오즉 그분들의 指導를 쫓차/民族의解放에 邁進하자/우리는 오즉 그분들을 中心으로 民族의革命勢力을 總集結하자. 그러나 우리三千萬同胞는 위전일생을 國/事に 바치신 그분들을 慰勞키 爲하야 이날 과로 歡迎/의○○○○○○○./大韓民國臨時政府萬歲!!/臨時政府領袖諸位萬歲!!

韓國光復軍豫備隊總本部/朴英一

세 번째 문서(<사진 19-3>)의 제목은 「우리政府二十七年略史」로 인쇄본이며 문서 끝에 ‘大韓民國臨時政府 特派事務局’이 쓰여 있다. 3·1운동부터 광복을 맞이하기까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를 ‘萬歲-活動-血稅-光復軍-還國’의 5개 장에 걸쳐 요약 서술하였다.

#### 다. 光復會復活取旨及沿革

<사진 20>



광복군예비대 유물과 함께 입수된 것으로 추정되는 문서이며 1945년에 작성되었다. 光復會 조직의 결성과정과 연혁, 단체의 결의와 행해야 할 바, 일제 탄압하 순국한 總司晝 朴尙鎭 이하 회원 명부 등을 수록하고 있다.<sup>72)</sup>

72) 독립기념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全文이 수록되어 있다. (접속날짜: 2022년 3월 9일), [https://search.i815.or.kr/contents/independencefighter/detail.do?\\_csrf=f319140c-3286-4ef3-a3bd-e1a6a071af3a&searchCondition=name&searchKeyword=&pageUnit=10&middleCategory=%EB%B0%95%EC%83%81%EC%A7%84&subdivideCategory=&titleSort=0&independenceFighterId=1-000914-000#explain](https://search.i815.or.kr/contents/independencefighter/detail.do?_csrf=f319140c-3286-4ef3-a3bd-e1a6a071af3a&searchCondition=name&searchKeyword=&pageUnit=10&middleCategory=%EB%B0%95%EC%83%81%EC%A7%84&subdivideCategory=&titleSort=0&independenceFighterId=1-000914-000#explain)

## 라. 광복군예비대 모집전단

<사진 21>



忠南 大田에 위치한 光復軍豫備隊訓練所에서 대원을 모집하는 인쇄 전단으로, 全文은 다음과 같다.

모여라!! 동포들아!! / 우리는 大韓을 직히는 前衛隊이다 / 정부 의大召는나렸나니 / 太極旗아래에 / 光榮잇는勝利를絶叫하자 / 우리의닿는곳 / 天和地應한다 / 大韓光復軍勝利萬歲! / 在中華大韓民國臨時政府 / 光復軍豫備隊訓練所 / 忠清南北 全羅南北 慶尙南北의 六道 / 申込所 大田府大東町 / 前師範學校校舍

마. 臨時政府當面政策

<사진 22>



大韓民國臨時政府 國務委員會主席 金九 명義의 문서로 발행 시기는 大韓民國 27년(1945년) 9월 3일이다. 임시정부의 조속한 귀국, 연합국과의 제휴, 국제회의에서의 한국을 대표하는 발언권 행사, 전국 선거가 치러지기 전 국내과도정권을 수립하기 위한 각종 단체와의 회의 소집, 국내 과도정권 수립 시 일체 권한·소유 물건의 이관, 일본군에 대한 처결과 청산, 賣國賊에 대한 처분 등 14개조의 내용이 적혀 있다. 종이 앞뒷면에 필사되어 있으며 뒷면 끝에 ‘大韓民國臨時政府 特派事務局’을 쓰고 이어서 ‘大韓民國臨時政府 光復軍豫備隊訓練所 乙酉十一月五日 朴英一 □□□□□□□□(8자 판독불가)’이 쓰여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 ‘國內外同胞에게告함’의 포고문이 앞에 덧붙여진 인쇄본 문서가 소장되어 있다(소장번호: 한 13380). 이 문서는 인쇄본 내용의 일부를 光復軍豫備隊訓練所에서 필사한 것으로 보인다.

바. 신분증명서

<사진 23-1>



<사진 23-2>



光復軍豫備隊協贊會 소속의 신분을 증빙하는 문서이다. 총 2건으로 첫째 문서(<사진 23-1>)의全文은 다음과 같다.

000 6/證明書/住所 京城市 古市町 拾九番地/身分 運輸課長  
/氏名 金法龍/當三三歲/右를證明함[印:□大]/大韓民國 二十  
七年九月六日/韓國光復軍豫備隊協贊會[印: 大韓民國臨時政  
府光復軍豫備隊協贊會印/(方形 사진부착란: 사진없음)  
/Tesfimonial<sup>73</sup>)/Name/Ape<sup>74</sup>)/Rank/Address/I hereby prove  
the above statement/is exactly true/The Korean Gangbock  
Army's Reserv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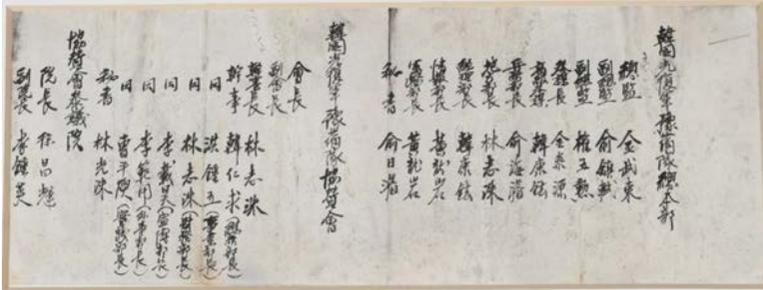
두 번째 문서(<사진 23-2>)의 양식은 첫 번째 문서와 동일하며 기재되어 있는 정보는 문서 번호 'No 7', 신분 '隊長', 氏名 盧萬善, 작성 시기는 '大韓民國 28년 1월 21일'이다. 예비대 군복을 입은 해당인물의 사진이 부착되어 있다. 증명서 끝의 '韓國光復軍豫備隊協贊會'에서 '協贊會'를 지웠는데, 협찬회 인원용으로 인쇄 제작된 양식을 예비대 인원용으로 재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73) testimonial의 誤記로 추정.

74) Age의 誤記로 추정.

### 사. 韓國光復軍豫備隊 명단

<사진 24>



광복군예비대 총본부, 협찬회, 협찬회 참의원에 소속된 인원들의 성명을 기재한 문서이다. 일부 성명 근처에 연필로 다른 성명을 기재한 흔적이 있는데 판독이 어렵다. 全文은 다음과 같다.

韓國光復軍豫備隊總本部

總監 金武東/副總監 俞鎮軾/副總監 權五勳/參謀長 金泰源/  
高級參謀 韓康鉉/兵務部長 俞海潛/地方部長 林志洙/經理部  
長 韓康鉉/情報部長 黃龍岩/軍醫部長 黃龍岩/秘書 俞日潛

韓國光復軍豫備隊協贊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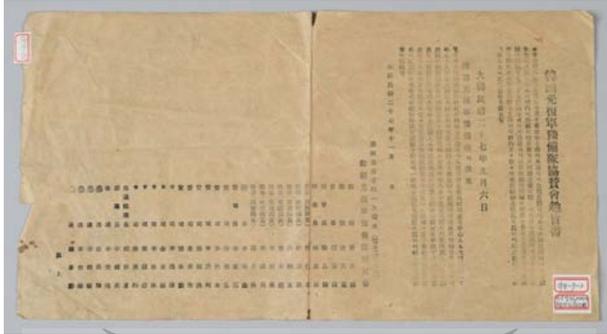
會長 (공석)/副會長 (공석)/幹事長 林志洙/幹事 韓仁求(總  
務部長)/同 洪鍾五(事業部長)/同 林志洙(財務部長)/同 李載  
昊(宣傳部長)/同 李範用(外事部長)/同 曹斗煥(實踐部長)/秘  
書 林志洙

協贊會參議院

院長 徐昌輝/副院長 李鍾英

아. 韓國光復軍豫備隊協贊會取旨書 및 명단

<사진 25>



1945년(대한민국 27년) 9월 6일(설립취지) 및 11월(광복군예비대 유래)자로 인쇄된 광복군예비대협찬회의 설립 취지와 소속 인원을 적은 문서이다. 광복군예비대 및 동 협찬회의 성격과 참여인사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중요 문서로 판단된다. 全文은 다음과 같다.

韓國光復軍豫備隊協贊會取旨書

本會난 祖國 光復을 爲하야 三十有餘年을 해외 異域에서 血戰苦鬪하야 오신 大韓民國臨時政府 諸先生의 大義를 맞드러 國內에 倭賊의 殘存勢力과 奸雄之妻의 陰謀와 反逆撲滅하며 四十年□□賊이 汚穢식힌 三千里 江山을 깨끗치 肅清하야 檀君聖祖의 再降臨의 聖業을 맞드는 忠勇將士을 養成하는 韓國光復軍豫備隊를 支持하야 國內方々谷々에 光復情神을 徹底키 爲하야 同志諸位의 一心□束으로써 此 協贊會를 設立함

大韓民國二十七年 九月 六日

韓國光復軍豫備의 由來

일즉이 大韓民國臨時政府의 特命을 拜蒙하여 入國하였든  
俞鎮軾 同志를 中心으로 大韓民國 二十年 七月 八方으로  
同志를 糾습하여 光復의 精神으로 便衣隊를 組織하여 倭  
政의 苛酷한 法網 속에서 倭賊의 我國內勢力의 驅逐工作  
을 繼續하여 오든 바 今年 八月 十五日 倭賊의 白旗降伏  
을 어든 此體系는 一層強化하여 健全한 地上運動으로써  
檀君聖祖의 遺業을 繼承할 國家의 中樞干城之材를 養成코  
져 九月 六日 大田市에 當々한 光復軍豫備隊訓練所를 設  
立하고 各地에 三十有餘 分所를 設置하여 猛訓練中이든바  
今般 臨時政府 還國을 期하여 一層 地方強化 敏活키 爲하  
야 總本部를 漢城市에 移轉함  
大韓民國二十七年 十一月 日

漢城市 古市町 一九番地(電本二三九六)

韓國光復軍豫備隊協贊會

顧問 曹成煥/顧問 成周寔/會長 趙素昂/副會長 徐昌輝/幹事  
長 林志洙/幹事(總務部長) 韓仁求/幹事(財務部長) 林志洙/  
幹事(事業部長) 洪鍾五/幹事(實踐部長) 曹斗煥/幹事(宣傳部  
長) 李載昊/幹事(外事部長) 李範用/幹事(調查部長) 鄭吉洙/  
幹事 李秉龜/贊司長 李載侃/贊司 南相弘/贊司 李洪來/贊司  
申弘均/贊司 鄭鎮洪/贊司 姜奇秀/贊司 愼泰動/贊司 李勉淳/  
贊司 金東赫/贊司 李根洙/贊司 梁鎮煥/贊司 徐漢杓/參議院  
議長 鄭在夏/副議長 李鍾英/參議 李秉琦/參議 徐昌輝/參議  
李相駿/參議 宋台植/參議 權泰動  
以上

이 유물과 유사한 내용을 서술하고 있는 『조선일보』(1945년 12월 16일) 기사의 全文을 수록하면 다음과 같다.<sup>75)</sup>

75) 앞의 기사, 『중앙신문』(1945년 12월 16일)에서 거의 동일한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앞의 기사, 『신조선보』(1945년 12월 18일)에서는 주요 부서 간부로서 顧問 曹

### 光復軍豫備隊本部移轉

七年前에 臨時政府特命을 받고 入國한 俞鎮軾氏를 中心으로 四方同志를 糾合하여 光復軍의 精神으로 便衣隊를 組織하여 倭賊의 苛酷한 法網속에서 地上工作을 繼續하여 오다가 今年八月十五日以降 此體系를 二層強化하여 健全한 地上運動으로써 國家의 가장 堅實한 干城의 材를 養成코져 九月 六日 大田市에서 堂々한 韓國光復軍豫備隊訓練所를 設置하는 同時에 此를 絶對後援機關인 本協贊會도 組織된 것으로 今般 臨時政府還國을 期하여 豫備隊本部는 서울驛前으로 協贊會는 서울 古市町 一九番地로 各々 移轉하고 가장 秩序整然히 오즉 國防工作에 積極的으로 活動하는 중인데 그 部署陣容은 다음과 같다.

顧問 曹成煥, 會長 趙素昂, 副會長 徐昌輝, 幹事長 林志洙, 總務部長 韓仁求, 財務部長 林志洙, 事業部長 洪鍾五, 宣傳部長 李載昊, 實踐部長 曹斗煥, 外事部長 李範用, 調查部長 鄭吉洙, 參議院議長 鄭在夏, 副議長 李鍾英, 參議 徐昌輝, 同 李相駿, 同 李秉琦, 同 宋台植, 同 權泰動

앞부분의 내용은 〈사진 25〉 자료의 내용과 유사하며 예비대 본부 및 협찬회가 이동한 서울 내 세부 주소지가 추가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뒷부분의 협贊會 명단의 경우 〈사진 25〉 자료의 해당 내용과 동일하지만, 〈사진 25〉 자료의 명단이 보다 많은 직책과 담당자를 포함하고 있다.

---

成煥, 會長 趙素昂, 副會長 徐昌輝, 幹事長 林志洙를 수록하고 있다.

자. 將兵種別及臨時俸給(口月俸斗算)表

<사진 26-1>



<사진 26-2>



광복군예비대의 계급 구분과 급료를 알 수 있는 자료로, 앞면(<사진 26-1>)에는 장교 및 병사의 종별과 임시 봉급의 액수를 필사한 문서이다. 각 계급을 쓰고 해당 계급에 해당하는 봉급 액수를 아래에 표시하였는데 削線을 긋고 수정하거나 고쳐 쓴 경우가 있으므로 검토 단계의 문서로도 생각된다. 장교는 총 9개 계급, 준사관 1개 계급, 부사관 3개 계급, 병사 4개 계급으로, 大將:正將, 曹長:正校와 같이 명칭이 혼재 표기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뒷면(<사진 26-2>)에는 總長, 常務委員 등이 표기되어 있고 봉급으로 추정되는 금액이 적혀 있다. 그 세부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광복군예비대 계급 및 봉급표

구분	계급1	계급2	수정전 봉급(削線)	소정 후 봉급
장교	大(正)	將	2,500	1,700
	中(副)		2,200	1,550
	少(參)		1,900	1,400

구분	계급1	계급2	수정전 봉급(削線)	소정 후 봉급
	大(正)	領	1,600	1,200
	中(副)		1,400	1,050
	少(參)		1,200	950
	大(正)	尉	1,000	800
	中(副)		900	720
	少(參)		800	650
준사관	準尉	特務正校	700	570
부사관	曹長	正校	650	500
	軍曹	副校	600	450
	伍長	參校	550	400
사병	上等兵	上等兵	500	350
	一等兵	一等卒	480	275
	二等兵	二等卒	450	240
	初等兵	-	430	200
기타 (뒷면)	總長	-	2,000	-
	委員長	-	2,000	-
	常務委員	-	2,000	-
	手口	-	-	-

### 차. 직인 날인 문서

<사진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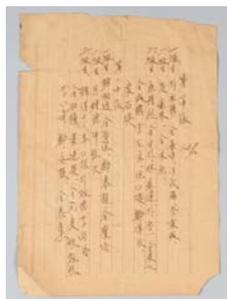


총 3개의 직인이 찍힌 문서로, 각 직인 실물의 현재 소재는 확인되지 않는다.<sup>76)</sup> 문서의 중앙 상단에 ‘職印’을 쓰고 그 바로 아래 篆字 朱文方印의 ‘大韓光復軍前衛隊總本部印’을, 그 아래 왼쪽에는 ‘大韓光復軍豫備隊總本部印’을, 오른쪽에는 ‘大韓民國臨時政府光復軍豫備隊協贊會印’을 찍었으며 각 직인 아래에 같은 내용의 글자를 필사하였다. 이 직인들은 육군박물관 소장 광복군예비대의 각종 문서에 날인된 것이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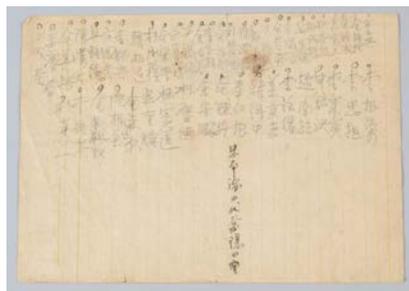
76) 1972년 당시 언론기사(기사③, ④)와 촬영 사진(<사진 5-1, 2>)에서 직인 실물이 확인된다.

## 카. 중대원 명단

<사진 28-1>



<사진 28-2>



총 2점으로 이중 1점(〈사진 28-1〉)은 제1, 2중대의 명단을 필사한 것이며 총 인원이 32명으로 표기되어 있다. 全文은 다음과 같다.

第一中隊 32名/一級生 朴承穆, 金善倍, 河成滿, 李秉奭/二級生 吳憲洙, 金榮原/三級生 康□然, 金宇凡, 林憲遠, 朴魯一, 金東七/金奭禎, 李在榮, 徐仁煥, 鄭得永/裴石煥  
 第二中隊/一級生 韓相道, 金哲榮, 鄭泰植, 金燦培/二級生 具鐘德, 申鉉□/三級生 韓得中, 奉仁根, 朴敬德, 李尙洽/金壯□, 梁連煥, 金閏□, 秋教烈/李仁意, 鄭安模, 金泰集

나머지 1점(〈사진 28-2〉)은 소속 등 표기 없이 47명(윗줄 28, 아랫줄 19)의 성명을 필사하고 그 중 41명(윗줄 27, 아랫줄 14)은 이름 위에 圈點을 표시하였다. 명단 아랫줄 하단에 주소 1개소가 기술되어 있다. 全文은 다음과 같다(굵은 글씨는 권점 표시가 있는 성명).<sup>77)</sup>

77) 1980년대 전후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육군박물관 소장품 참고목록에는 “중대원 명단”을 제목으로 하는 자료의 수량으로 12점이 기재되어 있다. 상술한 3점이 이

宋在興, 金鐘根, 金鍾鳳, 盧萬善, 林□喆, 柳成殷, 趙連錫, 金燦培, 金哲榮, 康□然, 鄭泰植, 陳漢□, 朴贊世, 金□奇, 李正植, 金直春, 尹錫俊, 吳憲□, 金榮學, 韓相道, 李鐘奇, 方鳳□, 具鐘德, 陳漢大, 金善培, 姜慶春, 河成滿 / 李根榮, 李忠植, 李秉奭, 申鉉□, 趙南喆, 李福得, 姜英吉, 韓得中, 奉仁根, 金鍊□, 金守鳳, 朴慶德, 朴憲直, 吳曹煥, 金榮原, 陸□□, 金昶欽, 李鐘基, 朴英一 / 忠南論山伐谷面陽山□

타. 本部屬員宿舍配當

<사진 29-1>



<사진 29-2>



광복군예비대 본부에 소속된 인원의 숙소 배정 내역을 필사한 문서이다(<사진 29-1>). 第壹宿舍에는 隊長級の 金鐘根, 金昶欽, 盧萬善<sup>78)</sup>, 部員의 金燦培, 韓相道<sup>79)</sup>가, 第貳宿舍에는 隊長級の 金鍾鳳, 李鐘基, 朴英壹, 部員의 尹錫俊, 柳成殷이 배정되었다. 備考에 ‘大韓民國二八年壹月二十一日定함’의 숙소배정일을 표기하였다. 문서 뒷

12점 중 일부로 생각되며 나머지 자료의 소재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78) 육박<sup>⑮</sup> 신분증명서에 기재된 인물과 동일인으로 보인다.

79) 이상 2명은 육박<sup>⑳</sup> 중대원 명단에서 제2중대 一級生으로 표기되어 있다.

면(〈사진 29-2〉)에는 荒玉鐵工所가 朝鮮總督府鐵道局에 보내는 견적서 양식이 인쇄되어 있다.

#### 파. 週間豫定表

<사진 30-1>

<사진 3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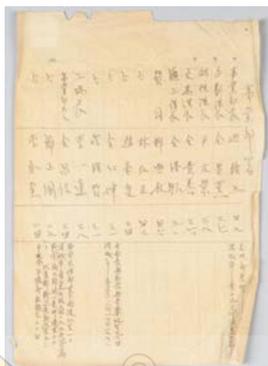
1946년(대한민국 28년) 1월 15일(월)부터 21일(일)까지의 兵事部의 주간일정표이다(〈사진 30-1〉). 문서 뒷면(〈사진 30-2〉)에는 ‘UCHIKONGO HOTEL/CHOANJI, KONGOSAN’의 문구가 인쇄되어 있다. 문서 앞면의 내용을 재정리하면 다음 <표 8>과 같다(판독 불가능한 ‘ㅁ’ 표시).

〈표 8〉 週間豫定表(兵事部)

구분	要目	課目	指導官	備考
目標		今週の目標：内務教育		
15일	室内敬禮法	1. 一般 室内 敬礼法 2. 室出口에 敬礼法 3. 上官에 對한 敬礼法	金鐘根	1. 各 中隊長은 内務에 對한 一般을 督勵 식일 것 2. 新入隊(地方)者을 特히 團體의 生活에 아 리킴이 必要함
16일	點呼의 意味	1. 日朝點呼 2. 日夕 夕々 3. 非常點呼	朴英一	
17일	申告要領	1. 傳令에 依하여 相對者에 對한 申告要領 2. 休暇 及 一般 署務 關한 申告領	盧萬善	
18일	不寢番 任務	1. 一般服務에 關한 詳細한 任務을 認識 식음 2. 非常時 處置法	李福得	
19일	朝鮮의 歷史	1. 祖國에 歷史認識 2. 愛國에 對한 精神訓話	金鐘凡	
20일	受付及步哨	1. 受付의 任務及態度 2. 步哨 任務及態度	李鐘基	
21일	清潔整頓	休務 1. 娛樂에 關한 精神	金昶欽	

## 하. 事業部署 문서

<사진 31>



事業部署의 구성원 성명, 나이, 주소를 필사한 문서이다. 직책과 성명(나이)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판독 불가능한 ‘□’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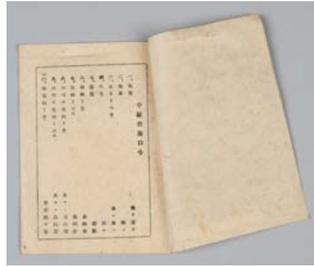
事業部長 洪鐘五(47)(忠州市 東町 二〇七/漢城市 龍山區之町 一百一七의 二), 企劃課長 金基薰(37), 經理課長 尹友榮(38), 交  
 課長 金貴善(36), □□課長 金得弘(52), 贊司 鄭興教(46)·同 林  
 弘圭·同 曹奎燮(43)·同 金仁伸(31)(全南 長興郡 長興邑 尊池里  
 /漢城市 龍山區之町 一百一七의 二)·同 崔鐘哲(31), □□長 曹  
 一遠(38), 事業部員 金昌信(34)(咸南 長津郡 東下面 陵口里 一〇  
 /漢城市 龍山區 三坂通 一八二番地 下宿), 同 鄭正國(37)(咸南  
 端川郡 端川邑 州南理 三三/〃 北青郡 新昌邑 新昌里 五二), 曹  
 永奎(24)(平北南 平壤府 船橋里 二二四)

거. 中隊教鍊口令

<사진 3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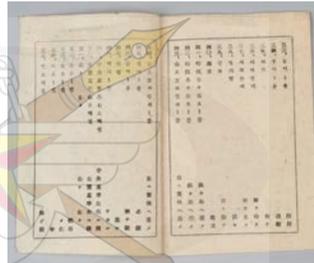
<사진 32-2>



<사진 32-3>



<사진 32-4>



護國隊訓練所에서 발행한 세로쓰기된 인쇄본으로 동일 자료가 3점이 있다. 중대 단위 부대의 총 55개의 제식 구령에 대하여 國漢文과 일본어로 표기하였다. 護國隊訓練所가 광복군예비대와 어떠한 관계의 단체인지는 불명이다. 현재 다른 소장 사례가 확인되지 않으며 당시 부대 훈련 간 제식 구령의 방법과 표기에 대해 알 수 있는 자료이다. 수록 내용을 정리하면 <표 9>와 같다.

<표 9> 中隊教鍊口令

구분	國漢文	日文
1면 <사진 32-2 左>	一、氣著	氣ヲ著ケ
	二、休息	休メ

구분	國漢文	日文	
	三、右로—나룻	右ニ並へ	
	四、바룻	直レ	
	五、番號	番號	
	六、右向—옷	右向右	
	七、좌향—왓	左向左	
	八、그대로右向—옷	其マ、右向右	
	九、그대로左向—왓	其マ、左向左	
	一〇、半右向—옷	半右向ケ右	
	2면 <사진 32-3 右>	一一、反左向—왓	反左向ケ左
		一二、억계—총	擔へ銃
一三、세워—총		立テ銃	
一四、압호로—갓		前進メ	
一五、분대—립		分隊止レ	
一六、압호로—나라넛		前並へ	
一七、경엿		敬禮	
一八、右向압호로—갓		右向ケ前進メ	
一九、左向압호로—갓		右向ケ前進メ	
二〇、도라右便압호로—갓		廻レ右前進メ	
二一、도라右便—립		廻レ右止レ	
3면 <사진 32-3 左>		二二、步調—取헛	步調取レ
		二三、급보로—갓	速驅步進メ
	二四、구보로—갓	驅步進メ	
	二五、속보로—갓	速步進メ	
	二六、완보로—갓	徐步	
	二七、步調갓쳐	步調止メ	
	二八、외자—칼	著ケ	
	二九、뽑아—칼	取り劍	
	三〇、탄알—잡껏	彈丸込メ	

구분	國漢文	日文
	三一、탄알—썰앗	彈丸押ケ
	三二、업디어—총	伏射
4면 <사진 32-4 右>	三三、쏟어—총	膝射
	三四、누어—총	速射
	三五、사격	射テ
	三六、사격중지	射ヲ待テ
	三七、사격긔처	射チ止メ
	三八、업디엿	伏セ
	三九、쏟엿	折り數ケ
	四〇、起立	起立
	四一、行伍各々右로—갓	組々右へ進メ
	四二、行伍各々左로—갓	組々左へ進メ
	四三、右로方向맞귀—갓	右ニ要換へ進メ
5면 <사진 32-4 左>	四四、左로方向맞귀—갓	左ニ要換へ進メ
	四五、걸어—총	必銃
	四六、풀어—총	解ケ銃
	四七、취립	集レ
	四八、해처—갓	ヲカレ
	四九、中央基準左右로해척	中央基準左右ニ開
	五〇、左翼基準右로해척	左翼基準右ニ開
	五一、右々左	右々左
	五二、右로—맞	頭右
	五三、左로—맞	々左
	五四、바로—맞	中
	五五、맞드러—총	捧ケ銃

## 〈참고문헌〉

### 1. 사료

- “光復軍豫備隊本部移轉”, 『조선일보』(1945년 12월 16일)
- “光復豫備隊協贊會移轉”, 『중앙신문』(1945년 12월 16일)
- “光復軍協贊會移轉”, 『동아일보』(1945년 12월 18일)
- “韓國光復軍 豫備隊協贊會”, 『신조선보』(1945년 12월 18일)
- “敦岩莊 경비대 해산”, 『자유신문』(1946년 2월 23일)
- “金如山氏出監”, 『중앙신문』(1947년 7월 18일)
- “李國務總理를 爲始 國民思想統一協會를 創立”, 『경향신문』(1949년 9월 16일)
- “柳珍山씨 걸어 誣告 등 맞告訴 김여산씨 등”, 『경향신문』(1971년 7월 3일)
- “20年만에 열린 市廳金庫 속에 光復軍 서류 등 貴한 資料”, 『매일경제』(1972년 1월 14일)
- “(26年 間 密閉되었던 서울市廳 金庫속서) 光復軍장비·書類발견”, 『동아일보』(1972년 1월 14일)
- 安鍾益, “26年만에 열어 본 서울市庁 金庫서 光復軍史料 등 발견”, 『조선일보』(1972년 1월 14일)
- “光復軍文書 등 발견”, 『경향신문』(1972년 1월 14일)
- “광복군 관계 書類 등 발견”, 『중앙일보』(1972년 1월 14일)
- 李時憲, “治安團體 書類보관해줬다”, 『동아일보』(1972년 1년 15일)
- 金英鎔, “光復軍 國內支隊것”, 『조선일보』(1972년 1월 15일)
- “市廳 金庫서 발견된 書類 國內 光復軍別動隊의 것”, 『경향신문』(1972년 1월 15일)
- “서울市支部 結成 民主회복 國民會議”, 『동아일보』(1975년 3월 7일)
- “부음”, 『동아일보』(1985년 10월 7일)

## 2. 단행본

국립항공박물관, 『국립항공박물관 개관도록』, 서울: 국립항공박물관, 2020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편, 『독립운동사4(임시정부사)』, 독립유공자사업기금운  
용위원회, 1972,

<http://uci.or.kr//G901:A-0008258638@N2M>

한국정경사, 『寫眞으로 본 國會二十年』, 서울: 한국정경사, 1968

## 3. 연구논문 및 기타

김민호, “한국광복군 국내지대의 결성과 활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9호  
(2014):187-225,

<http://doi.org/10.15799/kimos.2014..49.006>

김정민, “한국광복군 군복과 군용장구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http://uci.or.kr//I804:11048-000000153461@N2M>

\_\_\_\_\_, “한국광복군의 군복”, 『광복 75주년 및 개관 33주년 기념 국제학술심  
포지엄 발표자료집』(2020):11-27

문화재청, “2010년도 문화재위원회(근대문화재분과) 제2차 회의록”(2010년  
4월 1일)

이동식, 2019. “새로 공개된 김구의 친필유묵과 반탁운동”. 『第73回 定期 學術  
大會(2019年 春季 學術大會) 發表 資料集: 東아시아의 風流 文化와 思  
想』:121-129

한상도, “해방정국기 민족문화 재건 논의의 내용과 성격”, 『사학연구』 89호  
(2008):119-157

<http://uci.or.kr//G704-001261.2008..89.002>

#### 4. 전자자료

공훈전자자료관(<https://e-gonghun.mpva.go.kr>)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https://newslibrary.naver.com/>)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근현대사 아카이브

(<http://archive.much.go.kr/search.do>)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정보시스템(<https://search.i815.or.kr>)

부산향토문화백과(<http://busan.grandculture.net>)

서울기록원(<https://archives.seoul.go.kr>)

용문중학교 홈페이지(<https://yongmoon.sen.ms.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



(Abstract)

## A Study on the Reserved Military Units of the Korean Independence Force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Eom, Tae-yo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nature and operation of "the Korean Independence Army Reserve Units", which was established and operated after the Independence from the Japan Occupation, as a force supporting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Korean Independence Army. This study analyzed artifacts of the Korean Independence Army Reserve owned by KAM(Korea Army Museum) along with various media articles and photographs discovered in the 12th safe cabinet located in Seoul City Hall in 1972. Based on these materials, This study examine the establishment, activity, organization structure, and operation of the Korean Independence Army Reserve, and also analyzed the relationship with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Korean Independence Army. In addition, This study compared the lists of discovered materials published by media in 1972 with the list of artifacts in KAM so that it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the further additional investigation of artifacts of Korean Independence Army Reserve.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a sense that it examined in detail the nature and operation of Korean Independence Army Reserve, which has not been clearly studied until now through analysing related historical materials and artifacts owned by KAM.

Keywords : the Korean Independence Army Reserve,  
the Korean Independence Army,  
Domestic Branch of the Korean Independence Army,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KAM(Korea Army Museum), Seoul City Hall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2, No. 123, pp.133-172  
<https://doi.org/10.29212/mh.2022..123.133>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 1860~70년대 조선의 砲架 제작과 메이지 일본 大砲 유입

이재정 |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강사

## 목 차

1. 서론
2. 1860~70년대 砲架 제작과 운현궁 小砲 砲架
3. 개항 이전 메이지 일본 大砲 유입의 과정과 목적
4. 결론

**초 록** 본 논문에서는 1860~70년대 조선에서 새로 만든 砲架의 종류와 기술적 특징을 분석하고, 조선에서 포가를 제작하는 데 메이지 일본으로부터의 대포 유입이 큰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병인양요 이후 조선은 서구의 무기에 경각심을 느끼고 양무서적을 연구해 신무기를 제작했다. 특히 포가 제작은 극적인 변화를 보였는데, 이를 보여주는 결과물이 운현궁 小砲 포가다. 그런데 운현궁 소포 포가를 양무서적을 참고해 만든 다른 포가와 비교하면, 운현궁 소포 포가에는 양무서적만으로 습득하기 어려운 서구 군사기술이 적용됐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조선에서 양무서적을 통해 간접적으로 서구 무기를 경험하는 것을 넘어서 직접 실물을 접한 정황을 드러낸다. 이러한 정황은 메이지 일본의 외무성에서 작성한 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외무성의 문서에 따르면 1873년 조선에서는 메이지 일본에서 만든 서구식 대포인 4근 산포를 수입했다. 또한 초량 왜관에서는 4근 산포를 비치해 시연하고 이를 조선인들에게 공개했다. 이처럼 조선이 공식 교역과 왜관 시연을 통해 접한 4근 산포의 포가가 운현궁 소포 포가 제작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운현궁 소포 포가 제작의 배경으로는 신미양요 직후 대포 개선의 필요성을 실감한 조선의 절박함, 그리고 급변하는 국제 무기 시장에서 구식 재고가 된 4근 산포를 일부 처분하려는 일본의 의도를 들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운현궁 소포 포가는 병인양요 직후부터 1870년대까지 이어지는 조선의 신무기 제작 노력의 일면, 그리고 조선이 일본제 대포 유입을 통해 국제적 무기 유통망에 포섭되는 정황을 드러낸다.

**주제어** : 조선, 메이지 일본, 대포, 포가, 운현궁 소포 포가,  
4근 산포

## 1. 서론

조선은 병인양요와 신미양요를 통해 서구 열강의 군사력을 체감했다. 두 차례의 양요는 발발 배경과 교전 당사자들의 전력, 전투 현황, 전쟁의 결과에 있어서 적잖은 차이를 보였다. 그렇지만 두 차례 양요 모두 근대 서구 화약병기의 위력을 조선인들에게 각인시켰다. 당시 서구에서는 사거리와 발사 속도, 파괴력, 안정성에 있어서 조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달된 화약병기를 운용하고 있었다.<sup>1)</sup>

서구 화약병기의 위력에 경각심을 느낀 조선에서는 병인양요 이후 서구식 무기를 제작하려고 노력했다. 갑신정변에 참가했던 朴齊綱이 지은 『近世朝鮮政鑑』에서는 조정에서 노획한 서구 대포를 모방하거나 일종의 방탄복인 면제배갑, 증기선, 그리고 기뢰인 水雷砲를 개발한 일화를 소개했다. 실제로 병인양요 이후 조선에서는 청나라의 양무서적을 참고해 새로운 형식의 대포와 砲架를 제작했으며, 『近世朝鮮政鑑』에서 언급한 수뢰포도 만들었다.<sup>2)</sup>

이러한 신무기 제작은 처음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않았다. 『近世朝鮮政鑑』에서는 면제배갑이나 증기선 등 일부 무기 제작을 실패 사례로 소개하면서 비판했다.<sup>3)</sup> 한 연구에서는 대원군 집권기의 신무기 개발이 과학적인 근거가 부재한 상태에서 이뤄져 대부분 실패했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리고 서구식 신무기 제작 기술 습득은 개항 이후 領選使 등 사절단을 파견한 뒤에야 실현된 것으로

1) 특히 조선군이 모든 전투에서 패한 신미양요 당시 조선군과 미군이 운용한 화약병기의 성능 격차에 대해서는 Thomas Duvernay, "A Comparison of Firearms Used in the Shinmiyangyo", 『민족문화논총』 44(2010), 255~269쪽.

2) 연갑수, "대원군 집권기 무기개발과 외국기술 도입 - 『訓局新造軍器圖說』과 『訓局新造器械圖說』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학예지』 9(2002).

3) 『近世朝鮮政鑑卷之上』(探求堂 영인본, 1975), 25~26쪽.

파악했다.<sup>4)</sup>

반면 개항 이전 조선시대를 개항 이후와 단절되는 “鎖國”의 시대로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개항 이전과 이후의 연속성을 강조한 연구도 있다.<sup>5)</sup> 이에 따르면 개항 이전 조선의 신무기 제작 실상을 보여주는 『訓局新造軍器圖說』, 『訓局新造器械圖說』은 개화사상에 영향을 준 것으로 여겨지는 양무서적을 도입하고 소화한 결과물이다. 같은 연구에서는 이러한 개항 이전 조선의 노력이 단절되지 않고 개항 이후에도 계승됐음을 보이려고 했다.<sup>6)</sup>

실제로 근래 여러 연구에서는 강화도 조약 체결 이전 시기를 근대가 시작하는 “개항기”와 단절된 시대로 보는 것에 의문을 표한다. 오히려 정치적, 외교적 측면에서 개항 이전과 이후의 연속성에 주목한다. 아울러 이러한 연속성을 당시 조선이 맞닥뜨린 역사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선인들이 취한 주체적 움직임의 발로라고 여긴다.<sup>7)</sup> 이러한 맥락에서 개항 이전 조선의 무기 제작에 대한 연구는 19세기 후반 조선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을 재고하는 도구로 활용할

4) 이은봉·박영현·임영숙, 『韓國武器發達史』, 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4, 560~561쪽.

5) 연갑수, 『대원군집권기 부국강병정책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1; 연갑수, 앞 논문(2002).

6) 연갑수, 앞 책, 2001, 201~205쪽.

7) 정치적 측면의 경우, 강화도 조약 체결 전후로 이어지는 조선 내부 개혁 세력의 동향과 관련해 한보람, “개항 전후 신헌(申櫓)의 시무개혁론 연구”, 『한국문화』 90(2020), 257~265쪽. 외교적 측면, 특히 강화도 조약 체결 전후 과정에서 드러나는 朝日 외교 질서의 연속성에 대해서는 김홍수, “일본 역사교과서의 강화도조약 기술 검토”, 『동북아역사논총』 35(2012), 282쪽; 안종철, “19세기 ‘국제법’의 성격과 조일수호조규(1876)”, 『역사비평』 114(2016), 114~116쪽; 이근관, “조일수호조규(1876)의 재평가 - 전통적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관점으로부터 -”, 『서울국제법연구』 11(1)(2004), 73~75쪽. 이러한 논의는 ‘전근대’와 ‘근대’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연구가 늘어나는 최근 경향과 상응하기에 주목된다. ‘전통(전근대)’과 ‘근대’를 연속적으로 파악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박준형, “『한국근대 I』 ‘근대’를 포섭한 ‘전통’의 시각과 ‘사실’을 전유한 ‘역사’들에 대한 재고”, 『역사학보』 247(2020), 23~24쪽.

수 있다.

필자는 강화도 조약 체결 이전과 이후를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는 틀에서 벗어나려는 연구 동향에 심분 공감한다. 이러한 연구 기초를 발전적으로 계승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충분히 주목하지 못한 병인·신미양요 직후 조선의 신무기 제작을 재조명하겠다. 구체적으로 砲架의 실태에 주목하겠다. 포가는 병인양요 이후 조선에서 만든 무기 가운데서 가장 극적인 변화상을 보여줬다. 특히 고종 11년(1874)에 만들어진 운현궁 小砲를 싣는 포가(이하 운현궁 소포 포가)는 기존의 포가보다 진일보한 구조를 갖춰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았다.<sup>8)</sup>

획기적인 구조에도 불구하고 운현궁 소포 포가가 만들어진 배경을 본격적으로 살핀 연구는 매우 드물다. 선행 연구에서는 운현궁 소포 포가가 양무서적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대원군 집권기 무기 개발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봤다.<sup>9)</sup> 그렇지만 운현궁 소포 포가는 당시 조선에서 참고한 양무서적에서 찾기 어려운 기술적 특징을 지녔다. 이 점에서 운현궁 소포 포가는 단순히 양무서적에만 의존해 만들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청나라를 통해 여과된 지식의 집합체인 양무서적을 통해 서구식 무기를 제한적으로 체험하는데 그치지 않고, 국제적 교류를 통해 직접 실물을 입수하고 분석한 결과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정황을 드러내기 위해 이 글에서는 먼저 병인양요와 신미양요를 거치면서 조선에서 새로 제작한 포가들의 특징을 검토하겠다. 특히 운현궁 소포 포가에는 양무서적만으로 습득하기 어려운 기술적 요소가 있음을 보이겠다. 나아가 운현궁 소포 포가를 만드는

8) 연갑수, 앞 책, 2001, 201쪽; 이강철, 『德浦鎭 砲臺 發掘調査 報告書』, 김포군, 1980, 124~125쪽.

9) 박재광, 『화염 조선』, 파주: 글항아리, 2009, 191~203쪽; 연갑수, 앞 책, 2001, 197~201쪽.

데 해외로부터의 무기 유입이 관여했을 정황을 보이겠다.

보다 구체적으로 일본과의 교류가 운현궁 소포 포가 탄생에 결정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메이지 정부를 수립한 일본은 사대교린의 기조 아래 전개된 기존 朝日 관계를 거부하고 조선 정부와 외교적 마찰을 빚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조선이 갈등의 당사자였던 일본을 통해 서구식 무기를 접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이러한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이 글에서는 일본 外務省 자료에 등장하는 1870년대 초 조선의 메이지 일본 대포 반입 관련 기사를 검토하겠다.

1860~70년대 조일 무기 교역을 다룬 선행연구가 있지만, 모두 대외관계사 연구로서 조일 외교의 변화를 추적하는 큰 틀 아래 무기 교역을 간략히 언급했을 뿐이다.<sup>10)</sup> 이 글에서는 그동안 충분히 주목받지 못한 조선의 일본 무기 반입이 지닌 의미를 조선의 서구 군사기술 도입이라는 측면에서 검토하겠다. 이를 통해 병인양요 직후부터 1870년대까지 이어지는 조선의 신무기 제작 노력의 일면을 드러내는 한편, 조선이 강화도 조약 체결 이전부터 근대 무기의 국제적 유통망에 포섭됐을 가능성이 높았음을 보이겠다.

## 2. 1860~70년대 砲架 제작과 운현궁 小砲 砲架

### 가. 병인양요 이후 砲架 제작과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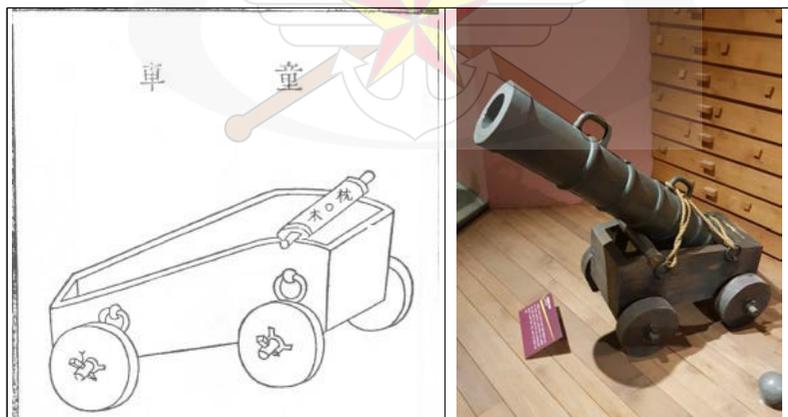
병인양요 당시 근대 서구 열강의 정규군과 최초로 교전한 조선은 서구의 군사적 위협을 실감했으며, 군비를 증강해 서구의 침입

10) 김홍수, 『한일관계의 근대적 개편 과정』,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09, 85~93쪽; 현명철, 『근대 변혁기 한일관계사 연구』, 파주: 경인문화사, 2021, 359~360쪽.

을 격퇴하려고 했다. 특히 청나라의 양무서적을 참고해 서구의 무기를 모방하려고 노력했다. 병인양요 이후 조선에서 새로 만들고 개량한 무기 가운데서 특히 포가는 단기간에 급격한 변화상을 보여줘 주목된다.

포가는 단순히 대포를 얹는 받침대 그 이상이다. 대포의 高角을 조정해 사거리를 조절하고, 전황에 따라 적재적소로 대포를 옮기는데 있어 포가의 형태는 결정적이다.<sup>11)</sup> 병인양요 이전 조선에는 여러 종류의 포가가 있었는데, 병서에서 구체적으로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포가로는 『戒垣必備』(1812)에 등장한 童車를 들 수 있다(〈그림 1〉).

〈그림 1〉 『戒垣必備』에 실린 童車 삽화(왼쪽). 전쟁기념관 소장 童車 복원품(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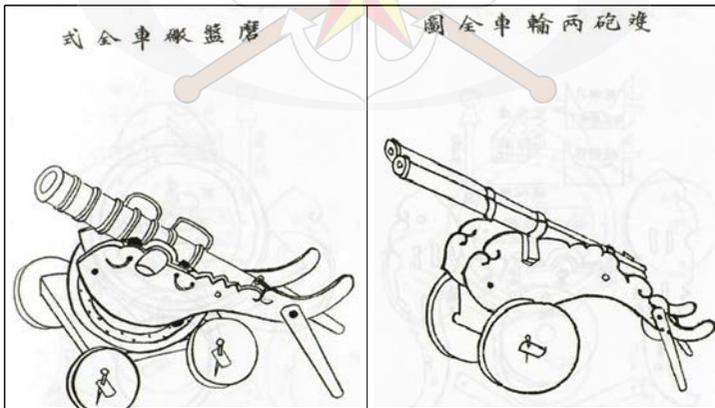


\* 출처 : 신업 譯註, 『조선의 무기 II』, 서울: 봉명, 2004, 68쪽(왼쪽).  
필자 촬영(오른쪽)

11) 김병문, “朝鮮時代 火藥武器 운용술”, 『학예지』 13(2006), 79쪽.

동거에 대포를 탑재할 때는 상자 모양의 수레 위에 枕木이라는 원통형 목재 부품을 두고 대포를 그 위에 얹었다. 침목은 대포의 고각을 조정하는데도 쓰였다. 대포는 삼베 밧줄로 동거에 단단히 묶어서 고정했다.<sup>12)</sup> 초보적인 구조를 지닌 동거는 대포를 옮기고 사격하는데 많은 한계를 보였다. 동거는 작은 바퀴를 사용하는 四輪 포가여서 장거리 이동에 불편했다.<sup>13)</sup> 별도의 끌채가 없다는 점도 수레를 끄는 데 애로사항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또한 대포를 동거에 고정시키는 수단은 단순히 밧줄로 묶는 것에 불과했기 때문에 대포를 안정적으로 포가에 거치하기 어려웠다. 고각을 조정할 때는 밧줄을 풀고 침목을 움직인 뒤 다시 묶어야 돼 번거로웠을 것이다. 초보적인 형태의 동거보다 발전된 砲架는 병인양요 이후 등장했다(〈그림 2〉).

〈그림 2〉 『訓局新造軍器圖說』에 기재된 磨盤砲車(왼쪽)와 雙砲兩輪車(오른쪽)



\* 출처 : 강신업 譯註, 『조선의 무기 1』, 서울: 봉명, 2004, 97(왼쪽) · 100쪽(오른쪽)

12) 강신업 譯註, 『조선의 무기 1』, 서울: 봉명, 2004, 69쪽.

13) 김병륜, 앞 논문(2006), 87쪽.

〈그림 2〉는 마반포거와 쌍포양륜거라는 포가를 보여주고 있다. 포가의 설계도는 『訓局新造軍器圖說』에 실렸는데, 이 자료는 고종 4년(1867)부터 6년(1869)까지 훈련도감에서 만든 신무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訓局新造軍器圖說』에서는 1842년에 처음 편찬된 청나라 양무서적 『海國圖志』를 상당 부분 참고해 만든 신무기들을 소개했다. 그 중에서 마반포거는 『海國圖志』에 실린 동명의 포가를, 쌍포양륜거는 四輪砲車를 모방했다(〈그림 3〉).<sup>14)</sup>

〈그림 3〉 『海國圖志』에 실린 마반포거(왼쪽)와 사망포거(오른쪽)



\* 출처 : 魏源 撰, 陈华·常绍温·黄庆云·张廷茂·陈文源 点校注释, 『海國圖志(下)』, 湖南: 岳麓書社出版社, 1998, 2061(왼쪽)·2065쪽(오른쪽)

마반포거는 제자리에서 회전시킬 수 있는 일종의 포탑(磨盤)을 四輪 수레 위에 설치한 포가로서 중량의 대포를 거치하는 데 쓰였고, 사망포거는 경량의 대포를 거치한 二輪 포가다.<sup>15)</sup> 『訓局新造軍器圖

14) 연갑수, 앞 논문(2002), 151쪽.

15) 『海國圖志』에서는 대포의 무게를 기준으로 포가의 용도를 구분했다. 1천 근 이상 1만 근 이하는 마반포거에 거치해 전함이나 요새에서 쓰고 1천 근 이하는 사망포거에 거치해 기동력이 필요한 야전에서 활용했다. 반면 『訓局新造軍器圖說』에는

說』의 마반포거와 쌍포양륵거는 『海國圖志』에 실린 原型 포가의 특징을 본떴는데, 동거보다 발달된 구조를 보였다. 마반포거와 쌍포양륵거 모두 기존의 동거와 비교했을 때 포가의 이동과 射角 조절이라는 측면에서 진일보했다. 마반포거의 경우 『海國圖志』의 원형 포가처럼 좌우로 회전할 수 있는 받침대가 사륵 포가 위에 얹혀졌다. 이 점에서 동거보다 원활하게 偏角을 조정할 수 있었다. 쌍포양륵거에는 끝채로도 쓸 수 있는 두 갈래의 砲架架尾와 커다란 바퀴 한 쌍이 있었다.<sup>16)</sup> 때문에 쌍포양륵거는 동거에 비해 이동과 편각 조정이 수월했다.

대포를 포가에 안정적으로 거치할 수 있다는 점도 마반포거와 쌍포양륵거의 장점이었다. 동거는 대포를 단순히 줄로 묶어서 고정하는 것이 전부였다. 반면 마반포거에는 砲耳를 거치할 수 있는 홈이 있었고 이 홈 위로 경첩을 덮어서 대포를 거치했다. 쌍포양륵거에는 경첩은 없지만 마반포거와 마찬가지로 포이를 거치할 홈이 파였다.

마반포거와 쌍포양륵거는 기존의 조선시대 포가보다 여러모로 진일보했지만, 『海國圖志』의 원형 포가와 다른 특징을 지녔다. 먼저 『海國圖志』의 포가와 비교했을 때 『訓局新造軍器圖說』의 포가는 고각의 조절과 고정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 『海國圖志』에서는 고각을 조정하는 보조 도구인 砲規를 삽화로 묘사하고 그 중요성을 본문에서 강조했다지만, 『訓局新造軍器圖說』에서는 砲規에 대한 내용을 대체로 생략했다.<sup>17)</sup> 또한 『訓局新造軍器圖說』의 포가 설계도에서 고각을 조절하고 고정시키는 부품을 찾아보기 어렵다.

한편 마반포거와 쌍포양륵거의 경우 공통적으로 한 쌍의 가느다

대포의 중량에 따른 포가의 용도 구분이 보이지 않는다. 『訓局新造軍器圖說』 편찬 당시 조선에는 1천근 이상의 대포가 드물었기에 『海國圖志』의 구분이 무의미했던 것으로 보인다. 연갑수, 앞 논문(2002), 151·156쪽.

16) 砲架架尾는 기관총 또는 화포 등의 뒤로 나온 다리를 가리킨다. 김순현 編著·한국군사학회 監修, 『(最新)軍事用語 韓英辭典』, 서울: 연경문화사, 2005, 1745쪽.

17) 연갑수, 앞 논문(2002), 154쪽.

란 나무 지지대(塾木)가 포가가미를 지탱하고 있다. 대포를 발사할 때는 폭발력 때문에 駐退가 발생하는데, 『海國圖志』의 포가는 포가가미를 바로 지면에 접촉시켜 포가가미와 지면 사이의 마찰력으로 駐退를 완화한다.<sup>18)</sup> 반면 마반포거와 쌍포양륜거의 경우 塾木의 꼬트머리만 지면에 닿는다. 이런 경우 포가가미와 지면 사이의 마찰력도 줄어들뿐더러 駐退 때문에 塾木이 손상될 우려가 있다.

『訓局新造軍器圖說』의 포가는 병인양요 직후 양무서적을 중심으로 이뤄진 조선의 서구 군사기술 습득 상황을 보여준다. 분명히 기존의 동거와 비교했을 때 새로 만든 포가는 양무서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구조적 이점을 살렸다. 한편으로는 양무서적 원본에는 없으며, 실용성이 의심되는 독창적 요소를 마반포거와 쌍포양륜거에서 찾을 수 있다. 마치 서구식 포가를 직접 운용하면서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만들었다기보다는 설계도만 참고해 초보적으로 모방했다는 인상을 준다. 이는 양무서적이라는 여과를 한 단계 거쳐서 간접적으로 서구 군사기술을 이해한 조선의 특징과 한계를 드러낸다. 이러한 한계는 운현궁 소포 포가가 등장하면서 해소됐다.

#### 나. 운현궁 小砲 砲架의 특징과 의의

이른바 운현궁 소포는 1874년 운현궁에서 주조한 일련의 前裝式 청동제 대포를 가리킨다. 소포보다 규격이 큰 中砲 역시 유물이 현존하며, 1980년대 강화도에서 다수 출토됐다.<sup>19)</sup> 현재 국립고궁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등지에서 소장하고 있으며, 특히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소장한 소포에는 포가가 달려 있다(<그림 4>).

18) 駐退는 포신 및 기타 주퇴 운동부가 추진제 연소 시 발생하는 힘에 의해 후방으로 운동하는 것을 뜻한다. 국방기술품질원, 『국방 과학 기술 용어 사전』, 서울: 국방기술품질원, 2011, 847쪽.

19) 이강철, 앞 책, 1980, 117~124쪽.

〈그림 4〉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운현궁 소포 포가



\* 출처 : 필자 촬영

운현궁 소포에는 기존 조선시대 銃筒에 활용된 것보다 숙련된 주조 기술이 적용된 것으로 여겨진다.<sup>20)</sup> 그러나 운현궁 소포가 기존 대포와 확연히 구별되는 점은 대포 그 자체보다는 포가에 있다. 운현궁 소포 포가에는 1870년대 초 조선에서 단순히 양무서적만으로 습득할 수 없는 기술적 요소들이 존재한다.

먼저 砲架架尾를 들 수 있다. 마반포거와 쌍포양륜거에도 포가가 미가 있지만 운현궁 소포 포가의 포가가미는 一體型이라는 점에서 구분된다. 마반포거와 쌍포양륜거, 그리고 『海國圖志』의 포가는 모두 두 장의 판자로 만든 두 갈래의 포가가미를 지녔다. 이러한 포가가미는 서구에서 18세기 말까지 널리 사용했지만 영국에서 개발한 일체형 포가가미에 밀려 19세기 전반까지 점진적으로 교체됐다.<sup>21)</sup> 전자와 비교했을 때 후자의 장점은 더 튼튼하고, 포가를 옮

20) 이강칠, 앞 책, 1980, 121쪽.

21) 두 장의 판자를 연결한 두 갈래의 포가가미는 Bracket Trail 혹은 Split Trail이

기거나 회전하는 것이 더 수월했다는 것이다.<sup>22)</sup> 이러한 기술적 변화는 조선에서 참고한 『海國圖志』에서는 찾을 수 없다.

또 다른 중요한 구조적 특징으로는 高角 나사(Elevating Screw)를 들 수 있다. 고각 나사는 포가에 대포를 얹혔을 때 砲尾가 닿는 부분에 삽입한 나사다. 이 나사에 손잡이를 붙여 회전시켜 고각을 조절할 수 있었다. 대포를 쏠 때는 미세한 각도의 차이가 포탄의 사거리를 수십 미터에서 수백 미터까지 늘이거나 줄일 수 있었다.<sup>23)</sup> 고각 나사는 정교한 고각 조절을 용이하게 해줘 유연한 사거리 조절을 가능케 했다. 현재 운현궁 소포 포가에는 고각 나사가 남아있지 않지만, 포가 본체에 뚫려있는 나사 삽입구를 통해 원래는 고각 나사가 사용됐음을 추측할 수 있다(〈그림 5〉). 고각 나사는 마반포거와 쌍포양륜거에서 찾아보기 힘든 고각 조절과 고정 기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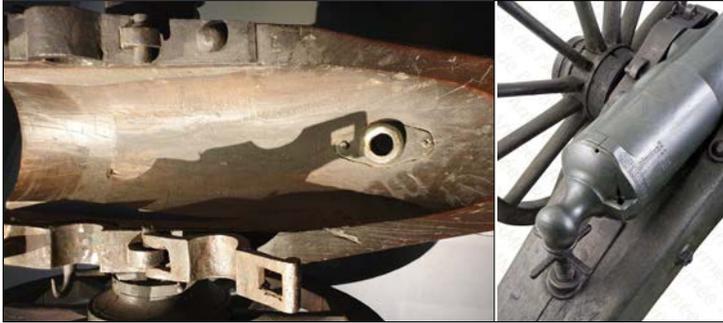
---

라고 불렀다. 반면 분리되지 않은 일체형의 포가가미는 Block Trail이라고 불렀다. Kevin F. Kiley, 『Artillery of the Napoleonic Wars: Field Artillery, 1792-1815』, Barnsley: Frontline Books, 2015, 302쪽, Block Trail, Bracket 항목. 특히 후자는 나폴레옹 전쟁(1803~1815) 당시 영국에서 주로 활용했으며, 영국과 대립했던 프랑스도 1827년 이후 도입했다. Kevin F. Kiley, 앞 책, 2015, 160쪽.

22) Nick Lipscombe, 『Wellington's Guns: The Untold Story of Wellington and his Artillery in the Peninsula and at Waterloo』, Oxford: Osprey Publishing, 2013, 25~26쪽.

23) 예를 들어 1793년 영국 육군이 야전에서 널리 사용한 6파운드 대포는 고각이 1도 일 때 사거리가 600~700야드 정도였지만 3도에서는 대체로 1,000야드를 넘겼다. Ralph Willett Adye, 『The Bombardier, and Pocket Gunner』, Boston: Printed for E. Larkin by William Greenough, 1804, Ranges of Brass Guns, with one shot, 1793., 156쪽.

〈그림 5〉 운현궁 소포 포가에 있는 고각 나사 삽입구(왼쪽)와 프랑스 앵발리드 군사 박물관 소장 포가의 고각 나사(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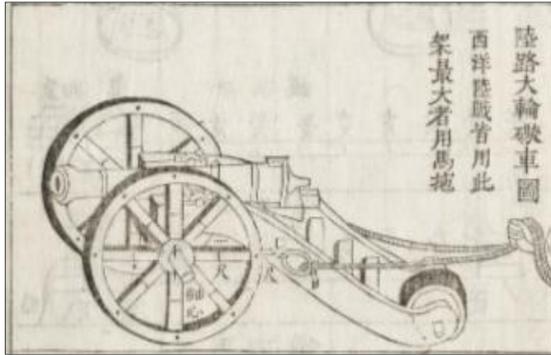


\* 출처 : 국립고궁박물관 제공(왼쪽), 프랑스 앵발리드 군사 박물관 공식 홈페이지, Le Pétulant, canon de montagne de 4 rayé modèle 1859 항목, <https://basedescollections.musee-armee.fr/ark:/66008/59901?posInSet=2&queryId=6a32c1d2-3b0b-4559-93cb-17d37963fa32>(접속날짜 2022년 3월 29일)(오른쪽)

일체형 포가가미와 마찬가지로 고각 나사도 당시 조선에서 접한 양무서적, 그리고 양무서적을 참고해 제작한 새로운 포가에서 찾아볼 수 없는 기술적 특징이다. 한편 병인양요 이후 조선에서 신무기 제작에 참고한 것으로 보이는 또 다른 양무서적으로는 『演礮圖說輯要』가 있다.<sup>24)</sup> 『演礮圖說輯要』에는 운현궁 소포 포가와 유사한 포가의 삽화가 실려 있다(〈그림 6〉).

24) 연갑수, 앞 책, 2001, 198~200쪽.

〈그림 6〉 『演礮圖說輯要』의 야전용 포가



\* 출처 : 『演礮圖說輯要』(서울대학교 규장각 奎中2294-v.1-2), 1책 028b면

외형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演礮圖說輯要』의 포가와 운현궁 소포 포가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그 것은 고각 조정 수단이다. 『演礮圖說輯要』의 포가에 있는 고각 조정 수단은 손잡이가 달린 썰기다. 이러한 썰기는 포미 밑에 넣어 고각을 조절하는데 쓰였다. 이는 18세기 전반 서구에서 널리 쓰인 수단이지만, 1740년대 이후에는 썰기 뒷면에 회전 나사를 삽입하는 등 고각 조정의 정확성을 높이는 조치가 이뤄졌다.<sup>25)</sup> 운현궁 소포 포가에 쓰인 고각 나사는 이러한 발전 과정의 마지막 단계에 속한다.<sup>26)</sup>

일체형 포가카미와 고각 나사는 당시 조선에서 양무서적만으로 습득하기 어려운 기술이 운현궁 소포 포가에 적용됐다는 점을 보여준다. 두 가지 요소는 18세기 후반을 거쳐 19세기에 들어 서구 야전용 포가에서 보편화됐다. 실제로 운현궁 소포 포가는 19세기 중

25) Anthony L. Dawson, Paul L. Dawson, Stephen Summerfield, 『Napoleonic Artillery』, Marlborough: The Crowood Press UK, 2008, 22쪽.

26) 특히 1770년대 프랑스 육군에서는 고각 나사를 신식 대포에 도입했고, 프랑스 대포는 동시기 타국의 대포보다 우위에 설 수 있었다. Kevin F. Kiley, 앞 책, 2015, 37쪽.

엽 서구에서 쓴 포가와 매우 유사한 형태를 갖췄다(〈그림 7〉).

〈그림 7〉 1862년 제작 프랑스 육군 山砲와 포가



\* 출처 : 프랑스 앙발리드 군사 박물관 공식 홈페이지, Le Pétulant, canon de montagne de 4 rayé modèle 1859 항목,  
<https://basedescollections.musee-armee.fr/ark:/66008/59901?posInSet=2&queryId=6a32c1d2-3b0b-4559-93cb-17d37963fa32>(접속날짜 2022년 3월 29일)

불과 수 년 전 양무서적을 참고해 만든 포가보다 기술적으로 세련된 운현궁 소포 포가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선행 연구에서는 운현궁 소포 포가 제작의 원동력을 양무서적을 활용하고 기술자들을 기용한 대원군 정권의 자체적인 노력에서 찾았다.<sup>27)</sup> 그러나 앞서 살펴본 병인양요 이후 조선의 포가 제작 상황을 고려한다면, 양무서적에만 의존해 단기간에 운현궁 소포 포가 같은 서구식 포가를 만들 수 있었을지 의문이다.

19세기 중엽 서구의 포가는 18~19세기에 무수한 시행착오를 통해 완성됐고, 조선이 접한 양무서적의 포가보다 기술적으로 발전된 면을 보인다. 때문에 양무서적을 매개로 한 간접적인 서구 무기 체

27) 박재광, 앞 책, 2009, 191~203쪽; 연갑수, 앞 책, 2001, 197~201쪽.

힘만으로 단기간에 기술적 격차를 뛰어넘어 운현궁 소포 포가를 만드는 것은 어려웠을 것이다. 양무서적을 참고하는 것을 넘어서 직접 실물을 접하고 연구하는,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기술적 경험이 필요했을 것이다. 실제로 1870년대 초 조선에서는 양무서적 연구에 그치지 않고 대외 교류를 통해 적극적으로 서구식 무기를 입수하고자 했다. 이런 움직임은 개항 이전에도 확인할 수 있어 주목되는데, 1870년대 초 메이지 일본 대포 반입이 그렇다.

### 3. 개항 이전 메이지 일본 大砲 유입의 과정과 목적

가. 1870년대 초 메이지 일본 大砲 유입 : 4근 山砲를 중심으로

1873년 전반, 草梁 倭館을 중심으로 조선 현지 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던 메이지 정부 外務省은 일본 상인과 조선 관원 사이의 밀무역에 대한 소식을 접했다. 조선과 일본의 공무역 관리를 위해 대마도에서 파견한 代官 아래서 일했던 마시마 센조(眞嶋仙藏), 그리고 왜관에서 통번역과 기타 실무를 담당했던 小通事 崔在守 사이의 밀무역이었다. 마시마 센조는 예전에 대관이었던 마에가와 타헤에(前川太兵衛)의 귀뜸을 따라서 1873년 3월 일본 오사카에서 총기를 구입한 뒤, 울산으로 건너가 최재수와 밀거래했다.<sup>28)</sup>

조선 관원과 일본 상인 사이의 무기 밀무역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1년 전 동래부에서는 대마도 상인을 통해 대포와 조총, 탄약 등 군수물자를 구입했다.<sup>29)</sup> 그렇지만 대마도 상인과 최재수의

28) 한국일본문제연구회 編, 『朝鮮外交事務書(七)』, 서울: 성진문화사, 1971a, 35~36쪽. 이하 『朝鮮外交事務書(七)』, 『朝鮮外交事務書(八)』, 『朝鮮外交事務書(九)』에서 인용하는 자료의 날짜는 양력이다.

29) 『東萊府啓錄』(서울대학교 규장각 奎15105-v.1-9) 7책, 145a, “去月二十九日晨朝

무기 밀거래 이후 조선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일본의 무기, 특히 대포를 입수하고자 했다.

1873년 5월 23일 외무성 外務小輔 우에노 가게노리(上野景範)가 야마가타(山縣) 육군 중장에게 보낸 문서에 따르면, 조선 상인들은 대포 4~5문을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조선에 거류한 일본 상인을 통해 전달했다.<sup>30)</sup> 이어서 우에노 가게노리는 조선의 풍속이 미개해 서양 물건을 꺼린다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서양 대포보다는 일본산 대포, 그 중에서도 수레(車臺)가 있어서 운용하기에 가볍고 편리한 대포를 골라줄 수 있는지 문의했다. 이후 5월 31일에 야마가타 중장은 우에노 가게노리에게 보낸 답신에서 조선으로 수출하기에 적합한 대포로 4근 山砲, 그 가운데서 쓰지 않는 것 5~6문을 지목했다.<sup>31)</sup>

4근 산포는 원래 1859년 프랑스 육군에서 채택한 전장식 대포(Cannon de 4rayé de montagne)로서 험난한 산지에서 운용하기에 적합했다. 이 산포는 수레를 활용하기 어려운 험지에서는 대포와 포가를 분리해서 말 2필에 싣고 운송할 수 있을 정도로 가벼웠다. 메이지 정부 수립 이전에도 막부에서는 1864년에 프랑스식 산포를 불완전하나마 모방했고, 1867년에는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 3세가 기증한 실물을 분석해 완성도를 높인 대포를 만들었다.<sup>32)</sup>

프랑스식 산포가 발사하는 포탄의 무게는 4킬로그램이었는데, 일본에서는 킬로그램을 斤으로 표기해서 4근 산포라고 불렀다. 4근

自馬島發船 到水旨風勢不利 西時轉向蔚山境海 戌時止泊此處而別求物種 依約受去亦云 故看審 則大砲三坐 鳥銃二十五柄 火藥二千五百斤 大砲鐵丸三百箇 環刀三十柄載來 … 同治十一年三月初十日.”

30) 한국일본문제연구회 編, 앞 책, 1971a, 183~184쪽. 외무성 관리 히로쓰 히로노부(廣津弘信)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대포 구입 요청은 소통사 최재수의 부탁이었다. 한국일본문제연구회 編, 앞 책, 1971a, 203쪽.

31) 한국일본문제연구회 編, 앞 책, 1971a, 221쪽.

32) 石川明範, “幕末における四斤山砲の國産化と関係する現存資料”, 『栃木県立博物館研究紀要. 人文』 17(2000), 82~81쪽.

산포는 예도 막부뿐만 아니라 다른 번에서도 수입하거나 자체 생산했으며, 막부군과 신정부군 사이에 벌어진 보신전쟁(戊辰戰爭, 1868~1869) 당시 양측에서 주력 야전포로 운용했다.

〈그림 8〉 일본 도치기 현립 박물관 소장 4근 山砲 복원품



\* 출처 : 石川明範, “幕末における四斤山砲の国産化と関係する現存資料”, 『栃木県立博物館研究紀要. 人文』 17(2000), 84쪽

4근 산포의 포가는 19세기 중엽 서구 포가에서 찾을 수 있는 요소들을 모두 갖췄다. 앞서 살펴본 일체형 포가가미와 고각 나사를 모두 갖췄고 이러한 요소들은 운현궁 소포 포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병인양요 직후 조선의 서구 포가 재현 정도, 조선이 접한 양무서적의 포가가 19세기 중엽 서구 포가보다 미발달한 점을 고려하면 운현궁 소포 포가의 원류는 4근 산포의 포가일 가능성이 크다.

조선의 대포 구매 문의로 분주했던 외무성으로 돌아가자. 1873년 7월 8일 외무성에서는 최종적으로 견적 증명서를 작성해 4근 山砲 6문과 탄약 및 기타 부속품을 조선에 판매하기로 결정했다.<sup>33)</sup> 4근

33) 한국일본문제연구회 編, 앞 책, 1971a, 386~387쪽.

山砲와 탄약 및 부속품은 陸軍省에 소속돼 무기를 관리한 武庫司에서 준비했는데 7월 29일부로 拂出 준비가 끝났다.<sup>34)</sup> 무고사에서 지급한 무기의 수송은 외무성 13등 出仕 야마노조 스케나가(山之城祐長)가 맡았다. 야마노조 스케나가 8월 8일 작성한 문서에 따르면 조선으로 보낼 무기는 11일에 해운 회사(廻漕會社) 소속 증기선에 적재해 오사카를 거쳐 시모노세키로 옮기고, 이후 일본 전통 선박(和船)으로 옮겨 대마도로 보낼 예정이었다.<sup>35)</sup>

조선으로 보내는 산포에 대해 모리야마 시게루(森山茂)와 外務大丞 하나부사 요시토모(花房義質)는 히로쓰 히로노부(廣津弘信)에게 보낸 서신에서 몇 문은 판매하고 나머지는 왜관에 보관할 것이라고 명시했다.<sup>36)</sup> 야마노조 스케나는 9월 11일 대포와 기타 물품을 싣고 대마도 이즈하라(嚴原) 항구에 도착한 뒤, 하치만마루(八幡丸)라는 선박으로 짐을 옮겨 실었다.<sup>37)</sup> 하치만마루는 9월 30일 출항했지만 풍랑에 휩쓸려 10월 2일 밤 대마도 오시카(小鹿) 앞바다에서 난파됐다.<sup>38)</sup> 다만 탄약은 상당부분 무용지물이 됐지만 총포류는 왜관으로 옮겨 비치할 수 있었다.<sup>39)</sup>

위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조선과 일본 양측 정부 간 공식 교역 이외에도 1870년대 초 조선에서 서구식 포가를 실물로 접할 수

34) 한국일본문제연구회 編, 앞 책, 1971a, 467쪽.

35) 한국일본문제연구회 編, 앞 책, 1971a, 519~520쪽.

36) 한국일본문제연구회 編, 앞 책, 1971a, 524쪽.

37) 한국일본문제연구회 編, 『朝鮮外交事務書(八)』, 서울: 성진문화사, 1971b, 31쪽.

38) 한국일본문제연구회 編, 앞 책, 1971b, 73~74쪽.

39) 1873년 12월 15일 히로쓰 히로노부는 모리야마 시게루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왜관에 총포류를 비치할 때 탄약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일본문제연구회 編, 앞 책, 1971b, 181쪽. 이에 대한 참고자료로 히로쓰 히로노부는 파선 직후 건진 탄약의 불량한 상태를 보고한 오쿠 기세이(奥義制)와 야마노조 스케나가의 서신을 첨부했다. 한국일본문제연구회 編, 앞 책, 1971b, 183~184쪽. 어느 쪽이든 파선으로 총포류가 유실돼 왜관으로 옮기지 못했다고 지적하지 않았다. 실제로 1년 뒤 오쿠 기세이는 1873년에 4근 산포를 비롯한 총포류를 왜관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한국일본문제연구회 編, 『朝鮮外交事務書(九)』, 서울: 성진문화사, 1971c, 677쪽.

있는 창구가 존재했다. 그 것은 초량 왜관에서 직접 서구식 대포의 운용을 관찰하는 것이었다. 당시 왜관에서는 소장한 대포를 시연하고 이를 조선인들에게 공개했다. 대포를 사격할 때는 조선의 관원들도 참석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중 한 사례로 1874년 8월 11일 초량 왜관에서 진행된 대포 시연을 들 수 있다.

당시 시연에서 활용된 대포는 4근 산포였으며 총 6문이 동원됐다. 이때 참관한 조선 관원 가운데는 앞서 언급한 최재수도 있었다. 최재수는 현장에 있던 외무성 통역관 스미나가 다쓰야스(住永辰安)와 담소를 나눴는데, 이 날 일본의 대포(砲器)를 보게 되니 실로 놀라우며 포연 가운데서도 포수들이 동요하지 않고 서있는 모습에 감탄했다고 칭찬했다.<sup>40)</sup> 최재수뿐만 아니라 다른 조선인들도 당시 왜관에서 시연한 대포의 성능에 주목했다.

朝市の 조선인 등이 어학소에 와서 생도들을 향해 단지책을 읽는 줄만 알았는데 오늘의 포술 단련은 실로 놀랍다(고 말했다) … 우리나라(조선)에는 매우 거대한 대포는 있어도 수레(車臺)는 없다(고 운운했다).<sup>41)</sup>

朝市는 이름 그대로 아침에 열리는 시장인데 왜관에서 생필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조선 정부에서 허가한 시장이다. 조시는 왜관의 守門 밖에 설치됐으며 조선 상인들은 왜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금지됐지만, 실제로는 왜관을 출입하는 것이 용이했다.<sup>42)</sup> 스미나가 다쓰야스는 이처럼 조시를 계기로 왜관을 드나든 조선인들의 평가를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40) 한국일본문제연구회 編, 앞 책, 1971c, 277쪽.

41) 한국일본문제연구회 編, 앞 책, 1971c, 278쪽.

42) 김동철, “17~19세기 부산 왜관의 開市와 朝市”, 『한일관계사연구』 41(2012), 237~239쪽.

조선인들의 논평 가운데 주목되는 부분은 車臺, 즉 수레 형태의 포가에 대한 지적이다. 물론 조선에도 동거나 마반포거와 같이 대포를 거치할 수 있는 수레 형태의 포가가 있었다. 조선에 車臺가 없다는 발언은 문자 그대로 수레 형태의 포가가 전무했다기보다는, 4근 산포의 포가만큼 발전된 포가가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만큼 4근 산포와 포가가 조선인들에게 남긴 인상은 강렬했다. 이러한 인식은 왜관의 시연을 통해 4근 산포를 관찰한 다른 병사들이나 通事들도 공유했다.

“그들(역자 - 조선인들)의 병졸과 通事가 하는 말이 ... 듣자하니 (일본의) 포술 같은 것은 서양풍을 많이 따라서 이로운 기구가 자못 많고 지금 왜관 내에 갖춘 수레(車臺) 딸린 거대한 대포(본문 주: 옛날 대마도 소씨 시절 미리 갖춰놓았으니 옛날 방식의 야전포이다)는 비할 데 없는 器械이며 ....”<sup>43)</sup>

해당 증언은 1874년 8월 31일에 외무 6등 출사 모리야마 시게루가 외무경 데라시마 무네노리(寺島宗則)에게 보낸 서신에 실렸다. 무기를 다루는 병졸들, 조일 외교의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통사들도 4근 산포를 높이 평가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당시 일본의 대포 운용이 서양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車臺에 실린 4근 산포를 극찬했다.

왜관 내부의 산포 시연은 1874년 8월에 단편적으로 이루어진 행사가 아니었다. 이는 오쿠 기세이(奥義制)가 1874년 11월 11일 모리야마 시게루와 히로쓰 히로노부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확인할 수

43) 한국일본문제연구회 編, 앞 책, 1971c, 515~516쪽 “彼ノ兵卒通事ノ話ニ … 聞ク砲術ノ如キハ多ク西洋ノ風ニ倣ヒ利器頗ル多シト今館内ニ備フル所ノ車臺ノ巨砲(본문 주: 旧宗氏ノ比豫備スル所即旧製ノ野戰砲ナリ)ハ無類ノ器械ニシテ ….”

있다. 이 때 서신을 보내기 전 11월 3일에 대포 시연을 하던 일본인이 발포하면서 부상을 입는 사고가 일어났다. 서신에서 오쿠 기세이는 안전사고가 났어도 대포 시연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대포 시연의 연원을 설명했다.

和館(倭館)에 총포를 갖춰 때때로 발사하는 것은 대마도 소씨(宗氏)가 (조선과) 통교하던 때부터 유래한 관습이며 저 나라(조선)는 터럭만큼도 괴이하게 여기지 않으니 이 때문에 작년에 다시 山砲와 기타 가볍고 편리한 신식 총기를 건너보내둔 것은 결코 非常한 경비 조치가 아니다.<sup>44)</sup>

대마도 소씨의 통교는 1860년대 말부터 1870년대 초까지 메이지 정부가 중앙집권화에 따른 외교권 일원화를 추구하기 이전, 대마도를 매개로 전개된 기존 조일 외교관계를 가리킨다. 즉 이미 1870년대 이전부터 왜관에서는 각종 총포를 비치해 시연하는 것이 관례여서 조선인들이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정도였다. 앞서 모리야마 시게루가 8월 31일에 보낸 서신에서 왜관의 4근 산포에 대해 대마도 소씨 시절 미리 갖춘 것이라고 주석을 단 것은 이러한 배경을 드러낸다. 그렇기 때문에 메이지 정부가 1873년에 산포 및 신식 총기를 왜관으로 옮긴 것은 조선과 일본 양측 입장에서 매우 평범한 조치였다. 이는 최소한 왜관 근처에서 활동하는 조선인들의 경우, 왜관을 매개로 조선으로 유입된 4근 산포 및 기타 신식 총포류에 상당히 익숙해졌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당시 조선에서 발전된 포가를 갖춘 서구식 대포, 특히 4근 산포를 접했을 경로로 메이지 정부와의 무기 교역과 왜관 내

44) 한국일본문제연구회 編, 앞 책, 1971c, 677쪽 “和館ニ銃砲ヲ備ヘ時々發射スルハ宗氏通交中ヨリノ慣習ニシテ彼國ヨリ毫モ恠トセス因テ昨年更ニ山用砲其他新製輕便ノ銃器ヲ渡シ置カルノハ敢テ非常ノ警備ニアラス.”

시연을 들 수 있다. 운현궁 소포 포가 짧은 시일 내 조선에 등장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이러한 일본으로부터의 대포 유입을 들 수 있을 것이다.

#### 나. 4근 山砲 유입의 목적과 의미

조선의 4근 산포 도입과 운현궁 소포 포가 제작 사이의 정확한 상관관계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지만 이미 개항 이전에도 조선에서 서구식 대포와 포가를 실물로 접했다는 점은 분명하다. 더군다나 양무서적의 수입원인면서 기존의 조공관계 아래서 조선과 원만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청나라가 아닌, 조선과 외교적 마찰을 빚고 있었던 일본을 통해 서구식 대포를 본격적으로 접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주지하다시피 광해군 1년(1609)에 맺어진 己酉約條을 기반으로 두고 전개된 조선후기 朝日 관계는 고종 5년(1868) 조선의 메이지 정부 서계 접수 문제로 난관에 봉착한다. 1868년 12월 일본은 조선에 서계를 보내 메이지 정부 성립을 선포한다. 또한 향후 조일관계에서는 조선이 아니라 메이지 정부의 도장을 찍은 路引과 서계를 보낼 것이라고 통보했다. 조선 정부는 서계의 격식이 이전과 상이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서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외무성은 1870년 2월 관리들을 조선으로 파견해 서계 문제를 교섭했지만 결렬됐다. 1871년 메이지 정부는 廢藩置縣을 실행하면서 대마도주를 외무성원으로 편입해 對조선 외교에서 주도권을 잡고자 했다. 조선은 서계 접수에 소극적이었으며, 이에 일부 외무성 관료들과 왜관측 인사들은 1872년 5월 말 왜관에서 벗어나 6월 초 동래부에서 집단 시위를 벌였다(攔出).<sup>45)</sup> 같은 해 9월 외무성은 왜관

45) 김홍수, 앞 책, 2009, 301~303쪽.

에 있던 대마도 상인들을 귀국시키고 외무성 관원들만 남겼으며, 이를 통해 기유약조는 붕괴됐다.<sup>46)</sup>

서계 접수 문제로 조선과 일본의 외교적 마찰이 증가하던 시기에 조선은 역설적으로 갈등의 당사자인 일본으로부터 4근 산포를 수입해 서구식 대포와 포가를 본격적으로 접했다. 메이지 정부의 태도도 주목된다. 4근 산포는 일본이 각고의 노력 끝에 1860년대 말에야 국산화했다. 메이지 정부는 이러한 무기를 불과 수년 후 일본과 외교적 마찰을 빚던 조선으로 큰 문제없이 수출했다. 왜관에서는 정기적으로 발포 시연을 하고 이를 조선인들에게 거리낌 없이 공개했다. 어떤 사유로 조선과 일본 양측은 4근 산포 교역에 긍정적으로 반응했을까.

조선의 경우 병인·신미양요를 거치면서 전국에 척화비를 세우고 이른바 洋夷에 대한 적개심을 표방했지만, “양이”의 무기를 결코 무시할 수 없었다. 특히 신미양요 당시 강화도의 여러 鎭堡에서 벌어진 모든 전투는 조선군의 참패로 끝났다. 정족산성 전투에서 조선군이 프랑스군을 격퇴한 병인양요와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두 양요의 전투 양상이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프랑스군과 달리 미군은 대포를 적극적으로 활용했기 때문이다.

병인양요 초기에는 강화도를 수비하는 조선군이 변변한 저항도 하지 않은 채 도주했지만, 이후 양현수가 이끄는 조선군은 정족산성에 매복해 프랑스군을 격퇴했다. 프랑스군은 조선군의 주력 개인화기였던 조총보다 사거리가 훨씬 긴 소총을 운용했지만, 매복한 조선군은 선제공격을 가해 사거리의 열세를 극복했다.<sup>47)</sup>

정족산성 전투에서 조선군이 승리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중요한

46) 현명철, 앞 책, 2021, 262~263쪽.

47) 양현수는 조선군 鳥銃의 사거리가 100보인 반면 프랑스군 소총의 사거리는 500보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荷居集』 권1 檄, 討洋舶都主檄 “我銃不過百餘步 賊丸能及五百步.”

원인으로 프랑스군이 대포를 동원하지 않은 점을 들 수 있다. 정족산성으로 파견된 프랑스군 분견대와 동행한 리델 신부는 분견대에 게 대포가 없는 것을 지적했다.<sup>48)</sup> 프랑스군 지휘관 로즈 제독은 당시 분견대가 성을 공략하기에 적합한 대포를 대동할 수 없어 정족산성을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sup>49)</sup>

결과적으로 병인양요 당시 프랑스군은 최신 화약병기, 특히 대포를 최대한 활용하지 못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조선군은 서구의 대포를 과소평가하게 됐다. 이 점은 제너럴 셔먼호 사건과 병인양요 직후 조선의 海防 논의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종 4년(1867) 평안도에서는 서구 선박의 평양 침범에 대응하기 위해 龍岡縣에 東津鎭을 세웠다. 1868년 3월에는 제너럴셔먼 호의 생존자를 물색하기 위해 미국 선박 세난도어 호가 대동강 하구로 접근했으며, 이 때 평안도관찰사 겸 도순찰사 朴珪壽는 東津僉使 李鍾元에게 유사시 대응책을 전달했다.

순찰사께서 어제 낮에 보낸 편지를 삼가 보니 이르기를 ... 대포는 원래 맞혀서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니 저들(미국인)의 물건은 기세를 북돋는 것에 불과하다. ... 저들의 대포는 우리 포수의 긴용함에 미치지 못하고 잘 쏘는 포수들이 연달아 쏘서 사람을 맞히는 것만 못하다. ... 저들이 만약 상륙해 鎭 근처로 다가온다면 옆드린 포수들이 갑자기 일어나 몰아친 즉 감히 침범하지 못할 테니 이것이 가장 요령을 얻은 것이다.<sup>50)</sup>

48) 한국교회사연구소 번역위원회 譯註, 『조선교구 역대 교구장 서한집 제1집 리델문서 I』, 서울: 한국교회사연구소, 1994, 118쪽.

49) 한국교회사연구소 譯, “韓佛關係資料(1866~1867) - 丙寅洋擾 -”, 『教會史研究』 2(1979), 245~246쪽.

50) 『東津禦侮輯要』(서울대학교 규장각 古4252.4-2) 戊辰三月東津禦侮日記 27일 “伏見巡相昨午下書曰 ... 大砲元非中傷彼類之物也即不過張聲勢之物也 ... 彼之大砲不

대포는 허장성세에 불과하며 서구의 군대가 상륙하면 매복한 조선군이 조총 사격으로 격퇴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정족산성 전투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미군은 프랑스군과 달리 효과적으로 대포를 운용했다. 신미양요 당시 미군은 함포와 포병의 지원 사격으로 강화도의 진보를 초토화했다.<sup>51)</sup> 보병과 동행한 포병은 미군의 행군을 저지하는 조선군을 격퇴하는 데 효과적이었다.<sup>52)</sup> 이러한 미군 포병의 위력은 조선에서도 주목했다.<sup>53)</sup> 조선군은 조총보다 사거리가 긴 대포를 강화도 진보에 수백 문 이상 비치해 미군을 공격했지만 낮은 명중률 때문에 큰 피해를 주지 못했다.<sup>54)</sup> 이와 같은 양측 대포 위력의 격차는 조선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조선에게 대포의 성능을 개선하고 방어체제를 보강할 동기를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sup>55)</sup> 이러한 과정에서 왜관의 대포 시연을 접한 조선에서는

如吾之砲手緊用莫如善放銃手連放而中其中人也 … 彼若下陸來近鎮邊時伏砲手猝起發作則必不敢犯入是最得要耳。”

- 51) 신효승, “1871년 미군의 강화도 침공과 전황 분석”, 『역사와 경계』 93(2014), 43~47쪽.
- 52) 근대한국외교문서 편찬위원회 編, 『근대한국외교문서 2』,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09, CAPTURE AND DESTRUCTION OF COREAN FORTS, Report of Rear-Admiral John Rodgers, FLAG-SHIP OF ASIATIC FLEET, Chefoo, China, July 5, 1871, 342쪽.
- 53) 鎭撫使 鄭岐源은 신미양요 당시 廣城堡를 비롯한 강화도 진보의 함락을 보고하면서 미군의 포격을 수차례 언급했다. 『高宗實錄』권 8 8년 辛未 4월 24일 “鎭撫使 鄭岐源以通津陣所報內 賊酋北登大母山上 陸運大砲 前導亂發 小銃亦爲齊發 而未時 賊酋轉入廣城津 … 則賊酋仍爲留碇 大砲無數亂發 孫石項城堞 舉皆奔潰.”
- 54) 신미양요 당시 미국 아시아함대 사령관 존 로저스(John Rodgers)는 미군 함선 2척이 손돌목을 지날 때 조선군이 15분 동안 맹렬히 포격했지만, 잘 맞지 않아 미군의 피해가 경미했다고 보고했다. 근대한국외교문서 편찬위원회 編, 앞 책, 2009, REPORT OF THE SECRETARY OF THE NAVY, EXPEDITION TO COREA, Report of Rear-Admiral John Rodgers, UNITED STATES STEAMER COLORADO, (1st rate), FLAG-SHIP OF ASIATIC FLEET, Boissée Anchorage, Salée River, Corea, June 3, 1871, 334~335쪽.
- 55) 실제로 신미양요 직후 1872~73년 조선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대포를 새롭게 제작했다. 『承政院日記』 2781책(탈초본 130책) 고종 9년 10월 4일 乙卯 “政院啓曰, 訓練大將任商準, 以新鑄大砲試放事, 沙阿里, 今方出去矣.”; 『承政院日記』 2784책(탈초본 130책) 고종 10년 1월 18일 戊戌 “政院啓曰, 訓練大將任商準, 以新鑄大

당시 조선에 없었던 대포와 포가의 성능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본격적으로 일본 대포 수입을 추진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다면 입장을 바꿔서 일본은 왜 4근 산포 수출에 호의적이었을까. 오쿠 기세이는 왜관의 대포 시연이 지닌 의의로 서구식 화약 병기가 구식 장비보다 우수하다는 점을 보여 조선인들을 “개화”로 이끌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sup>56)</sup> 1880년대의 사례이지만 일본은 서구식 총포를 조선에 기증해 조선과의 외교 협상에서 고지를 차지하는 수단으로 활용했다.<sup>57)</sup>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일본은 서구 무기의 우월함을 과시해 조선의 “개항”을 유도하는 외교적 수단으로서 4근 산포를 활용한 것이다.

그렇지만 시연하는 것을 넘어서 일본이 흔쾌히 조선의 대포 구입 요청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이렇게 되물을 수 있다. 외교적 우위를 차지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일본에서도 국산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병기를 조선으로 쉽게 유출하는 것이 가능할까? 여기에 답하기 위해서는 이 시기 일본의 군사기술이 지닌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분명히 19세기에 일본은 조선보다 일찍 19세기 서구 열강들과 통교하고 서구 화약병기를 적극적으로 수입했다. 그렇지만 일본으로 유입된 서구 총포들이 모두 최신식은 아니었다. 19세기 서구에서는 총포가 사거리, 장전 방식, 발사 속도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었고, 이전에 유행했던 병기를 대체하는 신예 병기들이

砲試故事, 沙阿里今方出去矣.”; 『承政院日記』 2791책(탈초본 130책) 고종 10년 7월 6일 壬子 “政院啓曰, 摠戎使鄭岐源, 以新鑄大砲試故事, 沙阿里今方出去矣.” 1874년 조선에서는 윤현궁 소포와 중포를 다수 주조해 강화도의 진과 돈대에 배치했으며, 이를 통해 강화도 연안 방어를 위한 화력 거점을 보강했다. 강석화, “신미양요와 강화도 방위체계의 변화”, 『기전문화연구』 39-2(2018), 92~93쪽.

56) 한국일본문제연구회 編, 앞 책, 1971c, 677쪽.

57) 김성근, “메이지 일본의 대조선 외교와 군사 기술, 1876-1882”, 『한국과학사학회지』 제37권 1호(2015), 67~72쪽.

단기간에 등장했다. 본산지인 서구에서 유행에 밀려 구식이 된 화약 병기들은 세계 각지로 판매됐는데, 이러한 악성 재고를 처리하는 구매자에는 일본도 포함됐다.<sup>58)</sup>

예컨대 1860년대 중반 이후 서구 각국에서는 제식 총기를 후장식 총기로 교체하고, 구식으로 전락한 전장식 총기를 처분하기 시작했다. 이 때 대량의 전장식 총기가 국제 시장으로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보신 전쟁 이후 1870년 메이지 정부에서 전국의 총기 종류를 파악한 결과 80퍼센트 이상이 전장식이었다. 1860년대 후반 일본에서는 보신전쟁 때문에 총기의 수요가 늘었는데, 주문·제작·배달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최신식 총기보다는 이미 많은 양이 시장에 풀린 구식 총기를 구입하는 것이 안정적이었다.<sup>59)</sup> 보신전쟁이 끝난 뒤 순간적으로 급증한 총기의 수요는 줄어들었고, 원류지인 서구에서 그랬던 것처럼 일본도 구식 총기를 중국을 비롯한 여타지역으로 수출해 “국제적 병기 순환 시장”을 형성했다.<sup>60)</sup>

일본의 4근 산포 판매도 총기 판매에서 보이는 “국제적 병기 순환 시장”의 일부로 볼 수 있다. 1870년대 초에 일본은 4근 산포뿐만 아니라 그보다 발달된 최신 대포를 보유하고 있었다. 1860년대 영국에서 개발한 강철제 후장식 대포 암스트롱포와 프로이센에서 발명한 크루프포가 그러한데, 일본에서는 1860년대부터 이런 첨단 병기들을 수입했다.<sup>61)</sup> 단순히 “미개”한 조선에게 서구 무기의 우월성을 과시하는 것이 일본의 목표였다면, 이러한 최신 대포들을 활용

58) 김성근, 앞 논문(2015), 76쪽.

59) 김성근, “19세기 중엽 국제적 병기 순환 시장과 일본의 총기 무역”, 『역사학연구』 77(2020), 343~344쪽.

60) 김성근, 앞 논문(2020), 345~347쪽.

61) 金子堅太郎·(有)リゲル社·本久エリカ·加賀新一郎 編集, 『図説幕末 維新の銃砲大全』, 東京: 洋泉社, 2013, 34~36쪽; Harald Fuss, “The Global Weapons Trade and the Meiji Restoration: Dispersion of Means of Violence in a World of Emerging Nation-States”, 『The Meiji restoration : Japan as a global n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0, 96·100쪽.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4근 산포를 방매하거나 왜관에 비치한 이유는 최신 병기에 밀려 구식이 돼가는 기존 병기를 처분하는 것이 군사적·경제적으로 이득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점은 4근 산포 판매를 둘러싼 외무성과 육군의 견해에서 엿볼 수 있다.

1873년 5월 23일 외무소보 우에노 가게노리는 조선은 풍속이 미개해 서양 물건을 꺼리므로 일본제 대포를 골라달라고 육군에 요청했다. 그러나 단순히 첨단 무기의 우수성을 과시해 조선을 “개화”하는 것이 중요했다면, 무기 개발을 선도하던 서구의 대포를 일부러 제외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게다가 4근 산포 자체가 프랑스에서 개발한 대포였다는 점을 생각하면, 서양풍이 아닌 일본제 대포를 골라달라는 요청에 육군이 4근 산포를 택한 것은 모순이다.

더군다나 외무성의 요청에 야마가타 중장은 육군이 보유한 4근 산포 가운데서 “쓰지 않는 것”(不用ノ分)을 지목해 수출하기 적합하다고 언급했다.<sup>62)</sup> 실제로 1870년대 초 일본 육군은 실전에서 사용하기 어려운 4근 산포도 보유했다. 보신전쟁 이후 메이지 정부는 전국에 산재한 4근 산포를 거두어 육군에 보급하기 위해 수량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육군의 병기를 보관하는 武庫司에서 1872년 9월 부로 보유한 4근 산포는 181문, 이듬해 여러 현에서 거둔 것은 258문이였다. 그런데 개중에는 수입품도 섞였으며 설령 일본 국내 생산품이어도 舊 막부나 여러 번에서 제각기 만든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대포들은 정교함에서 편차가 컸고 구경도 통일되지 않아 육군 부대에 일률적으로 지급하기 어려웠다.<sup>63)</sup> 이를 감안하면 4근 산포 수출에는 최신 군사 유행에서 밀려나는데다가, 규격의 통일화에도 차질이 생긴 일부 구식 병기를 처분하려는 의도가 강하게 작용한

62) 한국일본문제연구회 編, 앞 책, 1971a, 221쪽 “四斤山砲ノ内ニテ不用ノ分五六門有之候 ….”

63) 石川明範, 앞 논문(2000), 81쪽.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외무성과 육군의 논의 이후 조선으로 보내는 4근 산포는 다름 아닌 무고사에서 마련했다.

보신전쟁 이후 일본의 구식 소총만큼 많이 수출됐는지 확인하기 어렵지만 대포 역시 일본 국외로 수출된 경우를 확인할 수 있다.<sup>64)</sup> 예를 들어 1873년 일본 나가사키에서는 개항장으로 4문의 대포를 4,000달러에 수출했고, 이는 같은 해 나가사키에서 개항장으로 수출한 소총과 권총 및 부속도구의 총액 3,500달러를 상회했다.<sup>65)</sup> 이러한 수출입 통계는 총포의 정확한 품명을 명시하지 않았으며 구매국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한계를 보인다. 다만 1870년대 초 일본에서 총기뿐만 아니라 대포도 해외로 판매한 것은 분명하며, 밀무역처럼 공식 무역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사례까지 고려하면 대포 유출은 보다 활발히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운현궁 소포 포가는 무기의 국제적 유통망에 노출된 조선이 일본을 통해 반입한 4근 산포의 영향을 받아 제작한 것으로 여겨진다. 추측컨대 조선에서는 일본과의 교역을 통해 4근 산포 완제품을 확보하고, 여기에 더해 왜관 내 대포 시연을 면밀히 관찰함으로써 운현궁 소포 포가를 만든 것으로 보인다. 이와 연관 지어 음미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한다.

甲戌 11월 모일 鑄砲所에서 옮겨온 군기 목록

...

中砲 63좌 모두 온전함

小砲 46좌 모두 온전함

大車 7량 모두 온전함

64) 일례로 1883년 일본 육군성은 4만 5천정의 불용 총기를 홍콩에 매각했다. 김성근, 앞 논문(2020), 347쪽.

65) 『Commercial reports by Her Majesty's consuls in Japan, 1873.』, London: Harrison and Sons, 1874, 91쪽.

中磨盤童車 19량 모두 온전함  
小磨盤童車 32량 모두 온전함  
…  
中砲 1좌 온전함  
小砲 1좌 온전함  
磨盤童車 2량 모두 온전함<sup>66)</sup>

위 사료는 고종 19년(1882) 武衛營에서 보관하고 있던 각종 군기의 상태를 점검한 『武衛營各色軍器完破區別成冊』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갑술년(1874) 11월 鑄砲所에서 무위영(당시 武衛所)로 옮긴 군기의 일부를 보여주고 있다. 유의할 부분은 소포, 즉 운현궁 소포는 물론이거니와 그보다 규격이 큰 중포도 있다는 점, 그리고 각각 중포와 소포를 싣는 포가로 보이는 中磨盤童車와 小磨盤童車가 언급된 점이다.

중·소마반동거는 『訓局新造軍器圖說』에 등장한 마반포거와 명칭이 유사하지만, 포거 대신 동거라고 표기됐다. 더군다나 마반포거와 달리 설계도를 현재 확인할 수 없다. 다만 중포·소포와 같이 언급된다는 점, 조선이 4근 산포를 유입한 시점이 갑술년과 시기적으로 가깝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런 점에서 중·소마반동거는 운현궁 중포·소포의 포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닐까 한다.

그렇다면 운현궁 소포 포가는 단순히 병인양요 직후 조선의 양무서적 연구가 발로한 결과에 그치지 않는다. 신미양요를 통해 서구 대포의 우수성을 실감한 뒤 대포를 개선하려는 조선인들의 절박함, 최신 서구 총포 수입과 구식 총포 수출 사이에 갇힌 메이지 일본

66) 『武衛營各色軍器完破區別成冊』(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 장서각 아카이브 K2-3312)  
“甲戌十一月日鑄砲所軍器移來秩 … 中砲壹拾參坐 竝完 小砲肆拾陸坐 竝完 大車柒輛 竝完 中磨盤童車拾玖輛 竝完 小磨盤童車參拾貳輛 竝完 … 中砲壹坐 完 小砲壹坐 完 磨盤童車貳輛 竝完”

군사기술의 실태가 교차해 탄생한 결과물로 볼 수 있다. 신미양요 이후 조선은 척화의 기치를 내세웠지만, 척화를 위해 조선은 역설적으로 “양이” 문물의 세례를 받은 일본을 통해 “국제적 병기 순환 시장”에 발을 디뎠다.

## 4. 결 론

1860~70년대 조선의 포가 제작 수준을 고려했을 때 운현궁 소포 포가는 단순히 양무서적을 참고해 모방한 결과물로 보기 어렵다. 일체형 포가가미나 고각 나사와 같은 기술적 특징은 양무서적을 통해 제한적으로 접한 군사기술로 구현하기 힘들다. 운현궁 소포 포가는 조선에서 19세기 서구의 포가를 실물로 접하고 작동 원리를 연구한 결과물로 보인다. 특히 1870년대 초 일본으로부터 유입된 4근 산포와 포가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여겨진다.

운현궁 소포 포가의 탄생은 병인양요 직후 『海國圖志』를 통한 신무기 제작의 연장선상에 있다. 조선의 무기 제작은 양무서적에서 소개한 포가를 초보적으로 모방하는 수준에서 서구식 포가의 실물을 입수해 완속하게 구현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1860년대 말부터 시작된 신무기 제작의 흐름은 개항 이후에도 이어졌다. 예컨대 강화도 조약 체결 직후 1876년 2월 일본은 조선에 육연발 권총 1정과 七連銃 2정을 기증했다. 6개월 뒤 武衛所에서는 七連銃을 만들었으며 申憲을 비롯해 제작과 감독에 관여한 인원들은 포상을 받았다.<sup>67)</sup>

일본에서 기증한 총기를 조선에서 얼마나 충실하게 모방했는지는

67) 『知穀官廳憲日記』(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 장서각 아카이브 K2-3375) 丙子年 8월 21일 “自起礮七連銃水車新造特別單提調 金輔鉉 都統使申憲各豹皮一令賜給 ….”

미지수이다. 그러나 조선의 신무기 제작이 강화도 조약 체결을 전후로 연속적으로 이뤄진 상황을 보여줘 의미가 있다. 이러한 무기 제작 경험이 축적돼 고종 18년(1881)에 영선사를 파견해 근대 무기 제작 기술을 습득하는 발판을 마련했을 것이다.

운현궁 소포 포가는 또한 조선이 국제적 무기 유통망의 일부가 되는 과정을 드러낸다. 신미양요 직후 대포를 개선하려는 조선의 욕구, 급변하는 국제 무기시장에 적응해 효율적으로 무기를 관리하려는 일본의 고민이 교집합을 이뤄 운현궁 소포 포가가 탄생했다.

4근 산포를 통해 서구 군사기술을 접한 조선인들의 반응도 흥미할 가치가 있다. 조선인들은 서양의 “오랑캐”를 맞이해 군비를 증강한다면서 또 다른 “오랑캐”인 일본으로부터 서구식 대포를 구매하려고 노력했다. 또한 일본과 외교적 마찰을 빚는 와중에도 왜관에서 서구식 대포를 갖추고 발포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겼다. 이러한 모습은 “개항”과 “쇄국”의 이분법으로 온전히 파악하기 어려운 1870년대 초 조선 사회의 일면을 드러낸다.

본고에서는 조선으로 유입된 4근 산포와 운현궁 소포 포가 사이의 연관성에 주목했지만, 정확히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4근 산포와 포가가 운현궁 소포와 포가로 거듭나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살피지 못했다. 운현궁 소포와 포가를 만드는 과정에서 조선의 어떠한 기관과 인물이 큰 비중을 차지했을까. 개항 전후 조선의 군사기술 이해와 응용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질문들이지만, 아쉽게도 이와 관련해서는 후속 연구를 기대하겠다.

## 〈참고문헌〉

### 1. 1차 사료

- 『各司膽錄 13』(국사편찬위원회 編, 1984)
- 『高宗實錄』, 『承政院日記』, 『荷居集』
- 『近世朝鮮政鑑卷之上』(探求堂 영인본, 1975)
- 『東萊府啓錄』(서울대학교 규장각 奎15105-v.1-9)
- 『東津禦侮輯要』(서울대학교 규장각 古4252.4-2)
- 『武衛營各色軍器完破區別成冊』(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 장서각 아카이브 K2-3312)
- 『演礮圖說輯要』(서울대학교 규장각 奎中2294-v.1-2)
- 『戎垣必備』(강신엽 譯註, 『조선의 무기 II』, 서울: 봉명, 2004)
- 『知穀官廳憲日記』(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 장서각 아카이브 K2-3375)
- 『海國圖志』(魏源 撰, 陈华·常绍温·黄庆云·张廷茂·陈文源 点校注释, 『海國圖志(下)』, 湖南: 岳麓書社出版社, 1998)
- 『訓局新造軍器圖說』(강신엽 譯註, 『조선의 무기 I』, 서울: 봉명, 2004)
- Ralph Willett Adye, 『The Bombardier, and Pocket Gunner』, Boston: Printed for E. Larkin by William Greenough, 1804
- 『Commercial reports by Her Majesty's consuls in Japan. 1873.』, London: Harrison and Sons, 1874
- 『朝鮮外交事務書』(한국일본문제연구회 編, 『朝鮮外交事務書 (七)』, 서울: 성진문화사, 1971a; 한국일본문제연구회 編, 『朝鮮外交事務書 (八)』, 서울: 성진문화사, 1971b; 한국일본문제연구회 編, 『朝鮮外交事務書 (九)』, 서울: 성진문화사, 1971c)

## 2. 단행본

-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 기술용어 사전』, 서울: 국방기술품질원, 2011
- 근대한국외교문서 편찬위원회 編, 『근대한국외교문서 2』,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09
- 김순현 編著·한국군사학회 監修, 『(最新)軍事用語 韓英辭典』, 서울: 연경문화사, 2005
- 김홍수, 『한일관계의 근대적 개편 과정』,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09
- 박재광, 『화염 조선』, 파주: 글항아리, 2009
- 연갑수, 『대원군집권기 부국강병정책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1
- 이강칠, 『德浦鎭 砲臺 發掘調査 報告書』, 김포군, 1980
- 이은봉·박영현·임영숙, 『韓國武器發達史』, 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4
- 한국교회사연구소 번역위원회 譯註, 『조선교구 역대 교구장 서한집 제1집 리델문서 I』, 서울: 한국교회사연구소, 1994
- 현명철, 『근대 변혁기 한일관계사 연구』, 파주: 경인문화사, 2021
- Anthony L. Dawson, Paul L. Dawson, Stephen Summerfield, 『Napoleonic Artillery』, Marlborough: The Crowood Press UK, 2008
- Kevin F. Kiley, 『Artillery of the Napoleonic Wars: Field Artillery, 1792-1815』, Barnsley: Frontline Books, 2015
- Nick Lipscombe, 『Wellington's Guns: The Untold Story of Wellington and his Artillery in the Peninsula and at Waterloo』, Oxford: Osprey Publishing, 2013
- 金子堅太郎·(有)リゲル社·本久エリカ·加賀新一郎 編集, 『図説幕末·維新の銃砲大全』, 東京: 洋泉社, 2013

## 3. 논문

- 강석화, “신미양요와 강화도 방위체제의 변화”, 『기전문화연구』 39-2(2018): 85-97,  
<http://dx.doi.org/10.26426/KCS.2018.39.2.85>
- 김동철, “17~19세기 부산 왜관의 開市와 朝市”, 『한일관계사연구』 41(2012):223-262,  
<http://uci.or.kr/G704-001395>, 2012., 41, 003
- 김병륜, “朝鮮時代 火藥武器 운용술”, 『학예지』 13(2006):69-107
- 김성근, “메이지 일본의 대조선 외교와 군사 기술, 1876-1882”, 『한국과학사학회지』 제37권 1호(2015):59-83  
<http://uci.or.kr/G704-000796>, 2015.37.1.007
- 김성근, “19세기 중엽 국제적 병기 순환 시장과 일본의 총기 무역”, 『역사학연구』 77(2020):327-351,  
<http://doi.org/10.37924/JSSW.77.10>
- 김홍수, “일본 역사교과서의 강화도조약 기술 검토”, 『동북아역사논총』 35(2012):249-290,  
<http://uci.or.kr/G704-002002>, 2012., 35, 006
- 박준형, “[한국근대 I] ‘근대’를 포섭한 ‘전통’의 시각과 ‘사실’을 전유한 ‘역사’들에 대한 재고”, 『역사학보』 247(2020):19-50,  
<http://doi.org/10.16912/tkhr.2020.09.247.19>
- 신효승, “1871년 미군의 강화도 침공과 전황 분석”, 『역사와 경계』 93(2014):31-64, <http://uci.or.kr/G704-001396>, 2014., 93, 006
- 안충철, “19세기 ‘국제법’의 성격과 조일수호조규(1876)”, 『역사비평』 114(2016):113-136,  
<http://uci.or.kr/G704-000293>, 2016., 114, 014
- 연갑수, “대원군 집권기 무기개발과 외국기술 도입 - 『訓局新造軍器圖說』과 『訓局新造器械圖說』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학예지』 9(2002):137-166

- 이근관, “조일수호조규(1876)의 재평가 - 전통적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관점에서  
로부터 -”, 『서울국제법연구』 11(1)(2004):57-79,  
<http://uci.or.kr/G704-001884>, 2004.11.1.007
- 한국교회사연구소 譯, “韓佛關係資料(1866~1867) - 丙寅洋擾 -”, 『教會史研  
究』 2(1979):195-288
- 한보람, “개항 전후 신헌(申櫛)의 시무개혁론 연구”, 『한국문화』 90(2020):  
233-266,  
<http://doi.org/10.22943/han.2020..90.007>
- Harald Fuss, “The Global Weapons Trade and the Meiji Restoration:  
Dispersion of Means of Violence in a World of Emerging  
Nation-States”, 『The Meiji restoration : Japan as a global  
n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0
- Thomas Duvernay, “A Comparison of Firearms Used in the  
Shinmiyangyo”, 『민족문화논총』 44(2010):255-274,  
<http://uci.or.kr/G704-001644>, 2010..44.013
- 石川明範, “幕末における四斤山砲の国産化と関係する現存資料”, 『栃木県立博  
物館研究紀要, 人文』 17(2000):84-71

(Abstract)

## The Production of Gun Carriages during the period of 1860~70's of Joseon Dynasty and the Influx of Large Scale Cannons during the Meiji Japan Period

Lee, Jay-jung

This paper analyzes the types and technical traits of gun carriages produced in the period of 1860~70's Joseon dynasty, and suggests that the influx of Japan made Cannons in Meiji period had heavy influence on Joseon gun carriage production.

Alarmed by western weapons used during Byeongin Yanggyo, Joseon produced new types of weapons based on its understanding of the book of 'Yangmoo', which is Self-strengthening Movement texts from Qing. Production of gun carriages especially has shown drastic change, as exemplified by Unhyeon-gung Small Cannon Carriage. Compared to gun carriages produced under the influence of Qing texts on Self-strengthening Movement, Unhyeon-gung Small Cannon Carriage shows application of western military technology unobtainable from Qing texts alone. This strongly suggests that Joseon was able to obtain and directly investigate western weaponry instead of relying on Qing texts. This is supported by documents which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compiled during Meiji Period.

According to documents from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Joseon has imported Yonkin Sanpo (4-Kilogram Mountain Gun), a type of Western Cannons produced by Meiji Japan, in 1873. Furthermore Japanese Enclave(Waegwan) in Choryang stored 4 Yonkin Sanpo and openly demonstrated their performance to Koreans. It is likely that production of Unhyeon-gung Small Cannon Carriage was heavily inspired by the influx

of Yonkin Sanpo through Joseon–Japan trade and Japanese Enclave weapon demonstrations.

Moreover Joseon’s need to produce improved cannons after Sinmi Yangyo, coupled with Japan’s intention to dispose of outdated Yonkin Sanpo in ever–changing global arms market, has facilitated the production of Unhyeon–gung Small Cannon Carriage. In this regard Unhyeon–gung Small Cannon Carriage not only reveals continuous Joseon efforts to produce new weaponry from post–Byeongin Yangyo to 1870’s, but also implies the inclusion of Joseon into Global arms market through importation of Japanese Cannons.

Keywords : Joseon, Meiji Japan, Cannons, Gun Carriages,  
Unhyeon–gung Small Cannon Carriage, Yonkin Sanpo  
(4–Kilogram Mountain Gun)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2, No. 123, pp.173-217  
<https://doi.org/10.29212/mh.2022..123.173>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 퍼트넘의 양면게임이론에 근거한 이승만의 반공포로 석방에 관한 재조명\*

- 협상전략과 원셋의 변화를 중심으로 -

박재홍 | 육군대학 학생장교

## 목 차

1. 머리말
2. 이론적 배경과 분석 틀
3. 반공포로 석방과 원셋의 변화
4. 협상에 영향을 미치는 3요소
5. 맺음말

**초 록** ‘반공포로 석방’ 이전 이승만은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한반도 통일을 목표로 한 단독 군사행동과 북진통일론, 휴전 반대운동, 반미여론 확장을 통해 자국의 원셋을 축소하여 미국의 원

\* 이 논문은 저자의 “이승만의 한미상호방위조약”, (석사학위연구, 국방대학교, : 2021)의 일부를 수정 보완하였음.

셋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이러한 이승만의 강경한 태도에 대하여 점차 위협을 느끼게 되었지만, 협상 체결에 대한 필요성을 갖는 단계로의 위협으로는 작용하지 못하였으며, 이에 따라 미국의 원셋은 확대되지 못하였다.

‘반공포로 석방’ 이전 이승만의 협상전략이 실패한 원인은 미국의 원셋을 확대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미국은 공산주의 세력 확장을 막기 위해 한국에게 안보를 제공해야 하는 필요성은 갖고 있었지만, 상호방위조약 체결까지는 동기가 충분하지 않았다. 결국 이승만의 전략은 미국에게 어느 정도 수준의 위협이 되었지만, 미국이 원셋을 확대할 만큼 충분하고 실현 가능한 위협으로 작용하지 못하였다. 이승만이 1953년 6월 18일 ‘반공포로 석방’ 조치를 하기 이전까지 미국은 이승만을 설득하며 공산 측과 휴전협정을 체결할 계획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승만의 ‘반공포로 석방’ 이후 미국은 적극적으로 미국 내 비준 상황에 대해 언급하며 한국과의 상호방위조약 체결에 대한 적극성을 보였다. 따라서 이승만의 ‘반공포로 석방’이 미국의 원셋을 확대한 근거로 작용한 결과임을 도출할 수 있었으며, 이승만의 ‘반공포로 석방’이 이승만이 목표로 했던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에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승만의 ‘반공포로 석방’은 자국의 원셋은 축소하고 상대국의 원셋을 확대하여 협상에서 상대방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자국의 국가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구사한 협상전략의 하나의 사례로써 가치와 의의를 가진다.

**주제어** : 퍼트남 양면게임, 원셋, 한미상호방위조약,  
반공포로 석방, 국가이익

(원고투고일 : 2021. 12. 19, 심사수정일 : 2022. 5. 19, 게재확정일 : 2022. 6. 2.)

## 1. 머리말

국가는 국가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미디어가 발달한 현시대에서는 전쟁을 수단으로 하는 국가이익 확보는 국제사회의 큰 비난과 지탄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앞으로 국가는 전쟁보다는 협상을 통해 이익을 확보하는 방안이 더욱 중요하게 될 것이다.

한편 약소국은 강대국에 비해 불리한 협상력을 갖는 것이 보편적이다. 같은 조건과 상황에서 힘의 논리에 의해 강자가 이익을 독식하는 것은 당연한 자연현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조건과 상황에서’라는 전제가 바뀌면 강자가 이익을 독식하는 당연한 상황이 바뀔 수 있음을 의미한다.

조건과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을 협상력으로 본다면, 협상력으로 약자도 충분히 강자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할 수 있다.

국가이익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특히 여러 국가이익 중에서 국가의 보존, 국민의 생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중 약소국이 강대국을 상대로 성공적인 협상 결과를 도출한 사례를 연구하는 것은 현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안보에서 가장 중요했던 사건은 단연 6·25전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6·25전쟁의 발발 원인과 경과에 관한 연구는 활발한 반면, 마지막 국가이익 쟁탈전의 최종장인 휴전 협상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매우 빈약한 편이다.

그중에서도 전쟁을 일으킨 북한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소련 등 강대국들이 국가이익을 확대하기 위해 전개한 대외적 요인에 관한

연구는 활발하지만, 우리가 국가이익을 지키기 위해 전개한 한국의 협상전략에 관한 연구는 휴전협정의 당사자로서 제외되었다는 이유로 한계점을 설정한 채, 큰 의미를 두지 않고 그에 관한 연구도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6·25전쟁 이후 한국의 핵심적인 국가이익은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한 것이었다. 침략을 받은 한국으로서는 다시는 외세에 의한 침략으로 나라가 피폐해지는 것만은 반드시 막아야 했다. 또한 국민들은 공산 세력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 다시 한번 이 땅에 전쟁이 재발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공포심마저 갖고 있었다.

따라서 휴전 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가장 큰 관심사와 핵심 이익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된 것이었다. 이에 이승만 대통령(이하 이승만)은 공산주의 세력으로부터 국가를 지키고 국가의 핵심 이익인 국가 안전보장 확보를 위한 전략적 선택지로 미국과의 상호방위조약 체결을 목표로 협상을 전개하였다.

위와 같은 배경에서 당시 한국의 핵심적 국가이익이었던 국가의 안전보장 확보를 위한 미국과의 상호방위조약 체결에 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협상을 주도했던 이승만의 협상전략을 연구하는 것은 많은 국가가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국가이익 확보와 생존을 위해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는 현시점에서도 매우 필요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승만에 관한 연구와 일반적인 평가는 상반된 분석으로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특히 연구자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나라를 구한 구국 영웅으로 또는 권력에 굶주린 친미 독재자란 평가까지 극단적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sup>1)</sup>

국내·외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이승만의 협상전략에 관한 연구는 이론적 근거에 의한 분석을 바탕으로 주장한 것이 아닌, 필자의

1) 권영근, “묘책의 달인-이승만과 한미동맹”, 『전략연구』, 제68호, (2016) : 192.

주관적 판단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승만의 협상전략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김보영은 이승만이 휴전회담 초기부터 휴전을 강력하게 반대하여 미국으로부터 협상 과정 내내 철저히 배제되었고, ‘반공포로 석방’은 협상에서 배제된 이승만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는 수단으로써 ‘무리수’로 표현하였다. 이승만의 조치로 인해 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더욱 소외되는 결과로 이어져 결국 미국이 철저히 한국을 배제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다고 평가하였다.<sup>2)</sup>

그러나 미국은 이승만의 강경한 태도가 있기 전에는 한국과의 상호방위조약 체결에 관심이 없었고 한국의 안보와 관련된 어떠한 명문화된 약속을 하지 않았다. 결국 이승만의 강경한 태도와 ‘반공포로 석방’ 이후 미국은 이승만에게 휴전협정에 협조하는 대가로 한국과의 상호방위조약 체결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볼 때 이승만의 ‘반공포로 석방’이 이승만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수단으로만 작용하였다고 보는 주장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인다.

최일 또한 미국의 일방적인 휴전 협상 진행에 반대하여 일관되게 북진통일을 주장했던 이승만으로 인해 휴전회담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되었다고 평가하며 이승만의 조치에 전략적 의미를 두지 않았다. 이승만의 조치가 이승만 개인의 정치적 입지를 확고히 세우는데 도움이 되었을 뿐 오히려 이승만이 휴전 협상에 적극 개입 함으로써 전쟁 이후 국가안보에 이익이 될 기회를 놓쳤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은 6·25전쟁에 참전하여 많은 희생을 감수했으며, 국가이익과 여론 및 정치적 상황에 따라 전쟁 이후 분쟁 방지를 위한 대책이 휴전 협상에 반영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이승만이 좀더 현실에 입각한 시각으로 미국의 관점을 파악하고 휴전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면 한국에게 보다 유리한 실질적 이익을 찾

2) 김보영, “한국전쟁 휴전회담 연구”, (박사학위연구, 한양대학교대학원 : 2008) : 252.

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았다.<sup>3)</sup>

최일의 주장은 미국이 처한 정치적 상황으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휴전 협상에서 한반도의 분쟁 방지를 위한 대책이 포함될 것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분쟁 방지를 위한 대책이 휴전 협상에 반영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은, 미국은 최초 한국과의 상호 방위조약 체결에 대해 필요성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로 볼 때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결국 최일은 이승만의 조치를 미국과의 협상과 한국의 국가이익 확보를 방해한 것으로 보았지만, 이러한 주장에 대해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상황이 변화하는 계기와 근거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곽현용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과 관련하여, 한국이 불리한 안보환경과 호혜적인 조약체결을 위한 노력을 강구하지 않아 상호 대등한 조약을 체결하지 못하였으며, 안전보장을 얻는 대가로 한국의 자율성이 침해받았다고 평가하였다.<sup>4)</sup>

그러나 곽현용의 주장은 이승만이 불리한 안보 환경 속에서 호혜적인 조약체결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어떠한 노력을 해야 했는지에 관한 주장보다는 단지 안보의 대가로 자율성을 침해받았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 주장하였다.

반면 이승만의 조치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연구를 살펴보면, 김선숙은 이승만의 협상전략에 대해 ‘반공포로 석방’이라는 승부수를 통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얻어낸 것으로 의의를 부각하였으며<sup>5)</sup> 장상현과 정병준은 각각 이승만의 ‘반공포로 석방’을 압박 전

3) 최일, “한국전쟁 휴전협정에서 옹진반도의 처리과정과 결과에 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경남대학교대학원, 2014) : 148.

4) 곽현용, “안보·자율성 교환 모델을 적용한 한미 간 동맹조약 분석-조미수호통상조약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중심으로”, [한국군사학논총] 7집/2권, (2018) : 59.

5) 김선숙, “6.25 휴전협상과정에 있어 이승만의 협상전술”, 『국제정치연구』, (2004) : 301-317.

술<sup>6)</sup>과 공갈 정책이 아님을 증명<sup>7)</sup>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연구들도 이론에 근거한 세밀한 분석보다는 ‘승부수’, ‘압박 전술’, ‘공갈 정책이 아님’ 등 일반적인 수준에서 논지를 전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검토를 바탕으로 보면,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과 관련된 이승만의 협상전략에 관한 기존 연구는 이승만을 정치적 성향에 따라 평가하여 그의 협상전략에 관한 연구도 선입견에 의해 이뤄진 경향이 있었다.

또한 이론적 근거에 의한 객관적 연구와 분석이 아닌 개인의 의견을 바탕으로 평가하고 있는 수준으로 대체로 표면적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승만의 ‘반공포로 석방’에 대한 연구 중 협상 이론을 중심으로 평가한 연구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과정에서 이승만이 시행한 전략과 특히 ‘반공포로 석방’에 대해 정치적 시각과 선입견을 배제하고 퍼트넴의 양면게임 이론에 근거하여 협상 이론과 윈셋을 중심으로 재조명하였다.

## 2. 이론적 배경과 분석 틀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이론적 배경과 분석 틀을 바탕으로 하였다. 첫째, 퍼트넴의 양면게임 이론을 독립변수로 협상전략과 퍼트넴 이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윈셋을 통해 이승만의 협상전략과 ‘반공포로 석방’에 대하여 재조명하였다. 이를 통해 이승만의 협상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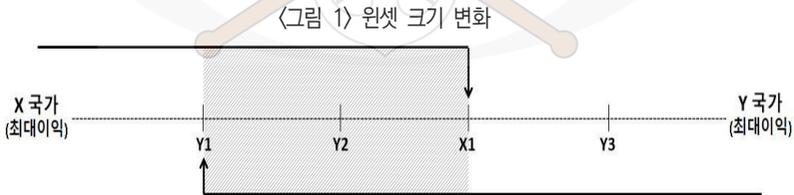
6) 장상현, “이승만 대통령의 ‘반공포로 석방’이 국내정치에 미친 영향”, (석사학위 연구, 한림대학교 대학원, 1998) : 51-57.

7) 정병준, “한국전쟁 휴전회담과 전후체제의 성립”, 『한국문화연구』, (2019) : 259-260.

략이 미국과의 상호방위조약 체결에 유의미한 성과가 있었는지 검증하였다. 둘째, 퍼트남 이론의 핵심인 윈셋과 협상에 영향을 미치는 제3의 변수로 작용한 요소는 무엇인지 이승만의 협상전략과 연계하여 분석하였다.

### 가. 이론적 배경

퍼트남의 양면게임 이론은 1988년『International Organization』에 발표된 “외교와 국내 정치: 양면게임의 논리(International and Domestic Politics: The logic of Two-Level Games)”에 소개된 이론으로, 국제협상 과정에 관한 분석 틀을 제시하였다. 퍼트남의 양면게임이론에서 윈셋은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개념이다. 윈셋은 국가 간 협상 결과 가운데 국내적 동의를 얻어낼 수 있는 결과의 집합을 의미한다.<sup>8)</sup>



\* 출처 : Robert Putnam, *Diplomacy and Domestic Politics : The Logic of Two-Level Game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42, No.3 (Summer, 1988) : 441을 바탕으로 직접 작성.

위의 〈그림 1〉은 X국가와 Y국가의 윈셋 변화양상을 도식화한 것이다. 양극단에 위치한 X국가의 최대이익과 Y국가의 최대이익은 각각 X국가와 Y국가가 얻을 수 있는 최대의 이익을 획득할 수 있는 지점으로써, 최대한의 협상결과(maximum outcomes)를 나타낸다.

8) Robert Putnam, *Diplomacy and Domestic Politics : The Logic of Two-Level Game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42, No.3 (Summer, 1988) : 427-460.

한편 X국가와 Y국가가 얻을 수 있는 최소한의 협상 결과 (minimal outcomes)는 각각  $X1$ 과  $Y1$ 이며, 각 국가가 추구하는 이익의 최소수준을 나타낸다. X국가의 원셋은  $X(\text{최대이익}) \sim X1$ 이다. 마찬가지로 Y국가의 원셋은  $Y1 \sim Y(\text{최대이익})$ 이다. 이 경우 X국가와 Y국가 각각의 원셋은  $Y1 \sim X1$ 까지 중첩되는 부분이 생긴다. 이 부분이 상호 합의가 가능한 영역(zone of agreement)이 된다.

그러나 협상 과정에서 원셋을 축소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만약 Y국가가 자국의 원셋을 축소한다고 가정하면, Y국가는 기존의  $Y1 \sim Y(\text{최대이익})$ 의 범위에서  $Y2 \sim Y(\text{최대이익})$ 로 축소하거나,  $Y3 \sim Y(\text{최대이익})$ 로까지 축소할 수도 있다.

Y국가의 원셋이  $Y2 \sim Y(\text{최대이익})$ 로 축소되면, X국가와 Y국가가 합의 가능한 영역은  $Y2 \sim X1$ 의 범위로, 기존의  $Y1 \sim X1$ 의 범위보다 합의 가능한 영역이 축소된다. Y국가의 원셋이  $Y3 \sim Y(\text{최대이익})$ 로 축소되면 X국가의 원셋인  $X(\text{최대이익}) \sim X1$ 과 중첩되는 부분이 없으므로 합의가 어렵게 된다.

일반적으로 원셋이 크면 클수록 합의 가능성이 커진다. 양 국가의 원셋이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서 상호 합의가 가능한데, 원셋의 크기가 크면 합의 가능한 영역의 크기가 넓어진다. 결국 자국의 원셋 크기는 줄이고, 상대방의 원셋 크기를 늘리는 것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유리한 방안으로 볼 수 있다.<sup>9)</sup>

그러나 자국의 이익을 최대한 얻기 위해 원셋 크기를 일방적으로 작게 설정하면, 양 국가 간 상호 원셋의 교집합이 사라지게 되어 합의 자체가 실패할 수 있으므로, 원셋의 축소 전략은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

9) 김지아, “양면게임 이론을 통해 본 남북 개성공단 협상”,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2013) : 9.

따라서 국제관계에서 국가 간 원셋의 중복 없이 협력적인 관계가 형성되기 어렵다. 즉, 중첩되는 원셋이 많을수록 국가 간 협력 가능성이 커지게 되고, 반대로 중첩되는 원셋이 작을수록 관계는 갈등적으로 전환되게 된다.<sup>10)</sup> 결국 국제관계의 갈등과 협력의 변화는 각국이 가진 원셋 크기에서 기인하게 된다.

국제관계에서 관련 국가들의 원셋 크기가 모두 클 때 중복 가능성이 커져 협력적인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고, 두 국가 중에서 어느 한 국가가 작은 크기의 원셋을 가졌다 해도 상대 국가가 큰 크기의 원셋을 가진다면, 큰 원셋 크기를 가진 국가의 양보로 온건한 정도의 관계도 형성될 수 있다. 그러나 모두 작은 크기의 원셋을 추구하게 되면, 상호 원셋이 중첩될 가능성이 줄어들게 되어, 결국 이들 국가의 관계는 매우 갈등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sup>11)</sup>

결국 양 국가에 있어 가장 최선은 자신의 원셋을 축소하여 이익을 극대화하고, 상대국의 원셋을 확대하여, 자신의 최대이익에 가까운 지점에서 상호 합의 가능한 영역(zone of agreement)을 만드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나. 분석 틀

본 논문은 6·25전쟁 이후 전개된 휴전 협상 과정에서 한미상호 방위조약을 중심으로 한국과 미국이 벌인 협상 과정을 양면게임 이론에 근거하여 분석할 것이다. 특히 이승만이 미국을 상대로 전개한 협상전략에 대해서 퍼트넘의 양면게임 이론을 통해 유의미한 성과가 있었는지 분석하고 재조명할 것이다.

퍼트넘의 양면게임 이론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가정할 수

10) Robert Putnam, 앞의 책 : 437-440.

11) 박승락, “2단계 게임이론에 의한 우리나라의 한중 FTA협상 성공전략”, 『통상정보 연구』, 13/3, (2011) : 528.

있다. 첫째, 협상에 임하는 양국의 원셋이 모두 커서 공유하는 정책에 대한 선호하는 바가 크게 되면, 협상 과정은 가장 협력적이며, 합의 가능성이 커진다. 이때 협상 당사국 사이의 이익은 균형적인 분배가 가능해진다. 둘째, 양국 모두 원셋이 모두 작아서 공유하는 정책에 대한 선호하는 바가 없거나 작을 경우, 협상 과정은 가장 분쟁적이며 협상이 실패로 끝나거나 합의 가능성이 작다. 셋째, 양국의 원셋 크기가 서로 다르지만, 양국의 정책에 대한 선호하는 바가 충분히 공유된 상황에서는 온건한 협상 과정을 나타낸다.<sup>12)</sup> 비대칭적 원셋을 가진 협상의 경우에는 작은 원셋을 가진 국가가 협상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sup>13)</sup>

따라서 국제협상 결과는 각국이 갖는 원셋의 상대적 크기가 국가 이익을 배분함으로써 결정되기 때문에, 작은 크기의 원셋을 가진 국가가 협상에서 더 유리한 결과를 확보할 수도 있는 것이다.<sup>14)</sup> 위 가정에 기초한 원셋 크기에 따른 협상 과정의 변화를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원셋 크기에 따른 협상 결과 변화양상

		B국가의 원셋 크기	
		큼	작음
A국가의 원셋 크기	큼	가장 협력적	온건적
		균형적 이익 분배	국가 B에 유리한 결과
	작음	온건적	가장 분쟁적
		국가 A에 유리한 결과	협상 실패

\* 출처 : 김관옥, “한국파병외교에 대한 양면게임 이론적 분석”, 『대한정치학회보』, 13/1, (2005) : 361을 바탕으로 직접 작성.

12) 김보영, “양면게임 이론으로 분석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협상”,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16) : 20.

13) 김왕식, “한·일 경제협력의 정치경제”, 『사회와 담론』, (2002) : 60-61.

14) 정승희, 김형민, “한미 사드(THAAD) 배치 협상과 국내정치: 양면게임 이론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 (2017) : 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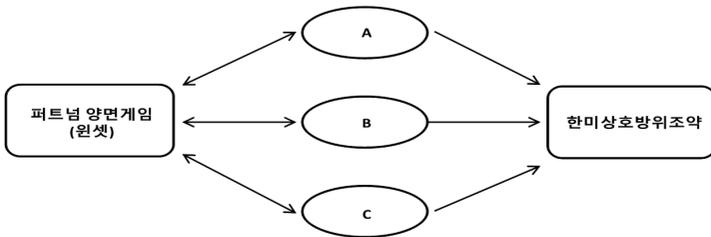
만약 어느 한 국가의 원셋이 크다고 가정하면, 그 국가는 상대방 국가에 양보할 여지가 많다는 것을 뜻하게 된다. 만약 양 국가의 원셋이 모두 크다면 협상에서 상호 합의 가능한 영역의 크기가 넓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국가는 양보를 통해서도 결국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현실주의적 속성을 갖는 특성을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퍼트넘의 양면게임 이론 역시 현실주의 시각에 기초하고 있어서 원셋이 축소되는 경향이 있는 국가 간의 협상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퍼트넘의 양면게임 이론은 6·25전쟁 당시 서로의 국가이익을 위해 원셋을 축소하는 상황에서 특히 약소국이었던 한국의 협상자인 이승만이 강대국인 미국을 상대로 어떠한 협상전략을 사용했는지 분석하는데 매우 용이하다고 볼 수 있다.

퍼트넘의 이론은 기존 이론과는 달리 협상자의 핵심적이며 전략적인 행위를 강조하고, 협상자의 전략과 국제 정치와 국내 정치로부터 오는 제약요인과 기회요인을 동시에 고려한다는 점이 특징적이기 때문이다.<sup>15)</sup>

본 논문은 위와 같은 가정을 기초로 퍼트넘의 양면게임 이론의 핵심인 원셋을 통해 이승만의 한미상호방위조약 협상전략 중 ‘반공포로 석방’을 재조명하고, 원셋과 상호작용을 통해 최종적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과 협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가정하여 <그림 2>와 같이 적용하였다.

<그림 2> 제3의 변수를 적용한 분석 틀



15) 이지석, 김학조, “투-페이스 모델로 분석한 한-인도 CEPA의 개선협상 연구”, 『한국관세학회지』, 16/3, (2015) : 149.

### 3. 반공포로 석방과 원셋의 변화

#### 가. 반공포로 석방 이전

6·25전쟁을 종결하기 위한 휴전 협상은 1951년 6월 중순부터 시작되었지만 1953년 3월까지 큰 진전 없이 38도선 근처에서 대치 상황이 지속되었다. 한반도의 통일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미국은 이승만과 의견을 같이하고 있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군사적 수단을 통한 한반도의 통일에는 회의적으로 변화하고 있었다. 군사적 수단으로 북한지역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전면전을 감수해야 했다.

따라서 미국은 정책목표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였는데 당장 처리해야 할 현실적인 당면목표는 휴전협정 체결이었고, 차선으로 통일에 목표를 두었다.<sup>16)</sup> 미국은 정치적 수단을 통해 6·25전쟁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것이 최우선적인 목표가 되었으며, 이를 위해 휴전협정 체결이 필요하였다.

1951년 5월 트루먼 대통령은 NSC 48/5를 통해 38도선 이북으로 미군이 진격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또한 12월 NSC 118/2에서는 독립적이고 민주적인 통일 한국을 위해, 군사적 수단과 구별되는 정치적 수단을 통한 한국 문제의 해결을 궁극적 목적으로 하고, 소련 및 중국과의 전면전 발생을 억제할 것을 강조하였다.<sup>17)</sup>

16) 최일, 위의 글 : 149.

17) NSC 48/5, "United States Objectives, Policies and Courses of Action in Asia", May 17, 1951, *FRUS 1951*, Vol. VI, pp. 33; NSC 118/2, "United States Objectives and Courses of Action in Korea", Dec. 20, 1951, Policy Papers Subseries, NSC Series, White House Office, Office of Special Assistant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Records 1952-1961*, Dwight D. Eisenhower Library

1952년 11월 아이젠하워가 제34대 미 대통령으로 당선(이하 아이젠하워) 되었다. 아이젠하워는 한국을 위한 더 이상의 군사적, 경제적 희생을 원하지 않았던 미국 국민의 기대 속에 당선되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미국의 국민이 아이젠하워가 한반도에서의 오랜 전쟁을 종결할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었다. 6·25전쟁으로 인해 미국은 32,000명 이상의 사망자 및 실종자와 10만여 명의 부상자 등 많은 인적 손실과 670억 달러의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였다. 미국에 이러한 손실과 비용은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미국 국내에서는 6·25전쟁 종결과 국방예산 감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었다. 1952년 10월 24일 아이젠하워는 디트로이트에서 실시한 선거 연설에서 “만약 당선된다면 한국을 방문하여 전쟁의 참상을 직접 확인할 것”이라고 선언하였고, 이는 아이젠하워의 당선에 큰 영향을 미쳤다.<sup>18)</sup>

아이젠하워는 스탈린이 사망하고 중국이 1953년 3월 30일에 휴전 협상을 재개할 것을 요청하면서, 1953년 4월 8일 열린 NSC 회의에서 “지금까지의 휴전 협상을 취소하고 전쟁을 선택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또한 미국 국민은 전쟁의 재개를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sup>19)</sup>

이렇듯 미국은 군사적 수단을 통한 한반도의 통일을 목표로 하지 않았다. 그러나 전쟁 종료 후에 한국을 포기하려고 하지도 않았다. 한국을 위해 많은 희생을 한 상태에서 한국을 포기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옳지 않은 선택이었고, 다른 분쟁 지역에서도 미국이 후퇴할

18) Foot, 1990, p. 159; Dwight D. Eisenhower, *The White House Years: Mandate for Change 1953-1956*(New York, 1963), pp. 72-73.

19) NSC 147, “Analysis of Possible Courses of Action in Korea”, April 2, 1953, *FRUS 1952-1954*, Vol. XV, pp. 838; “Discussion at the 139<sup>th</sup> Meeting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on Wednesday, April 8, 1953”, April 16, 1953, Box 4, National Security Council Series, Dwight D. Eisenhower: Papers as President 1953-61(Ann Whitman File)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과 판단을 동맹국들과 공산주의자들 모두에게 심어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미군을 한반도에서 철수 시키게 되면, 다시금 공산 세력에 의한 공격이 유발될 위험성이 있었다. 딜레스 국무장관(이하 딜레스)은 1953년 3월 31일 열린 국가 안보 회의에서 “소련의 오판을 유발하여 남한을 침공하게 하였던 1950년의 모호한 상황이 재발하여서는 안된다”라고 지적하였다.<sup>20)</sup>

미국의 이러한 사정과 별개로, 이승만과 한국 국민은 휴전협정 이후 상황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 이승만은 휴전협정 이후에 한국의 안보를 미국이 보장해 주지 않는다면, 곧 다시 공산 세력에 의한 공격을 받게 될 것으로 생각하였다. 따라서 이승만은 휴전협정 체결 이전에 한국과 상호방위조약을 맺을 것을 아이젠하워와 UN군 사령관인 마크 클라크 대장(이하 클라크)에게 서신 등을 통해 요구하였다.<sup>21)</sup> 이승만은 한반도 통일을 위한 휴전 반대와 북진통일 주장에서 한발 양보하여 휴전 동의를 위한 선행조건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과 적극적인 미국의 지원을 유도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책이라고 판단한 것이다.<sup>22)</sup>

하지만 이승만의 주장에 대해 아이젠하워, 딜레스, 육군참모총장인 로턴 콜린스 대장(이하 콜린스) 등 미국의 지도자들은 모두 한국과의 상호방위조약 체결에 반대하였다.<sup>23)</sup> 이에 대해 이승만은 중국군과 UN군이 동시에 철수할 것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할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하였다. 또한 만약 남한과 북한에 주둔하고 있는 군대가 동시에 철수하지 않는 경우, 한국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전쟁

20) “Memorandum of Discussion at a Special Meeting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Tuesday”, March 31, 1953, *FRUS 1952-1954*, Vol. X V, pp. 265-266.

21) 배기옥, 『이승만의 위협인식과 국방정책 연구』(서울: 국방대, 2008) : 66.

2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국방사 2』 : 56.

23) 차상철, “이승만과 한미상호방위조약”, 『연세대학교 현대한국학연구소 학술총서』, 6, (2002) : 295.

을 택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동맹국들의 도움 없이도 한국의 손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위권을 행사하겠다고 강조하였다.<sup>24)</sup>

이승만이 주장하는 단독 복진은 반복되어 오던 것이었다. 하지만 휴전 협상을 반드시 성사시키고자 하였던 미국에 이승만의 단독 복진 주장은 위협적으로 다가왔다. 휴전 협상이 잘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승만이 UN으로부터 탈퇴하여 단독 복진을 감행한다면, 미국으로서는 지난 2년간의 휴전 협상을 위한 노력이 실패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sup>25)</sup>

4월 22일 이승만은 비망록을 통해, 만약 미국이 휴전협정이 타결된 이후에도 중국군을 북한지역에 주둔하는 것을 승인한다면, 한국군을 UN으로부터 탈퇴시켜, 자유를 위해 명예를 지키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전달하였다. 아이젠하워는 이승만의 비망록 내용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의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였다. 또한 아이젠하워는 한국의 상황을 이해하며, 지금처럼 미국은 한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은 고려될 수 없다고 하였다.<sup>26)</sup>

따라서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소외되어 공산주의 세력에게 노출되어 국가안보가 위협해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으며, 미국은 한국의 단독 행동으로 인해 전쟁이 재개되어 또다시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다. 미국은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안전을 위해 이승만의 단독 행동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

24) "The President of Republic of Korea(Rhee) to President Eisenhower", Top Secret, May 30, 1953, *FRUS 1952-1954*, Vol. X V, pp. 1124-1126.

25) The NSC Planning Board, "United States Tactics Immediately Following Armistice in Korea", NSC 154, June 15, 1953, Policy Papers 152-158, Records for National Security Council, RG 273(이하 RG273), National Archives at College Park(이하 NA II).

26) "The Acting Secretary of State to the Embassy in Korea", Top Secret, May 22, 1953, *FRUS 1952-1954*, Vol. X V, pp. 1086-1090.

비하여 이에 대처할 계획을 세워야 했다.<sup>27)</sup>

1953년 5월 4일, 미8군사령관인 맥스웰 테일러 중장(이하 테일러)은 이승만의 단독 행동을 비상 상황으로 상정하여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에버레디 계획 개요’를 미국 본국으로 제출하였다. 이 계획의 목적은 휴전협정이 이뤄지기 전에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상실되거나 약해질 경우를 대비하여, UN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계획은 UN군의 지시에 한국군이 응하지 않는 경우, 단독 행동을 할 경우, UN군에 대해 적대적 행위를 할 경우에 대한 대응 방안을 설정하고 있었다.<sup>28)</sup> 그러나 ‘에버레디 계획 개요’는 비상시 계엄령의 발령과 한국 내 정치, 군사 지도자들의 신병을 확보하고, 군정을 설치하는 등 극단적인 조치를 상정한 것으로 볼 때, 미국이 이승만을 매우 두려워했음을 알 수 있다.<sup>29)</sup>

미국은 6·25전쟁을 군사적 수단이 아닌 정치적 수단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따라서 미국은 현상을 유지하면서 휴전협정을 조속히 체결하여 6·25전쟁을 평화적으로 종결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승만은 미국의 뜻대로 진행되고 있는 휴전협정에 대하여 한국의 안보 공약을 위해 UN군으로부터의 탈퇴와 단독 복진, 휴전협정 이전의 상호방위조약 체결 등을 주장하였다. 미국은 이승만의 강경한 태도로 인해 매우 곤란하게 되었다. 미국으로서 이승만의 단독 복진 주장은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중국과의 전면전에 드러내고, 6·25전쟁을 종결하기 위한 미국의 그간 노력을 위협에 빠지게 만드는 행위였다고 볼 수 있다.<sup>30)</sup>

27) 김남수,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과정 연구 : 동맹의 제도화를 통한 동맹 딜레마의 관리”, (석사학위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2009) : 26.

28) “Paper Submitted by the Commanding General of the United States Eighth Army(Taylor)”, May 4, 1953, *FRUS 1952-1954*, Vol. XV, pp. 958-965.

29) 김남수, 위의 글 : 28.

30) 김남수, 위의 글 :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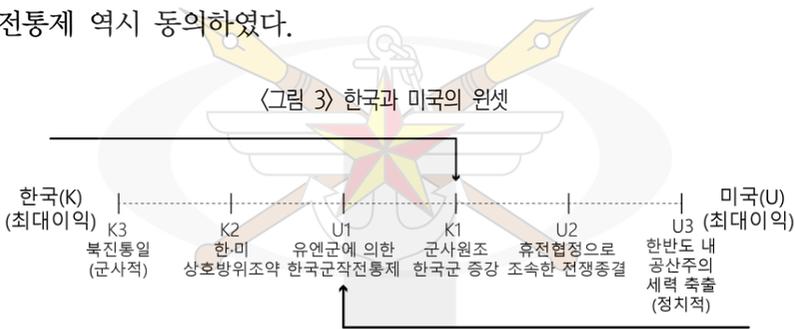
반공포로 석방 이전은 미국이 이승만의 요구를 거부하고, 이승만은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여러 전략을 활용했지만, 결국 미국에 끌려가는 과정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승만은 북진 통일론을 통해 반복적으로 미국을 압박하고자 하였다. 휴전협정 이전에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이 되지 않는다면, 북진통일을 위한 군사행동과 UN군 탈퇴라는 단독 행동을 불사할 것이라는 주장으로 미국을 압박하는 한편, 미국과의 협상 결렬을 바라고 미국을 협박하는 것이 아님을 재차 표현하였다.

한편 미국은 전반전이고 반복적인 이승만의 강경한 태도에 대해 점차 위협을 느끼게 되었다. 이승만의 태도는 휴전협정 체결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발전하여 미국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미국의 국가이익에 기초해 볼 때, 한국과의 상호방위조약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을 품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이승만의 북진 통일론과 단독 행동을 통한 미국에 대한 압박전략은 미국에 위협이 되었지만, 이승만이 요구한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에 대한 필요성까지 느끼게 하는 단계로의 위협으로 작용하지 못하였다.

이승만은 자국의 원셋 축소를 통해서 미국의 원셋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을 다음과 같이 활용하였다. 첫째, 한반도의 통일을 표어로,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가로막으면 군사행동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국민과 국회에 공개적으로 약속하였다. 국회를 통해 지속적인 휴전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였고, 학생과 국민을 동원한 휴전 반대운동을 끊임없이 전개하였다. 국회와 국민을 통해 조성된 휴전 반대운동은 반미여론으로 번졌고, 반미운동으로 확장해 한국 국내의 상황이 여의치 않음을 미국이 믿도록 하였다. 둘째, 자국의 축소된 원셋을 바탕으로 다양한 협박 수단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이것이 내부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준이며 미국이 받아들여야 함을 제

시하였고, 휴전 협상 체결을 위한 최소한의 수준으로 한미상호방위 조약의 체결 없이는 휴전협정도 없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한국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군사행동을 통한 북진통일과 한국군의 UN군으로부터의 탈퇴 등 단독 행동을 통해 미국의 원색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을 사용하였다. 셋째, 이승만은 자국의 원색을 축소하고, 상대국의 원색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적 조치를 사용하는 한편, 협상의 교착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창구로써 한국과 미국 모두 원색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휴전협정 이전에 한미상호방위 조약이 체결된다면, 미국이 원하는 조속한 휴전협정 체결을 위해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으며, UN군에 의한 한국군의 작전통제 역시 동의하였다.



〈그림 3〉은 한국과 미국의 원색을 표현한 것이다. 한국의 원색은 K3 ~ K1까지이며, 미국의 원색은 U3 ~ U1까지이다. 따라서 협상이 가능한 교차점은 한국의 원색인 K1(군사원조, 한국군 증강)에서 미국의 원색인 U1(UN군에 의한 한국군 작전통제)까지이다.

이승만은 초기에는 북진통일을 목표로 K3(북진통일)까지 미국의 원색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는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휴전협정 이전에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고자 하였다. 이승만의 현실적 목표인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을 위해 이승만은 미국의 원색을 K2(한미상호방위조약)까지 확대하고

자 일련의 전략적 방안을 활용하였다.

그러나 휴전협정 이전에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기 위해 목표로 했던 미국의 원셋 확대는 실패하였다. 아래와 같이 그 원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미국은 현시점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해야 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스스로 원셋을 확대해야 할 동기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승만으로서 자국의 원셋 축소를 통해 미국의 원셋을 확대해야만 했다.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좁아진 이승만의 전략적 선택지는 효율적인 협상전략과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사용이 제한되었다.

둘째, 이승만의 전략적 조치는 미국에 어느 정도 수준의 위협이 되었지만, 미국이 원셋을 확대할 만큼 충분하고 강력한 위협이 되지 못하였다. 한편 일반적인 상황에서 집단 내부에서 발생한 갈등은 협상력을 더욱 약화하게 되어, 협상에서 불리한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퍼트남은 집단 내부의 갈등 요소가 자국의 원셋 크기를 축소하면, 오히려 협상에서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sup>31)</sup>

이러한 측면에서 이승만은 북진통일을 끊임없이 주장하였다. 또한 민족의 소망인 통일을 방해하는 대상과는 협조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면서, 민족적 정서를 활용하여 전략적으로 ‘자발적 배신’을 통한 원셋의 축소 전략을 사용하였다. ‘자발적 배신’이란 강제적으로 계약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리적인 이기주의자가 의도적으로 하는 약속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반면에 ‘비자발적 배신’은 비준의 실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약속을 지킬 수 없는 대리인의 행위를 뜻한다.<sup>32)</sup> 한편, 자발적으로 배신하여 협상이 결렬될 수도 있고, 집단

31) Robert Putnam 앞의 책 : 4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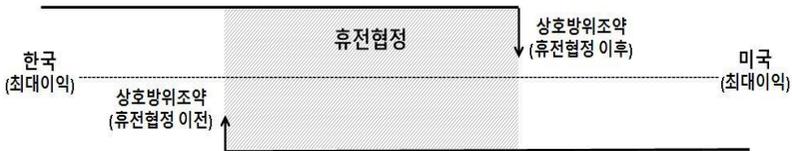
32) Robert Putnam 앞의 책 : 440.

내부의 비준 실패로 협상이 결렬되거나 교착 상태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sup>33)</sup>

이승만의 ‘자발적 배신’은 미국과의 협상이 최종 결렬되는 결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이러한 점은 미국이 어느 정도 이승만의 의견을 수용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이승만의 전략이 무조건 실패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현시점에서의 이승만의 전략적 행동은 미국이 받아들일 만한 충분한 위협으로 작용하지 못했고 결국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위협에는 ‘확실성’이 있어야 한다는 전제를 간과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으로 인해 이승만에게는 ‘확실성’ 확보를 위한 또 다른 숙제가 남게 되었다.

셋째, 이승만은 한국과 미국의 원셋의 정확한 교차지점을 파악하지 못하였다. 한국과 미국의 협상은 결국 휴전협정을 중심으로 이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휴전협정을 중심으로 한국과 미국의 원셋을 확장해서 살펴보면 한국은 휴전협정 이전에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는 것이 목표이며, 미국은 상호방위조약을 휴전협정 체결 이후에 처리하고자 하였다. 즉, 한국과 미국의 원셋은 휴전협정을 중심으로 상대국의 원셋을 확대하는 것을 지향점으로 변화되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 이를 표현하면 아래 <그림 4>와 같다.

<그림 4> 휴전협정을 중심으로 한 원셋 양상



33) 홍수정, 김기형, “한미 FTA에 대한 투-레벨 게임이론의 적용”,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12, (2007) : 3.

앞의 〈그림 4〉를 통해 한국과 미국의 상호방위조약 체결에 대한 양국의 윈셋이 휴전협정을 중심으로 협정체결 이전과 이후로 상대국의 윈셋을 확대하고자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종적으로 이승만은 휴전협정을 조건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는 것을 현실적 목표로 삼았다.

이에 따라 휴전협정을 통한 조속한 전쟁 종결이라는 미국이 현실적으로 달성해야 하는 목표를 조건으로 윈셋을 줄다리기하여 자국과 미국 모두의 윈셋을 조정하고자 하였다. 이승만은 휴전협정을 조속히 체결하기 위한 미국의 윈셋을 명확히 파악하여, 이에 대해 한국의 협조를 조건 삼아 매우 강경한 태도로 한국의 윈셋을 설정하고 미국을 압박하였다.

이승만은 공산주의 세력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 조국의 통일이라는 당위적 목적에서 북진통일을 주장하였으며, 한국군의 단독 행동을 협박 전략으로 활용하여 미국을 압박하고자 하였다. 동시에 이승만은 당시 국제질서를 지배하고 있는 강대국인 미국과의 협상에서 약소국이던 한국이 일반적인 수준의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승만은 약소국이던 한국이 강대국인 미국으로부터 양보와 협조를 얻어내고,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목표 달성을 위해 윈셋을 조정하는 전략을 선택하여 협상을 진행하였다.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그리고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최소한의 윈셋으로 공산주의 세력으로부터 국가를 지키기 위한 미국과의 상호방위조약을 추진하였다. 즉, 휴전협정 이전에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을 달성할 수 있고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협상 목표로 설정하여, 궁극적으로 미국의 윈셋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이승만은 지속해서 강경한 태도로 협상을 진행하였다. 휴전 협상 결렬을 협박 수단으로 활용하였으며, 이러한 입장이 한국이 내부적

으로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써 미국을 설득하였다. 그러나 협상에서 자국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상대국과의 협상 결렬을 협박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협박 수단에 대한 ‘확실성’이 있어야 한다. 상대방이 이러한 협박이 거짓이 아닌 진실로 받아들일도록 해야 한다.<sup>34)</sup> 반드시 진실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에게 실행 가능한 방안으로 인식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당시의 미국은 이러한 이승만의 행동이 위협적이었지만, 미국의 국가이익에 견주어 보았을 때, 대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고 당장 한미상호방위조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승만은 미국의 원심을 확대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게 되었다. 진실 또는 실행 가능한 방안으로 미국이 인식하도록 만들기 위한 ‘확실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행동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 나. 반공포로 석방 이후

이승만의 협상 목표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한국을 통일시키는 것이며, 만약 불가능하다면 휴전협정 체결 전에 미국과의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여 한국의 안보를 확실히 보장받는 것이었다.<sup>35)</sup>

한편 미국의 협상 목표는 조기에 전쟁을 종결하기 위한 휴전협정의 체결이었다. 이승만은 표면적으로는 휴전을 반대하지만, 현실적 대안으로써 휴전협정 체결 전에 미국과의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여 안보에 대한 확실한 약속이 보장된다면, 휴전협정에 협조할 의사가 있었다. 그러나 미국은 이러한 이승만의 요구를 수용할 의

34) 김영수, “다자간 양면게임을 적용한 북핵 협상전략 연구”, (박사학위논문, 국방대학교 안보과정 : 2017) : 18.

35) 이성훈,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을 위한 이승만 정부의 협상전략”,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77, (2010) : 263.

사가 없었다.<sup>36)</sup>

한국이 침략받을 경우, 미국이 즉각 개입하는 사항은 미국이 수용할 수 없는 요구 조건이기 때문이었다.<sup>37)</sup> 미국은 소련 또는 중국과의 전쟁 발발 시, 한반도에서 미군의 희생을 감수할 위험을 부담할 정도의 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1947년 9월 미 합동참모본부가 작성한 “한국의 군사적 의미”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동아시아지역에서 전쟁이 발생할 경우 미군의 공격 루트는 한반도를 제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sup>38)</sup> 이러한 정책적 기조와 미국의 주요 정책 결정 문서인 NSC 8에서 1948년 9월 15일부터 1949년 1월 15일까지 한국 내 전격적인 미군의 철수를 완료하는 계획을<sup>39)</sup>을 볼 때 미국은 이승만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었던 것이다.

아이젠하워는 6·25전쟁을 평화적이고 명예롭게 종결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휴전협정을 신속하게 체결하는 것이 미국의 전략적 목표였다. 그러나 이승만의 요구대로 한국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는 것은 미국이 추구하는 휴전협정의 조속한 체결에 방해가 되는 것이었다. 이는 UN을 통한 휴전협정의 체결과 중국에 대한 억지라는 미국의 기존 정책 방향과 어긋나는 것이었고, 상호방위조약을 통해 안보 공약을 제공하는 것은 이승만이 단독 복진을 감행하여 미군을 위협에 빠뜨릴 가능성 또한 갖고 있었다.<sup>40)</sup>

1953년 5월 29일 클라크는 그동안 있었던 이승만과의 대화 결과를 정리하여 미 합동참모본부에 보고하였다. 클라크는 이승만이 반공포로를 일방적으로 석방하거나, 한국 단독으로 공산군 측에 새로

36) 이성훈, 앞의 글 : 267.

37) 김일영, 조성렬, 『주한미군 : 역사, 쟁점, 전망』, (한울아카데미, 2010) : 63-64.

38) 장훈각, “이승만 대통령과 한미동맹 : 동맹의 형성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집 42권 1호』,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1) : 133.

39) 장훈각, 위의 글 : 134. 재인용.

40) 김남수, 위의 글 : 30.

운 제안을 하거나, 휴전회담에서 한국 대표를 철수하거나, 한국군을 UN군에서 철수하거나, 휴전 반대 데모를 더욱 강화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하였다.<sup>41)</sup>

이러한 보고를 접한 미 합참과 국무부는 1953년 5월 29일에 긴급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국무장관을 통해 한국과 방위조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시행하자고 결의하였다. 또한 아이젠하워에게도 건의하고, UN군사령관을 통해 이승만에게도 전달하여 만일의 사태로 악화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조치하였다.<sup>42)</sup>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도 실질적으로 조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방위조약에 대한 협상이 가능하다는 수준에서 이승만에게 제안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sup>43)</sup>

이 결정은 1953년 5월 30일 아이젠하워에게 보고되었다. 결국 아이젠하워는 이승만에게 상호방위조약에 대한 협상 제안을 승인하였다. 이에 따라 콜린스는 클라크를 통해 이승만에게 한국과 미국의 상호방위조약에 대해 제안해도 된다는 지침을 주었다. 이 지침은 이승만이 휴전협정에 대해 확실하게 협조하고, 단독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전제로 하였다.<sup>44)</sup>

아이젠하워는 1953년 6월 6일 이승만에게 보낸 편지에서 휴전협정이 성사된 이후에 한국과 상호방위조약을 협상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이는 드디어 이승만의 의지가 미국에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미국은 여전히 휴전협정에 대한 한국의 협조를 전제로 하여, 휴전협정 이후에 한국과의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고자 하였다.<sup>45)</sup>

41) 한배호, “한미방위조약 체결의 협상과정”,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4/7, (1982) : 167.

42) 한배호, 위의 글 : 168.

43) “Memorandum of Substance of Discussion at a Department of State - Joint Chiefs of Staff Meeting”, May 29, 1953, *FRUS 1952-1954*, Vol. XV : 1114-19.

44) 김남수, 위의 글 : 35.

45) 김남수, 위의 글 : 37.

한편 휴전협정에 대한 이승만의 반대는 아이젠하워의 1953년 6월 6일 자 편지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이승만은 미국이 휴전 성립 ‘이전에’ 그리고 ‘일본의 안전과 극동에서의 국제평화 및 안전 유지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미국은 육군, 공군과 해군에 의한 일본 국내의 시설 및 구역의 사용권을 허락받는다’라는 규정(제6조)이 담긴 1951년 9월 8일 체결된 ‘마일 안보 조약’에 준하는 상호방위조약을 한국과 체결해줄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었다.<sup>46)</sup>

이승만은 휴전협정 조건을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고 계속 싸울 것이라며, 앞으로는 단독 행동을 하는데 거리낌이 없을 것이라고 더욱 강하게 경고하였다. 특히 이승만은 전에 볼 수 없었던 더욱 특별히 격양된 태도를 보였다. 이승만의 이러한 태도는 지금까지 미국이 제시한 조건과 아이젠하워의 편지 등을 통해 볼 때 미국이 추진하는 휴전협정의 조건들에 대해서 더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sup>47)</sup>, 그보다는 미국이 한국과의 상호방위조약에 대해 고민하고 중대하게 다루는 시점에서 강한 압박을 통해서 원하는 결과로 얻어내기 위한 이승만의 협상전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1953년 6월 9일 이승만은 보다 완만한 태도로 테일러를 만났다. 이승만은 테일러에게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하였다. 휴전협정 이후 진행될 정치협상 기간을 60일로 한정하고, 미국은 한국과의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할 것이며, 한국에 해군과 공군을 창설하고 육군의 전력보강을 위해 20개 사단으로 증강하는 것이었다. 이에 테일러는 위 세 조항은 이승만과 미국의 뜻이 다르지 않다고 확인하였다.<sup>48)</sup>

한편 테일러는 휴전협정의 체결이 이제는 변할 수 없는 기정사실

46) 유영익, “한미동맹 성립의 역사적 의의”, 『한국사 시민강좌』, 36, (2005) : 161.

47) “The Commander in Chief, United National(Clark) to the Joint Chiefs of Staff”, June 7, 1953, *FRUS 1952-1954*, Vol. XV : 1149-51.

48) 김남수, 위의 글 : 39.

이라는 것을 이승만에게 인식시키려고 하였다. 또한 그것을 전제로 모든 지원 조건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클라크는 휴전협정을 신속하게 진행해서 이승만이 더는 방해 공작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미국은 이승만이 자신의 힘으로는 더는 휴전협정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것으로 최종적으로 판단하였다. 미국은 이승만을 설득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한편, 공산 측 대표와 1953년 6월 18일에 휴전협정을 최종적으로 체결할 계획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sup>49)</sup>

결국 미국은 이승만이 제시한 조건이 실행되기 전에 미국의 목표인 휴전협정을 체결하기로 한 것이다. 이승만으로서는 명문화된 조약과 약속 없이 휴전협정만 잘 된다면 한국이 원하는 조건이 이뤄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의존한 채 휴전협정을 바라만 봐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 된 것이다. 결론적으로 미국이 한국의 요구를 충분히 존중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승만은 미국으로부터 많은 양보를 끌어내고, 자신의 의지를 반영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sup>50)</sup>

이승만은 미국의 원색을 확대하기 위한 마지막 조치로 ‘반공포로 석방’을 강행하게 되었다. 1953년 6월 18일 새벽, 이승만은 “반공한인 애국청년들을 석방하라, 가만(可晩)”이라는 친필명령서를 대통령 밀명으로<sup>51)</sup> 약 25,000명의 한국인 반공포로들을 석방하는 단독행동을 실행하였다. 이승만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미국에 한국군의 지휘권을 반환하라고 요구하였다.<sup>52)</sup>

이로써 이승만은 미국이 그토록 원하는 휴전을 언제든 방해할 수

49) “Editorial Note”, *FRUS 1952-1954*, Vol. XV : 1196-97.

50) 유영익, 위의 글 : 161.

51) 남정옥, “국군헌병총사령관 원용덕 장군과 반공포로 석방 : 이 대통령 비밀지령 받고 철저한 보안속 처리”, 『국방일보』, 2008년 8월 11일, 6.

52) 장광열, “미국의 전쟁이 한미군사동맹 관계 변화에 주는 함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05, (2017) : 13.

있다는 점을 미국에 확실히 각인시키게 되었다.<sup>53)</sup> 만약 이승만에게 한국군의 지휘권이 이양된다면, 북진통일을 주장하고 있는 이승만의 돌발행동을 예측하기 어려웠던 미국으로서는 더욱 큰 위협으로 다가오게 되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 1953년 6월 18일 예정되어 있던 휴전협정의 체결은 무산되었다.

한편 이승만은 ‘반공포로 석방’이 휴전협정에 있어서 한국의 입장을 현실화하기 위해 이승만 자신이 모든 권한을 걸고 시행한 최대한의 행동이었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이 미국이 우려하는 단독 행동의 시작이 아님을 약속함으로써 협상의 결렬을 막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승만의 ‘반공포로 석방’에 대한 미국의 반응은 이승만에 대한 분노로 표출되었다. 1953년 6월 18일 미 국가안보 회의에서 아이젠하워는 “미국은 우방 하나를 잃는 대신 적을 하나 더 얻었다”라고 말하였다. 또한 “미군을 한국에서 철수해야 할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라고 하였으며, 클라크는 “이승만은 휴전회담을 결렬시키기 위한 최후의 노력을 하고 있으므로 미국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정책을 취해야 한다”라고 강력히 주장하였다.<sup>54)</sup>

특히 아이젠하워는 휴전 협상이 완전히 와해 될 것을 우려하였다. 또한 이승만의 단독 행동으로 인하여 다른 동맹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 고민하였다. 아이젠하워는 이승만에게 서신을 통해, ‘반공포로 석방’은 UN의 권위를 위협하고 도전하는 무력 사용이라고 비판하였다. 만약 이승만이 이러한 단독 행동을 계속한다면, 6·25전쟁에서 피를 흘리며 용감하게 싸워 노력한 모든 것이 희생되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이승만에게 UN군사령부의 권위를 즉시 명확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미국은 모종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경고

53) 유영익, 앞의 글 : 161.

54) “The President of the R.O.K(Rhee) to the Commander in Chief, United Nations Command(Clark)(1953.6.18.) *FRUS XV* : 1952-1954(1984), pp.1197-98.

하였다.<sup>55)</sup>

그러나 아이젠하워의 강력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이승만의 강경한 전략은 계속되었다. 이승만은 강경한 전략을 지속해서 사용하여, 휴전협정을 하루라도 빨리 체결하기를 원하는 미국에 한국과의 상호방위조약 체결의 수용을 현실적으로 강요하였다. 미국은 휴전협정의 조속한 체결을 위해서 이승만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이었다.<sup>56)</sup>

이에 미국은 ‘반공포로 석방’ 문제, 휴전협정의 신속한 재개와 휴전협정에 대한 이승만의 동의를 얻어내기 위해 로버트슨을 파견하였다.<sup>57)</sup> 이승만은 상호방위조약 체결과 관련하여 미국에 휴전협정 이전에 조약을 완성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아이젠하워는 조약의 비준과 관련한 사항은 상원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자신의 권한이 아니라 당장 보장할 수는 없지만, 상호방위조약과 관련된 협상은 바로 시작할 수 있음을 로버트슨을 통해 전달하였다. 이승만은 다시 한번 신속한 비준을 요구하였다. 덜레스는 다시 한번 서신을 통해 비준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므로, 1954년 1월 시작하는 의회 승인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승만은 이러한 미국의 입장을 받아들였고 드디어 휴전협정의 체결에 동의하였다.<sup>58)</sup>

결국 이승만은 미국으로부터 상호방위조약 체결을 위한 신속한 비준 약속을 얻어내었다.<sup>59)</sup> 물론 휴전 협상 과정에서 이승만이 끊임없이 미국에 요구한 사항은 휴전협정 이전 한국과의 상호방위조

55) "Letter from U.S. President Eisenhower to Korean President Rhee, June 9, 1953," Documents on Korea-United States Relations 1943-1965(Seoul: Ministry of Foreign Affairs R.O.K.,1965) : 76-78.

56) 이성훈, 위의 글 : 268-269.

57) 김계동, "강대국 군사개입의 국내정치적 영향", 『국제정치논총』, 32/1, (1992) : 161.

58) 김남수, 위의 글 : 43. 재인용.

59) 유명익, 위의 글 : 164-165.

약을 체결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승만의 ‘반공포로 석방’ 전략이 실패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승만의 목표는 한국의 핵심적 국가이익이었던 미국과의 상호방위조약 체결을 통해 안전을 보장받는 것이었으며, 결국 미국의 제안대로 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은 이승만이 미국 내의 정치적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양보를 통해 협상을 협력적 관계로 이끌었다고 보는 관점이 타당할 것이다. 한편, 아이젠하워는 한국에서 이승만 외의 다른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승만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승만은 치열한 국제질서와 냉전 상황에서 한국민의 생존과 운명은 미국의 의지와 정책에 달려 있다는 냉혹한 국제 정치적 현실을 이해하고 있었다.<sup>60)</sup>

아이젠하워와 이승만은 서로의 국가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하였다. 협상은 갈등 관계로 진행되며 결렬될 수도 있었지만, 끝내 협상이 실패하지 않고 성사된 이유는 서로의 윈셋이 협상 가능한 영역에서 축소되고, 확대되었기 때문이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을 위한 미국의 윈셋을 확대하지 못했던 이승만은 미국의 윈셋을 확대하기 위한 마지막 전략적 승부수로 ‘반공포로 석방’을 선택한 것이다.

이승만은 자국의 윈셋을 축소함으로써 미국의 윈셋을 확대하기 위해 ‘자발적 배신’을 통해 자국의 윈셋을 확대함으로써 협상력을 높여 미국의 윈셋을 확대하고자 하였지만, ‘확실성’ 부족으로 실패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승만은 부족한 ‘확실성’을 채우려는 방안으로 ‘반공포로 석방’이라는 전략적 조치를 강행한 것이다.

60) 홍순호, ‘625와 그 주역들 - 한국, 이승만’, 『북한연구소』, 통권제402호, 6월(2005) : 44.

〈그림 5〉 반공포로 석방에 따른 미국의 윈셋 확대



〈그림 5〉는 이승만의 ‘반공포로 석방’에 따라 변화된 미국의 윈셋을 나타낸 것이다. 휴전협정을 조건으로 합의 가능한 영역 안에서 양국은 치열하게 상대국의 윈셋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을 구사하였다. 이승만은 미국의 윈셋을 확대하기 위해 ‘반공포로 석방’을 단행하였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반공포로 석방’ 이전에 이승만의 전략적 조치들에 대해 미국이 느끼는 위협의 강도는 충분한 위협이 되지 못하였다. 이승만의 전략대로 자국의 윈셋을 축소하여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확실성’이 필요한데, 말만 앞세운 협박 전략은 강대국인 미국에 큰 위협이 되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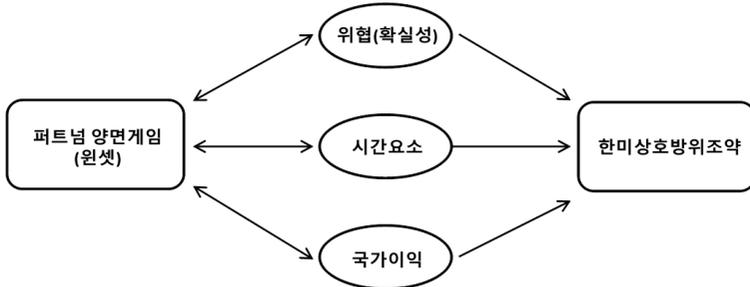
따라서 미국은 이승만의 협박 전략을 잠재적 위협으로 받아들여 이승만이 요구한 휴전협정 이전에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체결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승만은 부족한 ‘확실성’을 채우기 위해 ‘반공포로 석방’을 단행하였다.

#### 4. 협상에 영향을 미치는 3요소

본 논문은 이승만의 협상전략 중 특히 ‘반공포로 석방’에 주목하였다. ‘반공포로 석방’을 퍼트넘의 양면게임 이론에서 윈셋을 독립변수로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윈셋과 상호작용을 통해 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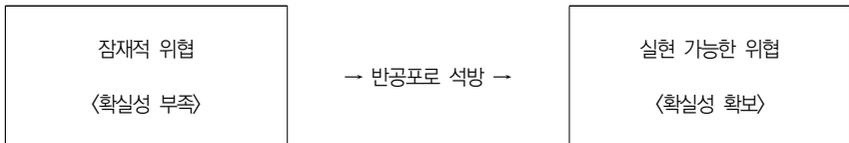
종적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과 협상에 영향을 미치는 3가지 요소를 아래 <그림 6>과 같이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6> 원셋과 협상에 영향을 미치는 3요소



첫째, 미국은 ‘반공포로 석방’ 이전 이승만의 전략을 잠재적 위협으로 받아들여 이승만이 요구한 휴전협정 이전에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체결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이승만은 부족한 ‘확실성’을 채우기 위해 ‘반공포로 석방’을 단행하였다. 위협을 협상 전략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확실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림 7>은 ‘반공포로 석방’을 통해 변화된 위협의 양상을 표현한 것이다.

<그림 7> 위협의 변화양상



미국은 이승만의 ‘반공포로 석방’으로 인해 그동안 갖고 있던 ‘잠재적 위협’이 이승만의 실질적인 행동으로 인해 ‘확실성’과 결합하여, 더는 ‘잠재적 위협’이 아닌 언제든지 ‘실현 가능한 위협’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이렇듯 ‘실현 가능한 위협’은 미국의 원셋을 확대했으며, 협상을

유리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시간은 협상전략에 따라 약자에게도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 대체로 협상에서 시간은 강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따라서 약자가 협상을 유리하게 하려면 시간이 경과 할수록 자신의 윈셋은 축소하면서 상대방의 윈셋은 확대해야 한다.<sup>61)</sup>

한편 미국은 시간이 흐를수록 위협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었다. 특히 ‘반공포로 석방’으로 인해 ‘잠재적 위협’이 ‘실현 가능한 위협’으로 변화된 시점에서 시간은 미국에 더욱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약점을 파악한 이승만은 ‘반공포로 석방’을 통해 한국은 앞으로 휴전협정과 관련된 중요한 상황에서 한국의 국가이익을 위해 어떠한 일이든지 단독으로 실행에 옮길 수 있음을 명백하게 표현하였다. 이것은 이승만의 행동이 UN측과 공산 측이 협정을 체결하더라도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미국에 확실히 인지시킨 것이다.

이러한 전략적 조치가 가능했던 이유는 이승만은 한국과 미국이 협상 과정에서 서로 갈등하는 관계가 되더라도 그와 동시에 서로를 몹시 필요로 하는 관계임을 현실적으로 명확하게 파악했기 때문이었다.

미국은 6·25전쟁을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승만의 협조가 절실했고, 이승만은 당시 한국에 가장 필요한 핵심적인 국가이익으로 안전보장에 대한 공식적 약속을 미국으로부터 받아내는 것이 절실했다.

이승만의 위와 같은 상황인식은 이승만으로 하여금 미국과의 상호방위조약 체결이 다소 그 과정에서 갈등과 대치 국면이 발생하더라도 최종적으로 협상이 결렬되지 않고 타협 가능한 협상 목표로써 설정 가능하다는 전략적 판단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러한 계기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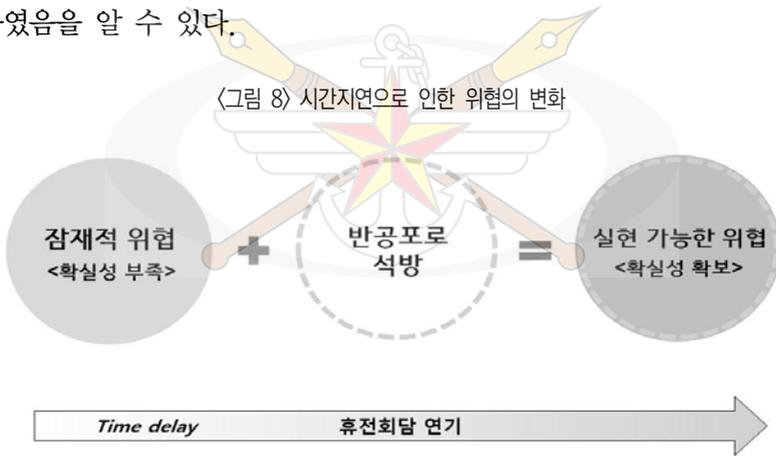
61) 김영수, 앞의 글 : 109.

‘반공포로 석방’이라는 극단적인 전략을 통해,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다.

한편 이 과정에서 이승만은 ‘반공포로 석방’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설명함으로써 국익을 위한 어쩔 수 없는 한국의 전략적 조치임을 명확히 하여, 이후 미국과 발생할 수 있는 협상의 어려움을 미리 방지하는 전략적 유연함도 보이고 있다.

결국 ‘반공포로 석방’을 통해 미국은 휴전회담이 연기됨으로써 미국의 국가이익 확보를 위해 원셋을 확대할 수밖에 없었다.

결론적으로 <그림 8>과 같이 ‘반공포로 석방’으로 인해 시간이 지연되어 휴전회담이 연기됨으로써 미국이 느끼는 위협은 더욱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원셋과 국가이익은 서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협상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협상전략으로써 국가이익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국가이익은 특정 계층이나 권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주권을 수호하는 것과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 선진 국가일수록 명확한 국가이익의 원칙을 가지고 있으며,

안보 및 외교정책이 이에 의해서 지배된다. 따라서 대외정책의 기본 지침이 되는 국가이익은 분명한 분류와 정확한 우선순위에 의해서 체계화되고 있다.<sup>62)</sup>

결국 국가이익은 원셋의 바탕이 되는 대외정책의 기본지침이 되고, 국가이익을 통해 한 국가의 명확한 국가이익의 원칙과 정책 방향을 알 수 있게 한다. 또한 국가의 정치체제와 같은 정체성 또한 국가이익에 투영되기도 하며, 이러한 국가이익은 정책의 방향성을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협상자에게 있어 상대방의 국가이익에 관한 세밀한 연구와 분석은 정책 방향과 원셋의 크기를 가늠하는 하나의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협상자는 협상전략을 수립할 때 정책 현안에만 함몰되선 안되며, 국가이익을 통해 상대국의 중심과 지향점을 가늠하는 자세가 필요하게 된다.

앞으로도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존재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국가 이익은 국가 경영의 중심으로 다양한 범위와 성격으로 확장되게 될 것이다.

위와같은 국가이익에 관한 인식을 바탕으로 휴전 협상 당시 한국과 미국의 국가이익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한국의 국가이익은 첫째, 휴전협정 이전에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는 것이었다. 이승만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서명되고 비준될 때까지 휴전협정 체결을 지연시키고자 하였으며, 협정이 불가피하게 될 최후의 순간에도 더욱 유리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체결을 끝까지 요구하여, ‘반공포로 석방’을 통해 국가이익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둘째, 한국군 20개 사단 증강 등 지속적인 군사원조와 경제지원을 요구하였다. 셋째, 중공군의 한국 철수와 통일된 한국의 건설과 함께 특히, 군사적 행동을 통한 북진통일을 끊임없이 주장하였다.

62) 육군사관학교, 『국가안보론』 (서울: 박영사, 2001) : 4.

반면 미국의 국가이익은 첫째, 한국이 휴전협정 이행에 협력할 것을 요구하며 한국군을 UN군의 작전 통제하에 둘 것을 요구하였다. 둘째, 휴전협정에 대한 한국의 동의를 받아 휴전협정을 조속한 시일 내에 종결하고자 하였다. 셋째, 정치적 해결을 통한 한반도의 통일을 이루고자 하였다.

결국 미국은 이승만의 ‘반공포로 석방’을 통해 휴전회담이 연기되면서 미국의 원활한 국가이익 확보에 타격을 받게 되었고, 이승만은 휴전협정을 조건으로 한국의 국가이익을 최대한으로 확보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승만과 한국에게 있어 안전보장과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달성해야 할 핵심적인 국가이익으로써 국가 경영의 중심에 위치하였기 때문이다.

〈표 2〉 한국과 미국의 국가이익 크기와 원셋 비교

구분	국가이익	이익 크기	원셋 크기
한국	한국군 증강(20개 사단)과 군사원조 약속	최소	확대
	휴전협정 이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중간	중간
	북진통일(군사적)	최대	축소
미국	UN군에 의한 한국군 작전통제	최소	확대
	휴전협정으로 조속한 전쟁 종결	중간	중간
	한반도 내 공산주의 세력 축출(정치적)	최대	축소

〈표 2〉는 국가이익과 이익의 크기에 따라 원셋의 크기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국가이익의 크기가 작을수록 원셋의 크기는 확대되는 경향이 있으며, 국가이익의 크기가 커질수록 원셋의 크기는 축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국가이익의 크기가 중간인 지점에서는 원셋의 크기도 중간에 위치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양상은 국가이익의 크기와 원셋의 크기가 중간인 지점이 양 국가가 현실적으로 달

성해야 할 목표로서, 서로가 반드시 달성해야 할 핵심적인 국가이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따라서 국가이익과 원셋의 크기가 중간으로 교차되는 지점은 상호 협상이 활발히 진행됨을 알 수 있었다. 결국 이 지점이 협상자가 국가이익 확보를 위한 조치를 집중해야 할 전략지점(strategy point)이 되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는 협상 과정에서의 상호 갈등과 협력의 관계가 이어지지만, 중국에는 상호 합의가 가능한 영역(zone of agreement)으로 귀결되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

## 5. 맺음말

국제사회에서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게 된다. 특히 미디어가 발달한 현대에서는 전쟁을 수단으로 하는 국가이익 확보는 국제사회의 큰 비난과 지탄을 피할 수 없으므로 협상을 통한 이익 확보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한편 협상에서 약소국은 강대국에 비해 불리한 협상력을 갖는 것이 보편적이다. 따라서 약소국 입장에서 국가의 존망 및 국민의 생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협상전략을 연구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6·25전쟁 당시 약소국이었던 한국이 미국과의 안보 조약인 상호방위조약 체결과정에서 전개한 협상전략에 관해 연구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과정에서 이승만이 실행한 전략들에 관한 기존 연구들이 객관적 분석 도구 없이 주관적 판단과 정치적 성향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반성과 함께 시작되었다.

퍼트넘의 양면게임 이론 중에서도 윈셋 개념을 독립변수로 적용하여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에 미친 영향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윈셋과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에 상호 영향을 미치는 제3의 변수로써 위협, 시간 요소, 국가이익의 관계를 발견하고 적용하였다. 마지막으로 퍼트넘 양면게임의 윈셋과 상호작용을 통해 종속적으로 협상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승만의 ‘반공포로 석방’은 강력한 자국의 윈셋 축소 전략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강행함으로써 미국의 윈셋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결국 ‘반공포로 석방’을 통해서 미국은 이승만의 행동이 실현 가능한 확실한 위협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한국과의 상호방위조약 체결까지 윈셋을 확대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 근거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승만이 1953년 6월 18일 ‘반공포로 석방’ 조치를 하기 이전까지 미국은 이승만을 설득하여 공산 측과 휴전협정을 체결할 계획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승만의 ‘반공포로 석방’ 이후 미국은 미국 내 비준 상황에 대해 언급하며 한국과의 상호방위조약 체결에 대해 적극성을 보였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이승만의 ‘반공포로 석방’이 미국의 윈셋을 확대한 근거로 작용한 결과였음을 도출할 수 있다.

또한 퍼트넘에 의하면 자국의 축소된 윈셋은 상대국의 윈셋을 확대할 수 있다. 상대국의 온건적 태도를 끌어내 협상을 자국에 유리한 결과로 나타낼 수도 있다. 만약 반대의 경우, 협상은 분쟁적인 상태로 치닫게 되며 결과는 협상의 실패로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시각에서도 이승만의 ‘반공포로 석방’은 이승만이 목표로 했던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반공포로 석방’이 협상을 분쟁적인 상태로 이끌었음을 가정하면, 최종적으로 협상은 실패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상황을 가정하면 한국은 미국과의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할 수 없었을 것이며, 미국

은 한국의 협조 없이 명예롭고 안전한 한반도에서의 정치적 승리를 보장할 수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협상 과정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상호 갈등 관계가 지속되는 국면이 있었지만, 협상을 방해 또는 저해하였다는 기존 연구의 주장보다는 결국 이승만의 ‘반공포로 석방’을 통해 미국의 원색은 확대되었음을 방증하는 근거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승만의 ‘반공포로 석방’은 자국의 원색은 축소하고 상대국의 원색을 확대하여 협상에서 상대방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자국의 국가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구사한 협상전략 사례로써 가치와 의의를 가진다.

그렇지만 자국의 축소된 원색이 항상 상대국의 원색을 확대하는 결과를 보장할 수는 없다. 협상은 매우 다양한 요소에 따라 갈등과 협력의 관계로 나아갈 것이며, 그 지향점은 자국의 협상 목표인 국가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대국의 양보를 요구하게 된다. 따라서 협상이 결렬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는 가운데 협상을 주도하는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노력은 더욱 중요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본 논문은 퍼트넘의 양면게임 이론을 재해석하여 이승만의 ‘반공포로 석방’에 관해 재조명하였지만, 역설적으로 이론에 의존한 연구라는 한계를 동시에 갖고 있다. 이론은 모든 상황과 현상에 적용되는 진리라고 볼 수 없다. 클라우제비츠는 이러한 맹점에 대해 “관념의 놀이는 논리의 궤변에 빠져 가능성의 영역을 침범해버린다”라고 일찍이 경고한 바 있다.<sup>63)</sup>

앞으로 본 연구 이후 다양한 이론적 근거와 관점을 바탕으로 협상 전략에 관한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 강대국보다 특히 약소국이 갖는 협상의 어려움을 극복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협상 결과를 도출하는 가능성의 영역을 확장하는 계기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63) 카알 폰 클라우제비츠, 김만수 역, 『전쟁론』 (서울: 갈무리, 2016) : 64.

## 〈참고문헌〉

### 1. 국문

- 국방부, 『국방사2』, 서울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http://uci.or.kr//G901:A-0006477732@N2M>
- 곽현용, “안보·자율성 교환 모델을 적용한 한·미 간 동맹조약 분석-조미수호통상조약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중심으로”. 한국군사학논총. 7집/2권, 2018.  
<http://doi.org/10.34166/rokms.2018.7.2.39>
- 권영근, “묘책의 달인-이승만과 한미동맹”. 전략연구. 제68호, 2016.  
<http://uci.or.kr/G704-001467.2016.23.1.001>
- 김관옥, “한국과병외교에 대한 양면게임 이론적 분석”. 『대한정치학회보』. 13/1, 2005.  
<http://uci.or.kr/G704-001325.2005.13.1.016>
- 김계동, “강대국 군사개입의 국내정치적 영향”. 『국제정치논총』. 32/1, 1992.  
<http://uci.or.kr//G706+NLKF02-F.oaiInfo.CNTS-00007047119@N2M>
- 김남수,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과정 연구 : 동맹의 제도화를 통한 동맹 딜레마의 관리”.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대학원, 2009.  
<http://uci.or.kr//G901:A-0005473030@N2M>
- 김보영, “한국전쟁 휴전회담 연구”. 박사학위 논문. 한양대학교대학원, 2008.  
<http://uci.or.kr//G901:A-0005394079@N2M>
- \_\_\_\_\_, “양면게임 이론으로 분석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협상”.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2016.  
<http://uci.or.kr//G901:A-0005967637@N2M>
- 김선숙, “6.25 휴전협상과정에 있어 이승만의 협상전술”. 『국제정치연구』. 2004.  
<http://uci.or.kr//I410-ECN-0102-2009-340-002242896@N2M>
- 김왕식, “한·일 경제협력의 정치경제”. 『사회와 담론』, 2002.

<http://uci.or.kr//G701:B-00047961153@N2M>

김영수, “다자간 양면게임을 적용한 북핵 협상전략 연구”. 박사학위 논문. 국방대학교 안보과정, 2017.

김일영·조성렬, 『주한미군 : 역사, 쟁점, 전망』. 서울 : 한울아카데미, 2010.

<http://uci.or.kr//G901:A-0006039847@N2M>

김지아, “양면게임 이론을 통해 본 남북 개성공단 협상”.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2013.

<http://uci.or.kr//G901:A-0005796947@N2M>

남정옥, “6·25전쟁과 이승만 대통령의 전쟁지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3, 2007.

<http://uci.or.kr//G901:A-0002362262@N2M>

박승락, “2단계 게임이론에 의한 우리나라의 한중 FTA협상 성공전략”. 『통상정보연구』. 13/3, 2011.

<http://uci.or.kr//I410-ECN-0102-2022-300-000533418@N2M>

배기옥, 『이승만의 위협인식과 국방정책 연구』. 서울 : 국방대, 2008.

<http://uci.or.kr//G901:A-0005479102@N2M>

이성훈,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을 위한 이승만 정부의 협상전략”.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77, 2010.

<http://uci.or.kr//G901:A-0002869588@N2M>

이지석, “양면게임으로 분석한 TPP 가입협상 연구”. 『관세학회지』. 19/2, 2018.

<http://uci.or.kr//I410-ECN-0101-2018-329-002231626@N2M>

유영익, “한미동맹 성립의 역사적 의의”. 『한국사 시민강좌』. 36, 2005.

<http://uci.or.kr//G901:A-0002006173@N2M>

장광열, “미국의 전쟁이 한미군사동맹 관계 변화에 주는 함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05, 2017.

<http://doi.org/10.29212/mh.2017..105.1>

장상현, “이승만 대통령의 반공포로 석방이 국내정치에 미친 영향”. 석사학위 논문. 한림대학교대학원, 1998.

<http://uci.or.kr//G901:A-0004840851@N2M>

- 장훈각, “이승만 대통령과 한미동맹 : 동맹의 형성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집 42권 1호』.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1  
<http://uci.or.kr//G901:A-0003018417@N2M>
- 정병준, “한국전쟁 휴전회담과 전후체제의 성립”. 『한국문화연구』, 2019.  
<http://doi.org/10.17792/kcs.2019.36..245>
- 정승희·김형민, “한미 사드(THAAD) 배치 협상과 국내정치:양면게임 이론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 24(3), 2017.  
<http://doi.org/10.46415/jss.2017.09.24.3.49>
- 차상철, “이승만과 한미상호방위조약”. 『현세대학교 현대한국학연구소 학술총서』. 6, 2002.  
<http://doi.org/10.17934/jmhs..135.201306.39>
- 최 일, “한국전쟁 휴전협정에서 옹진반도의 처리과정과 결과에 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경남대학교대학원, 2014.  
<http://uci.or.kr//G901:A-0005853774@N2M>
- 카알 폰 클라우제비츠. 김만수 역, 『전쟁론』. 서울 : 갈무리, 2016.  
<http://uci.or.kr//G701:B-00118711138@N2M>
- 한배호, “한미방위조약 체결의 협상과정”.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4/7, 1982.  
<http://uci.or.kr//I410-ECN-0101-2016-390-001816822@N2M>
- 홍수정·김기형, “한미 FTA에 대한 투-레벨 게임이론의 적용”.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12, 2007.  
<http://uci.or.kr//I410-ECN-0101-2019-035-000025396@N2M>
- 홍순호, “6.25와 그 주역들-한국, 이승만”. 『북한연구소』. 통권(제402호), 2005.  
<http://uci.or.kr//I410-ECN-0102-2009-340-009897351@N2M>

## 2. 영문

NSC 118/2. United States Objectives and Courses of Action in Korea, Dec. 20, 1951.

<http://uci.or.kr//G706+NLKF02-F.ociInfo.CNIS-00053794147@N2M>

NSC 147. Analysis of Possible Courses of Action in Korea, April 2, 1953.

<http://uci.or.kr//G706+NLKF02-F.ociInfo.CNIS-00053796735@N2M>

Putnam, Robert D. “Diplomacy and domestic politics : the logic of two-level game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42, No3(Summer, 1988).

<http://uci.or.kr//G901:A-0008683377@N2M>



(Abstract)

An Re-examination of Syngman Rhee, the First President of ROK, and his the action of Release of War Prisoners during the Korean War based on the Logic of Putnam's Two-Level Game Theory  
- Focusing on Negotiation Theory and Winset -

Park, Jae-hong

Prior to release of anti-communism prisoners of Korean war, In order to direct the negotiations towards his advantage, ROK president Syngman Rhee attempted to expand the win-set of the United States by reducing its win-set of ROK through a "strategy of being caught up", including independent military action aimed at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ti-war movements, and anti-U.S. public opinion. While the United States gradually felt more and more threatened by Syngman Rhee's position, it did not act as a threat to the stage where it felt the need to conclude negotiations. As a result, the win-set of the United States did not expand. Thus, the reason why Rhee Syngman's negotiation strategy failed was that he has failed to expand the win-set of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States had the need to provide security to South Korea to prevent the expansion of communist forces, but there was not enough motivation until the signing of a mutual defense treaty. In the end, Rhee Syngman's strategy posed a certain level of threat to the United States, but it did not act as a sufficient and feasible threat for the United States to expand the win-set.

Since the release of the war prisoners, the U.S. actively mentioned the situation of ratification in the U.S. and responded positively to the signing of a mutual defense treaty with South Korea, which then led to Rhee's release of the prisoners and acted as a basis for expanding the U.S. win-set. From

this point of view, it proves that Rhee Syngman's release of prisoners served as an opportunity for the Korea-U.S. mutual defense treaty to be signed, something that Rhee was aiming for. Assuming that the release of prisoners would lead to a state of disputes and conflicts, negotiations would have finally failed. In such a scenario, South Korea would not have been able to sign a mutual defense treaty with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States would not have been able to win an honorable and safe political victory on the Korean Peninsula without cooperation from South Korea. Although there are criticisms that there was a phase in which the mutual conflict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continued during the negotiation process, eventually it was demonstrated that the release of prisoners has expanded the win-set of the United States.



Keywords : Putnam's Two-Level Game Theory, Win-Set, Mutual Defense Treaty, Release of Prisoners of War, National Interests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2, No. 123, pp.219-260  
<https://doi.org/10.29212/mh.2022..123.219>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 미국 기동전 사상의 형성에 관한 연구

- 미국의 공지전투(AirLand Battle) 교리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

김영환\* | 국방대학교 군사전략학과 박사과정 수료

## 목 차

1. 머리말
2. 기동전의 정의와 수행개념
3. 기동전 사상과 미국의 전략문화 : 기동전과 소모전의  
역학관계를 중심으로
4. 기동전 사상의 교리 반영과 의의 : 공지전투 교리형성을  
중심으로
5. 맺음말

**초 록** 전간기 형성된 기동전 사상은 제2차세계대전을 거치면서 효용성이 증명되었고, 전쟁 종료 후 새로운 전쟁 수행 패러다임으로 주목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에서는 기동전의 가치

\* 본 논문의 심사하시면서 소중한 논평을 해주신 네 분의 심사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와 효용성이 주목받지 못하였고, 대규모 물량을 중심으로 형성된 화력소모전을 중시하는 전략문화가 형성되었다. 더욱이 2차세계대전 이후 핵무기의 출현에 따른 핵전쟁을 중시하는 경향은 작전술의 발달을 상당 기간 저해했으며, 기동전의 필요성을 경시하게 하였다.

하지만 베트남 전쟁 이후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국방예산과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소련의 기계화 전력에 대비하기 위한 새로운 교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더불어 베트남전쟁 이후 급속도로 이루어진 RMA로 인해 부족한 전력을 보완하기 위한 최신식 무기체계와 기동 전력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기동전의 효용성에 대한 담론이 미군 내에서 형성되었고, 1976년 적극방어 교리를 거쳐 1982년 공지전 교리가 탄생하게 되었다.

다만, 공지전 교리의 등장인 화력소모전 사상에서 기동전 사상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즉, 화력소모전과 기동전을 상호보완적으로 수행하는 절충적인 형태의 전쟁 수행 양상이 나타났다.

**주제어** : 기동전, 소모전, 군사사상, 공지전 교리, 적극방어교리

(원고투고일 : 2021. 10. 7, 심사수정일 : 2022. 5. 19, 게재확정일 : 2022. 6. 2.)

## 1. 머리말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한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전쟁은 인류의 생존 과정과 맥을 같이 해왔으며, 전쟁의 승패는 국가의 존망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고, 전쟁의 승패 요인은 군사부문 혁신의 성공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 왔다. 따라서 성공적인 전쟁 수행을 위한 각종 무기체계와 같은 유형적 전쟁수단과 전략전술, 교리 및 전장 리더십과 같은 무형적 전쟁수단의 발전은 인류 문명의 발전과 비례하여 성장해왔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 수행에 관한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가 기동 또는 기동전(Maneuver Warfare)이다.

대규모 기동을 통해 적군을 포위 섬멸하여 승리를 거두는 장엄한 전투장면부터 걸프전 이후 최첨단 무기체계 및 기동장비를 활용한 새로운 전쟁 수행 패러다임 변화의 근간에는 기동전 사상이 존재해 왔다. 그만큼 기동전은 전쟁의 역사와 궤를 함께하고 있으며, 전쟁사 및 군사사상사 연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분야이다.

전간기 기간 제1차 세계대전을 경험한 군사사상가들은 고속기동전(전격전, Blitzkrieg), 공지작전, 공군에 의한 제공권 장악과 같은 다양한 전투수행 교리를 발전시켰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대 기동전 사상의 근간이 되었던 풀러(J.F.C Fuller)의 마비전 사상, 리델하트(Sir Basil Henry Liddell Hart)의 간접접근사상이 정립되었고, 러시아의 군사사상가 스베친(Александр Андреевич Свечин)에 의해 전략과 전술의 중간단계에 있는 작전술 개념이 등장하였다.<sup>1)</sup>

1) Guderian, Heinz., trans by Fitzgibbon., *Panzer Leader* (New York : E. P. Dutton, 1957) ; Douhet, Giulio., *The Command of the Air : Being an Essay*

이처럼 전간기 기간 제1차 세계대전의 대량 소모전에 대한 성찰과 새로운 신무기(전차, 비행기)의 미래전 수행 방안 등에 관한 다양한 담론이 등장하였고, 이를 통해 기동전 수행을 위한 사상적 기반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클라우제비츠의 “과거를 통해 미래를 명확히 볼 수 있다는 것은 완전한 허구”라는 격언처럼<sup>2)</sup> 역사는 혁명적인 발전으로 나아가는 분명하고 명백한 미래군사부문의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없었다.<sup>3)</sup>

전간기 기동전에 대한 사상 및 교리적 발전은 이루어졌으나,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미국은 화력소모전에 의존하였고, 기동전 수행의 중요성에 대해 비교적 낮게 평가하였다.<sup>4)</sup> 후술하겠으나, 이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국가적 특수성과 기동전 수행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였다.

한편 미국 기동전 사상에 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최근 미국의 군사문제에 관한 주요 연구 방향은 크게 두 가지의 흐름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방향은 전략 차원에서 미국의 안보 및 국

---

*on the Art of Aerial Warfare, with an Appendix Containing Elementary Notions of Aeronautics* (Printing-Office for the use of the War Department, 1921) ; Fuller, J.F.C., *The Foundations of Science of War* (London: Hurchison & Co, LTD, 1926) ; Fuller, J.F.C., *Tanks in the Great War, 1914-1918* (New York : E. P. Dutton and Company, 1920) ; Mitchell, William., *Our Air Force: The Keystone to National Defense* (New York : E. P. Dutton and Company, 1921) ; Sir Liddell Hart, Basil Henry., *Strategy* (New York : Meridian Book, 1991) ; Свечин, Александр Андреевич, *Эволюция военного искусства*(М.-Л.: Воениз, 1928).

2) Clausewitz, Carl Von, *On War*, Michael Howard and Peter Paret, eds. and tran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4), p. 141.

3) MacGregor Knox, Williamson Murray, 김칠주, 배달형 역, 『강대국의 선택 : 군혁명과 군사혁신의 다이내믹스』(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2014), p. 276.

4) Aubin Stephen P and kells Jr., Robert E., *Airland Battle Doctrine*, Military Review(Washington, DC : Headquarters, Department of the Army, Oct. 1985), p. 52.

방정책에 대한 고찰을 통해 한국의 군사안보에 미치는 영향 또는 함의를 도출하고 있다.<sup>5)</sup> 두 번째 방향은 미국의 군사혁신에 관한 연구로써, 군사혁신(RMA :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 이후 미국의 군사·교리적 변화를 분석하거나, 새로운 전쟁수행 양상(모자이크전, 4세대 전쟁 등) 연구를 통해 한국의 군사부문 발전에 관한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다.<sup>6)</sup>

더불어 탈냉전 이후 걸프전과 이라크전에서 미군이 수행했던 전쟁 수행 방식을 기동전 측면에서 분석한 정용주의 연구가 있으나,<sup>7)</sup> 미국의 기동전 사상의 흐름과 역사적 실체에 접근하는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전간기 기동전 사상이 체계화되는 이론적 배경을 살펴본 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에서 기동전 대신 화력소모전이 전략문화로 자리 잡게 된 이유에 대해 고찰하였다.

- 
- 5) 조홍제, 「미국의 우주전략과 정책 : 우주의 군사적 이용에 관한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 vol 34-2 (2019) ; 김대성,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분쟁 가능성에 대한 연구 : 군사전략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vol 32-4 (2016) ; 김태현, 「트럼프 시대 미국의 대중국 군사전략 : '경쟁 전략' 과 '비용부과」, 『국가전략』, Vol 26-2 (2020) ; 김태형,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미군의 군사전략 변화」, 『국방연구』, Vol 63-1 (2020) ; 강석울,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전략과 정책적 함의 : 합동군 능력의 통합성 강화와 다전장영역전투의 수행」, 『국방정책연구』, Vol 34-3 (2018) ; 김성한,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對 중국 전략 : 봉쇄에서 변환으로」, 『신아세아』, Vol 28-2 (2021).
- 6) 양욱, 「미국 군사혁신의 변천사 : 군사변환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군사혁신 과정」, 『세계 역사와 문화 연구』, Vol 58 (2021) ; 조한승, 「탈냉전기 미국 군사혁신(RMA)의 문제점과 교훈」, 『평화연구』, Vol 18-1 (2010) ; 박상연, 「미국의 군사부문 혁신(1977-1991)에 대한 RMA적 사후해석 극복 : 카터 행정부의 '상쇄전략' 에 대한 기술 기회론적 분석을 중심으로」, 『국가안보와 전략』, Vol 19-1 (2019) ; 남두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모자이크 전쟁」, 『국방연구』, Vol 63-3 (2020) ; 정연봉, 「베트남전 이후 미 육군의 군사혁신(RMA)이 한국 육군의 군사혁신에 주는 함의」, 『군사연구』, Vol 147 (2019) ; 이병구, 「이라크 전쟁 중 미국의 군사혁신 : 내부적 그리고 외부적 군사혁신 이론의 적실성 검증을 중심으로」, 『군사』 Vol 91 (2014).
- 7) 정용주, 「기동전의 현대적 적용에 관한 연구 : 미국의 이라크전 초기 군사작전을 중심으로」(국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2).

다음으로 1976년 및 1982년에 발행된 작전교범인 『FM 100-5 Operations』와 해당 기간 교리 변화 과정을 남기기 위해 미 육군교육사령부(TRADOC)에서 발행한 『Historical Monograph Series』의 분석을 통해 미국의 군사교리 변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미국식 기동전 사상인 공지전투(AirLand Battle) 교리가 어떠한 과정으로 형성되었는지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문헌분석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연구의 객관성을 담보할 것이며, 주로 교리가 형성되는 과정을 내러티브(narrative) 방식을 사용하여 미군 내부에서 기동전 사상이 교리로 나타나는 과정을 서술하였다.

## 2. 기동전의 정의와 수행개념

1982년 공지전투 교리를 최초로 명시한 「FM 100-5 Operations」에서 정의한 기동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sup>8)</sup>

Maneuver is the dynamic element of combat, the means of concentrating forces in critical areas to gain and to use the advantages of surprise, psychological shock, position, and momentum which enable smaller forces to defeat larger ones.

(기동은 전투의 역동적인 요소로 중요한 지역에 병력을 집중시켜 적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한 전력으로 우세한 적을 격퇴하기 위하여 기습, 심리적 충격, 위치 및 기세의 이점을 얻고 이용하는 수단이다.)

---

8) FM 100-5 Operations (Washington, DC : Headquarters, Department of the Army, 1982), p. 2-4.

여기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기동전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적보다 적은 전력으로 적을 격퇴하기 위해 ‘적의 군사력’이 아닌 ‘적의 심리적 붕괴’에 있다는 사실이다.

적의 심리적 붕괴를 지향했던 기동전의 원칙은 고대 군사사상이었던 손자에 의해 최초로 형상화되었다. 일찍이 손자는 그의 병법서 『손자병법』을 통해 적과 싸우지 않고 이기는 ‘부전승(不戰勝)<sup>9)</sup>, 적의 강점을 피하고, 약점을 공격하는 ‘피실이격허(避實而擊虛)<sup>10)</sup>를 강조하였다. 아울러 원칙적인 공격으로 적의 전투력 격멸을 지향하는 정공(正攻)과 변칙적이며 적의 허점과 심리적인 붕괴를 지향하는 기공(奇攻)의 개념을 제시하면서 원칙에 입각한 전투수행과 함께 전장 상황에 따른 변칙적인 전투수행을 강조하였다.<sup>11)</sup>

현대적 의미의 기동전 수행개념은 전간기(戰間期) 풀러(John Frederick Charles Fuller)와 리델하트(Sir Basil Henry Liddell Hart)에 의해 이론적으로 집대성되었다. 두 군사사상가의 사상은 제1차 세계대전 기간 가혹했던 소모전에 대한 철저한 비판과 성찰에서 출발하였다.<sup>12)</sup>

먼저 풀러는 1918년 5월 24일 연합군 사령부에 제출한 ‘Plan 1919’라는 보고서에서 ‘마비(Paralysis)’라는 용어를 최초로 언급했다. 풀러는 “인간의 잠재적인 힘은 조직에 있으며, 결과적으로 조직을 파괴할 수 있다면 전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서<sup>13)</sup> 사단급 이상의 지휘조직을 인체의 뇌와 중추신경으로 비유하

9) 원문 : 不戰而屈人之兵, 善之善者也(손자병법 제3장 謀攻)

10) 원문 : 兵之形, 避實而擊虛, 水因地而制流, 兵應敵而制勝(손자병법 제6장 虛實)

11) 원문 : 三軍之衆, 可使必受敵而無敗者, 奇正是也, 兵之所加, 如以礮投卵者, 虛實是也(손자병법 제5장 兵勢)

12) 풀러와 리델하트는 영국군 장교 신분으로 제1차 세계대전에 직접 참전하여, 수많은 인명이 살상되는 전장의 실상을 직접 목격했다. 특히 리델하트는 독일군의 독가스 공격으로 인해 심각한 부상을 입고 퇴역했다. 따라서 제1차 세계대전의 참전 경험은 전간기 그들의 군사사상 발현에 중요한 경험적 요소가 되었을 것이다.

13) Brian Holden, Reid., *J.F.C. Fuller : Military Thinker* (London: MacMillan

고 이곳에 대한 결정적인 타격으로 적을 무력화시키는 ‘정신적 공격(moral attack)’의 중요성을 강조했다.<sup>14)</sup>

비록 풀러가 작성한 “Plan 1919”는 실제 발효되지 못한 채 제1차 세계대전이 종식되었지만, 풀러의 마비전 사상은 적 전투력 격멸을 위한 불필요한 물리적 소모전을 지양하는 대신 적의 핵심 지휘통제 시스템과 적대국의 전쟁 수행 의지를 마비시키는 방향으로 군사력 운용의 지향점을 제시하였다.

풀러와 함께 전간기 기동전 수행에 대한 사상적 지향점을 제시한 또 다른 군사사상가인 리델하트는 1916년 솜(Somme) 전투에 참여하여 독일 및 영국군 수뇌부가 수행했던 창의력이 결여되고, 소모전에 기반한 작전수행으로 수많은 병력이 살상되는 현장을 직접 목격하였다. 그로 인해 그는 클라우제비츠의 ‘절대전쟁(absolute war)’에 기반한 결전(decisive battle)을 중시하는 섬멸전 사상에 대해 근본적인 회의를 품게되었다.<sup>15)</sup>

심지어 리델하트는 클라우제비츠를 ‘상호 간 대량 살육의 교주(the Mahdi of mass and mutual massacre)’로 지칭하면서 절대전쟁이 정치 행위에 예속되어야 하는 전쟁의 본질을 왜곡하여 정치를 전략의 노예로 만들었다고 혹평하였다.<sup>16)</sup> 더불어 제1차 세계대전 동안 클라우제비츠의 절대전쟁에 대한 지휘관들의 맹종이 자칫 미래 전쟁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발현될 수 있다고 우려했으며, 영국 전략문화가 변화되어야 할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였다.<sup>17)</sup>

---

Press LTD, 1987), p.49.

14) Fuller, J.F.C., *Machine Warfare* (Washington D.C. : Infantry Journal, 1943), p.88

15) 이내주, 「근대 영국의 전쟁방식과 전략문화」, 『영국 연구』 제30호(2013), pp. 247-248.

16) Liddell Hart, Basil Henry., *The Ghost of Napoleon*(London : FABER & FABER LIMITED, 1933), pp. 120-121.

17) 이내주(2013), p. 249.

이러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리델하트는 1924년 ‘나폴레옹의 오류’라는 기고문을 통해 절대전쟁의 오류에 빠지게 만드는 나폴레옹식 전쟁수행 방식을 비판하였다. 그는 상대국을 섬멸하기 위해 국가의 총력을 소모하는 나폴레옹과 클라우제비츠식 전쟁 수행 방식은 전쟁의 정치적 속성을 무시하고, 국가의 정책과 미래를 파괴하는 자멸행위로 규정했다.<sup>18)</sup>

반면 리델하트는 제2차 포에니 전쟁 기간 이탈리아에서 활약하던 한니발 부대와 직접 교전을 회피하고, 카르타고 본국을 공격하여 한니발 부대를 이탈리아에서 스스로 물러나게 했던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Scipio Africanus)의 자마전투(Battle of Zama, BC 202년)에 주목했다.<sup>19)</sup> 자마전투의 교훈을 통해 그는 미래 영국군이 지향해야 할 군사사상 핵심 개념으로 적 부대와 직접적인 교전을 회피하고, 적의 취약점을 돌파하여 전쟁 수행 의지 자체를 말살하는 ‘간접접근(indirect approach)’ 개념을 주창하게 되었다.<sup>20)</sup>

지금까지 살펴본 손자와 풀러, 리델하트의 군사사상의 특징을 살펴보면 크게 4가지로 압축될 수 있다. 첫째, 대규모의 병력이 직접 부딪혀서 시행하는 결전(decisive battle)을 회피하고, 둘째, 적의 핵심 지휘통제시스템과 상대국의 전쟁수행 의지의 붕괴를 전쟁 수행 지향점으로 설정하며, 셋째, 전장의 마찰(friction) 요소에 유연

18) Alex Danchev, *Alchemist of War : The life of Basil Liddell Hart* (London : Weidenfeld & Nicolsen, 1993), pp. 161-162.

19) Liddell Hart, Basil Henry., *Scipio Africanus : Greater Than Napoleon* (New York : Da Capo Press, 2004).

20) 다만 리델하트의 군사사상이 기동전 사상의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기존의 통념에 대해 미어샤이머(John Mearsheimer)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저서와 논문을 참고하기 바란다.

Mearsheimer, John., *Liddell Hart and the Weight of History* (Ithaca, New York : Cornell University Press, 1988) ; 류한수, 「“결백한 독일국방군” 신화의 산파 바실 리델 하트 : 한 군사학 구루의 명예와 제2차 세계대전의 진실」, 『大丘史學』 제130호(2018. 2).

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휘관 및 참모의 지휘통솔 능력 즉, 임무형 지휘를 중시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언급한 3가지의 조건을 달성하기 위해 보다 신속한 작전템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때 신속한 작전템포를 갖추기 위해서는 전투부대를 기동화시켜 기동력을 갖추고(Hardware), 상대국의 허를 찔러 심리적 붕괴가 가능하도록 지휘부의 신속한 의사결정과 지휘체계 구현을 위한 지휘 및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소프트웨어(Software)가 절묘하게 결합해야만 한다.

전간기 폴러와 리텔하트의 군사사상은 나폴레옹과 클라우드비츠 식 결전 및 섬멸전 사상과 장기간 지속되는 물리적 소모전에 대한 비판과 반성에서 출발했다.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여 단 한 번의 전투에서 수십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참호전을 경험한 전간기 군사사상가들은 큰 심리적 충격을 받았으며, 최소의 희생과 소모로 단기간의 전투를 통해 전쟁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했다.<sup>21)</sup>

더불어 제1차 세계대전 중반 이후 전장에 등장한 전차와 항공기라는 당시의 첨단 기동 전력과 임무형 지휘체계 및 효율적인 통신 시스템 구축으로 ‘기동전’이라는 구체적인 작전술 형태로 형상화될 수 있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영국의 사상가들이 정립했던 기

21)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았으나, 현대 기동전 사상을 체계화했던 또 다른 사상가로 소련의 트리안다필로프(Vladimir Kiriakovitch Triandafillov)와 투하체프스키(Mikhail Nikolayevich Tukhachevsky)가 있다. 이들의 기동전 사상 역시 제1차 세계대전의 소모전과 진지전 사상에 대한 비판과 반성에서 출발하였으며, 기동 전력을 바탕으로 한 상대국의 심리적 파괴와 전차 및 기계화부대의 충격력을 활용한 중심기동을 강조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서적을 참고하기 바란다.

V. K. Triandafillov., trans by Kent E. Lee., *The Nature of the Operations of Modern Armies* (New York: Routledge, 1994) ; Harrison, Richard W., *Architect of Soviet Victory In World War II : The Life and Theories of G.S. Isserson* (North Carolina : McFarland & Company, Inc., 2010) ; Simpkin, Richard E., *Deep Battle : The Brainchild of Marshal Tukhachevskii* (London : Brassey's Defence, 1987) ; Glantz, David M., *Soviet Military Operational Art : In Pursuit of Deep Battle* (New York : Frank Cass, 1991).

동전 사상은 독일 군사지도자 그룹에 의해 적극적으로 수용되었다. 이들의 사상은 전간기 쾨크트(Hans von Seeckt)와 구데리안(Heinz Günther Guderian)에 의해 전격전(Blitzkrieg)이라는 작전술로 구현되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 초기 독일의 군사적 승리의 원동력이 되었다. 이후 기동전은 현대 군사사상 분야에서 가장 큰 가치로 등장하게 되었다.

### 3. 기동전 사상과 미국의 전략문화 : 기동전과 소모전의 역학관계를 중심으로

#### 가. 기동전과 소모전의 역학관계에 관한 고찰

기동전에 대한 일반적인 통념은 단순한 적 전투력의 격멸이 아니라 기동력, 지형, 화력 등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초기 기선을 제압한 후 전략 및 작전적으로 중요하거나 취약한 지점, 즉 중심(Center of Gravity)을 타격하여 적의 전투 의지를 말살시키는 전쟁수행방식이다. 따라서 기동전을 심리전 또는 마비전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한편 속도를 강조하는 의미에서는 속전속결전, 운동전으로 표현한다. 그리고 기동전 사상이 작전술 및 교리적 차원으로 형상화되어 전격전(blitzkrieg), 입체고속기동전, 공지전투(AirLand Battle) 등으로 표현된다.

소모전은 기동전과는 상반된 전쟁수행 방식으로 상호 모순적인 대립관계에 있으면서도 상호보완적인 원칙을 이루고 수행되는 관계이다. 일반적인 알려진 기동전은 적의 공세를 정면에서 견제 및 고착시키고, 기동부대가 입체적으로 우회 기동하여 적의 측면 또는 후방을 공격하여 적의 중심(Center of Gravity)을 무너뜨리는 방식으

로 수행된다.<sup>22)</sup>

반면 소모전(Attrition Warfare)은 적 전투력의 격멸(destruction of enemy's mass)을 통해 승리를 추구하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적을 먼저 전투에 끌어들이고 후 현 전투 또는 차기 전투에서 적을 격멸하기 위해 상향식(bottoms-up)으로 작전을 구상한다. 아울러 실제 또는 예상되는 수적·물질적 우위를 나타내는 '초기 전투력 비율(initial-force ratios)'과 전투에 따른 인적 및 물질적 '손실률(loss ratios)'과 초기 전투력의 비율에 대한 손실률의 '교환비율(fractional exchange ratios)'을 중시한다. 따라서 소모전은 적보다 적은 손실률을 유지하면서 전투력의 비율을 향상하기 위한 '대수학(algebra) 논리'를 중시하며,<sup>23)</sup> 상대 전투력의 지속적인 소모를 강요함에 따라 더는 전쟁을 수행할 수 없도록 만들어 승리를 쟁취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심킨(Richard E. Simpkin)의 주장처럼 소모전을 통한 군사적 승리의 의미는 적의 전투력(병력, 전투차량, 화기 등)을 격멸하는 것이며, 무형적 요소(사기, 주도권, 리더십 등)는 소모전 수행을 위한 '전투력 상승효과(force multipliers)'에 불과하며, 기동은 '전투를 위한 이동' 정도로 고려되었다.<sup>24)</sup>

심킨이 주장한 화력소모전(firepower-attrition)의 가장 단적인 예가 1916년 8월 29일 발생한 베르딩전역(Campaign at Verdun)이었다. 당시 독일 육군참모총장이었던 팔켄하인(Erich von Falkenhayn)은 전역의 목적을 '프랑스인들을 피 흘리게 하는 것(to bleed France white)'으로 정하였다. 그는 베르딩의 지형을 이용하

22) 유재갑, 「군사전략·전술의 이론과 실제 : 작전술·작전수준의 전쟁·대전략」, (월간국방 제3월호, 1993), p. 123.

23) Robert Leonhard (1994), p. 19.

24) Robert Leonhard (1994), p. 19 ; Simpkin, Richard E., *Race to the Swift: Thoughts on Twenty First Century Warfare Vol. 1 of Future Warfare Series, 3 vols* (London: Brassey's Defence Publishers, 1985), p. 20.

여 프랑스 예비전력을 유인한 후 월등한 화력으로 섬멸하고자 하였지만, 독일의 자원 부족과 프랑스군이 입은 피해 만큼 독일군에게도 많은 사상자가 발생함에 따라 결국 실패하였다.<sup>25)</sup>

베르딩전역은 슐리펜계획 실패 후 독일군이 시행한 유일한 공세 전이었지만, 대규모 소모전 시행 결과 독일군은 33만 6,000명, 프랑스군은 30만 2,00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며, 전역 이후 연합군이 전장 주도권을 차지한 반면 독일은 수세에 몰리게 되었다. 더불어 동부전선에서는 전년도 손실을 회복한 러시아군이 공세로 전환하여 독일의 동맹국인 오스트리아-헝가리를 상대로 진격하기 시작했다.<sup>26)</sup>

이러한 소모전의 국면에서 전반적인 전쟁 수행 양상은 기동성과 융통성을 포기함에 따라 발생하는 공백을 화력에 의존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소모전에서 의미하는 군사적 승리는 적의 전투력을 누진적인 화력으로 격파하여 적이 더는 전쟁 수행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어 후퇴 또는 항복을 하거나, 화력에 의해 적 전투력이 완전히 격멸될 때 승리를 거두는 것으로 정의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 기간 소모전 수행의 중심에는 포병이 존재하였고, 포병은 곧 지루한 소모전과 밀접하게 동일시되었다.<sup>27)</sup> 즉, 제1차 세계대전 기간 소모전 수행의 핵심 개념은 강력한 화력으로 적의 출혈을 강요하는 ‘화력전(Fire Combat)’이었다.

풀러(J.F.C. Fuller)는 제1차 세계대전 당시 각 군이 시행했던 전

25) Stokesbury, James L., *A Short History of World War I* (New York: William Morrow and Company, Inc., 1981), pp. 142, 145, 147-48.

26) Maj. Chamberlain, Robert., *U.S. Army, The Mud of Verdun Falkenhayn and the Future of American Land-power*, *Military Review*, July-August 2016, pp. 83-84.

27) Mearsheimer, John., *Liddell Hart and the Weight of History* (Ithaca, New York : Cornell University Press, 1988), p. 30 ; 정용주, 「기동전의 현대적 적용에 관한 연구 : 미국의 이라크전 초기 군사작전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2011), p. 6.

술의 양상이 B.C. 15세기 스파르타군 수준으로 회귀했다고 주장하면서, 상대의 참호를 돌파하기 위해 대규모의 화력이 활용되었던 참호전을 소모전으로 규정하였다. 그는 화력에 의한 거대한 인명 및 경제적 손실과 비교 시 미비한 군사적 성과를 가져오는 소모전에 대한 두려움이 결국 전쟁지도부들과 정치집단을 매우 소극적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하였다.<sup>28)</sup>

이처럼 화력을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는 소모전은 전술 및 작전술의 후퇴와 함께 전략적 위축을 가져오게 했다. 따라서 전간기에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자연스럽게 기동전이 주목받게 되었다. 종합하면 현대 기동전 사상의 배경은 소모전의 비합리성을 극복하기 위해 상호 모순된 기동전의 ‘기동’과 소모전의 ‘화력’을 상호보완하는 과정이었다. 사실 기동과 화력은 서로 배치되면서도 상호보완되어야만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는 관계이다.

같은 맥락에서 초대 미 육군교육사령관을 역임하고, 공지전투(AirLand Battle) 교리 정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드푸이(William Eugene DePuy)는 전장에서 기동과 화력의 우선순위를 둘러싼 논쟁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전장에서 시행되는 기동전은 지휘관의 교리적 선택이 아닌 전투 결과 발생하는 획득된 이익(earned benefit)이라고 주장했다.<sup>29)</sup>

그는 기동전(기동)과 소모전(화력)은 상호 독립된 별개의 영역이 아니라 전장의 다양한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양면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으며, 우선순위를 논하여 작전에 적용해야 할 모순된 요소가 아닌 상호보완적인 요소라고 보았다. 그의 주장처

28) Fuller, J.F.C., *The Conduct of War : 1789 ~ 1961* (New York : Da Capo Press, Inc, 1961), p. 166,

29) Colonel Swain, Richard M., *Selected Papers of General William E. DePuy* (Fort Leavenworth, Kansas : Combat Studies Institute, U.S. Army Command and General Staff College, Jan 1995), p. 452.

럼 전장의 핵심 요소인 기동과 화력은 순수한 형태로 존재하지 않고, 각각의 독립적인 영역 안에서 상호 영향을 주는 형태로 전쟁의 승패에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미 육군지휘참모대학(The United States Army Command and General Staff College)의 고등군사학교(The School of Advanced Military Studies, SAMS) 초대 교장이었던 후바 와스 드 체게(Huba Wass de Czege)는 화력과 기동에 대해 실제 전장에서는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지만, 학문적 편의성을 위해 만들어놓은 극단으로 치우친 개념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sup>30)</sup>

심킨(Richard E. Simpkin)의 경우 기동전과 소모전의 관계를 전투력의 이분법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 전투력 이분법은 손자병법 제5장 병세(兵勢)편에 나온 개념과 유사한데, 대규모 병력이 동원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병력을 분리하여 기정(奇正)의 전술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여기에서 정공(正攻)의 의미는 적의 정면에서 일반적인 공격을 감행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기공(奇攻)의 의미는 측면 및 후방에서 기습공격을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sup>31)</sup> 심킨은 이러한 이분법을 기동전의 필수요소로 보았다.<sup>32)</sup>

그는 기동전 수행부대가 작전 성공을 위해 적의 정면에서 적을 고착 및 견제하기 위한 정공(正攻)부대와 적의 측면 및 후방으로 기동하여 결정적 작전을 시행하는 기공(奇功)부대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동부대가 기동전 이론에 따라 작전을

30) Major Anastas, Kevin P., *The American Way of Operational Art : Attrition or Maneuver?* (Fort Leavenworth, Kansas : School of Advanced Military Studies United States Army Command and General Staff College, 1992), p. 6.

31) 손무, 유동환 옮김 『손자병법』(서울 : (주) 홍익출판사, 2013), pp. 102-103.

32) Simpkin, Richard E., *Race to the Swift: Thoughts on Twenty First Century Warfare Vol. 1 of Future Warfare Series, 3 vols* (London: Brassey's Defence Publishers, 1985) p. 37.

수행하는 동안 고착 및 견제부대는 전통적인 소모전 개념에 따라 전투를 수행해야 한다고 보았다.<sup>33)</sup> 부연하면 기동과 소모의 절묘한 조화는 기동전 수행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실제 전쟁에서 발현되는 기동과 화력은 각각 독립적으로 발현되지 않을 뿐 아니라, 정치적인 상황, 지휘관의 결심 등의 이유로 동시에 발현되기도 한다. 따라서 기동과 화력은 전쟁 수행 간 독립적이면서 상호보완적으로 수행해야만 하는 모순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기동전을 수행하는 동안 동시에 적용되어야만 한다.

결과적으로 현대 기동전 사상과 기동전 수행 개념은 각각 상반된 요소인 기동과 화력이라는 정명제(테제, thesis)와 반명제(안티테제, antithesis)가 변증법적으로 합치되어 합명제(진테제, synthesis)로 나타나게 된 결과이다.

#### 나. 미국의 소모전 중심의 전략문화

제1차 세계대전 직후 전 세계적으로 기동력과 화력을 통해 적을 물리칠 수 있는 부대구조 개편과 제1차 세계대전 기간 참호전으로 인해 상실한 기동성을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실험이 이루어졌으며, 전간기 미국에서도 기동과 화력의 조화를 위하여 전술 및 교리의 타당성에 관한 다양한 군사적 실험이 시행되었다.<sup>34)</sup>

이 실험을 통해 미국의 전쟁기획자들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기동

33) Robert Leonhard (1994), p. 58

34) 전간기 미군의 기동전 수행에 적합한 부대구조를 갖추기 위해 시행한 다양한 실험에 대해서는 다음 책자를 참고하기 바란다.

Wilson, John B., "Chapter 5. A return to the past : a look to the future," *Army Lineage Series : Maneuver and Firepower - The Evolution of Divisions and Separate Brigades* (Washington, D.C : 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1998).

성이 뛰어나도록 설계된 지상군을 구성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때 형성된 기동 기반 전력구조를 바탕으로 제2차 세계대전 후반이었던 1944년 미군은 유럽 전역에서 추축국에 맞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동전 기반의 소멸전략(strategy of annihilation)을 수립하였다.<sup>35)</sup> 하지만 유럽 전역에서 이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 행해진 미군의 실질적인 작전술 양상은 제1차 세계대전 기간 시행된 소모전 모델과 매우 흡사하게 발현되었다.

한 예로 연합군이 유럽대륙에 상륙하여 독일 진격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시행하였던 노르망디 상륙작전(Operation Overlord)은 당시 연합군 사령관이었던 아이젠하워(Dwight D. Eisenhower)에 의해 대규모 기동전을 통한 포위작전 형태로 계획되었다고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기동전 양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저명한 군사사학자인 러셀 웨이글리(Russell Weigley)는 노르망디에서 행해졌던 연합군의 작전 행태를 “독일군을 기동전을 통해 섬멸하는 것이 아니라 센강(The Seine)과 르와르강(The Loire) 사이의 진출선까지 독일군을 밀어내는 것”이었다고 주장하였다. 그에 따르면 작전 시행 전 계획된 전략과 실제 행해진 작전 시행 간에 불일치가 발생했다.<sup>36)</sup>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연합군은 독일군을 포위하고 파괴하는 전략적 목표를 시행하지 못한 결과 독일군 지휘관들은 연합군 공세가 이루어질 때 그들의 전력을 온전히 빼내어 후방지역으로 후퇴할 수 있었다. 실례로 당시 노르망디 지역에 배치되었던 독일 제346보병사단장은 “사단이 포위될 위기에 처했지만, 연합군의 소극적인 기동으로 인해 야간 철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라고 회고하

35) Weigley, Russell F., *Eisenhower's Lieutenants: The Campaign of France and Germany 1944-45* (Bloomington In: Indiana University Press, 1981), pp. 8-10, 359.

36) Russell F. Weigley (1981), p. 70.

였다.<sup>37)</sup>

아울러 연합군이 수행한 작전형태를 살펴보면 소극적인 작전 수행 모습이 나타난다. 실례로 노르망디 해안을 지나 아브랑슈(Avranches)를 통해 프랑스 내륙지역으로 진군하던 패튼(George S. Patton)장군의 제3군 예하 제4기갑사단장 존 셸리 우드 장군(John S. Wood)은 동쪽으로 중심기동을 통해 독일군을 포위할 수 있었으나, 포기해야만 했다고 회상하였다.<sup>38)</sup> 그 이유는 기동전의 상징과 같았던 패튼이 아이러니하게도 기동을 통해 적의 주력을 포위섬멸하는 대신 서부로 돌아가라고 명령했기 때문이었다.<sup>39)</sup>

결과적으로 노르망디에서 미군은 기동전 수행을 위한 준비가 미흡했으며, 결정적으로 기동전에 적합한 교리가 부재하였다. 아울러 연합군 수뇌부의 지나친 정치적 고려가 군사적 효율성에 입각한 지휘관들의 결정과 실행을 막았다. 즉, 아이젠하워는 기동전을 통한 적 주력에 대한 포위섬멸이 아니라 광범위한 전선을 차근차근 점령해 나가는 방식을 선택했다. 그리고 기동전 사상의 핵심 수행 원리인 적의 심리와 중심 파괴를 무시하고, 적 전투력에 대한 물리적 파괴 및 지역 점령에 집착하면서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소모전 모델에 부합한 전쟁 수행 양상이 재현되었다.<sup>40)</sup>

소모전 중심의 작전술 양상이 미군에게 나타난 이유를 살펴보면 기동전의 개념에 대한 오해와 함께 미국의 국가적 특성에서 비롯되었다. 전투 결과 발생하는 ‘적 전투력의 섬멸’에는 적의 전투력 자체에 대한 ‘물리적 파괴(Destruction)’와 적의 전투 의지에 대한 ‘심리적 파괴(Dislocation)’가 있는데, 기동전은 후자인 심리적 파괴를

37) Major Kevin P. Anastas(1992), pp. 13-14.

38) Russell F. Weigley (1981), p. 180.

39) Baldwin, Hanson W., *Tiger Jack* (Fort Collins, CO : The Old Army Press, 1979), p. 42.

40) Major Kevin P. Anastas (1992), pp. 17-20.

지향하고 있다.

심리적 파괴는 현대 기동전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던 리델하트의 간접접근 전략과 풀러의 마비전 사상에 근거하고 있으며, 전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짧은 시간 동안 적의 측방 및 후방으로 중심 깊게 기동하여 적의 심리적 저항을 무너뜨려야만 한다.<sup>41)</sup>

그러나 미국은 섬멸의 개념을 오해함에 따라 ‘소모전’ 중심의 전략문화를 만들어냈다. 심킨에 따르면 클라우제비츠의 섬멸(Vernichtung)의 개념은 적 전투력에 대한 ‘파괴(Destruction)’와 적 지휘체계에 대한 ‘교란(Dislocation)’을 모두 포함한다. 그러나 미국의 군사학파는 섬멸(Vernichtung)을 파괴(Destruction) 그 자체로 이해하였으며, ‘화력’을 적의 전투 의지를 꺾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었다. 반면 독일과 러시아 군사학파는 섬멸(Vernichtung)을 교란(Dislocation)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아울러 미국은 거대한 영토에서 생산되는 물량과 풍부한 국내 인적·물적 자원으로 잠재전력(潛在戰力)을 현존전력으로 여유 있게 전환할 수 있는 국가적 특성이 있었다. 그 결과 미국은 풍부한 인력과 물량에서 발현되는 압도적인 기술 및 무기체계를 바탕으로 화력을 주요 수단으로 하는 소모전을 통해 제1·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할 수 있었으며,<sup>42)</sup>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고유한 전략문화로 자리 잡게 되었다.

41) Swain, Richard M., "B. H. Liddell Hart and the Creation of a Theory of War, 1919-1933," *Armed Forces & Society*, Vol. 17, No. 1, Fall 1990, p. 43.

42) 육군교육사령부, 『한국전의 기동전 분석』(계룡 : 육군 인쇄창, 1996), pp. 53-55

#### 4. 기동전 사상의 교리 반영과 의의 : 공지전투 교리형성을 중심으로

##### 가. 미 작전 교리(FM 100-5 'Operations')의 변천 과정

냉전기 들어서 기동전 사상은 대량의 재래식 무기를 갖춘 기동화된 대부대를 격파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교리의 성립에 활용되었다. 1970년대 들어 미국은 국방예산의 제한, 소련의 재래식 전력 증강,<sup>43)</sup> 1975년 소련을 대리한 쿠바의 앙골라(Angola) 개입을 시작으로 본격화된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에서의 소련 영향력 증대와 베트남전의 패배와 철수에 따른 정치적 영향 등 국내외적인 정치 및 안보 상황의 변화에 따른 위기의식이 팽배했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은 베트남전쟁 기간 군의 규모 확대에 국방예산의 많은 부분을 지출함에 따라 무기체계 개발에 큰 차질을 빚게 되었다.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소련은 상대적으로 전투 장비의 질적 향상을 가져올 수 있었다. 더불어 1973년 발생한 욘 키푸르(Yom Kippur War) 전쟁 결과 도출된 교훈은 전술 및 훈련체제의 개혁에 큰 영향을 미쳤다.<sup>44)</sup>

43) 1970년대 유럽에서 전쟁이 발발 시 미국은 나토군 1개 사단 정면으로 후속 제대까지 포함하여 약 1,200대의 바르샤바조약기구군의 전차가 투입될 것으로 추산하였다. 따라서 당시 미국은 적극적인 방어(Active Defence)를 위해 가용전력을 활용하여 적 1제대를 무력화시키는 초전(First Battle)에서의 승리를 강조했다.

*FM 100-5 Operations*(Washington, DC : Headquarters, Department of the Army, 1976), pp. 5-2, i and I-I.

44) Romjue, John L., *TRADOC Historical Monograph Series : From Active Defense to AirLand Battle: The Development of Army Doctrine, 1973-1982* (Fort Monroe, Virginia : United States Army Training and Doctrine Command, JUNE 1984), pp. 1-2 ; Romjue, John L., *TRADOC Historical Monograph Series : The Army Of Excellence - The Development Of The 1980s Army*, (Fort Monroe,

이러한 안보정세와 전쟁 수행교리의 변화는 미 육군 야전교범 ‘FM 100-5 Operations’에 반영되었으며, 공지전투 교리 형성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FM 100-5의 변천 과정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

미 육군 야전교범 ‘FM 100-5 Operations’은 「야전복무령」부터 「작전요무령」에 이르기까지 미 육군의 작전, 전투에 관한 기본적인 교리를 기술하고 있다. 이 교범은 1950년대부터 안보환경의 변화에 맞추어서 핵심 교리를 중심으로 개정하였는데 1963년대부터 1982년 공지전투 교리가 반영되기까지 총 4회의 개정이 있었다.<sup>45)</sup>

〈표 1〉 미 육군 야전교범(FM) 100-5 Operations 개정 현황

시 기	핵심 교리 의제
1963년	야전복무령(Field Service Regulation : FSR)
1968년	야전에서 육군부대 작전(Operation of Army Forces in the Field)
1978년	적극방어(Active Defence)
1982년	공지전투(AirLand Battle : ALB)

1982년 공지전투 교리가 처음 반영된 ‘FM 100-5 Operations’를 살펴보면 70년대의 정치 및 안보환경의 변화는 미군의 지상전 수행 방향에 대한 대대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지면서 지상군 교리의 획기적인 변화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교리 변화는 베트남전쟁의 상징과도 같았던 헬기에 의한 보병의 공중기동전(infantry-airmobile warfare)의 종식에 따른 새로운 보병 기동방안 모색에서부터 미국의 전략적 이익 지역과 서유럽에서의 재래식 전쟁 수행 범위 안에서 이루어졌다.<sup>46)</sup>

Virginia : United States Army Training and Doctrine Command, JUNE 1997), pp. 1-3.

45) 조상태, 「미 육군의 FM 100-5에 있어서의 공지전」, 『國防과 技術(Defense and Technology)』(1985), p. 31.

46) John L. Romjue(JUNE 1984), p. 3.

아울러 1973년 발생한 욘 키푸르 전쟁 분석을 통해 현대무기체계의 치명성, 제압전술(suppressive tactics)의 본질, 지형지물의 활용, 위장, 진격로, 제병협동부대 사이의 협조체계가 강조되었다. 미 육군교육사령부(TRADOC)는 각 병과학교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1974년 10월 1일부터 2일까지 미 전력사령부(FORSCOM)와 합동으로 교리 세미나가 개최되었다(Octoberfest briefings).

1975년에는 전년도 10월에 열렸던 교리 세미나에서 다소 의미가 퇴색하였던 공중기동(airmobile)과 기갑 및 기계화전에 대한 편협한 인식이 반영되었다는 우려를 종식 시키기 위해 1975년 10월 8일부터 9일까지 미 육군교육사령부와 전력사령부는 텍사스주 포트후드(Fort Hood)에서 지휘관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때 미 전술공군사령관(the Tactical Air Command) 디슨(Robert J. Dixon)과 미 육군교육사령관 드푸이(William E. Depuy)는 공역관리절차 등 공지 전투에서 전술공군에 의해 수행되는 핵심 역할들을 새로운 교리의 핵심 주제로 선정하였다. 더불어 교리 작성 책임이 미 제병협동본부(the Combined Arms Center at Fort Leavenworth)에서 미 육군교육사령부 교리부로 이전되면서, 당시 미 육군교육사령관이었던 드푸이의 주관으로 작성될 수 있었다.

이 새로운 교리는 독일로부터 자문받았고, 나토 동맹국은 물론 퇴역한 장성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었으며, 1975년 말 초안이 완성되어 동년 12월 10일 개최된 육군 지휘관 회의에서 주요 지휘관들에게 공개되었다. 이후 최종 수정과정을 거친 뒤 1968년 발행되었던 'FM 100-5'를 대신하여 'How-To-Fight'에 중점을 둔 개정된 'FM 100-5'가 1976년 7월 발행되었고, 미 육군의 기본 작전 교리가 되었다.<sup>47)</sup>

1976년 발행된 'FM 100-5'의 교리적 특징을 살펴보면 무기체계

47) *ibid.*, pp. 3-5.

치명성의 증가, 소련이라는 현실적인 위협과 안보 및 정치적 흐름의 변화에 따른 현실적인 교리 도입의 필요성으로 인한 화력 중시 교리와 맞춤형 기동교리의 결합으로 볼 수 있다. 즉, 본 교리에서 기동의 의미는 적절한 시간과 장소에 집중하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었고, 전반적으로 방어적 개념에 충실하였다.<sup>48)</sup>

전통적인 기동전 사상의 지향점은 방어보다는 공격을 지향하고 있다. 하지만 소련의 압도적인 기갑전력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열세한 기갑전력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FM 100-5(1976)는 적극방어(Active Defence)를 강조하면서 공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엄격하게 제한하였다.<sup>49)</sup>

Commander should attack “only if he expects the outcome to result in decisively greater enemy losses than his own, or result in the capture of objectives crucial to the outcome of the larger battle.”

(지휘관들은 결정적으로 아군의 손실보다 적군의 손실이 더 클 것으로 예상하거나, 결정적인 작전 목표를 획득할 수 있다고 판단할 때에만 공격을 감행해야 한다.)

반면 방어 측면에서는 1개 사단 축선으로 약 25개 대대로 구성된 바르샤바조약기구군의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6~8개 대대를 전선의 1/5에 집중하고, 남은 전선은 항공 및 기갑전력, 공격형 헬기부대로 방어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더불어 주 전투지역 전방에서 적의 공세 기도 및 방향, 전력을 파악하기 위한 엄호부대(covering force)<sup>50)</sup>

48) *ibid*, p. 11.

49) *FM 100-5 Operations* (Washington, DC : Headquarters, Department of the Army, 1976), pp. 4-3.

50) 엄호부대(Covering Force)의 군사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① 적이 피 엄호부대 본대를 공격하기 전에 적을 차단, 교전, 지연, 와해 및 기만할 목적으로 본대로부터 떨어져서 독립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는 경계부대

운용개념을 제시하였다.<sup>51)</sup>

1976년 성립된 적극방어(Active Defence) 교리는 적의 대규모 기계화 부대가 공격할 때 압도적인 화력을 활용한 적극적인 방어전투를 통해 적의 손실을 강요한 후, 기동전력을 활용한 역공을 감행하여 전쟁 주도권을 장악한 다음 결정적 성과를 거두는 개념의 교리로 평가할 수 있다. 요컨대 이 새로운 교리는 화력소모전을 중시하는 미국의 전략문화와 중동전과 베트남전쟁을 통해 도출된 기동전 개념이 역동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 나. 적극방어 교리 비판과 공지전투(ALB) 교리 성립

1976년 개정된 교범은 기존 교리와 비교 시 적(敵) - 소련군과 바르샤바조약기구군-을 명시하고, 소련군의 군사 능력과 무기체계에 대해 비교적 명확하게 명시하는 등<sup>52)</sup> 당시로서는 매우 획기적인 교범이었다. 그러나 1976년 교범의 핵심 교리였던 '적극방어(Active Defence)'교리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이 제기되었다.

1979년 6월 미 육군성 작전기획참모부장(Deputy Chief of Staff for Operations and Plans in the Department of the Army) 메이어(Edward C. Meyer)<sup>53)</sup>는 교범 개정 당시 미 육군교육사령관 스타리(Donn A. Starry)에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첫째, 중부유럽에서 바르샤바조약기구 군과의 전쟁을 상정하여

② 공격작전형태 중 점적전진의 경우 최선두에서 정찰을 통해 적을 찾아 접촉을 유지하고, 상황을 발전시킴으로써 본대가 가능한 최적의 조건하에 전개하여 전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경계를 제동하는 경계부대

출처 : 합동참모본부, 『합동교범 10-2, 합동·연합작전 군사용어사전』, 2014.

51) *FM 100-5 Operations*(Washington, DC : Headquarters, Department of the Army, 1976), pp. 5-1 ~ 5-4.

52) 조상태(1985), p. 31.

53) 당시 메이어는 제29대 미 육군참모총장으로 내정되어 있었다.

만들어진 교범이다 보니 유럽 이외의 지역 즉 전 세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교리로서 제한된다는 점이다. 마이어는 중부 유럽에서의 전쟁이 미국의 핵심이익에 영향을 미치지만, 유럽 이외의 지역에서 전쟁 발생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보았다.

둘째, 적극방어는 바르샤바조약기구군의 1세대 공격 격퇴에 중점을 두다 보니, 2세대 공격의 격퇴에 대한 교리 준비가 부족하였다는 점이다.<sup>54)</sup> 특히 바르샤바조약기구 군의 재래식 전력은 물론 전술핵과 화학전 감행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1979년 10월 11일 미 교육사령부에서 개최한 ‘twenty-star meeting’에서 이에 대한 대응책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이 회의의 주요 핵심 의제 중 하나가 바로 공지전투에 대한 교리적 검토였다. 이 회의에는 육군참모총장 메이어(Edward C. Meyer), 교육사령관 스타리(Donn A. Starry)와 공군 참모총장 알렌(Lew Allen, Jr), 전술항공사령관 크리취(Tactical Air Command Commander, Wilbur L. Creech)를 비롯한 육군과 공군본부 핵심 지휘관 및 참모들이 대거 참석하여 공지합동교리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1979년 12월 18일부터 19일까지 미 육군포병학교(Fort Sill)에서 열린 제3차 ‘the Nuclear Systems Program Review’에서 전술핵 옵션을 포함한 ‘통합전장(integrated battlefield)’ 개념을 제시하여 유럽 전장에서 재래식 및 비 재래식 수단에 의한 전쟁 수행방안이

54) 새롭게 육군참모총장으로 취임한 메이어 장군은 1976년 교리에 대한 재검토를 육군교육사령부, 포병학교 및 각 병과학교 등에 지시하였다. 이때 교리 검토의 핵심은 압도적인 바르샤바조약기구 군의 제2세대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그들이 보유한 막강한 화력과 압도적인 숫자의 병력을 차단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작전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중심차단작전(deep interdicting operations)이 교리 연구의 핵심의제가 되었으며, 이를 위해 화력(firepower), 기동(manuever), 그리고 공지전투력의 관계(the air-land forces relationship)가 이슈화되었다.

John L. Romjue(June 1984), p. 32.

제시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이 논의되던 시기 미 육군교육사령부는 바르샤바조약기구 군이 나토군 방어 전면에 다양한 형태의 작전 기동의 가능성과 신속한 공격 제대의 전개 능력을 강조하면서 항공기에 의한 공중 차단 of 중요성을 부각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1979년)과 이란 대사관 인질극 사태(1979년~1981년) 등 일련의 국제 안보위협으로 인해 미 카터 행정부는 전 세계적 차원에서 신속한 전력 배치와 군사준비태세에 대한 급격한 인식의 변화가 있었고, 이러한 대외 안보 상황은 미 육군 교리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sup>55)</sup>

이러한 배경에서 1982년 등장한 공지전투(ALB) 교리는 기존 화력소모전 위주의 미국 전략문화가 기동전과 화력소모전의 합리적인 교리적 보완관계로 전환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1976년 'FM 100-5'는 교리의 부재라는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1980년 들어서 교리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졌으며, 이때 기동전 사상이 방어 및 공격작전 수행의 핵심 개념으로 적용되었다.

이처럼 적을 저지할 수 있는 핵심 개념으로 재평가를 받았던 기동전은 1980년 들어서 미 육군지휘참모대학(United States Army Command and General Staff College, CGSC) 교육과정과 재발행되는 FM 100-5 초안에 반영되었다.<sup>56)</sup>

아울러 이 시기에 미 육군교육사령관 스타리(Donn A. Starry)는 상대적으로 열세한 전력으로 강력한 적에 대해 승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동전 수행을 강조하였으며, 화력전과의 적절한 교리적인 관계가 주목받게 되었다. 더불어 리델하트(Basil H. Liddell Hart)와 풀러(J.F.C. Fuller)의 사상이 재조명받게 되었는데, 새로운 FM

55) John L. Romjue(JUNE 1984), pp. 30-33.

56) Ibid, pp. 55-56.

100-5 교범에는 재래식 전장 및 핵·화학전 하 전장에서 공격작전에 적용할 4가지의 원칙이 다음과 같이 제시되었다.<sup>57)</sup>

- ① 간접접근 작전 수행 전력을 집중하라(use of the indirect approach)
- ② 전력의 집중(concentration of forces)
- ③ 공격 속도(speed of attack)
- ④ 심사숙고한 실현 가능한 계획(well-conceived feasible plan)

이러한 교리 검토를 통해 1980년 말 새로운 FM 100-5에 명시될 공지전투 수행을 위한 두 가지의 핵심 요소가 추가로 검토되었다.<sup>58)</sup>

- ① 주도권(initiative) : 공세적 기질, 예하 지휘관에 의한 독립 작전 시행
- ② 기동(maneuver) : 종심(Depth), 통합성(synchronization), 민첩성(agility)

1981년 미 육군교육사령부는 새로운 교리에 대하여 각 군 및 국방부, 의회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실시하였으며, 1982년 3월에는 당시 부통령이었던 조지 부시(George Bush)에게 보고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1982년 8월 새로 발간된 'FM 100-5, Operations'에 교육사에서 연구한 공지전투 교리가 공식적으로 채택되었다.<sup>59)</sup>

57) DTAC Draft, *Tactical Precepts for the Attack on the Nuclear-Chemical Conventional Battlefield*, February 1981.

58) John L. Romjue(JUNE 1984), p. 57.

59) John L. Romjue(JUNE 1984), p. 66 ; 박기륜, 『기동전이란 무엇인가?』 (서울: 일조각, 1988), pp. 102-103.

### 다. 미국의 공지전투(ALB) 교리 등장 의미

1982년 FM 100-5에 기술된 공지전투 교리는 다섯 가지 의미가 있다. 첫 번째 의미는 기동전 수행의 고전적 개념 즉, 적의 심리적 마비를 위한 기동을 통한 전투수행이라는 고전적 개념에 더하여 최첨단 무기체계 또는 비대칭 무기체계를 활용하여 양적 우위를 질적 우위로 상쇄한다는 사상적 의미가 추가되었다는 점이다.

두 번째 의미는 화력과 기동을 통합한 공세적 기동전을 추구하였으며, 이러한 교리적 변화가 공지전투의 형태로 반영되었다는 점이다. 개정된 교범에서는 공세적인 기세를 강조하는 미국의 공지전투 교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sup>60)</sup>

공지전투 교리는 전장주도권을 확보 또는 유지한 뒤 이를 공격적으로 행사하여 적을 격퇴하는 것을 기본 취지로 하고 있다. 적이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초전에 강력한 공격을 통해 적의 균형을 깨뜨린 후 적의 전투력 회복을 막기 위해 빠르게 추격하는 방식으로 적을 격퇴한다. 육군부대가 화력과 기동력으로 적을 중심 깊게 공격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모든 노력을 병행한다. 육군부대는 적의 취약지점으로 병력과 화력을 이동시키기 위한 민첩성을 유지할 것이다. 우리의 작전은 신속하고 예측할 수 없고 맹렬해야 하며 적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어야 한다.

새로운 교범에서는 공지전투 교리 시행 목적을 전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거나 유지하고, 적을 격퇴하기 위해 공세적 기세를 유지하기 위함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기존 수세적인 방어 논리에서 벗어나 적 전투력을 파괴하기 위하여 초기 기동전 사상 즉, 마비전 및 간접접근 개념을 적용하여 전장 지배권을 장악하는 적극적인 공

60) FM 100-5, Operations, 1982, p. 2-1.

세적 교리를 채택하였다. 아울러 사격과 기동을 각각 별개로 시행되는 공세 행위로 구분하지 않고, 전술 및 작전적 목표를 획득하기 위해 시행해야 하는 통합 행위로 규정하였으며, 모든 작전요소의 통합성(synchronization)을 강조하였다.

세 번째 의미는 독일의 교리를 반영하여 1976년 교리의 키워드였던 적극방어(active defense)라는 고정된 방어 프레임 대신 임무(mission), 적(enemy), 지형(terrain), 병력(troops), 가용시간(time available)이라는 3중전장 상황과 환경에서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전술적 고려요소(METT-T)에 따라 적절하고 유연한 방어 수단을 강구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이상적인 방어는 대담하고, 유연하며, 공세적이어야 한다는 클라우제비츠의 ‘Shield of blows’ 개념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sup>61)</sup>

네 번째 의미는 독일식 교리 내용을 적극 수용하여 임무형 지휘(Auftragstaktik), 중심(Schwerpunkt, Center of Gravity)<sup>62)</sup>의

61) John L. Romjue(JUNE 1984), p. 59.

62) 중심(Schwerpunkt, Center of Gravity) : 정신적 또는 물리적인 힘, 행동의 자유 또는 전투의지를 제공하는 능력 또는 힘의 원천. 파괴 시 전체적인 구조가 균형을 잃고 붕괴될 수 있는 물리적 또는 정신적 요소, 전략적 수준의 중심과 작전적 수준의 중심으로 구분됨.

- ① 전략적 수준의 중심 : 동맹관계, 정치 또는 군사 지도자의 통치력, 특정능력이나 기능, 국가의지 등 무형적인 요소에서 식별되나, 지도자의 통치력이나 국가의지 등이 군사력에 의존할 경우에는 군사력 자체가 전략적 중심이 될 수 있다.
- ② 작전적 수준의 중심 : 통상 특정 무기체계, 강력한 부대 등과 같이 군사분야의 유형적인 요소에서 식별되나, 전체적인 군사적 능력이 특정 무기체계나 부대에 의존하지 않을 경우에는 작전템포를 유지하는 능력이나 작전지속능력과 같이 무형적인 능력에서도 식별될 수 있다.

출처 : 합동참모본부, 『합동교범 10-2, 합동·연합작전 군사용어사전』, 2014.

한편 중심을 군사력을 포함한 전쟁수행을 위한 힘의 원천이 아닌 결정적 취약점(critical vulnerability)으로 봐야 하는 의견도 있다. 클라우제비츠는 중심이란 전투력이 가장 강력하게 집중되는 곳에서 항상 발견되며, 일격을 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표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중심의 의미를 힘의 원천이 아닌 적의 전투력 또는 전쟁 수행 의지를 마비시키고, 붕괴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취약점으로 봐야 할 것이다. 출처 : Robert Leonhard (1994), p. 21.

개념을 신 교범에 반영했다는 사실이다.

위의 교리는 일찍부터 미 육군교육사령부(TRADOC), 미 육군 제병협동본부(USACAC)에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으나, 연구수준에만 머물러 있었다. 그러던 것을 미 육군전력사령부(FORSCOM) 사령관이었던 슈메이커(Robert M. Shoemaker)의 적극적인 의지로 교리 반영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는 미래 전장 범위의 확장 및 복잡성으로 인해 중앙집권적인 지휘통제가 제한된다고 예측하면서, 예하 지휘관들이 상급지휘관의 의도대로 각자 임무를 수행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1981년 4월 포트 리븐워스(Fort Leavenworth)에서 개최된 미 육군전력사령부 주관 지휘관 회의에서 임무형 지휘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미 육군교육사령관 스타리(Donn A. Starry)가 적극적인 공감을 표하면서 'FM 100-5'에 반영되었다. 더불어 주요 공격을 위한 전력이 집중되는 중심(Schwerpunkt)에 대한 교리적 개념을 강조함으로써<sup>63)</sup> 적의 취약점을 탐색 및 판단하여 타격하는 간접접근 및 마비전 사상이 교리에 반영되었다.

다섯 번째로 미래전의 양상을 예측하고, 대비하기 위한 포석으로서 의미가 있다. 사실 육군과 공군이 수행하는 합동공지전투 개념은 1982년 교범에서 새롭게 제시된 것은 아니었다. 일찍이 미군은 제2차 세계대전 기간 태평양에서 이루어진 상륙작전을 통해 합동공지전투를 수행한 경험이 있었으며, 6·25전쟁 기간 항공지원작전센터(ASOC, Air Support Operations Center)와 베트남전쟁 기간 직접항공지원센터(DASC, Direct Air Support Center)를 운용하는 등 '공지합동전'에 대한 전술적 개념을 이해하고 있었다.

다만, 이러한 전술적 개념이 미 지상군 정식 교리로 채택되었다는 사실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더불어 C4I 시스템 도입으로 전군

63) John L. Romjue(JUNE 1984), pp. 58-59.

의 작전조직과 교리가 일체화되었기 때문에 통합교리의 필요성을 만족하기 위한 공지전투 개념이 등장했다.<sup>64)</sup>

공지전투에서 한 단계 발전한 개념으로 1989년 등장한 ‘미래 공지전투(AirLand Battle-Future)’ 교리는 4단계 전투방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시하면서 공지전투 수행 방법을 좀 더 세부적으로 규정하였다.<sup>65)</sup>

〈표 2〉 미래 공지전투(AirLand Battle-Future) 수행 개념

① 적의 활동에 대한 조기 탐지 및 공격 전력에 대한 평가 (the early detection and assessment of attacking force)
② 군단 포병여단과 다른 공격무기를 활용한 대규모 간접사격에 의한 파괴 공격 (destructive strikes by massing indirect fires, primarily by corps artillery brigades and other strike weapons)
③ 적 부대의 완전 파괴를 위한 신속한 기동 (rapid maneuver to complete destruction of enemy units)
④ 후방에서 전투력 복원을 통한 미군의 전투력 회복 (the recovery of U.S. forces to the rear for regeneration)

결론적으로 공지전투 교리는 현재까지 미 육군의 기본 전투 교리이며, 나토 방위, 주요 지역 분쟁 및 중·고강도 분쟁 등 諸 분쟁에 관한 보편성을 지향하고 있다. 그리고 현대전의 구조와 전투의 역동성과 고전적인 기동전의 원리를 현대적으로 적용하였다. 즉, 현대전의 입체적, 복합적, 제병협동적 성격을 인식하고, 모든 지상 작전이 공중작전에 의해 강하게 영향을 받을 것을 강력하게 시사하였다.<sup>66)</sup>

64) 조상태(1985), p. 32.

65) Vincent H. Demma, "Chapter 4 Doctrine and Concepts," *Department of the Army Historical Summary Fiscal Year 1989* : (Washington, D.C.: 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1998), pp. 49-50.

66) Vincent H. Demma(1998), p. 46 ; Brower, Kenneth S and Candy, Steven L., *Air Power and Maneuver Warfare* (Alabama : Air University Press, July 1994), p. 193.

1982년 공지전투 교리 형성 이후 미국이 수행한 주요 전쟁인 걸프전,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전의 사례를 살펴보면 기동전 사상에 입각한 공지전투 교리가 중심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은 전쟁 초기 스텔스 전투기와 PGM(Precision-Guided Munition), ISR(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에 기반한 막강한 항공전력으로 적대국의 전쟁지휘시스템을 마비시킨 후 기동화된 지상군을 투입하여 적대국을 순식간에 붕괴시켰다. 이는 과거 제2차 세계대전, 6·25전쟁, 베트남전쟁에서 끊임없는 재래식 화력을 쏟아붓는 소모전의 양상과는 대조적으로 1980년대 이후 미국이 수행한 전면전은 기동전 사상에 기반하였으며, 현대전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공지전투 교리 성립 후 기동전 사상에 기반한 미국의 전쟁 수행 양상을 통해 전간기에 형성된 기동전 사상이 현대전 양상에도 적용할 수 있는 보편성을 지니고 있음을 인정함은 물론 화력을 주요 수단으로 하는 소모전 중심의 미국 전략문화에 있어서 대전환을 가져왔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었다.

## 5. 맺음말

1982년 새로운 미군 지상전 교리로 등장한 공지전투 교리는 제2차 세계대전 이래 소모전 중심으로 행해졌던 미군의 지상전 수행방식에 기동전 사상이 반영하여 탄생하였다. 전간기 형성되었던 기동전 사상은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효용성이 증명되었으며, 전쟁 종료 후 새로운 전쟁 수행 패러다임으로 주목받게 되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미국 내에서는 기동전의 가치와 효용성이 주목받지 못했다. 당시 미군 스스로 작전술 분야에서는 냉전

기 적대국이었던 소련에 비해 20여 년이 뒤떨어졌다고 평가하였으며, 미국의 교리는 ‘물량 위주’, ‘화력 중심의 소모전’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더욱이 제2차 세계대전 직후 핵무기의 출현으로 핵전쟁을 중시하는 경향은 작전술 발전을 상당 기간 저해하였고, 기동전의 필요성을 경시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sup>67)</sup>

이러한 미군의 전략문화는 지상전 수행교리에 영향을 끼치면서 냉전기 미군이 수행했던 전면전 예컨대 6·25전쟁과 베트남전쟁에서 천문학적인 재래식 무기와 인력 및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소모전의 양상을 띠게 했다.

하지만 감소하는 국방예산과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소련의 기계화 전력에 대비하기 위한 새로운 교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더불어 베트남전쟁 이후 급속도로 이루어진 군사부문의 기술혁신을 통해 부족한 전력을 보완하기 위한 첨단 무기체계와 기동전력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이때 기동전의 효용성에 대한 담론이 미군 내에서 형성되면서 적극방어 교리를 거쳐 공지전투 교리가 등장하게 되었다. 다만 미국의 새로운 공지전투 교리 등장이 미국의 소모전 중시 사상을 기동전 사상으로 완벽하게 전환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결프전 이후 미국의 전쟁 수행방식은 초기 대규모 공습과 정밀유도무기를 활용한 물량전 즉, 소모전을 중시하는 양상을 보였고, 이후 이루어진 이라크전과 아프가니스탄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위 사례는 미국이 여전히 대규모 공습과 정밀유도무기를 활용한 적중심에 대한 파괴를 전쟁 수행의 중요한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sup>68)</sup>

67) 육군교육사령부(1996), pp. 54-55.

68) 결프전 이후 미국이 시행하는 전쟁수행 방식에서 초기 정밀무기체계와 항공기를 활용하여 적의 지휘통제시설과 주요 군사시설을 공격하는 행위를 소모전이 아닌 여건조성작전(Shaping Operations)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여

이처럼 공지전투 교리 등장 이후에도 미국은 전쟁 초중반 대규모의 화력을 동원하여 적의 지휘통제시설을 포함한 핵심 군사시설을 파괴하고, 주력부대에 심각한 피해를 준 이후 기계화부대를 활용한 신속한 기동전 수행으로 전쟁을 마무리하는 양상을 보인다. 부연하면 공지전투 교리 도입 이후 소모전(화력전)과 기동전을 상호보완적으로 수행하는 ‘절충적 기동전’의 형태를 보이며, 현재까지 미국 전쟁 수행 양상의 중요한 특징으로 자리 잡고 있다.

더불어 미국의 공지전투 교리는 미래 한국군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함의를 가지고 있다. 첫째, 기존 한국군의 작전 수행 개념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먼저 전략 및 작전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현 한국군의 전면전 수행개념은 북한 남침 시 일단 GOP~FEBA 작전을 통해 북한군 전연 군단의 공격을 둔좌시키고 군단 예비 기동부대로 역습을 가하여 실지 회복 후 신속하게 공세 이전하는 방식이다. 공세 이전이 이루어진 후에는 전략기동부대인 제7기동군단으로 하여금 북한군 방어 전면의 취약점을 돌파하여 복진하도록 되어 있다.

---

건조성작전은 결정적작전(Deceive Operations)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하여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작전이다. 여기에서 언급하는 유리한 여건조성이라 함은 아군이 작전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것인데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가용 화력을 통해 적 핵심 전력을 파괴 및 무력화하기 위하여 적의 중심을 집중공격하는 한편 기동로 개척 및 적 기동부대를 고착시키는 제반 작전 활동을 의미한다.

<출처 : 박용득, 「21세기 정보화시대 지상전장 운영개념」, 『국방과 기술』, 98년 10월 호, p. 27.>

그러나 화력을 통한 여건조성작전도 소모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시행되었던 주요 전역들도 참호를 벗어나 상대의 참호를 향해 보병이 돌격하면서 발생하는 인명손실뿐만 아니라 보병 돌격 시행 전·중·후 시행되었던 여건조성작전 즉, 대규모 화력으로 적의 전투력을 소모시킨다는 점에서 소모전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겔프전 이후 미군이 시행하는 주요 전쟁의 양상의 공통적인 특징은 지상 전력을 투입하기 전 대규모 공습과 고가의 첨단유도무기를 통한 적 핵심시설과 전투력 파괴였다. 이는 적 전투력을 파괴하여 소모를 강요함은 물론 미국 측의 전쟁 수행 비용을 천문학적으로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소모전의 성격을 지녔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때 역공작전의 중점이 북한군 전투력의 격멸인지, 북한군 지도부가 있는 평양을 신속히 점령함으로써 기동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전략 및 작전적 검토가 필요하다. 만약 북한군의 전투력을 목표로 기동한다면 전쟁의 장기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전쟁지도부를 제거하기 위한 계획을 모색해야 하며, 상륙작전부대와외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둘째, 공지전투 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공중자산을 확보해야 하고, 평소부터 철저한 제병협동훈련을 통해 기동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본격적인 인구절벽으로 인한 병력감축과 부대구조 개편에 대비하기 위하여 한국군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짐은 물론 북한에 비해 양적으로 열세한 전력을 만회하기 위하여 소모전을 지양하고, ‘마비’와 ‘간접접근’에 입각한 기동전 수행을 위하여 한반도 상황에 부합한 ‘한국형 기동전 교리’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을 해야 한다.

상술했듯이 기동은 상대적으로 열세한 전력으로 우세한 전력을 갖춘 적을 제압하기 위한 전략적 사고에서 출발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며, 한반도의 산악지형을 극복하고, 기동의 본질에 충실한 ‘한국형 기동전 교리’를 형성해야만 한다.

## 〈참고문헌〉

- 강석율,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전략과 정책적 함의 : 합동군 능력의 통합성 강화와 다전장영역전투의 수행」, 『국방정책연구』, Vol 34-3 (2018).  
<http://uci.or.kr//I410-ECN-0102-2019-300-001169053@N2M>
- 김대성,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분쟁 가능성에 대한 연구 : 군사전략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vol 32-4 (2016).  
<http://uci.or.kr//I410-ECN-0102-2018-300-000504652@N2M>
- 김성환,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對 중국전략 : 봉쇄에서 변환으로」, 『신아세아』, Vol 28-2 (2021).
- 김태현, 「트럼프 시대 미국의 대중국 군사전략 : ‘경쟁전략’과 ‘비용부과」, 『국가전략』, Vol 26-2 (2020).
- 김태형,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미군의 군사전략 변화」, 『국방연구』, Vol 63-1 (2020).  
<http://uci.or.kr//I410-ECN-0102-2021-300-000964615@N2M>
- 남두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모자이크 전쟁」, 『국방연구』, Vol 63-3 (2020).  
<http://uci.or.kr//I410-ECN-0102-2021-300-001318819@N2M>
- 류한수, 「“결백한 독일국방군” 신화의 산파 바실 리텔 하트 : 한 군사학 구루의 명예와 제2차 세계대전의 진실」, 『大丘史學』 제130호(2018. 2).  
<http://uci.or.kr//I410-ECN-0102-2018-900-003691301@N2M>
- 박기련, 『기동전이란 무엇인가?』 (서울: 일조각, 1988).  
<http://uci.or.kr//G701:B-00093048761@N2M>
- 박상연, 「“미국의 군사부문 혁신(1977-1991)에 대한 RMA적 사후해석 극복 : 카터 행정부의 ‘상쇄전략’에 대한 기술 기획론적 분석을 중심으로」, 『국가안보와 전략』, Vol 19-1, 2019.
- 박용득, 「21세기 정보화시대 지상전장 운영개념」, 『국방과 기술』, 98년 10월 호.  
<http://uci.or.kr//G701:A-00107106739@N2M>
- 손무, 유동환 옮김, 『손자병법』(서울 : (주) 홍익출판사, 2013).
- 양욱, 「미국 군사혁신의 변천사 : 군사변환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군사혁신 과

- 정, 『세계 역사와 문화 연구』, Vol 58 (2021).
- 유재갑, 「군사전략·전술의 이론과 실제 : 작전술·작전수준의 전쟁·대전략, 『월간국방 제3월호』 (1993).
- 육군교육사령부, 『한국전의 기동전 분석』(계룡 : 육군인쇄창, 1996).
- 이내주, 「근대 영국의 전쟁방식과 전략문화, 『영국 연구』 제30호(2013).  
<http://uci.or.kr//G701:A-00092671403@N2M>
- 이병구, 「이라크 전쟁 중 미국의 군사혁신 : 내부적 그리고 외부적 군사혁신 이론의 적실성 검증을 중심으로, 『군사』, Vol 91 (2014).
- 정연봉, 「베트남전 이후 미 육군의 군사혁신(RMA)이 한국 육군의 군사혁신에 주는 함의, 『군사연구』, Vol 147 (2019).
- 정용주, 「기동전의 현대적 적용에 관한 연구 : 미국의 이라크전 초기 군사작전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1).  
<http://uci.or.kr//G901:A-0005674397@N2M>
- 조상태, 「미 육군의 FM 100-5에 있어서의 공지전, 『國防과 技術(Defense and Technology)』(1985).  
<http://uci.or.kr//G701:A-00106292523@N2M>
- 조한승, 「탈냉전기 미국 군사혁신(RMA)의 문제점과 교훈, 『평화연구』, Vol 18-1 (2010).  
<http://uci.or.kr//G901:A-0002775674@N2M>
- 조홍제, 「미국의 우주전략과 정책 : 우주의 군사적 이용에 관한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vol 34-2 (2019).  
<http://uci.or.kr//I410-ECN-0102-2021-300-001000323@N2M>
- Danchev, Alex., *Alchemist of War : The life of Basil Liddell Hart* (London : Weidenfeld & Nicolsen, 1993).
- Aubin, Stephen P., Kells and Robert E., Jr., *Airland Battle Doctrine, Military Review*(Headquarters, Department of the Army, Oct, 1985).
- Baldwin, Hanson W., *Tiger Jack* (Fort Coiins, CO : Thne Old Army Press, 1979).

- Reid, Holden Brian., *J.F.C. Fuller : Military Thinker* (London: MacMillan Press LTD, 1987).
- Brower, Kenneth S., Candy and Steven L., *Air Power and Maneuver Warfare* (Alabama : Air University Press, July 1994).
- Clausewitz, Carl Von., *On War*, Michael Howard and Peter Paret, eds. and tran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4).
- Demma, Vincent H., *Department of the Army Historical Summary Fiscal Year 1989 : Chapter 4 Doctrine and Concepts* (Washington, D.C : 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1998).
- Douhet, Giulio., *The Command of the Air : Being an Essay on the Art of Aerial Warfare, with an Appendix Containing Elementary Notions of Aeronautics* (Printing-Office for the use of the War Department, 1921).
- DTAC Draft, *Tactical Precepts for the Attack on the Nuclear-Chemical Conventional Battlefield*, February 1981.
- FM 3-0 Operations* (Washington, DC : Headquarters, Department of the Army, October 2017).
- FM 100-5 Operations*(Washington, DC : Headquarters, Department of the Army, 1976).
- FM 100-5 Operations*(Washington, DC : Headquarters, Department of the Army, 1982).
- Fuller, J.F.C., *Machine Warfare* (Washington D.C. : Infantry Journal, 1943).
- \_\_\_\_\_, *The Foundations of Science of War* (London: Hurchison & Co, LTD, 1926).
- \_\_\_\_\_, *Tanks in the Great War, 1914-1918* (New York : E. P. Dutton and Company, 1920).
- \_\_\_\_\_, *The Conduct of War : 1789~1961* (New York : Da Capo Press, Inc, 1961).

- Guderian, Heinz., *Panzer Leader*, trans. Fitzgibbon (New York : E. P. Dutton, 1957)
- Harrison, Richard W., *Architect of Soviet Victory In World War II : The Life and Theories of G.S. Isserson* (North Carolina : McFarland & Company, Inc., 2010).  
<http://uci.or.kr//G901:A-0006732414@N2M>
- Leonhard, Robert., *The Art of Maneuver: Maneuver Warfare Theory and Airland Battle* (New York : Presidio Press, June 1, 1994).
- Liddell Hart, Basil Henry., *The Ghost of Napoleon* (London : FABER & FABER LIMITED, 1933).
- \_\_\_\_\_, *Scipio Africanus : Greater Than Napoleon* (New York : Da Capo Press, 2004).
- \_\_\_\_\_, *Strategy* (New York : Meridian Book, 1991).
- Maj. Chamberlain, Robert., *U.S. Army, The Mud of Verdun Falkenhayn and the Future of American Land-power*, MILITARY REVIEW, July-August 2016.
- Major Anastas, Kevin P., *The American Way of Operational Art : Attrition or Maneuver?* (Fort Leavenworth, Kansas : School of Advanced Military Studies United States Army Command and General Staff College, 1992).
- Mearsheimer, John., *Liddel Hart and the Weight of History* (Ithaca, New York : Cornell University Press, 1988).
- Mitchell, William., *Our Air Force: The Keystone to National Defense* (New York : E. P. Dutton and Company, 1921).
- Romjue, John L., *TRADOC Historical Monograph Series : From Active Defense to AirLand Battle: The Development of Army Doctrine, 1973-1982* (Fort Monroe, Virginia : United States Army Training and Doctrine Command, JUNE 1984).
- \_\_\_\_\_, *TRADOC Historical Monograph Series : The Army Of*

*Excellence – The Development Of The 1980s Army*, (Fort Monroe, Virginia : United States Army Training and Doctrine Command, JUNE 1997).

Simpkin, Richard E., *Race to the Swift: Thoughts on Twenty First Century Warfare Vol. 1 of Future Warfare Series, 3 vols* (London: Brassey's Defence Publishers, 1985).

\_\_\_\_\_, *Deep Battle : The Brainchild of Marshal Tukhachevskii* (London : Brassey's Defence, 1987) ; Glantz, David M., *Soviet Military Operational Art : In Pursuit of Deep Battle* (New York : Frank Cass, 1991).

Swain, Richard M., "B. H. Liddell Hart and the Creation of a Theory of War, 1919–1933," *Armed Forces & Society*, Vol. 17, No. 1, Fall 1990, p. 43.

\_\_\_\_\_, *Selected Papers of General William E. DePuy* (Fort Leavenworth, Kansas : Combat Studies Institute U.S. Army Command and General Staff College, Jan 1995).

Stokesbury, James L., *A Short History of World War I* (New York: William Morrow and Company, Inc., 1981).

Triandafilov, V. K., *The Nature of the Operations of Modern Armies* (New York: Routledge, 1994), trans by Kent E. Lee.,

Weigley, Russell F., *Eisenhower's Lieutenants : The Campaign of France and Germany 1944–45* (Bloomington In: Indiana University Press, 1981).

Wilson, John B., "Chapter 5. A return to the past : a look to the future," *Army Lineage Series : Maneuver and Firepower – The Evolution of Divisions and Separate Brigades* (Washington, D.C : 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1998).

Свечин, Александр Андреевич, *Эволюция военного искусства*(М.–Л.: Воениз, 1928).

(Abstract)

## A Study of the Establishment of the U.S. Maneuver Warfare - Focusing on the Formation of the U.S. AirLand Battle(ALB) Doctrine -

Kim, Young-hwan

The thought of maneuver warfare formed during the interwar period was proven to be effective through the World War II, and after the war, it attracted attention as a new paradigm for carrying out the war. Nevertheless, the value and effectiveness of maneuver warfare in the United States did not receive attention, and a strategic culture that emphasized the firepower-attribution warfare centered on large quantities was formed. Moreover, the tendency to value nuclear warfare following the emergence of nuclear weapons after World War II had hindered the development of operation art for a considerable period of time and had neglected the need for maneuver warfare. However, after the Vietnam War, the need for a new doctrine was raised to prepare for the decreasing defense budget and the relatively increasing mechanized power of the Soviet Union.

In addition, due to RMA(Revolution of Military Affairs) after the Vietnam War, the latest weapon systems and maneuver force can be utilized to compensate for the insufficient force. As a result, a discourse on the effectiveness of maneuver warfare was formed in the U.S. military, and after the doctrine of the Active defense in 1976, the doctrine of AirLand Battle(ALB) was formed in 1982. However, the emergence of the doctrine of AirLand Battle did not mean a transition from the thought of the firepower-attribution warfare to the thought of maneuver warfare. In other words, an eclectic form of conduct of warfare that the firepower-attribution warfare and the maneuver warfare carried out complementarily emerged.

Keywords : maneuver warfare, attrition warfare, military thought, the AirLand Battle(ALB) doctrine, the Active Defense doctrine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2, No. 123, pp.261-273  
<https://doi.org/10.29212/mh.2022..123.261>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 [서평] 예정된 전쟁: 미중 전략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 그레이엄 앨리슨 저, 『예정된 전쟁(Destined for War)』 -

두진호\*

본고는 그레이엄 앨리슨(Graham Allison)이 집필한 『Destined for War』의 한국어 번역본에 대한 서평이다. 본 서평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건을 『예정된 전쟁』과 연계하여 교훈과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 1. 오래된 전쟁과 예정된 전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그레이엄 앨리슨(Graham Allison)의<sup>1)</sup> 역작(力作)인 『예정된 전쟁』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국제전략연구실 선임연구원

1) 그레이엄 앨리슨은 하버드대학에서 역사를 전공한 뒤 같은 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77년부터 1989년까지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인재양성에 힘을 썼고, 1995년부터 2017년까지 하버드대학교의 벨퍼 국제문제연구소장을 역임했다. 그레이엄 앨리슨은 미국의 대표적인 안보 및 국방정책 분석가로 핵확산과 테러리즘

그레이엄 앨리슨은 『예정된 전쟁』에서 미국과 중국이 벌이고 있는 ‘전략경쟁’의 치명성을 응용역사학적 관점에서 비교분석하고 전쟁을 예방하기 위한 실천적 담론을 제안한다. 저자는 미중 전략경쟁을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분석틀로 접근한다. 투키디데스가 전쟁은 필연적인 것으로 인식했다면, 그레이엄 앨리슨은 비판적 입장에서 전쟁을 예방하기 위한 담대한 용기와 집단지성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그레이엄 앨리슨은 ‘투키디데스의 함정 사례’를 인용해 지난 500여 년 동안 펠로폰네소스 전쟁과 같은 유사한 상황이 16번 발생했고, 이 중 12번이 전쟁으로 귀결됐다고 설명한다. 저자는 미중 전략경쟁을 투키디데스 함정 파일의 17번째 사례로 특정하고, 전쟁을 예방하기 위한 실천적 담론을 제안한다. 1부에서는 중국의 부상 과정을 살펴보고, 2부에서는 지난 500여 년이 갖는 역사의 수레바퀴에서 미중 관계를 검토한다. 3부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충돌 가능성을 전망한다. 4부에서는 전쟁의 문턱에서 역사의 포물선을 변경했던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고 평화의 문을 열어줄 열두 개의 열쇠를 제안한다.

## 2. 투키디데스의 함정과 미중 전략경쟁

저자는 기원전 5세기 초 발생한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아테네의 부상과 이에 두려움을 느낀 스파르타의 대응이 전쟁 가능성을 필연성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한다. 투키디데스의 현실 인식은 훗날 신현실주의 논점을 구성하는 ‘세력전이(Power transition

---

본야의 전문가로 꼽힌다. 레이건과 클린턴 정부에서 국방장관 특보, 국방부 차관보 등을 역임했다.

theory)<sup>2)</sup> 개념으로 발전했다.

투키디데스는 새롭게 부상하는 신흥 세력이 기존의 지배 세력을 대체할 정도로 위협적일 경우 그에 따른 구조적 압박이 무력 충돌로 이어지는 현상은 필연적이라고 밝힌다. ‘투키디데스 함정’에서 구조적 압박이 갖는 역학은 ‘신흥 세력 증후군’과 ‘지배 세력 증후군’의 경쟁적 역동성을 의미한다.<sup>3)</sup> 상호 이질적이고 배타적인 두 개의 증후군은 전쟁의 원인을 밝히는 중요한 단서이자 미중 전략경쟁을 통찰하는 핵심적인 프리즘이다.

저자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중심의 단극체제와 상대적으로 ‘긴 평화’의 시간이 지속되어 왔지만 중국의 영향력이 전방위적으로 팽창하면서 필연적으로 세력전이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미중 전략경쟁이 갖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전쟁이 갖는 ‘낮은 가능성’과 ‘불가능성’ 사이의 좁은 간극은 17번째 전쟁의 필연성을 상징한다.

저자는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이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면서

2) ‘세력전이’(Power transition theory) 이론은 지배적인 강대국이 도전세력의 급속한 국력신장으로 상대적 국력 차이가 축소됨에 따라 위협과 불신이 발생하는 경우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새롭게 부상하는 도전세력은 자신의 군사적 능력을 힘으로 인정받게 된다. 반대로 기존의 강대국은 자국의 상대적인 쇠퇴를 저지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세력전이 이론에 따르면 신흥 세력과 기존 세력이 상대적 국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할 경우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 Glenn Palmer and Clifton T, "Power Transition, the Two-Good Theory, and Neorealism: A Comparison with Comments on Recent U.S. Foreign Policy," *International Interactions* 33(July/September); 329-346.; A. F. K. Organski and Jacek Kugler, *The War Ledger*.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0).

3) 신흥 세력 증후군은 중국과 같은 신흥 세력이 높아진 자의식, 관심사 그리고 국제적 인정과 존중을 받을 자격에 대한 권리의식에 초점을 맞추며 지배 세력 증후군은 전자의 거울상이 된다. 미국과 같은 기존 지배 세력은 ‘쇠락’을 경험하면서 공포와 불안감을 보인다. 자국 중심주의적 사고가 커지고 인정과 존중을 기대하며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배 세력은 신흥 세력을 위협적 존재로 인식하게 된다.

신흥 세력 증후군과 지배 세력 증후군이 필연적으로 충돌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만약 미국을 하나의 기업이라고 할 경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세계경제의 과반을 점유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1980년대 미국의 세계 경제 점유율은 30% 밑으로 떨어졌고 최근에는 16%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향후 30년 뒤 미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11%로 예상된다. 반면 중국의 세계 점유율은 1980년대 2%에서 2013년에는 18%로 급성장했으며, 2040년에는 30%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7년마다 두 배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고 있으며, 그 속도는 미국의 3배로 추정된다. 중국의 급속한 성장세는 단순히 미국을 위협하는 수준이 아니라 특정 분야에서 미국을 뛰어넘는 역전현상을 의미한다. 2015년 중국 경제는 16주 만에 그 리스를 탄생시켰고, 이러한 중국의 성장은 산업화와 정보화를 30년 만에 달성하는 성과를 창출했다.

시진핑 주석이 꿈꾸는 ‘중국몽’은 아시아를 넘어 국제사회의 가장 강력하고 핵심적인 1인자가 되는 것이다. 시진핑은 2012년 두 가지 목표를 발표했다. 첫 번째는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이 되는 2021년까지 1인당 GDP를 2010년과 비교하여 두 배 달성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인민공화국 수립 100주년을 맞는 2049년까지 중국을 현대적이고 부유하며 강력한 선진국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첫 번째 목표는 이미 달성되었으며, 만약 두 번째 중국몽이 실현된다면 중국의 경제는 미국의 세 배가 된다. 미국 GDP의 70%까지 육박한 중국의 경제력이 미국을 초월하는 것은 시간의 문제일 뿐이다.

저자는 중국의 부상으로 미중 간 갈등이 우발적 충돌로 비화될 경우 17번째 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미국과 중국이 상호 간 적대적 정체성을 심화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이해

관계, 두려움 그리고 명예라고 하는 요인은 갈등관계를 전쟁으로 유도하는 부정적 요인으로 지적된다. 즉, 신흥 세력 증후군을 내재한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에 힘입어 자의식이 높아지고, 자기중심적인 교만이 상승한다. 세계적 차원에서 인정 욕구가 증가하는 것은 중국의 영향력 확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배 세력 증후군에 익숙한 미국과의 충돌은 불가피하다. 미국은 국력의 상대적 후퇴를 경험하게 되고, 중국의 군사굴기를 자국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면서 공포 및 불안감 증대로 전쟁 구성 요건이 갖춰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미중 전략경쟁의 또 다른 뇌관은 ‘문명의 충돌’이다. 미국의 핵심 가치가 민주주의와 자유라면 중국의 그것은 질서이다. 미국은 국제 질서 안에서 ‘일등국’을 지향하지만 중국은 ‘우주의 중심’을 추구한다. 미국은 공화정에 기초해 민주주의를 추구하지만 중국은 반응적 권위주의가 습성화되어 있다. 미국은 현재가 중요하지만 중국은 장기적이고 영원한 것을 선호한다.

저자는 중국의 신흥 세력 증후군과 미국의 지배 세력 증후군의 충돌은 예정된 수순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전망한다. 이는 미중 간 작은 갈등의 불씨가 우발적 충돌로 비화될 경우 군사적 충돌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레이엄 앨리슨은 미중 전략경쟁이 전쟁을 회피하고 평화로 나아가는 다섯 번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앞선 네 번의 사례가 주는 열두 개의 열쇠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것을 조언한다. 비록 미중 전략경쟁이 극도의 긴장감을 내재하며 전쟁의 조건을 충족해가고 있지만, 투키디데스의 함정이 갖는 선택편향을 비판하며 전쟁의 필연성을 부정한다. 저자는 전쟁의 필연성이 부정되기 위해서는 역사의 포물선을 변경시키는 담대한 용기와 실천력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 3. 예정된 우크라이나 전쟁

투키디데스 함정 파일의 17번째 사례는 미중 전략경쟁이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그레이엄 엘리슨의 예상도 그리고 희망도 모두 빛나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건은 투키디데스의 함정이 갖는 일반적 특징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복잡한 동태성을 내재하고 있다. 또한 전쟁은 필연적이지 않다는 저자의 주장과 배척되는 사례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투키디데스의 오래된 현실주의가 자유주의를 밀어내고 향후 글로벌 안보환경의 주류를 형성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레이엄 엘리슨의 『예정된 전쟁』은 논쟁의 대상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2월 24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른바 특별군사작전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역설한 뒤 우크라이나를 전격적으로 침공했다. 푸틴 대통령이 밝힌 특별군사작전의 이유와 취지는 크게 NATO 위협으로부터 러시아 방어, 돈바스에<sup>4)</sup> 거주하는 자국민 보호,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탈나치화 및 비무장화이다. 이를 위해 러시아군은 북부, 북동부, 동부 및 남부 등 4개 축선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러시아군은 침공에 앞서 사이버 공격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국가 통신망 등 네트워크 체계를 교란했으며, 개전과 동시에 우크라이나의 방공망, 지휘통제체계 및 공항 등 전쟁지휘 시스템과 국가 기반시설을 무차별적으로 폭격했다.

4) 돈바스는 우크라이나의 동부 지역의 루한스크州 및 도네츠크州를 총칭하는 명칭이다. 2014년 러시아가 크림 지역을 강제병합하면서 러시아계가 다수 거주하는 돈바스 지역에서 분리주의 내전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반정부군은 돈바스 전체 지역의 약 1/3을 점령하고 있었다. 5월 24일 기준, 러시아는 돈바스 지역의 약 80%를 점령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개전 2~3일만에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가 함락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미국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망명을 위해 비상계획에 착수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국민의 결사항전 의지와 국제사회의 반전 여론 확산, 그리고 대러 경제 제재 시행 등의 영향으로 러시아가 수세에 몰리면서 전쟁이 장기화되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유는 미국과 NATO의 확장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이 우세하다고 볼 수 있다. 지난 5월 9일 제77주년 전승절 기념행사에서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안보를 위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선제공격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과 NATO가 크림 지역에<sup>5)</sup> 공격을 준비하는 등 러시아에 군사적 위협을 가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은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국제사회는 푸틴 대통령의 호전성에 경악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전쟁을 예방하기 위해 역사의 포물선을 변경해왔던 국제사회의 노력을 무력화하는 사건이다. 5월24일 기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군은 약 15,000여 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우크라이나 국민 중 약 6백만 명 이상의 전쟁 난민이 발생했으며, 이 중 90%는 여성과 어린이라는 점에서 인도적 참사가 현실화되고 있다.

---

5) 크림(크림) 지역은 러시아가 2014년 강제 병합한 지역으로 세바스토폴시와 크림 공화국을 총칭한다. 국제사회는 러시아의 크림 병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림 1〉 우크라이나 난민 현황(2022.5.23. 기준)



\* 출처 : [www.aljazeera.com/news](http://www.aljazeera.com/news)

이번 전쟁에서 지배 세력 증후군의 주체는 러시아이다. 하지만 신흥 지배 세력의 주체는 이번 전쟁의 피해자인 우크라이나가 아닌 NATO라는 점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그레이엄 앨리슨이 인용하는 일반적 사례들과 다른 경로를 갖는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목적은 궁극적으로 NATO의 진출선을 조정하기 위해 롤백(Roll-back)전략을 구사하는 것이다. 러시아는 독일 통일 과정에서 서방이 NATO의 확장 금지 원칙을 확약했지만 지난 30여 년 동안 NATO는 최소 2,000km 이상 동진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러시아는 서방이 색깔혁명을 기획하여 우크라이나에서 친러시아 세력을 붕괴시키고 친서방 식민지 정권을 인위적으로 형성했다고 비판한다.

우크라이나는 개헌을 통해 2019년부터 헌법에 유럽연합 및 NATO 가입 의지를 명문화했다. 러시아 입장에서 우크라이나의 탈(脫)러시아 행보는 자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이다. 과거 구

소련의 구성 공화국이자 같은 동슬라브 민족을 구성하는 우크라이나 영토에 NATO가 진입한다는 것은 NATO의 진출선이 러시아의 국경과 맞대는 상황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유라시아의 지배 세력으로 남고자 했다. 반면 NATO는 우크라이나를 지렛대 삼아 러시아의 위협에 대비하고자 진출선을 확장했다.

그레이엄 앨리슨은 특정 갈등 상황이 전쟁 상황으로 내몰리는 과정에서 이해관계 및 두려움, 그리고 명예의 상호작용에 주목한다. 저자는 “아테네의 팽창이 스파르타 동맹국들을 잠식하기 시작함에 따라 스파르타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었고 전쟁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었다.”는 투키디데스의 주장을 인용한다. 이러한 주장에 비춰보면, 과거 동맹이나 다름없던 우크라이나가 NATO에 잠식되면서 푸틴 대통령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이해관계와 두려움의 정점 상황을 마주한 것이다.

투키디데스가 주장하는 전쟁의 필연성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적용하면 NATO가 확장할수록 러시아의 우려도 증폭됐다. 이에 따라 양측은 충돌을 피하기 어렵게 만드는 길을 선택한 측면이 있다. NATO는 가치 동맹의 연대를 통해 러시아의 영향력을 제거하는 것이 유라시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를 보장할 수 있다는 신념을 관철하고 있다. 반면 러시아의 불안은 피해망상적 수준으로 발전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이렇게 투키디데스 함정의 17번째 희생자가 되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NATO 등 서방은 전쟁은 곧 재앙을 뜻한다는 것을 경고했다. 하지만 세력전이가 빠르게 진행되는 유럽 지역의 안보 상황에서 최소한 러시아는 가능한 선택지 중 가장 덜 나쁜 쪽이 폭력이라고 결론짓게 되었고 그렇게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필연적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생 이전에 국제사회는 12개 이상의 평화로 가는 열쇠를 쥐고 있었다. 러시아와 미국, NATO 및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등 국제사회는 전쟁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접촉을 시도했다. 독일 올라프 솔츠 총리와 프랑스 에마뉼엘 마크롱 대통령 또한 러시아를 방문하여 외교적 해법을 통한 사태 해결에 주력했다. 여기에 베이징 동계 올림픽이라는 국제 행사도 우크라이나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중요한 열쇠로 작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미중 전략경쟁에 따른 서방 주요국의 올림픽 보이콧 사태는 결과적으로 우크라이나 사태에 있어 투키디데스의 함정만 심화시키는 결과로 귀결된 것이다.

전쟁은 필연적이지 않을 수 있다며 투키디데스의 선택편향을 비판한 그레이엄 앨리슨의 주장, 그리고 평화로 가는 열두 개의 열쇠가 무의미해지는 위기의 순간이다.

#### 4. 글로벌 안보환경의 결정적 변화와 한반도

그레이엄 앨리슨은 예정된 전쟁의 운명을 거스르기 위해서는 역사의 포물선을 변경하는 담대한 용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역사의 포물선을 변경한다는 것은 전쟁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서 전쟁을 예방하기 위해 특정 개인 혹은 집단지성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15세기 말 해상교통로의 주도권 확보를 둘러싸고 갈등 관계에 있었던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의 갈등은 전쟁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신의 대리자인 교황 알렉산데르 6세의 중재로 양측은 ‘토르데시야스 조약’이라는 신사협정을 체결할 수 있었다.

독일은 냉전 종식 이후 유럽연합의 주도 국가로 성장했지만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으로 낙인이 찍힌 까닭에 경제 규모에 걸맞은 군사력을 발전시키지 못했다. 독일은 패전국으로서 비무장화 및 비군사화를 강요받아 왔다. 또한 독일 통일 이후에도 미국의 ‘핵우산’은 독일의 군사적 잠재력을 제거함으로써 주변국을 안심시켰다. 여기에 유럽연합의 상호의존성 심화는 우호적인 집단 정체성을 형성하는 결정적 구조로 작용하고 있다.

그레이엄 앨리슨이 제안하는 의미 있는 평화의 열쇠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무력화될 위기에 놓였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싸고 대리전을 치르고 있는 미국과 러시아, 러시아와 NATO를 중재할 권능자를 찾기 어렵다. 국제사회는 UN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지만, UN은 지역 갈등을 관리하고 중재할 수 있는 충분한 실행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유럽연합과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상호의존성의 관행을 공유한다. 러시아의 대외교역에서 유럽연합의 비중은 과반에 육박한다. 유럽연합은 매년 천연가스의 40% 이상을 러시아로부터 수입한다. NATO 회원국의 절대 다수와 러시아는 경제적 상호의존성을 바탕으로 우호적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유리한 지점을 공유해온 것이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유럽연합과 러시아가 기여한 세계화의 흐름이 역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에너지를 무기화하는 러시아의 전략에 맞서 유럽연합은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제로화하는 특단의 조치를 모색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적 상호 의존성의 심화는 전쟁 가능성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그레이엄 앨리슨의 가설도 부정될 위기 상황이다.

냉전 시기 미소 간 극한의 긴장 관계에도 불구하고 공존 체제가 유지된 것은 양국이 핵보유국이라는 배경이 작용한다. 핵무

기가 갖는 파괴적 본능 때문에 핵을 보유한 강대국 간의 전면전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러시아는 핵 모험주의로 국제사회를 겁박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글로벌 안보환경의 결정적 변화가 불가피하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중 전략경쟁의 거울이 될 수 있다. 국제사회가 17번째의 예정된 전쟁을 경고했지만 전쟁을 예방하지 못한 뼈아픈 교훈을 미중 전략경쟁에 능동적으로 투영해야 한다.

그레이엄 앨리슨은 냉전의 그림자가 포위하고 있는 한반도를 투키디데스의 함정 사례 파일에 포함하지 않았다. 한반도의 냉전 구조가 형성된 과정과 남북한의 정치·경제적 성장 경로 등을 고려할 때 한반도는 투키디데스 함정 사례 파일 중 가장 위험한 공간이다. 비록 한국이 북한 경제에 비해 50배 이상의<sup>6)</sup>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북한은 핵보유국으로서 세력전을 결정짓는 전략적 수단을 갖추고 있다.

한반도 문제는 미중 전략경쟁에 이어 19번째 투키디데스의 함정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지난 500여 년간 16번의 예정된 전쟁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19번째 예정된 전쟁을 예방할 수 있는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열두 개 평화의 열쇠 효력이 약화된 결정적 국면에서 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할 것인가?

저자는 제1차 세계대전이 종료된 이후 전쟁 참전국 모두는 자신들이 전쟁을 통해서 지키려던 것을 잃었다고 평가한다.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은 해체되었고, 독일 황제는 축출당했으며, 러시아의 차르 역시 왕좌에서 내려왔다. 프랑스는 한 세대 동안

6) 2020년 명목 GNI 기준으로 한국은 1,948조원, 북한은 35조로 추산되며, 무역 총액 기준으로 한국은 9,801억달러 북한은 8.6억달러 수준임.

피를 흘렸고, 영국의 경제적 부와 젊은 세대가 희생됐다. 평화의 문을 여는 열두 개의 열쇠가 중요한 이유이다. 전쟁의 참상과 후폭풍을 뒤늦게 자각한 테오발트 폰 베틀만홀베크 독일 총리의 탄식은 여전히 강력한 울림을 갖는다. 18번째 그리고 19번째 예정된 전쟁을 예방하기 위해 역사의 포물선을 변경하는 담대한 용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2, No. 123, pp.275-288  
<https://doi.org/10.29212/mh.2022..123.275>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 [서평] 국제무대에 다시 등장한 타이완(중화민국)

- 경인문화사(장수야 지음, 정형아 옮김),  
『한국전쟁은 타이완을 구했는가?: 미국의 대 타이완 정책을  
풀어내다』 -

박영실\*

본고는 경인문화사(장수야 지음, 정형아 옮김)가 2022년에 발간한 『한국전쟁은 타이완을 구했는가?: 미국의 타이완 정책을 풀어내다』에 대한 서평이다. 필자는 이 책에서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미국의 타이완에 대한 정책이 변화되었다가 한국전쟁을 통해 다시 미국의 입장이 수정되었음을 미국 자료를 통해 고찰하였다.

### 1. 양안(兩岸)갈등의 시말

2022년 5월 11일 현지시각 타이완 언론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지난 5일 공개한 ‘미국과 타이완 양자 관계 개황’에서 “타이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객원연구위원.

완은 중국의 일부분”, “미국은 타이완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삭제하였다. 이 부분이 삭제된 배경과 경위가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무부는 타이완관계법, 미중 3대 공동성명, 6대 보장에 기초해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하나의 중국’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을 명시했다.

한국전쟁이 발발한지 70년이 넘었다. “한국전쟁은 타이완을 구했는가?”라는 이 책의 제목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한반도에서 많은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했던 전쟁이 타이완의 입장에서는 구세주의 선물이 아니었을까.

저자 장수아(張淑雅)는 국립타이완대학에서 역사학 석사학위를 받고 미국 펜실베이니아주립대학에서 미국외교사를 전공하여 역사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 책은 저자의 박사학위 논문을 번역하고 수정한 것이다. 저자는 미국에서 수학하여 박사학위 논문을 받았기 때문에 미국 자료를 활용하면서 미국의 정책 수립과 정책 결정의 견해 차이를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중화민국(타이완) 정부가 타이완에서 어떻게 생존하게 되었는지를 연구하였다.

저자는 트루먼·아이젠하워 대통령도서관 소장 자료와 국방부, 국방부, 육군부, 국가안전보장회의, ECA(Economic Cooperation Administration), MSA(Mutual Security Agency)와 주 타이베이 미국대사관 등 여러 기관의 공식 자료를 주로 활용하였다.

이 책은 1장 전언부터 10장 결론까지 총 10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필자는 1949년의 상황인 2장부터 1953년까지의 내용을 구성한 제9장까지 시간적 흐름에 따라서 소제목에 적고, 타이완에 대한 미국 내 각 기관의 입장을 분석하였다. 이 책의 연구사적 가치 및 평가에 앞서 책의 구성 내용을 간략히 소개 하겠다.

## 2. 책의 구성 내용

### 가. 제1장 전언(前言)

타이완을 ‘위험한 해협’이라고 칭하는 학자들과 함께 미국에서도 타이완 해협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중국에서 국민당과 공산당이 대립해온 시간은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이었으나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 연합국을 지휘하던 미국은 종전 후 국공내전에 개입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였다. 그리고 1945년 말 대통령 트루먼(Harry S. Truman)은 제2차 세계대전 시기 육군참모총장을 역임한 마셜(George C. Marshall)을 중국에 특사로 파견하여 국공내전을 조정하려 하였지만 결국 이 임무는 실패하였다.

미국 중앙정보국(Central Intelligence Agency, 이하 CIA)은 중공이 체제를 갖춘다면 즉시 중국 영토 내의 모든 반공세력들이 결집할 것을 예상하였고, 특히 국민정부의 타이완은 겨우 3년은 버티겠지만 중공이 중국 전역을 소탕할 계획이 있다면 1950년 말에는 타이완을 포함한 모든 지역에 공산세력이 집권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 나. 제2장 타이완 분리(1949)

1949년 중화민국 정부가 내전에서 패함으로써 중국 본토에서 타이완으로 퇴각하였다. 국민정부가 타이완 성 주석으로 임명한 사람은 천청(陳誠)이었고, 당시 미국은 타이완을 “권력의 진공상

태”로 평가하였다. 1943년 12월 카이로회담의 결정에 따라 제2차 세계대전 종료 후 타이완은 중국에 반환되었고, 1945년 국민정부가 타이완을 접수하였다. 그러나 1947년 발생한 2·28사건으로 많은 타이완 사람들은 중국에서의 분리 독립을 주장하게 되었다.

1948년 11월 초 미 국무부는 1948년에 중국 내전이 악화되었을 때 타이완이 소련의 지시를 받는 중공 하에 편입되면 미국의 안보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하였고, 합동참모본부(Joint Chief of Staff)가 NSC 37로 첫 번째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공산당이 타이완을 접수하지 않는 것이 미국의 안전에 유리하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반해 미국 군부는 타이완의 전략적 가치가 미국이 대가를 지불하여 보호할 만큼 높다고는 판단하지 않았다. 그리고 1949년 한 해 동안 국무부는 여전히 ‘외교와 경제적 조치’를 통하여 타이완을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었다.

결국 1949년 3월 1일 NSC 37/5 문서를 트루먼 대통령이 비준하면서 미국은 군사적인 수단을 배제, ‘경제와 외교적인 조치’로서만 타이완이 공산당의 수중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하지만 중국공산당이 양쯔강을 도하한 후 주중 참사 머천트(Livingston Merchant)는 NSC 37/5를 재검토, 재평가하고 동시에 다른 선택을 모색해보자고 건의하였다.

이후 타이완문제를 유엔에 이관해 해결하자는 내용이 논의되었지만, 국무부의 유엔 담당관 러스크(Dean Rusk)는 이 구상에 냉담했다. 1949년 여름 이후 국무부 내에서는 미군이 직접 타이완을 방어하자는 의견과 타이완이 당시 충분한 군사력과 재정으로 스스로 방위할 수 있으므로 미국이 실제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상충하였다.

그리고 12월 타이완성 주석이 천청에서 미국 유학과 출신인 상하이 시장 우귀쩨(吳國楨)으로 바뀌고, 타이완성 출신들이 주요 관직에 자리잡게 되었다.

#### 다. 제3장 수수방관(1950년 1월 ~ 6월 24일)

1950년 1월 5일 트루먼의 입장은 미국 정부는 중국 내전에 개입하지 않으며 같은 이유로 군사원조나 의견을 타이완의 중국군에 제공하지 않겠다는 ‘수수방관’이었다. 그러나 당시 영국이 일부 비공산권 국가들과 함께 중공 정권을 승인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미국 의회, 학계, 언론계, 선교사 단체, 경제계의 대다수가 중공 정권 승인에 찬성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국무부는 성급하게 중공과 친선을 도모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트루먼 정부는 중공과의 관계개선을 준비하면서 국민정부와의 관계 단절을 구상하고 있었고, 2월의 정보평가에 따르면 타이완이 1950년 말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공이 베이징 주재 미국 영사관 재산을 몰수하고 2월 14일에는 마오쩌둥(毛澤東)과 스탈린(И ó с и ф С т á л и н)이 「중소우호동맹호조조약(中蘇友好同盟互助條約)」을 체결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 조약은 미국과 서방국가들이 예상했던 소련과 중공과의 분열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게다가 중공이 하이난도(海南島)와 저우산군도(舟山郡島)를 점령하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국무부 내의 인사이동 등으로 인해 미국의 타이완 정책은 제고되었다.

4월 7일 미 국무부와 국방부는 역사가 개디스(John Lewis Gaddis)가 한국전쟁 기간의 ‘전략암호’라고 칭한 NSC 68을 대통령에게 제출하였다. 이 문서에는 미국이 공산주의를 수용할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진 것이 반영되었고 공산당에게는 약하게 보이지 말 것을 강조하였다. 1950년 상반기에 미국의 타이완의 미래에 대한 태도는 무관심에서 제한적인 관심으로 변경된 것이었다.

#### 라. 제4장 중립 추구(1950년 6월 25일 ~ 11월 15일)

당시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은 타이완 해협의 중립을 추구하였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제7함대를 파견하여 타이완의 중립화 성명을 발표하면서 국민정부에게는 미국이 결정한 정책을 전달하였다.

당시 국민정부는 유엔의 조치에 호응하여 3만 3천명의 군 병력을 한국전쟁에 파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미국은 맥아더 사령부에서 타이완의 방어계획과 능력을 평가하기 전에는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기로 하였다.

그리고 타이완 해협 중립화 선언 이후 미국은 기존의 군사원 조정책을 수정했고, 국민정부와도 동맹을 맺게 되었다. 한국전쟁 발발 1개월 후 합동참모본부는 타이완에 긴급 군사원조를 제공하고 그 후에 정식으로 원조계획을 수립할 조사단 파견을 주장하였다. 7월 27일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NSC 37/10문서가 채택되었는데, 이 안에는 공동방위 원조금 중 1,434만 4,500달러가 군사지원계획 경비였다.

애치슨(Dean Acheson)과 트루먼이 타이완의 '중립'을 유지하려 했던 반면, 군부는 타이완의 방어를 중요시했다. 이에 맥아더는 7월 31일 타이완을 방문했고, 8월 27일 맥아더가 국제전쟁퇴역군인협회(Veterans of Foreign Wars) 연례회의 발표 자리에 섰을 때 그의 발표문에는 미국이 여전히 타이완을 군사기지로

삼으려한다는 인상을 주었다. 이러한 맥아더의 행동에 국무부는 분노했다.

한국전쟁으로 인해 미국은 타이완 문제에 개입하였지만 워싱턴의 입장은 무기한 타이완을 보호할 생각은 없었다.

#### 마. 제5장 제한적인 전쟁(1950년 여름 ~ 1951년 봄)

1950년 9월 중순 맥아더의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하자 워싱턴의 긴장 태세가 잠시 완화되었다.

그러나 중공이 개입하자 상황은 변했고, 러스크는 만약 중공이 한국전쟁 문제해결을 위한 교섭과정에서 타이완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하면 미국은 티베트와 인도차이나 문제를 함께 건의하자고 유엔에 제의하였다. 그리고 국무부 중국과(中國課)의 스투어트(Wallace W. Stuart)도 중공이 인도차이나반도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보장하면 타이완을 중공에 넘길 수도 있다고 제안하였다.

중공의 개입 후 미국의 정책기획자들은 모종의 해·공군 군사행동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당시 고려했던 작전은 화학전, 타이완 부대를 운영하는 간접적인 방안, 동북지방에 대한 현지폭격을 포함해 원자탄 사용도 고민하였다.

#### 바. 제6장 정책의 전환(1950년 12월 ~ 1951년 5월)

중공은 정전협상 조건에 타이완 문제 논의를 포함하였고, 맥아더도 국부군 활용을 위한 원조 증대를 요구하였다. 이에 워싱턴은 타이완의 가치와 기존에 결정했던 대 타이완 정책이 실현 가능한지 다시 평가하게 되었다.

당시 미국은 공산세력의 확대는 원하지 않았으나 한국전쟁 초기부터 충돌이 한반도 밖으로 확산되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판

단했다. 그리고 이 시기 유엔군이 계속 패퇴하자 그들도 타이완 군대 활용을 고민하기 시작하였다.

애치슨은 12월 4일 국방부에 서한을 보내 미국 국가안전에서 타이완의 전략적 가치를 합동참모본부에서 다시 평가할 것을 요청하면서 경제와 외교적 수단 외에 다른 방법으로도 중공의 타이완 점령 방지를 연구하게 하였다.

그 결과로 나온 ‘국가정보평가(National Intelligence Estimate, 이하 약칭 NIE)’ 보고서에 따르면, 국부군이 한국 전선에 투입 되어도 유엔군이 한반도에서 최후의 방어선을 지킬 수 있는 기회는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이었다. 이 견해는 맥아더의 평가와는 완전히 상반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군부와 국무부는 국부군의 사기, 작전능력과 그 능력의 공현도에 의구심을 품었다. 국부군 활용과 함께 타이완 해협의 중립 유지 문제도 대두되었고, 이 두 가지 문제는 모두 장제스(蔣介石) 정권과 다시 제휴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애머슨(John K. Emerson)은 1951년 미국의 대 타이완 정책을 중공과 소련의 행동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그리고 국무부 중국과에서 제출한 「포모사(Formosa)」 정책분석보고서에 한국전쟁 발발 후 미국의 일관된 주장이던 ‘타이완은 중국의 일부’라는 입장이 변경되었다. 이제 미국의 외교정책은 이념이 아니라 오히려 실리주의 정책에 근거해서 정립되기 시작한 것이다.

## 사. 제7장 태도의 변화(1951년 5월 ~ 1952년 3월)

처음에는 부담이 되던 타이완을 전략 자산으로 전환하여 대 중공 정책을 달성하자는 미국의 구상은 1951년 5월 국가안전보장회의의 NSC 48/5 문서로 구체화되었다. 이 문서에 따르면 미

국의 타이완에 대한 정책목표는 소련이나 소련의 위성국 수중에 타이완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또한 타이완의 방어능력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이에 1951년 5월 1일 미국의 군사고문단이 타이완에 도착하여 군사원조 계획을 감독하기 시작하였다.

NSC 48/5 문서에는 이미 타이완의 방어를 강화한다는 정책 목표가 수록되었지만, 타이완이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당시 워싱턴, 특히 국무부는 국민정부와 협조하겠다고 명확하게 약속하는 것을 기피하는 상황이었는데, 이에 국민정부 외교부장 예궁차오(葉公超)는 미국이 국민정부를 포기하려는 것은 아닌지 또는 미국이 진심으로 타이완을 원조하려는 것인지 의심하게 되었다.

10월 말 이후 미 국방부는 타이완 정부의 정식명칭을 ‘중화민국 국민정부(the Nat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China, 약칭 NGRC)’로 적시할 것을 지시하였다.

12월 중순 백악관에서 정전회담 문제를 논의할 때 합동참모본부 의장 브래들리(Omar N. Bradley) 장군은 미국이 어떤 의제를 양보할 것인가 아니면 중공과 전력으로 전투를 할 것인가라는 양자택일의 상황에 직면했다고 언급하였다. 그는 전쟁을 멈추고 한반도에서 철수할 것을 주장하였고, 이 자리에 참석한 다수의 장교들도 이 의견에 동의하였다. 트루먼 역시 양보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으나 중국 본토로까지 전쟁을 확대할 생각은 없었다. 당시 정전회담 논의과정에서 직면한 문제 중 하나는 상대방이 정전협의를 깨뜨리면 미국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였고, 당시 워싱턴은 정전 관리체제와 관련된 교착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 ‘제재 확대’라는 개념을 수립한 상태였다. 베이징은 무제한 사찰을 반대한 반면 워싱턴은 중공이 공격을 재개하

지 않는다고 부정할 수 있는 검증장치는 없다고 보았다.

중공을 포위하는데 이 ‘제재 확대’ 개념의 사용은 타이완의 위상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합동참모본부는 중공이 타이완을 장악하지 않는 것이 미국의 안전과 이익에 상당히 중요하며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지위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1952년 봄까지 타이완 방위에 대한 워싱턴의 공약은 여전히 제한적이었지만 상당히 진전을 한 상태였다.

#### 아. 제8장 정치적 자산(1952년 3월 ~ 1953년 1월)

1952년 봄 한반도의 전황 보도는 공산군의 공중전과 지상전의 역량이 증강되는 반면 유엔군은 약해지는 추세였다. 그리고 유럽 동맹국도 재무장(再武裝)이 더디게 진행되었고, 반미(反美)는 아니더라도 반전(反戰) 정서가 지속적으로 고조되는 상황이었다.

미 합동참모본부가 한국전쟁 이전부터 취해오던 타이완에 대한 수수방관 정책의 수정을 고려하게 된 것은 중공의 동남아시아 지역 침략 가능성 때문이었다. 따라서 미국은 광대한 화교사회의 정치 성향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당시 장제스는 중국 본토에서 중공 정권에 대항할 수 있는 상징이 되었으며,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도 화교들을 응집할 수 있는 유일한 반공인물이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었다. 따라서 미국은 국민정부에게 해외의 화교들과 연계하라고 촉구하였다.

그리고 한반도에 있는 유엔군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부군 활용을 고려하였으나 1952년 8월 19일 국방부 무장부대정책위원회(Armed Forces Policy Council)는 가까운 장래에 국부군의 활용은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하여 활용계획을 실행하지 않았다.

국무부는 한반도나 중국 본토에서의 국부군 활용을 반대하기

는 했으나 동남아시아에서의 사용은 비교적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1951년 초 미국 군사고문단장 체이스(William C. Chase) 장군은 국부군 유격대는 이미 연대급과 사단급의 기습 행동, 그리고 일부는 타이완 해협봉쇄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그는 이들의 기습행동 규모와 빈도를 늘리고 그들의 활동을 자체적으로 통솔할 수 있게 협조하여 행동의 효율성을 높이자고 건의하였다.

또한 체이스는 1953년 1월 국민정부의 육·해·공군이 개편을 끝내고 연합작전센터와 전술공군관제센터도 설립했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국부군의 효율성을 미군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려고 계획하지도 않았고, 예산상의 문제점 그리고 재무관 파견이 허용되지 않아서 그들의 군사예산과 재정제도가 여전히 빈약하다고 언급하였다.

트루먼 정부 임기 말기에 국민정부에 대한 미국 정책기획자들의 기본 입장은 미국의 주된 목표가 여전히 중공을 압박할 수 있는 반공역량을 건립하는 것이고, 타이완이 중국의 일부분으로 남아 전 세계 반공 중국인의 지지를 흡수하여 중공을 압박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이었다. 결국 타이완이 '독립적이지만 중국과 분리되지 않은' 하나의 정권을 유지하면서, 중국을 대표하게 결정된 것이다.

#### 자. 제9장 의도된 모호함(1953년)

1952년 11월 공화당의 아이젠하워(Dwight D. Eisenhower)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기존 미국 트루먼 정부의 대 공산당 정책에 변화가 생겼다. 아이젠하워는 경선 때 한국전쟁 종결을 주요 공약으로 삼았고 당선 후에는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 직접 한국

의 전선을 시찰하였다. 그리고 1953년 2월 2일 타이완 해협의 중립화 명령을 해제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스탈린이 사망하였고 그의 후임자는 평화공세를 시작하였다. 새로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안전보장회의 내부에 고위층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가 조직되었고, 대통령 국가안전특별보좌관 커틀러(Robert Cutler)가 국가안전정책의 전반을 재검토하였다. 이것은 ‘솔라리움 프로젝트(Solarium Project)’로, 핵심은 공산당에 대한 봉쇄를 유지하지만 약간의 ‘억제’ 논리를 추가한다는 것이었다.

미국의 정책기획자들은 기본적으로 공산진영의 평화공세가 일시적으로는 전략이 바뀐 것으로 보이지만 변경된 것은 아니며 그들의 목적은 군비확충의 시간을 버는 것과 동시에 자유세계의 단결을 약화시키는데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1953년 7월 27일 한국전쟁 정전협정이 체결된 후에도 변하지 않았다.

정전협정 체결 후 국제사회에서는 중공의 유엔 가입을 요구하는 압박이 점차 증가하였고,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은 국민정부의 주요한 정치적 가치는 타이완과 중국 본토 이외 지역의 반공 중국인들을 이끄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국민정부가 해외 지역 중국인들을 수용할 수 있다고 믿었다.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타이완의 군사적인 가치에 대해 내린 결론은 장차 미래에 국부군은 중공에게 잠재적인 위협이며, 동아시아 지역에서 자유세계의 전략적인 예비부대라는 것이었다.

### 차. 제10장 결론

1950년 1월 트루먼이 ‘수수방관 정책’ 성명을 발표하였음에도 군부, 의회 그리고 여론은 타이완과 중국을 분리하자는 입장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트루먼 정부는 이미 타이완과 중국 본토의 분리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트루먼의 임기 마지막 1년 동안 워싱턴은 타이완을 ‘자유중국’으로 육성하여 미국이 아시아에서 공산당의 확장을 봉쇄하고 중공에 대항하는 도구로 이용하는 것을 계획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타이완 해협을 중립화 취소는 주로 중공을 압박하여 한국전쟁을 종결하려는 것이었다. 미국의 대 타이완 정책의 주요 목표는 타이완이 미국의 이익을 위한 정책적 도구와 전략적 예비부대가 되게 하는 것이었다.

## 3. 타이완에 대한 더 넓은 이해를 위해

미국 자료를 통해 한국전쟁기 미국의 타이완에 대한 정책을 분석했다는 데 이 책의 성과는 높지만,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저자는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주로 미국 정책당국 내부의 의견불일치, 특히 국방부와 국무부의 대 타이완 정책에 관한 갈등에 주목하였기 때문에, 이 책은 타이완 정책에 대한 미국 정책의 점진적인 변화를 해석하려 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본문의 내용은 국무부와 국

방부의 대립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국가의 정책결정과정에서 특히 외교문제와 예산 사용에 있어서는 의견이 일치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결국 정치적 사안이 결정되기 위해서는 정책 당국의 합의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둘째, 미국 측의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였지만, 주 활용자료는 ‘미국대외관계사료집(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FRUS)’이다. 대외 공개 자료에 한정되었을 뿐 미국 내부의 정책 변화를 추적할 수 있는 국무부 및 국방부, 백악관 등 정책 부서 내부의 문서철 활용이 부족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셋째, 미국과 타이완의 외교관계 분석에 있어서 주로 미국 자료만을 활용하고 있는데 타이완의 자료를 활용하지 못한 부분이 아쉽다. 이 책에서 다루는 각 사안별로 간단하게라도 국민정부의 입장이 반영되었더라면 미국과 타이완의 양측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번역에 있어서 한 가지 지적할 점은 단체·기관·기구 등의 번역어가 중국어 그대로 직역하여 문맥상 어색한 경우이다. 예를 들어 8장에 기술된 무장부대정책위원회(Armed Forces Policy Council)는 일반적으로 ‘군사정책위원회’로 번역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 저서가 갖는 장점은 타이완 학계의 축적된 연구 성과를 국내 학계에 소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으로 한국과 타이완과의 학술적 교류도 희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의 역자 정형아는 국립타이완사범대학에서 역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아시아-태평양전쟁기와 전후 동아시아국제관계를 연구하고 있다. 국내에서 중국서적은 많이 번역되고 있지만, 타이완 도서는 번역이 거의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책을 번역 소개해 준 점에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 연구소 동정

### 1. 대외교류 및 주요 활동

○ 2022-1차 군사사연구포럼

- 일자/장소: 2022. 4. 13.(수) / 전쟁기념관 이병영 홀
- 참석: 군 및 대외기관 30여 명
- 세부진행

\* 사회 : 한동훈(군사편찬연구소)

10:00~10:10	개회사, 참석자 소개, 인사말씀
10:10~11:50	<p>#1. 명나라의 임진왜란 참전과 정세변화 * 발표 : 김경록(군사편찬연구소), 토론 : 임상훈(순천향대)</p> <p>#2. 일본의 임진왜란 인식과 전쟁수행 * 발표 : 김경태(전남대), 토론 : 김문자(상명대)</p>
13:00~15:30	<p>#3. 조선의 임진왜란 대비와 통치 * 발표 : 김강식(한국해양대), 토론 : 이상훈(육군박물관)</p> <p>#4. 임진왜란 이후 조선의 전쟁기억과 국제정세 * 발표 : 계승범(서강대), 토론 : 오항녕(전주대)</p> <p>#5. 임진왜란의 기록과 역사서술 * 발표 : 이왕무(경기대), 토론 : 권기중(한성대)</p>
15:40~16:50	<p>종합토론 * 좌장 : 이민웅(대구가톨릭대)</p>
16:50~17:00	맺음말씀, 사진촬영, 폐회, 식사



〈 2022-1차 군사사 연구포럼 〉

○ 학술교류협약 체결식

- 일자/체결기관: 2022. 5. 24.(화) / 국립외교원
- 2022. 4. 7.(목) / 군사편찬위원회
- 2022. 4. 13.(수) / 한국정치학회



〈 학술교류협약 체결식 : 군사편찬연구소-국사편찬위원회 〉



〈 학술교류협약 체결식 : 군사편찬연구소-국사편찬위원회 〉



〈 학술교류협약 체결식 : 군사편찬연구소-한국정치학회 〉

- 前 국방부장관(서욱) 부대방문
  - 일자/장소: 2022. 4. 27.(수) / 군사편찬연구소
  - 참석: 장관 및 국방정책실장 등 4명, 연구소 직원 전원
  - 내용: 환담, 격려, 내부시설 확인



〈 前 국방부장관 부대방문 〉

- 전적지 답사
  - 일자/장소: 2022. 3. 18.(금) / 판문점, 중립국 감독위원회
  - 참석: 연구소 직원 전원



〈 전적지 답사 〉

## 2. 인 사

### ○ 퇴 직

- 군사사부장 심현용: '22. 3. 31.부



< 퇴직 신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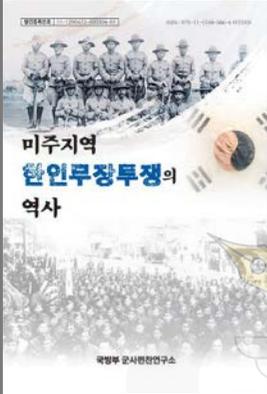
### ○ 보 직

- 군사사부장 정형아(前 전쟁사부 연구원) : '22. 4. 1.부



< 보직 신고 >

신간 도서 소개

구 분	내 용
 <p>미주지역 한인무장투쟁의 역사</p> <p>국립중앙도서관</p>	<p>본 책자는 미주지역에서 전개된 한인사회의 무장투쟁의 역사를 총정리하였다. 총 4장 10개 절로 구성하였으며, 미주한인사회의 형성과 민족운동, 국권피탈기 미주한인사회의 발전과 독립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기 미주한인사회의 무장독립운동, 태평양전쟁기 미주한인사회의 독립전쟁 등으로 이루어졌다.</p>
<p><b>미주지역 한인무장투쟁의 역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사사부</li> <li>• 4×6배판(양장)</li> <li>• 2022. 3. 31.</li> </ul>	<p>이 책은 중국 만주와 러시아 연해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의 역사에 비해 덜 알려진 내용을 부각시키려 하였고, 미주지역 한인의 무장투쟁의 역사를 통해 항일 독립운동의 참뜻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p>

## 자료 기증은 군사사 연구의 생명입니다.

### 〈정보자료실 제공〉

군 관련 자료를 소장하고 계신 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연구소는 최적의 자료 보존 장비와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여러분이 제공한 자료는 생생한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 〈자료기증안내〉

#### ◇ 수집대상자료

- 전사자료 : 한국전쟁, 월남전쟁에 관한 피아 작전관계 문서, 지도, 사진 등 전사자료와 참전증언 자료
- 군사사 자료 : 군사적, 학술적 가치가 있는 군사문헌, 고증 사료

#### ◇ 수집방법

- 소장자료를 아래 주소로 보내주시거나, 전화 또는 서신으로 소장자료 제공 의사를 알려 주시면 출장 방문하여 수령하겠습니다.

(비제공 자료는 복제 후 반환)

- ※ 기증해 주신 자료는 영구 보존되며 장병 및 국민들에게 공개 활용됩니다.

◇ 연락처

- 주 소 : (☎04353)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9(용산동 1가 8번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정보자료실
- 전 화 : (일반) 02)748-0946, 0947  
(군) 900-0946, 0947

〈자료이용안내〉

◇ 공개자료 종류

- 장 서 : 역사, 군사도서 등
- 사 료 : 한국전쟁, 월남전쟁, 국방, 군사사, 수기 등
- 기 타 : 학술논문, 수기, 회고록, 간행물 등

◇ 장 소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정보자료실(전쟁기념관 4층)

◇ 이용시간

- 평 일 : 09:30~17:30
-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 휴무

◇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 주 소 : [www.imhc.mil.kr](http://www.imhc.mil.kr)
- 주요내용 : 소장도서목록, 연구소 역대발간서적 원문서비스,  
거제도포로수용자 / 호국전몰용사공훈록 DB 검색 등

◇ 인터넷 군사사료관

- 주 소 : [Archives.imhc.mil.kr](http://Archives.imhc.mil.kr)
- 주요내용 : 미 기록물관리청(NARA)의 6·25 전쟁관련 기록,  
1970년 이후 연구소 발간물의 원문 제공 서비스

## 『軍史』誌 投稿案内

## 1. 원고 내용 및 범위

- 가. 국내외 군사정책 / 전략 · 군사제도 · 전쟁 / 전투에 관한 역사적 내용
- 나. 한국의 국방 및 안보와 관련한 정치사 · 외교사 · 軍事史 분야에 관한 내용
- 다. 가 · 나항과 관련된 연구논문, 자료소개, 서평(102호부터 신설, 별도 이메일 접수), 연구동향 등
- 라. 기타 군사편찬연구소 연구활동과 부합되는 글  
 ※ 투고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함.

## 2. 원고 작성 요령

- 가. 원고는 한국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한문과 원어는 꼭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고 첫 번에 한하여 괄호 안에 표기함.
- 나. 원고 분량은 각주를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
- 다. 註는 각주를 원칙으로 하고 각주 번호는 반괄호 안에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함. 각주의 표기는 저자, 「논문」, 『계재지 또는 저서』, 발행처, 발행연도, 페이지의 순서로 함.

예 : 홍길동, 「00에 관한 연구」, 『군사』 제80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1, 99~101쪽.

- 라. 외국어로 된 경우 각주의 표기는 저자, 서명, 발행지,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의 순서로 하고 서명은 이탤릭체, 쪽수는 'p', 'pp'로 표기한다.

예 : Hong Gildong, "History of Republic of Korean Army", *Military History*, Vol. 82, (2012, 3), p.40.

Hong Gildong, *Korean Military History*(New York: Mcgrow-Hill, 2010), pp.100~110.

마. 참고문헌은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된 모든 문헌의 자세한 문헌정보를 논문 말미의 참고문헌에서 명시.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되지 않은 문헌은 포함시키지 않음.

바. 참고문헌은 인문학에서 주로 사용하는 시카고 스타일을 적용

사. 참고문헌 중 전자출판된 학술지 논문은 저자명, 논문제목, 학술지명 및 발행호수(발행연도) : 페이지수, DOI 또는 UCI 표기

예1 : UCI 홍길동, “대한민국의 역사”, 『군사』 103호(2017):330-359,  
[http:// uci.or.kr /G704-001528.2017..103.010](http://uci.or.kr/G704-001528.2017..103.010)

예2 : DOI 홍길동, “대한민국의 역사”, 『군사』 103호(2017):330-359,  
[http:// doi.org/10.12345 / mh.2017.105..103.](http://doi.org/10.12345 / mh.2017.105..103)

※ DOI 정보는 해당논문에서 식별할 수 있으나 UCI 정보는 한국연구재단의 한국연구자식별정보(KCI)에서 식별할 수 있음.

아.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존 『軍史』지 예규를 참고하기 바람.

### 3. 투고 요령

가. 원고는 그대로 게재할 수 있는 완성된 형태의 글 파일(000.hwp) 이어야 하며 원고 제출은 군사지투고시스템에 탑재하여야 함.

※ 최초 투고시 저자 이름 삭제(파일명 포함), 이후 수정논문 탑재시 저자이름을 포함

나. 군사지투고시스템은 인터넷에서 군사편찬연구소 홈페이지 우측상단에 바로가기로 접속할 수 있으며, 논문과 투고계획서(국문 및 영문초록), 저작물이용동의서, 논문유사도 검사결과서를 탑재하여야 함.

1) 투고계획서와 저작물이용동의서의 양식은 군사지투고시스템의 공지 사항에서 다운받아 사용

2) 논문유사도검사결과서는 한국연구재단의 KCI의 논문유사도 기능을 활용하여 결과서를 다운받아 제출

다. 공동집필의 경우, 대표집필자 명의로 ‘투고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집필자는 각주에 표기함.

- 라. 심사가 끝난 후 수정논문을 작성하여 논문유사도를 검사결과서, 수정문 요약본과 함께 군사지투고시스템에 탑재
- 마. 세부사항은 군사지투고시스템의 공지사항에서 확인

#### 4. 원고 심사 및 고료

- 가. 원고의 게재 여부는 당 연구소에서 심의를 거친 후 결정함.
- 나. 접수된 원고는 게재 여부에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음.
- 다.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함.

※ 국방부 본부 및 산하기관의 공무원, 군인, 군무원에게는 소정의 격려품(기념품)을 지급함.

- 라.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당 연구소에 귀속됨.

#### 5. 발간시기 및 원고 접수기간

연간 4회 발간(3월 15일, 6월 15일, 9월 15일, 12월 15일)함. 따라서 1월 1일까지 접수된 원고는 3월에, 4월 1일까지 접수된 원고는 6월에, 7월 1일까지 접수된 원고는 9월에, 그리고 10월 1일까지 접수된 원고는 12월에 게재함.

#### 6. 문의/연락처

- 가.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9(우편번호 : 0435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軍史』誌 편집위원회

- 전화 : 02-748-1685(김태헌)
- FAX : 02-748-1638
- E-mail : imhc2@mnd.go.kr

- 나. 연구소 인터넷 홈페이지

[www.imhc.mil.kr](http://www.imhc.mil.kr)

내용 : 연구소 소개, 소식, 신간안내, 회원모집, 정보자료실(소장도서, 인명 DB검색 등)

연구윤리예규

군연-예16

제정 2007. 7. 1.  
부분개정 2008. 12. 1.  
부분개정 2009. 11. 1.  
부분개정 2017. 8. 1.  
일부개정 2022. 2.18.



제1조(목적) ..... 302  
제2조(적용대상) ..... 302  
제3조(적용범위) ..... 302  
제4조(용어의 정의) ..... 302  
제5조(연구 부정행위의 범위) ..... 303

제2장 연구의 진실성 및 연구자 윤리

제6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 304  
제7조(연구소의 역할과 책임) ..... 305  
제7조의 2 (연구의 진실성) ..... 306  
제7조의 3 (인용방법 원칙) ..... 306

제7조의 4 (중복계재) ..... 307  
 제7조의 5 (연구부정행위와 저작권침해 유의) ..... 307  
 제7조의 6 (공동연구) ..... 308  
 제7조의 7 (저자결정 기준) ..... 308  
 제7조의 8 (연구 결과의 사회적 기여) ..... 308

### 제3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8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 308  
 제9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 309  
 제10조(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 309  
 제11조(본 조사 착수 및 기간) ..... 310  
 제12조(조사위원회의 구성) ..... 310  
 제13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 310  
 제14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 311  
 제15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 311  
 제16조(판정) ..... 312  
 제17조(본 조사 결과보고서의 제출) ..... 312

### 제4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18조(연구지원기관 등에 대한 자료 제출) ..... 313  
 제19조(결과에 대한 조치) ..... 313  
 제20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 313  
 부 칙 ..... 314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 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예규는 본 연구소 내 연구편찬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있는 모든 연구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예규에 의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1. “연구 원자료”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자가 실험, 관찰, 조사 등을 거쳐 수집한 가공 이전의 자료와 문헌 등을 말한다.
2. “연구자료”란 연구 원자료를 가공한 자료와 이를 활용한 2차 자료 및 문헌을 말한다.
3. “연구결과”란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통해 얻은 연구자료를 활용하여 도출한 체계화된 결론을 말한다.
4. “연구결과물”이란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통해 최종적으로 얻은 결과를 기술한 보고서·논문·간행물·단행본 등의 학술적 지식 재산을 말한다.

### 제5 조(연구 부정행위의 범위)

① 연구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사료,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사료·사진·증언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기여를 한 연구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연구자와 동등하거나 유사한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6.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②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본 연구소 또는 연구지원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③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본 연구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⑤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⑥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 제 2 장 연구의 진실성 및 연구자 윤리

제 6 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연구대상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공정한 대우를 한다.

②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보호되어야 한다.

③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를 진행한다.

④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을 견지한다.

⑤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한다.

⑥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을 인정하고 존중한다.

⑦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 과정의 윤리적 책임을 견지한다.

⑧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

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를 명시한다.

⑨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를 진행한다.

#### 제 7 조(연구소의 역할과 책임)

① 연구소는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환경과 연구 문화를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연구소는 연구윤리 확립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연구윤리 예규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연구소는 연구윤리를 확보하고 부정행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연구수행 과정에서의 갈등이나 분쟁을 중재하거나 조정하는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연구소는 부정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해 검증·판단하는 기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⑤ 연구자가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부정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연 1회 정기적으로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한다.

⑥ 연구소는 교육부장관 또는 상급기관의 장이 연구윤리 실태 조사 등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때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⑦ 연구소는 인지하거나 제보받은 부정행위 의혹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여야 하며, 교육부장관, 전문기관 및 대학 등으로부터 소속 연구자의 연구부정 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 또는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의 2 (연구의 진실성)

- ① 연구자는 모든 연구 행위(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  
의 보고 및 발표, 연구심사평가행위 등)를 정직하고 진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연구자는 연구 내용과 그 중요성에 관해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기술해야 하고, 연구결과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추가하지 말아야  
한다.
- ③ 모든 연구자는 모든 연구행위가 편견과 예단 없이 이루어지도  
록 하여야 한다.

### 제7조의 3 (인용방법 원칙)

- ① 저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소개, 참조, 논평 등의 방법으로 타  
인의 저작물의 일부를 원문 그대로 번안 또는 번역하여 인용할  
수 있다.
- ② 저자는 출처 표시와 참고문헌 목록 작성의 정확성을 기하여야  
한다. 저자는 인용의 모든 요소(저자명, 학술지의 권·호수, 페이  
지, 출간연도 등)를 2차 출처에 의존하지 말고 원 논문에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재인용을 밝히고 인용  
할 수 있다.
- ③ 저자는 타인이 이미 발표한 논문에 담긴 이론이나 아이디어  
를 번안해서 자신의 저작물에 소개할 때에는 그 출처를 명시해  
야 한다.
- ④ 저자는 원칙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하여야 하고, 공개되  
지 아니한 학술 자료의 논문심사나 연구제안서 심사 또는 사적

접촉을 통하여 획득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연구자의 동의를 얻어 인용한다.

#### 제7조의 4 (중복게재)

- ①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과 주된 내용이 동일하다면 후에 출간된 본인 논문의 본문이 다소 다른 시각이나 관점을 보여주는 텍스트를 사용하거나 이미 출간된 동일한 데이터가 다소 다른 분석을 포함하더라도 중복에 해당한다.
- ② 이미 출간된 논문을 인지할 수 없는 다른 독자들을 위하여 중복게재를 하는 경우에는 두 학술지의 편집인이 중복게재에 대해 동의해야 하고, 저자는 학술지의 독자들에게 동일 논문이 다른 학술지에 출간되었다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 한 언어로 출간된 논문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여 다른 학술지에 출간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 ③ 동일 논문을 서로 다른 학회지에 복수로 기고하는 것은 금지되며, 하나의 학술지에 게재여부가 결정된 후에 다른 학술지에 기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 제7조의 5 (연구부정행위와 저작권침해 유의)

- ①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되면 통상적으로 저작권은 학술지 발행인에게 이전된다. 따라서 저자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다른 형태로 출간하거나 재사용할 때에는 저작권침해의 우려가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 ② 원저자의 허가를 받지 않은 번역출판은 저작권침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제7조의 6 (공동연구) 연구자는 다른 연구자와 공동연구를 수행할 경우에 역할과 상호관계를 분명히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해야 한다. 연구 착수에 앞서 연구과제의 목표와 기대결과, 협력관계에서 각자의 역할, 데이터수집·저장·공유의 방법, 저자결정과 순위기준, 연구책임자 선정,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 문제 등에 대하여 상호 합의와 이해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7조의 7 (저자결정 기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학술적·기술적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을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의 이유로 저자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데이터 수집 또는 입력이나 다른 언어로의 번역 등 기타 기여의 내용에 관하여는 사의를 표하는 각주에 그 내용을 적시할 수 있다.

제7조의 8 (연구 결과의 사회적 기여) 연구자는 연구를 통해 사회적 이익을 증진시키고 공익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자신의 연구가 사회에 미칠 영향을 자각하고 전문가로서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 제 3 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 8 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 ① 제보자는 기획운영실장에게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에 한하여 허용한다.
- ②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10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제9 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① 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소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②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1. 제보내용이 제5조 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3. 제보일이 시효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③ 예비조사는 기획운영실에서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10 조(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① 예비조사 결과는 소장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연구지원 기관과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②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본 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 제11조(본 조사 착수 및 기간)

- ① 본 조사는 소장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 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 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② 본 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 ③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소장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 요청을 하여야 한다.

### 제12조(조사위원회의 구성)

- ① 조사위원회는 소장이 임명(위촉)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조사위원회 위원(위원장)은 연구편찬분야 연구원으로 구성하고,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반드시 군사사(軍事史)분야 외부전문가 1인 이상 포함하여 위촉한다.
- ③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된다.
- ④ 본 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제13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 ① 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소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보관 등을 할 수 있다.

#### 제14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소장은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③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기관장과 관계 직원은 조사 및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 제15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

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 제16조(판정)

- ① 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 ②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7조(본 조사 결과보고서의 제출)

- ① 조사위원회는 판정 후 10일 이내에 본 조사 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소장에게 보고한다.
- ② 최종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6. 조사위원 명단

## 제 4 장   검증 이후의 조치

### 제18조(연구지원기관 등에 대한 자료 제출)

- ① 최종보고서는 소장 승인을 득한 후 10일 이내에 해당 연구 과제를 지원한 기관에 제출하며, 상급기관 등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선 조사과정 중이라도 즉시 연구지원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을 위반한 경우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그 밖의 연구지원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 제19조(결과에 대한 조치)

- ①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해 조사위원회는 소장에게 징계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② 징계조치에 관한 사항은 다른 관련 규정에 의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20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기획운영실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②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

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연구윤리 질의/응답〉

Q) 학위논문이 심사는 완료되었으나, 아직 출판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처를 밝히고 학술지 논문으로 투고할 수 있는가? 이때 게재가 될 경우 학위논문을 학술지에 다시 출판하는 것이 중복게재에 해당되지는 않는가?

A) 국내·외를 막론하고 학위논문을 활용하여 학술지 논문으로 게재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학위논문이 최종 인쇄되기 전에 학위논문의 내용을 활용하여 학술지 논문에 투고하면서 출처를 밝혔고 편집인이 논문게재를 승인하였다면 중복게재라고 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이전 저작물에서 활용되는 부분에 대한 출처를 표시하고 이를 이후 저작물을 출판하는 관계자에게 미리 알려 최종적으로 게재여부 판단을 받는 것이다.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18. 7. 17. 개정)

제12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①항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청렴이 세상

유능한 안보  
본뜬한 국방

# 부정청탁의 손길 나라가 무너집니다.





본 『軍史』誌는 한국연구재단의 등재 학술지입니다.  
(’08년 선정)

☞ 편집위원장

정형아(군사편찬연구소)

☞ 편집위원(가나다순)

강창부(공군사관학교) 기세찬(국방대학교)  
김강식(한국해양대학교) 김창석(강원대학교)  
박결순(충북대학교) 박상철(전남대학교)  
박태균(서울대학교) 신명호(부경대학교)  
심승구(한국체육대학교) 오영섭(경희대학교)  
윤경진(경상대학교) 이한우(서강대학교)  
홍석률(성신여자대학교)  
박종상(군사편찬연구소) 최정준(군사편찬연구소)  
이미숙(군사편찬연구소)

☞ 편집간사

김태현(군사편찬연구소)

---

**軍 史** 2022/6(第123號)

2022년 6월 8일 印刷

2022년 6월 15일 發行

發行處 \_ 國防部 軍史編纂研究所

(우편번호 : 04353)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9

TEL : 02-748-1685 FAX : 02-748-1638

印刷處 \_ 국방출판지원단 (M220503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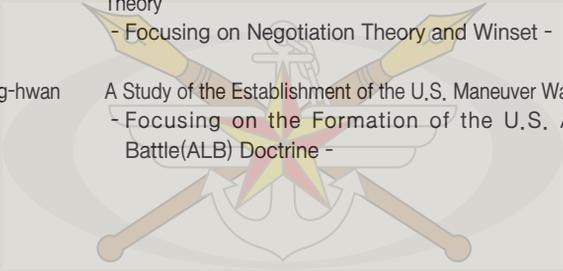
---

本誌에 실린 論文內容은 當 研究所의 公式見解가 아님.

# Military History

Vol. 123, 2022. 6.

- Ko, Jong-sung      The Review of Historical Value for the Excavation of those who Killed in Battle and their Remains during the Korean War
- Eom, Tae-yong      A Study on the Reserved Military Units of the Korean Independence Force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 Lee, Jay-jung      The Production of Gun Carriages during the period of 1860~70's of Joseon Dynasty and the Influx of Large Scale Cannons during the Meiji Japan Period
- Park, Jae-hong      An Re-examination of Syngman Rhee, the First President of ROK, and his the action of Release of War Prisoners during the Korean War based on the Logic of Putnam's Two-Level Game Theory  
 - Focusing on Negotiation Theory and Winset -
- Kim, Young-hwan      A Study of the Establishment of the U.S. Maneuver Warfare  
 - Focusing on the Formation of the U.S. AirLand Battle(ALB) Doctrine -



Published by Institute for Military History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Seoul, Korea



國防部 軍史編纂研究所  
 Institute for Military History.MND



9 771598 317009  
 ISSN 1598-317X